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571-01



#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2009. 12



법 무 부



## 발 간 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정당시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많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07년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 조건의 다양화,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본 또한 1948년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조문을 삭제·수정 또는 신설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공판전 정리절차, 즉결재판절차,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공판절차에 피해자 참가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일본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전문을 번역하고 연혁 및 개정 동향을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지난 2007년 12월 법무부가 발간한 일본 형법과 함께 일본 형사법 제도 연구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료집의 번역 및 발간을 위해 애써 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환·조명순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이형관 검사 및 검찰국 형사법제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9. 12.

법무부 검찰국장 **최 교일**



# 목 차

<b>제1장</b> <b>일본</b> <b>형사소송법의</b> <b>연혁</b>	1. 구형사소송법의 제정 ..... 3
	2.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정 ..... 4
	3.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과 ..... 5
<b>제2장</b> <b>일본</b> <b>형사소송법</b>	<b>제1편 총칙</b>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19조) ..... 13
	2.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제20조 - 제26조) ..... 17
	3. 소송능력(제27조 - 제29조) ..... 20
	4. 변호 및 보좌(제30조 - 제42조) ..... 20
	5. 재판(제43조 - 제46조) ..... 27
	6. 서류 및 송달(제47조 - 제54조) ..... 28
	7. 기간(제55조 - 제56조) ..... 31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내지 구류(제57조 - 제98조) ..... 31
	9. 압수 및 수색(제99조 - 제127조) ..... 43
	10. 검증 (제128조 - 제142조) ..... 51
	11. 증인심문 (제143조 - 제164조) ..... 53
	12. 감정 (제165조 - 제174조) ..... 61
	13. 통역 및 번역 (제175조 - 제178조) ..... 64

14. 증거보전(제179조 - 제180조) .....	64
15. 소송비용(제181조 - 제188조) .....	65
16. 비용의 보상(제188조의2 - 제188조의7) .....	67

## 제2편 제1심

1. 수사(제189조 - 제246조) .....	70
2. 공소(제247조 - 제270조) .....	87
3. 공판(제271조 - 제350조) .....	94
4. 즉결재판절차(제350조의2 - 제350조의14) .....	143

## 제3편 상소

1. 통칙(제351조 - 제371조) .....	147
2. 항소(제372조 - 제404조) .....	150
3. 상고(제405조 - 제418조) .....	158
4. 항고(제419조 - 제434조) .....	161

## 제4편 재심(제435조 - 제453조) .....

## 제5편 비상상고(제454조 - 제460조) .....

## 제6편 약식절차(제461조 - 제470조) .....

## 제7편 재판의 집행(제471조 - 제507조) .....

### 제3장

### 일본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8조) .....	185
2. 재판소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9조 - 제15조) .....	187
3. 소송능력(제16조) .....	189
4. 변호 및 보좌(제17조 - 제32조) .....	189
5. 재판(제33조 - 제36조) .....	197
6. 서류 및 송달(제37조 - 제65조) .....	198
7. 기간(제66조 - 제66조의2) .....	221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제67조 - 제92조의2) .....	222

9. 압수 및 수색(제93조 - 제100조) .....	229
10. 검증(제101조 - 제105조) .....	230
11. 증인신문(제106조 - 제127조) .....	232
12. 감정(제128조 - 제135조) .....	237
13. 통역 및 번역(제136조) .....	240
14. 증거보전(제137조 - 제138조) .....	240
15. 소송비용(제138조의2 - 제138조의7) .....	241
16. 비용의 보상(제138조의8 - 제138조의9) .....	242

### 제2편 제1심

1. 수사(제139조 - 제163조) .....	243
2. 공소(제164조 - 제175조) .....	252
3. 공판(제176조 - 제222조의10) .....	255
4. 즉결재판절차(제222조의11 - 제222조의20) .....	300

### 제3편 상소

1. 통칙(제223조 - 제234조) .....	303
2. 항소(제235조 - 제250조) .....	305
3. 상고(제251조 - 제270조) .....	309
4. 항고(제271조 - 제276조) .....	314

### 제4편 소년사건의 특별절차(제277조 - 제282조) .. 315

### 제5편 재심(제283조 - 제286조) .....

### 제6편 약식절차(제287조 - 제294조) .....

### 제7편 재판의 집행(제295조 - 제295조의5) .....

### 제8편 보칙(제296조 - 제305조) .....

## 부 록

刑事訴訟法 .....	329
刑事訴訟規則 .....	464



제 1 장

# 일본 형사소송법의 연혁



## 1. 구형사소송법의 제정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제도·문물 전반에서 점차 프랑스보다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고, 이는 형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1907년 프랑스 법계의 구형법에 갈음하여 현행 형법이 제정됨으로써 독일법계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작업도 이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그 후 1922(大正 11)년에 이르러 결실을 맺어 명치 형사소송법을 대체하는 형사소송법(이른바 구형사소송법)이 제정·공포되어 1923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구형사소송법은 독일 형사소송법 및 1920년의 동법 초안을 참조한 것으로서,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자유주의·민주주의사상의 영향(이른바 大正데모크라시)을 받아 종래의 형사소송법에 비하여 자유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이는 강제처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 불고불리 원칙의 철저화, 피고인의 당사자적 지위의 강화와 변호인제도의 확충, 상고이유의 확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민주주의사상의 요청에 따라 1923년에는 배심법이 제정되어, 1927년부터 배심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구형사소송법의 운용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르지 못하였다. 정당 정치의 쇠퇴, 데모크라시사상의 압살, 봉건적 색채가 강한 관헌의 지배 의식과 이에 대응하는 일반 국민의 관존민비적 피지배의식 등은 자연히 법률의 권위주의적 해석과 운용을 조장하여「당사자주의적 원리는 최소한으로, 직권주의적 원리는 최대한으로」발휘되는 경향이 강했을 뿐 아니라,

임의동행·행정집행법에 의한 檢束·違警罪即決例 등 탈법적인 강제력의 남용까지도 횡행하였다.

아울러 치안유지법(大正 14 제정, 昭和 16 전면개정), 국방보안법(昭和 16 제정), 전시형사특별법(昭和 17 제정) 등 현저히 위압적인 특별절차를 두기에 이르러, 구형사소송법의 이상은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다.

한편 배심법도 그 시행 이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시중인 1943년에 시행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 2.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정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의 법제도는 미군의 지도하에 수많은 면에서 중요한 변혁을 요청받았으며, 특히 미국법적 색채가 강한 일본국 헌법의 제정에 따라 종래의 대륙법계 형사소송법은 근본적인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46년 3월 헌법개정안 요강의 발표와 동시에 헌법개정에 따른 법률 제도의 개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같은 해 7월 내각에 임시법제조사회가 설치되었다. 동 조사회의 제3부회가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을 담당하여, 같은 해 10월 「형사소송법개정안 요강」을 내각총리대신에 회신하였다. 정부는 이 요강에 기하여 법안의 작성을 준비하여 1947년 1월 법안(제1차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나, 일본국 헌법의 시행에 시기를 맞추기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우선 응급조치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여 같은 해 4월 「일본국 헌법의 시행에 수반된 형사소송법의 응급적 조치에 관한 법률」(이른바 형소응급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후 정부는 제1차안을 재검토하는 한편 헌법· 형소응급조치법 등 시행 후의 실정과 최고재판소규칙과의 관련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해 10월 「제2차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법원· 검찰· 변호사회 등의 대표로 구성된 형소개정협의회에서 「제2차 정부안」에 대해 심의하여, 1948년 5월 「최종정부안」이 마련되었다.

이 최종안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으로서 제2회 국회에 제출되어 약간의 부분적 수정을 거쳐 같은 해 7월 성립되고, 같은 달 10월 법률 제131호로 공포되어 194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형사소송법과 비교한 현행법의 특색으로는 ①인권보장의 강화(영장주의, 인신보호 등), ②당사자주의의 강화(공소장일본주의, 訴因제도의 창설 등), ③증거법의 엄격화(전문법칙, 자백법칙 등), ④예심제도의 폐지, ⑤상소제도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 3.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과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정 후 현재까지 관계 법령의 제· 개정에 기한 개정을 포함하여 총 38회의 일부 개정이 행하여졌다.

1948년 최초 개정시 간이재판소의 과형권 범위확장에 따라 간이재판소로부터 지방재판소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1차 개정)**

1949년에는 가정재판소의 개설에 따라 형사소송법 중 가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외에, 준항고의 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였다. **(2차 개정)**

1952년에는 「파괴활동방지법」의 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준기소청구를 할 수 있는 죄에 파괴활동방지법의 죄가 추가(공안조사관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대상으로 함)되었고 **(제3차 개정)**, 법무부를 법무성으로 변경함에 따라 「法務總裁」를 「法務大臣」으로 개정하였다. **(4차 개정)**

1953년에는 간이공판절차를 신설하여 심리의 신속을 도모하는 외에 勾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항소심에서의 사실조사 범위의 확장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 **(5차 개정)**, 보석관찰의 선고·취소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6차 개정)**

1954년에는 국외에 있는 일본항공기내의 범죄에 관한 토지관할의 규정이 신설되어 국외에 있는 일본 항공기내의 범죄를 국내범으로 한 형법 개정에서 따라 그 범죄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외에, 범죄후 그 항공기가 착륙 한 곳을 추가하였고 **(7차 개정)**, 「경찰법」의 제정에 따라, 공안위원회의 명칭 등을 개정하였다. **(8차 개정)**

1958년에는 폭력범죄 대책의 일환으로서, 권리보석의 제외 사유의 확대,

보석 등 취소 사유의 확장 및 증인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증인 신문시 피고인의 退席·退廷 규정이 신설되었다. (9차 개정)

1971년에는 감정인은 미리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에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선서·감정을 거부한 때에는 그 비용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0차 개정)

1976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국가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함을 명문화하고, 보상할 비용의 범위, 청구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11차 개정)

1979년에는 「민사집행법」의 시행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기타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령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하였다. (12차 개정)

1986년에는 「외국변호사에의한법률사무의취급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변호인」에 외국법사무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3차 개정)

1988년에는 「재판소의휴일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간계산에 관하여 기간의 말일이 재판소의 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14차 개정)

1991년에는 벌금액 등의 인상을 위한 「형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벌칙 및 과료의 다액 및 미결구류일수 통산의 계산액을 인상하였다. (제15차 개정)

1992년에는 「재판소의휴일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 시행에

따라, 모든 토요일이 재판소의 휴일이 됨으로써, 기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개정을 하였다. (제16차 개정)

1995년에는 「형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 시행에 따라, 형법의 표기의 평이화 및 농아자의 행위에 관한 규정의 삭제를 위해 필요한 개정을 하였다. (제17차 개정)

1999년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개정을 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압수물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제18차 개정), 통신 감청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증인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9차 개정), 「무차별 대량살인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준기소청구를 할 수 있는 죄에 동 법률의 죄가 추가되었고 (제20차 개정),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개정으로 재판관이 피해자의 保佐監督人·補助人·補助監督人인 때를 제척사유로 하였다. (제21차 개정)

2000년에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배려와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 있어 ①친고죄인 강간죄 등의 고소기간 철폐 ②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절차 도입 ③피해자 등에 의한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에 관한 의견진술제도가 도입되었고 (제22차 개정), 「소년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에 의한 개정이 있었다. (제23차 개정)

2001년에는 「변호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변호인과 관련된 조항에 변호사법인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제24차 개정), 재판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5차 개정), 「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고 (제26차 개정), 「保健婦, 助産婦, 看護婦法」의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看護婦를 看護師로 표현을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제27차 개정)

2002년에는 「日本 郵政公社法」이 시행됨에 따른 일부 개정과 (제28차 개정),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 송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편물에 信書便物이 추가되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제29차 개정)

2003년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제30차 개정)

2004년에는 형사소송법이 대폭으로 개정되었는데,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로 하여금 미리 변호사회에 자력신고서를 첨부해 선임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구속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판전정리절차 및 기일간정리절차를 도입하였고, 피의자의 동의와 자백을 전제로 일부 경미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강제하는 즉결재판절차와 소송비용의 예납제도도 도입하였으며 (제31차 개정), 공소시효를 최장 25년까지 연장하였다. (제32차 개정)

2005년에는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표현을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고 (제33차 개정), 「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다. (제34차 개정)

2006년에는 간이재판소의 약식명령 상한액을 50만엔에서 100만엔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제35차 개정)

2007년에는 「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제36차 개정),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공판조서의 정리기한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37차 개정), 범죄 피해자의 권리이익 보호를 위해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공판절차에 피해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피해자 참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제38차 개정)

제 2장

일본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昭和 23(1948년) 7. 10. 법률 제131호

최종개정 : 平成 21(2009년) 7. 1. 법률 제 66 호

### 제 1 편 총 칙

**제1조** 이 법률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공복지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적인 권의 보장을 완수하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형벌법령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적용·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장 재판소의 관할

**제2조** ①재판소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거소 혹은 현재지에 의한다.

②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있어서는, 전항에 규정된 장소 외에 그 선박의 선적 소재지 또는 범죄 후 그 선박이 寄泊한 장소에 의한다.

③국외에 있는 일본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된 장소 외에 범죄 후 그 항공기가 착륙(着水를 포함한다)한 장소에 의한다.

**제3조**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되는 때에는 상급재판소는 병합하여 이를 관할할 수 있다

②고등재판소의 특별권한에 속하는 사건과 다른 사건이 관련되는 때에는, 고등재판소는 병합하여 이를 관할할 수 있다.

**제4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상급재판소에 계속되는 경우에 병합하여 심판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상급재판소는 결정으로 관할권을 갖는 하급재판소에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제5조** ①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상급재판소 및 하급재판소에 계속되는 때에는, 사물관할에 불구하고 상급재판소는 결정으로 하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병합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②고등재판소의 특별권한에 속하는 사건이 고등재판소에 계속되고 이와 관련되는 사건이 하급재판소에 계속되는 때에는, 고등재판소는 결정으로 하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병합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제6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되는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는 병합하여 다른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이를 관할할 수 없다.

**제7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 재판소에 계속되는 경우에, 병합하여 심판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소는 결정으로 관할권을 갖는 다른 재판소에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제8조** ①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재판소에 계속되는 때에는 각 재판소는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하나의 재판소에 병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재판소의 결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재판소에 공통된 直近 상급재판소는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하나의 재판소에 병합할 수 있다.

**제9조** ①수개의 사건은 아래의 경우에 관련사건으로 한다.

1. 1인이 수죄를 범한 때
2. 여러 명이 함께 동일 또는 별개의 죄를 범한 때
3. 여러 명이 통모하여 각각 죄를 범한 때

②범인은닉의 죄, 증거인멸의 죄, 위증의 죄, 허위감정통역의 죄 및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는 함께 범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①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재판소에 계속되는 때에는 상급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

②상급재판소는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권을 갖는 하급재판소에 그 사건을 심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①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재판소에 계속되는 때에는 최초로 공소를 수리한 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

②각 재판소에 공통하는 直近 상급재판소는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수리한 재판소에 그 사건을 심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①재판소는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소송절차는 관할위반의 이유에 의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4조** ①재판소는 관할권을 갖지 아니하는 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검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있는 제1심 재판소에 공통하는 直近 상급재판소에 관할지정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재판소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할 재판소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 관할위반을 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 달리 관할 재판소가 없을 때

**제16조** 법률에 의한 관할 재판소가 없을 때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사총장은 최고재판소에 관할지정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①검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直近 상급재판소에 관할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재판소가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2. 지방의 민심, 소송상황 기타 사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때
-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기타 사정에 의하여 관할 재판소가 심판을 할 때는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총장은 최고재판소에 관할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①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혹은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다른 관할 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②이송결정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개시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이송결정 또는 이송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의하여 현저히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 2 장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

**제20조** 재판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된다.

1. 재판관이 피해자인 때

2. 재판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때
3. 재판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보좌인·보좌감독인·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인 때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된 때
5.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 또는 보좌인이 된 때
6.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직무를 행한 때
7.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제266조 제2호의 결정, 약식명령, 전심의 재판, 제398조 내지 제400조, 제412조 혹은 제4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 혹은 이송된 경우의 원판결 또는 이들 재판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하였을 때, 단 수탁재판관으로서 관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①재판관이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되어야 할 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②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다.

**제22조** 사건에 관하여 청구 또는 진술을 한 후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단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①합의체의 구성원인 재판관이 기피된 때에는 그 재판관 소속의 재판소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재판소가 지방재판소인 때에는 합의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재판소의 단독재판관 또는 가정재판소의 재판관이 기피된 때에는 재판관 소속의 재판소가,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기피되었을 때에는 관할 지방재판소가 합의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단 기피된 재판관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기피된 재판관은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④재판소가 기피된 재판관의 퇴거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直近 상급재판소가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①소송을 지연시킬 목적만으로 제기된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제기된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기피된 수명재판관, 지방재판소의 단독재판관 혹은 가정재판소나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25조**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조** ①이 章의 규정은 제20조 제7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재판소서기에게 이를 준용한다.

②결정은 재판소서기의 소속 재판소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단 제2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가 부속된 수명재판관이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제 3 장 소송능력

**제27조**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에 대하여 이를 대표한다.

②여러 명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각자가 이를 대표한다.

**제28조 형법** 제39조(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 또는 제41조(형사미성년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가 2인인 때에는 각자. 이하 같음)이 소송행위에 관하여 이를 대리한다.

**제29조**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검찰관·사법경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 제 4 장 변호 및 보좌

**제30조**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보좌인·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간이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있어서는, 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지방재판소에 있어서는 달리 변호사 중에서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의 2** ①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사회에 변호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변호사회는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소속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소개해야 한다.

③변호사회는 전항의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해야한다. 동항의 규정에 의해 소개된 변호사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한 변호인 선임신청을 거부한 때에도 같다.

**제32조** ①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의 선임은 제1심에서도 그 효력을 갖는다.

②공소제기 후의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재판소의 규칙으로 주임변호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주임변호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제35조** 재판소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변호인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6조**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소는 그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 이외의 자가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 2** 이 법률에 의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전조의 청구를 함에는 자력신고서[그 자에게 속한 현금, 예금 그 밖에 다른 政令에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자산의 합계액(이하 자력이라고 함) 및 그 내역을 신고한 서면을 말함. 이하 같음]를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의 3** ①이 법률에 의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력이 기준액(표준적인 필요생계비를 감안해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보수 및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서 정령에서 정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상인 피고인이 제36조의 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청구할 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관할지역 내에 있는 변호사회에 제31조의 2 제1항의 신청을 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31조의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변호사회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전항의 지방재판소 또는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된 재판소에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37조** 다음의 경우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재판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연령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귀가 들리지 않는 자 또는 말할 수 없는 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라는 의심이 있는 때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7조의 2** ①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류장이 발부되어 있을 경우 피의자가 빈곤 그 밖의 사유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판관은 그 청구에 의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 이외의 자가 선임한 변호인이 있거나 피의자가 석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청구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건에 대해 구류가 청구된 피의자도 할 수 있다.

**제37조의 3** ①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자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자력이 기준액 이상인 피의자가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구류청구를 받은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변호사회에 제31조의 2 제1항의 신청을 해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31조의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변호사회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전항의 지방재판소에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37조의 4** 재판관은 제3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구류장이 발부되고 변호인이 없을 경우, 정신상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석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 5** 재판관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제37조의 2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이미 선임한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재차 변호인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석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①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선임하여야 할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은 여비·일당·숙박료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의 2** 재판관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피의자가 선임된 사건에 관해 석방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석방이 구류집행정지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 3** ①재판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소, 재판장, 재판관이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30조 규정에 의해 변호인이 선임되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진 때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으로 변호인에게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 때
  3. 심신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변호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4. 변호인이 그 임무에 현저히 반함으로 인해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 때
  5. 변호인에 대해 폭행, 협박 그 밖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사정으로 인해 변호인에게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 때
- ②변호인을 해임함에는 미리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변호인을 해임할 때에는 피고인의 권리가 부당히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공소제기 전에는, 재판관이 선임한 변호인의 해임은 재판관이 행한다. 이 경우 전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 4**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력에 대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력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9조** ①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변호사가 아닌 자에 있어서는 제31조 제2항의 허가가 있는 후에 한함)와 입회인 없이 접견하거나 서류 혹은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접견 또는 수수에 있어서는 법령(재판소의 규칙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도망, 죄중의 인멸 또는 계호에 지장이 있는 물건의 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③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사법경찰원 및 사법순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제1항의 접견 또는 수수에 관하여 그 일시·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그 지정은 피의자가 방어의 준비를 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①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소에서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단 증거물의 등사에 대하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7조의 4 제3항에 규정된 기록매체는 등사할 수 없다.

**제41조** 변호인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42조** ①피고인의 법정대리인·보좌인·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언제라도 보좌인이 될 수 있다.

②보좌인이 되기 위하여는 심급마다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좌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장 재 판

**제43조** ①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하여 이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조사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이를 하도록 하거나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제44조** ①재판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명령에는, 이유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제4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판결 이외의 재판은 판사보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46조**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6 장 서류 및 송달

**제47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상의 필요 기타 사유가 있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①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심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늦어도 재판을 선고할 때까지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단 재판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의 조서는 해당 공판기일 후 7일 이내에, 공판기일로부터 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10일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공판기일의 조서는 해당 공판기일 후 10일 이내(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일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 후 7일 이내)에 정리하면 충분하다.

**제49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공판조서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피고인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읽을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①공판조서가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소서기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서 또는 그 기일까지 전회의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의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청구를 한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의 진술요지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정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가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소서기는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서 또는 그 기일까지 출석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전회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1조**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은 늦어도 당해 심급에 있어서 최종 공판기일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제4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 후에 정리된 조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제52조**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공판조서에 의하여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제53조** ①누구라도 피고사건의 종결 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단 소송기록의 보존 또는 재판소 혹은 검찰청의 사무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소송기록 또는 일반의 열람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열람이 금지된 소송기록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관계인 또는 열람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특별히 소송기록의 보관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열람할 수 없다.

③ 일본국 헌법 제82조 제2항 단서(정치범죄·출판범죄 또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건)의 사건에 관하여는 열람을 금지할 수 없다.

④ 소송기록의 보관 및 그 열람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53조의 2** ①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압수물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平成11 법률 제42호) 및 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平成13 법률 제140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압수물에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平成15 법률 제58호) 제4장 및 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平成15 법률 제59호)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4조**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재판소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제외)을 준용한다.

## 제7장 기 간

**제55조** 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이를 기산하고, 日·月 또는 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묻지 않고 1일로 이를 계산한다.

②月 및 年은 曆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토요일, 국민의祝日에관한법률(昭和23 법률 제178호)에 규정된 휴일, 1월 2일, 1월 3일 또는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日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 기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①법정기간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재판소 또는 검찰청의 소재지와 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편리 여부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선고한 재판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장 피고인의 소환, 구인 내지 구류

**제57조** 재판소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58조**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제59조** 구인한 피고인은 재판소에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단 그 시간 내에 구류장이 발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①재판소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구류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구류기간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2개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1개월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제89조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은 1회에 한한다.

③30만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大正15 법률 제60호> 및 경제관계벌칙의정비에관한법률<昭和19 법률 제4호>의 죄 이외의 죄에 있어서는 당분간 2만엔)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1조** 피고인의 구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피고인의 소환·구인 또는 구류는 소환장·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발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주거, 죄명, 출석하여야 할 일시·장소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취지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4조** ①구인장 또는 구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주거,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인치하여야 할 장소 또는 구류하여야 할 형사시설, 유효 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 연월일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불명할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만한 사항으로 피고인을 指示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불명할 때에는 이를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소환장은 이를 송달한다.

②피고인으로부터 기일에 출석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 제출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구두로 다음 회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을 송달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구두로 출석을 명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소에 근접한 형사시설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시설직원

(형사시설의 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형사시설의 직원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형사시설직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소환장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6조** ①재판소는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피고인의 구인을 촉탁할 수 있다.

②受託재판관은 수탁권한이 있는 다른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수탁재판관은 수탁사항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탁권한이 있는 다른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촉탁을 이송할 수 있다.

④촉탁 또는 이송을 받은 재판관은 구인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64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인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구인장에, 촉탁에 의하여 이를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 ①전조의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 구인장을 발부한 재판관은 피고인을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이 없을 때에는 신속히 직접 이를 지정된 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 구인장을 발부한 재판관은 피고인이 지정된 재판소에 도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9조의 기간은 피고인이 지정된 재판소에 도착한 때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68조** 재판소는 필요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9조의 기간은 피고인을 그 장소에 인치한 때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69조**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57조 내지 제62조, 제65조, 제66조 및 전조에 규정된 처분을 하거나 또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0조** ①구인장 또는 구류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이를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수명재판관 또는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형사시설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류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형사시설직원이 이를 집행한다.

**제71조**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집행하거나 그곳의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①피고인의 현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장에게 그 수사 및 구인장 또는 구류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촉탁을 받은 검사장은 그 관내의 검찰관에게 수사 및 구인장 또는

구류장의 집행의 절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3조** ① 구인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직접 지정된 재판소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66조 제4항의 구인장에 있어서는 이를 발부한 재판관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 ② 구류장을 집행함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직접 지정된 형사시설에 인치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및 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취지를 알리고 그 집행을 할 수 있다. 단 영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4조** 구인장 또는 구류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임시로 가장 가까운 형사시설에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제75조** 구인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인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이를 형사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제76조** ① 피고인을 구인한 때에는 즉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빈곤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고지하면 충분하다.

②전항의 고지는 합의체의 구성원 또는 재판소서기에게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고지는 그 구인장을 발부한 재판관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단 재판소서기에게 그 고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7조** ①체포 또는 구인에 이어서 구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류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및 빈곤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61조 단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류한 후 즉시 전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소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고지하면 충분하다.

③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8조** ①구인 또는 구류된 피고인은 재판소 또는 형사시설의 장이나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회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형사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인 이상의 변호사 또는 2이상의 변호사법인이나

변호사회를 지정하여 전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변호사 또는 하나의 변호사법인이나 변호사회에 이를 통지하면 충분하다.

**제79조** 피고인을 구류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보좌인·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1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은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접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를 할 수 있다. 구인장에 의하여 형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피고인도 같다.

**제81조** 재판소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과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와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이들과 수수할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열하여 그 수수를 금지하거나 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단 양식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82조** ①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은 재판소에 구류이유의 開示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보좌인·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기타 이해관계인도 전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는 보석·구류의 집행정지 또는 구류의 취소가 있을 때 또는 구류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3조** ① 구류이유의 開示는 공개법정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법정은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가 列席하여 이를 개정한다.

③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피고인의 출석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게 이의가 없는 때, 변호인의 출석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① 법정에서는 재판장은 구류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 또는 피고인·변호인과 이들 이외의 청구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5조** 구류이유의 開示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6조** 동일한 구류에 대하여 제82조의 청구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구류이유의 開示는 최초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기타의 청구는 구류이유의 開示가 종료한 후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87조** ① 구류의 이유 또는 구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재판소는 검찰관,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 혹은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보좌인·배우자·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 구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8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8조** ①구류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보좌인·배우자·직계친족 이나 형제자매는 보석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8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혹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때
2. 피고인이 전에 사형·무기 혹은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3. 피고인이 상습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때
4.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이들을 畏怖하게 할 행위를 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6. 피고인의 성명 또는 주거가 불명한 때

**제90조** 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1조** ①구류에 의한 구금이 부당하게 장기화된 때에는 재판소는 제88조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 구류를 취소

하거나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8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 ①재판소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또는 보석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검찰관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 ①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보증금액은 범죄의 성질 및 情狀,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의 성격 및 자산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상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③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4조** ①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은 보증금의 납부가 있는 후가 아니면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②재판소는 보석청구자가 아닌 자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③재판소는 유가증권 또는 재판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95조** 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6조** ①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류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든가 이들을 畏怖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때
5. 피고인이 주거제한, 기타 재판소가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

②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取할 수 있다.

③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取하여야 한다.

**제97조** ①상소제기기간 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구류기간을 갱신하고, 구류를 취소하거나 또는 보석 혹은 구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원재판소가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상소중의 사건으로 소송기록이 상소재판소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전항의 결정을 하는 재판소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구류이유의 開示를 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8조** ①보석 또는 구류집행정지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구류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찰사무관·사법경찰직원 또는 형사시설 직원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구류장의 등본 및 보석 혹은 구류집행정지를 취소하는 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지정한 구류집행정지 결정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형사시설에 수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급속을 요할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혹은 구류집행정지가 취소되었다는 취지 또는 구류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를 알리고 형사시설에 수감할 수 있다. 단 그 서면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71조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9 장 압수 및 수색

**제99조** ①재판소는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라고 사료되는 것을 압수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소는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 ①재판소는 피고인이 발송하거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信書便物 또는 전신에 관한 서류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압수하거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편물, 信書便物 또는 전신에 관한 서류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은, 피고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하여 이를 압수하거나 또는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에 의하여 심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 피고인 기타의 자가 遺留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 혹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이를 영치할 수 있다.

**제102조** ①재판소는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이외의 자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03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 또는 소지하는 물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감독관청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할 수 없다. 단 해당 감독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

할 수 없다.

**제104조** ①다음의 자가 전조의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그 院, 제2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내각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를 할 수 없다.

1. 衆議院 또는 參議院의 의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람
2. 내각총리대신 기타의 국무대신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람

②전항의 경우에 衆議院·參議院 또는 내각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5조** 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변호사(외국법사무변호사를 포함)·변리사·공증인·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들 직에 있던 자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 또는 소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승낙한 경우, 압수의 거절이 피고인만을 위하여 하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피고인이 본인인 경우를 제외) 기타 재판소의 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또는 수색은 압수장 또는 수색장을 발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07조** ①압수장 또는 수색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유효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고 영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의 연월일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64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압수장 또는 수색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8조** ①압수장 또는 수색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이를 집행한다. 단 재판소가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소서기 또는 사법경찰직원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소는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에 관하여 그 집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지시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71조의 규정은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9조** 검찰사무관 또는 재판소서기는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 압수장 또는 수색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①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에 대하여는 자물쇠를 열거나 봉인을 열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공판정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도 같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12조** ①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 중에는 누구에 대하여도 허가를 얻지 않고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금지에 따르지 않는 자는 이를 퇴거시키거나 집행이 끝날 때 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13조**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을 하는 자는 미리 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할 수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들이 미리 재판소에 입회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및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판소는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을 이에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4조** ①공무소 내에서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을 할 때에는 그 長 또는 그를 갈음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처분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서 압수장 또는 수색장을 집행할 때에는 住居主나 간수자 또는 이들을 갈음할 사람을 이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을 입회하도록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5조**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성년의 여자에게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영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을 위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 들어갈 수 없다.

②일몰전에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에도 그 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117조** 다음의 장소에서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복권 또는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
2.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도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18조**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19조** 수색을 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수색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압수를 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만들어 소유자·소지자나 보관자

또는 이들을 갈음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있어서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기타의 자에게 그 승낙을 얻어 이를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은 재판소가 특별한 지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장의 집행을 한 사람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22조**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로서 멸실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것은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23조** ①압수물로서 유치의 필요가 없는 것은 피고사건의 종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가환부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4조** ①압수한 장물로서 유치의 필요가 없는 것은,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한하여 피고사건의 종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주장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5조** ①압수 또는 수색은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이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하여야 할 지역의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재판관은 수탁권한이 있는 다른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轉囑 할 수 있다.

③수탁재판관은 수탁사항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때에는 수탁권한이 있는 다른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촉탁을 이송할 수 있다.

④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이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하여는 재판소가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단 제100조 제3항의 통지는 재판소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126조**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 들어가 피고인의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색장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27조**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및 제118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하는 수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 10 장 검 증

**제128조** 재판소는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29조** 검증에 있어서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0조**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들을 갈음할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위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에도 그 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17조에 규정된 장소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31조** ①신체의 검사에 있어서는 이를 받는 자의 성별,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고 특히 그 방법에 주의하여 그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성년의 여자를 이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2조** 재판소는 신체의 검사를 위하여 피고인 이외의 사람을 재판소 또는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33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고 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4조** ①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 및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5조**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이를 소환하거나 이를 구인할 수 있다.

**제136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32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대하여, 제62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7조**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의 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고 그 거절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8조** ①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의 검사를 거부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 및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9조** 재판소는 신체검사를 거부하는 자를 과료에 처하거나 이에 형을 과하여도 그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대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료를 과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또한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이의의 이유를 알기 위하여 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1조** 검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에게 보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2조** 제112조 내지 제114조,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은 검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11 장 증인신문

**제143조** 재판소는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4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감독관청의 승낙이 없으면 증인으로서 이를 신문할 수 없다. 단 당해 감독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5조** ①다음의 자가 전조의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그 院, 제2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內閣의 승낙이 없으면 증인으로서 이를 신문할 수 없다.

1. 衆議院 또는 參議院의 의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
2. 내각총리대신 기타의 국무대신 또는 그 직에 있던 자

②전항의 경우에 衆議院·參議院 또는 내각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6조** 누구라도 자기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7조** 누구라도 다음의 자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자기의 배우자, 3親 等 이내의 혈족 혹은 2親 等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와 이러한 친족관계가 있던 자
2. 자기의 후견인·후견감독인 또는 보좌인
3. 자기를 후견인·후견감독인 또는 보좌인으로 하는 자

**제148조**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의 1인 또는 여러 명에 대하여 전조의 관계가 있는 자라도 다른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에만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9조** 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변호사(외국법사무변호사를 포함한다)·변리사·공증인·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승낙한 경우, 증언의 거부가 피고인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피고인이 본인인 경우를 제외)와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 ①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고 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51조** ①증인으로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 및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제152조**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다시 이를 소환하거나 이를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대하여, 제62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3조의 2** 구인장의 집행을 받은 증인을 호송하는 경우 또는 인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가장 가까운 경찰서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제154조** 증인에게는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5조** ①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신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가 선서를 한 때에도 그 진술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방해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 ①증인에게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의하여 추측한 사항을 진술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진술은 감정에 속하는 것이라도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방해 받지 아니한다.

**제157조**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의 신문에 입회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일시 및 장소는 미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에 입회할

수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들이 미리 재판소에 입회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규정된 자는 증인의 신문에 입회한 경우 재판장에게 알리고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157조의 2** ①재판소는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히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불안 또는 긴장을 완화함에 적당하고 또 재판관 혹은 소송관계인의 신문 혹은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증인의 진술 중 증인을 돌봐주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을 돌봐주게 된 자는, 그 증인의 진술 중 재판관 혹은 소송관계인의 신문 혹은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7조의 3** ①재판소는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다음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 그 증인과의 사이에 한쪽으로부터 또는 서로 상대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서는 변호인이 출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재판소는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명예에 대한 영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과 그 증인과의 사이에 서로 상대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7조의 4** ①재판소는 다음의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在席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이들이 在席하는 장소와 동일한 構内に 한함)에 그 증인을 在席시켜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상대의 상태를 서로 인식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형법 제176조부터 제178조의 2, 제181조, 제225조, 제226조의 2 제3항(외설 또는 결혼 목적에 관한 부분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제227조 제1항(제225조 또는 제226조의 2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할 목적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혹은 제3항(외설 목적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혹은 제241조 전단의 죄 또는 이들 죄의 미수죄의 피해자
2. 아동복지법(昭和22 법률 제164호) 제60조 제1항의 죄 혹은 동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 관련된 동법 제60조 제2항의 죄 또는 아동매춘·아동포르노에관련된행위등의처벌및아동의보호등에관한법률(平成11 법률 제52호)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의 피해자
3. 전2조의 자 외에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在席하는 장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전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행하는 경우에, 재판소는 그 증인이 나중의 형사절차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증인으로서 진술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로서 증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의 신문 및 진술과 그 사항을 기록매체(영상 및 음향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함. 이하 같음)에 기록할 수 있다.
-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문 및 진술과 그 상황을 기록한 기록 매체는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제158조** ①재판소는 증인의 중요성·연령·직업·건강상태 기타의 사정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후,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 외에 이를 소환하거나 그 현재장소에서 이를 신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소는 미리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신문사항을 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의 신문사항에 부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9조** ①재판소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증인신문에 입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회하지 아니한 자에게 증인의 진술내용을

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인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못한 현저히 불이익한 것인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다시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재판소는 전항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60조**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고 그 거부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1조** ①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 및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제162조** 재판소는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구인할 수 있다.

**제163조** ①재판소 외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이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증인의 현재지의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재판관은 수탁권한이 있는 다른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

재판소의 재판관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수탁재판관은 수탁사항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때에는 수탁권한이 있는 다른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촉탁을 이송할 수 있다.

④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은 증인신문에 관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장에게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150조 및 제160조의 결정은 재판소도 이를 할 수 있다.

⑤제158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159조에 규정된 절차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판소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4조** ①증인은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인은 미리 여비·일당 또는 숙박료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지급을 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 12 장 감 정

**제165조** 재판소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6조** 감정인에게는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7조** ①피고인의 심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재판소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유치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유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소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사법경찰직원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④재판소는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⑤구류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유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유치는 미결구류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류로 본다.

**제167조의 2** ①구류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된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구류는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1항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사람의 주거 혹은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 들어가 신체를 검사하고, 사체를 해부하고, 분묘를 발굴하거나 또는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및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또는 파괴할 물건 및 감정인의 성명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재판소는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하는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31조, 제137조, 제138조 및 제140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신체의 검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 재판소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제167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0조** 검찰관 및 변호인은 감정에 입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1조** 전항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감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2조** ①신체의 검사를 받는 자가 감정인이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신체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감정인은 재판관에게 그 자의 신체의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제10장의 규정에 준하여 신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3조** ①감정인은 여비, 일당 및 숙박료 외에 감정료를 청구하고 감정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있다.

②감정인은 미리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때에는 그 지급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4조**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에 관한 신문에 있어서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13 장 통역 및 번역

**제175조**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통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6조** 聾者 또는 啞者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통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7조** 국어가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이를 번역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8조** 전장의 규정은 통역 및 번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14 장 증거보전

**제179조** ①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해두지 아니

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한하여 재판관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180조** ①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소에서 전조 제1항의 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증거물의 등사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7조의 4 제3항에 규정된 기록매체는 등사할 수 없다.

③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 재판소에서 제1항의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 장 소송비용

**제181조**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빈곤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검찰관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소가 기각된 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상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단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비용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82조**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3조** ①고소·고발 또는 청구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고소, 고발 또는 청구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84조** 검찰관 이외의 자가 상소·재심 혹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상소·재심 또는 정식재판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85조**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6조**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에,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별도로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87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때에는 최종적으로 사건이 계속된 재판소가 직권으로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87조의 2**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재판소가 결정으로 행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제188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할 검찰관이 이를 산정한다.

## 제 16 장 비용의 보상

**제188조의 2** ①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한다. 단 피고인이었던 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공소의 제기를 받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88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8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88조의 3** ①전조 제1항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을 한 재판소가 결정으로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청구는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보상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88조의 4** 검찰관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 상소가 기각되거나 취하되어 당해 상소에 관련된 원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상소에 의하여 그 심급에서 발생한 비용의 보상을 한다. 단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에 있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8조의 5** ①전조의 보상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상소재판소이었던 최고재판소 또는 고등재판소가 결정으로써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청구는 당해 상소에 관련된 원재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보상에 관한 결정으로 고등재판소가 한 것에 대하여는 제428조 제2항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8조의 6** ①제188조의 2 제1항 또는 제18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되는 비용의 범위는,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함에 소요된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금액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비용에관한법률의 규정 중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판소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때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전항의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주임변호인 기타 일부의 변호인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88조의 7** 보상청구 기타 보상에 관한 절차, 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또는 압류 및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 형사보상법(昭和25 법률 제1호) 제1조에 규정된 보상의 예에 의한다.

## 제 2 편 제1심

### 제 1 장 수 사

**제189조** ①경찰관은 각각 다른 법률 또는 국가공안위원회 혹은 都道府縣 공안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②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한다.

**제190조** 삼림·철도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범위는 별도의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191조** ①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②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 검찰관과 都道府縣 공안위원회 및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93조** ①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게 대하여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시는 수사를 적정히 하고 기타 공소의 수행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하는 것에 의하여 행한다.

- ②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 ③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④전3항의 경우에 사법경찰직원은 검찰관의 지시 또는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194조** ①검사총장, 검사장 또는 검사정은 사법경찰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관의 지시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인 사법경찰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都道府縣 공안위원회에, 경찰관 이외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해서는 그 자를 징계 또는 파면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각각 징계 또는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②국가공안위원회·都道府縣 공안위원회 또는 경찰관 이외의 사법경찰직원을 징계하거나 파면할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소추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추를 받은 자를 징계 또는 파면하여야 한다.

**제195조** 검찰관 및 검찰사무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96조** 검찰관·검찰사무관 및 사법경찰직원과 변호인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가 있는 자는 피의자 기타의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수사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7조** ①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수사에 있어서는 공무소 또는 공사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다.

**제198조** ①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단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후 언제라도 퇴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미리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의 진술은 이를 조서에 녹취할 수 있다.

④전항의 조서는 이를 피의자에게 열람시키거나 또는 읽어 들려주고, 틀린 곳이 없는지 여부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피의자가 조서에 틀림이 없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 ①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관이 미리 발부한 체포장에 의하여 이를 체포할 수 있다. 단 30만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및 경제관계벌칙의정비에관한법률의 죄 이외의 죄에 관하여는

당분간 2만엔)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재판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경찰관인 사법경찰원에 대하여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都道府縣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警部 이상의 자에 한함. 이하 본조에 있어서 같음)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체포장을 발부한다. 단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제1항의 체포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이전에 체포장의 청구 또는 그 발부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0조** ①체포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및 주거,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인치할 관공서 기타의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체포할 수 없고 영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관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체포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1조** ①체포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체포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73조 제3항의 규정은 체포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2조**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순사가 체포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찰사무관은 이를 검찰관에게, 사법순사는 이를 사법경찰원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제203조** ① 사법경찰원은 체포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 또는 체포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인수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한 후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유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할 때에는 즉시 이를 석방하고, 유치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체가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이를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절차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유무를 물어,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는 이를 고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원은 제3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함에 있어, 구류가 청구된 경우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에게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재판관에게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함에는 자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 자력이 기준액 이상일 때에는 미리 변호사회(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31조의 2 제1항의 신청을 해야 하는 변호사회를 말함)에 변호인 선임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시간의 제한 내에 송치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204조** ①검찰관은 체포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 또는 체포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피의자를 제외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한 후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유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즉시 이를 석방하고 유치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피의자의 신체가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재판관에게 피의자의 구류를 청구하여야 한다. 단 그 시간제한 내에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구류청구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검찰관은 제3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함에 있어, 구류가 청구된 경우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에게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재판관에게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함에는 자력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취지, 자력이 기준액 이상일 때에는 미리 변호사회(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31조의 2 제1항의 신청을 해야 하는 변호사회를 말함)에 변호인 선임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전항의 시간의 제한 내에 구류청구 또는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④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5조** ①검찰관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피의자를 인수한 때에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유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즉시 이를 석방하고, 유치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피의자를 인수한

-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판관에게 피의자의 구류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시간제한은 피의자의 신체가 구속된 때부터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전2항의 시간제한 내에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구류청구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시간제한 내에 구류청구 또는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⑤전조 제2항의 규정은 검찰관이 제3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 체포하여 제203조의 규정에 의해 동항에 규정된 사건으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제1항 규정에 의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6조** ①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전3조의 시간제한에 따를 수 없는 때에는 검찰관은 재판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피의자의 구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그 지연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류장을 발부할 수 없다.

**제207조**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구류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단 보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전항의 재판관은 제3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건으로 구류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고지할 때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해 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함에 있어 변호인 선임을 청구함에는 자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 및 자력이 기준액 이상일 때에는 미리 변호사회(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31조의 2 제1항의 신청을 해야 하는 변호사회를 말함)에 변호인 선임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④재판관은 전항의 구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구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구류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류장을 발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구류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즉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208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류한 사건에 관하여 구류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찰관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②재판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연장은 통산하여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8조의 2** 재판관은 형법 제2편 제2장 내지 제4장 또는 제8장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연장은 통산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9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의 규정은 체포장에 의한 체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0조** ①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사형 또는 무기 혹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급속을 요하고 재판관의 체포장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재판관의 체포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하여야 한다. 체포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②제200조의 규정은 전항의 체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2조** ①현재 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죄의 실행을 마친 직후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 또는 명백히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피복에 범죄의 현저한 證跡이 있는 때
4.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도주하려고 하는 때

**제213조** 현행범인은 누구라도 체포장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있다.

**제214조** 검찰관·검찰사무관 및 사법경찰직원 이외의 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이나 區검찰청의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15조** ①사법순사는 현행범인을 인수한 때에는 신속히 이를 사법경찰원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②사법순사는 범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함께 관공서에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6조** 현행범인이 체포된 경우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7조** 30만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관한법률의 죄 이외의 죄에 있어서는 당분간 2만엔)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 혹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범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13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8조** ①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재판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체의 검사는 신체검사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指紋 혹은 足型을 채취하고, 신장 혹은 체중을 측정하거나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를 裸身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전항의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제1항의 영장은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발부한다.

④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신체검사영장의 청구를 함에는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건강상태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재판관은 신체검사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9조** ①전조의 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검증할 장소·물건 또는 검사할 신체 및 신체검사에 관한 조건, 유효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착수할 수 없고 영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 연월일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관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64조 제2항의 규정은 전조의 영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0조** ①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도 같다.

1.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
2.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것
  - ②전항 후단의 경우에 체포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은 즉시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④제1항 제2호 및 전항의 규정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준용한다.

**제221조**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 기타의 자가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 혹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이를 영치할 수 있다.

**제222조** ①제99조, 제100조, 제102조 내지 제105조,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8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은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제218조, 제220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하여, 제110조, 제112조, 제114조, 제118조,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7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은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제218조 또는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검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사법순사는 제122조 내지 제124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은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일출전, 일몰후에는 영장에 야간에도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검증을 위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 들어 갈 수 없다. 단 제117조에 규정된 장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일몰전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에도 그 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 ⑥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이에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거부한 사람을 과료에 처하거나 또는 이에 배상을 명하여야 할 때에는 재판소에 그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22조의 2** 통신의 당사자중 누구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3조** ①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하거나 또는 이에 감정·통역 혹은 번역을 촉탁할 수 있다.

②제198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4조**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 제167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재판관에게 그 처분을 청구 하여야 한다.

②재판관은 전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7조의 경우에 준하여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6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5조** ①제2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촉탁을 받은 자는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청구는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③재판관은 전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④제16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6조**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대하여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찰관은 재판관에게 그 자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7조** ① 제2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의 조사시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서 전에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있고 또 그 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찰관은 재판관에게 그 자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검찰관은 증인신문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그것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28조** ① 전2조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② 재판관은 수사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전항의 신문에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9조**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區검찰청의 검찰관은 검시를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에게 전항의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0조** 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1조**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제232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피의자의 배우자인 때 또는 피의자의 4親等 이내의 혈족 혹은 3親等 이내의 인척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33조** ①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있어서는, 死者의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②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제234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5조** ①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고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 제225조 혹은 제227조 제1항(제225조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할 목적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혹은 제3항의 죄 또는 이들 죄에 관련된 미수죄에 대하여 행하는 고소

2. 형법 제2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대표자가 행하는 고소 및 일본국에 파견된 외국의 使節에 대한 형법 제230조 또는 제231조의 죄에 관하여 그 使節이 행하는 고소

②형법 제229조 단서의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236조**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도과는 다른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237조** ①고소는 공소제기가 있기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의 취소를 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전2항의 규정은 청구를 기다려 수리하여야 할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8조** ①친고죄에 대하여 공범의 1인 또는 여러 명에 대하여 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고발 또는 청구를 기다려 수리하여야 할 사건에 있어서의 고발·청구 또는 그 취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9조** ①누구라도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官吏 또는 公吏는 그 직무를 행함에 의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제240조** 고소는 대리인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같다.

**제241조**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구두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2조** 사법경찰원은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3조**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4조** 형법 제2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대표자가 행하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제241조 및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外務大臣에게 이를 할 수 있다. 일본국에 파견된 외국의 使節에 대한 형법 제230조 또는 제231조의 죄에 관하여 그 使節이 행하는 고소 또는 그 취소도 같다.

**제245조** 제241조 및 제242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6조** 사법경찰원은 범죄의 수사를 한 때에는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단 검찰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장 공 소

**제247조** 공소는 검찰관이 이를 행한다.

**제248조** 범인의 성격, 연령 및 환경, 범죄의 경중 및 情狀 및 범죄 후의 정황에 의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9조** 공소는 검찰관이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는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0조** 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5년
3. 장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0년
4. 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7년
5.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5년
6.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3년
7.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년

**제251조** 2이상의 주형을 병과하거나 또는 2이상의 주형 중 그 1개를 과하여야 할 죄에 있어서는 그 중한 형에 따라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3조** ①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하여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제254조** ①시효는 당해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에 의하여 그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진행이 시작된다.

②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에 정지한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진행이 시작된다.

**제255조** ①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숨어있기 때문에 유효한 기소장 등본의 송달 혹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는 그 국외에 있는 기간 또는 도주하여 숨어있는 기간 동안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②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범인이 도주하여 숨어있기 때문에, 유효한 기소장 등본의 송달 혹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할 수 없었음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재판소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제256조** ①공소의 제기는 기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기소장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함에 충분한 사항
2. 공소사실
3. 죄명

③공소사실은 訴因을 명시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訴因을 명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일시, 장소 및 방법으로 죄가 되는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죄명은 적용할 罰條를 표시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罰條 기재의 오류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수개의 訴因 및 罰條는 예비적으로 또는 택일적으로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⑥기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하여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7조** 공소는 제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8조** 검찰관은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의 대응하는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그 사건을 관할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9조** 검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피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60조** 검찰관은 고소·고발 또는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고소인·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송치한 때에도 같다

**제261조** 검찰관은 고소·고발 또는 청구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 또는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속히 고소인·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62조** ①형법 제193조부터 제196조까지 또는 파괴활동방지법(昭和27 법률 제240호) 제45조 혹은 무차별대량살인행위를행한단체의규제에관한 법률(平成11 법률 제147호) 제42조 혹은 제43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검찰관 소속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사건을 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는 제26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263조** ①전조 제1항의 청구는 제266조의 결정이 있기까지 이를 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취하를 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64조** 검찰관은 제262조 제1항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65조** ①제262조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은 합의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명재판관 및 수탁재판관은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266조** 재판소는 제262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다음의 구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거나 혹은 청구권 소멸 후에 된 것일 때 또는 청구가 이유가 없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한다.

**제267조** 전조 제2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7조의 2** 재판관은 제266조 제2호의 결정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해 검찰심사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심사를 수행한 검찰심사회 또는 동법 제41조의 6 제1항의 기소의결을 한 검찰심사회(동법 제41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후에는 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검찰심사회에 해당 결정을 한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 제268조** ①재판소는 제26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 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의 확정에 이를 때까지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단 검찰사무관 및 사법경찰직원에게 대한 수사의 지휘는 검찰관에게 촉탁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이를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 ④재판소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에게는 政令으로 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269조** 재판소는 제262조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또는 그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청구자에게 그 청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70조** ①검찰관은 공소제기 후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7조의 4 제3항에 규정하는 기록매체는 등사할 수 없다.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제271조** ①재판소는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기소장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공소의 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소장 등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제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72조** ①재판소는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및 빈곤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소는 이 법률에 의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함에 있어, 변호인 선임을 청구함에는 자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 및 자력이 기준액 이상일 때에는 미리 변호사회(제36조의 3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제31조의 2 제 1항의 신청을 해야 하는 변호사회를 말함)에 변호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73조**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이를 검찰관·변호인 및 보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4조** 재판소의 構内に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75조** 제1회 공판기일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과의 사이에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76조** ①재판소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미리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공판기일에서 우선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7조** 재판소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소송 관계인은 최고재판소의 규칙 또는 訓令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법행정 감독상의 조치를 구할 수 있다.

**제278조** 공판기일에 소환을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8조의 2** ①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또는 변호인에

대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在席 또는 在廷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명령을 하거나 합의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위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해 명령을 받은 검찰관 또는 변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결정으로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아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⑤재판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검찰관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변호사인 변호인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회 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를 받은 자는 취한 조치를 재판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279조** 재판소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공무소 또는 公私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다.

**제280조** ①공소의 제기가 있는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구류에 관한 처분은 재판관이 이를 행한다.

②제199조 혹은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인으로서 체포된 피의자로 아직 구류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204조 또는

제205조의 시간제한 내에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은 신속히 피고사건을 고지하여 이에 관한 진술을 듣고 구류장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그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재판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281조** 증인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제158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한 후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 외에서 이를 신문할 수 있다.

**제281조의 2** 재판소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증인신문에 피고인이 입회한 경우에,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제157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및 제157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는 압박을 받아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관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의 진술 중 피고인을 退席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진술 종료 후 피고인에게 증언의 요지를 고지하고 그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1조의 3** 변호인은 검찰관이 피고사건의 심리준비를 위해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를 제공한 증거에 관한 복제 등(복제, 그 밖에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기록한 물건 및 서면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 보관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겨서는 아니된다.

**제281조의 4** ①피고인, 변호인(제440조에 규정된 변호인을 포함) 또는 피고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는 검찰관이 피고사건의 심리준비를 위해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를 제공한 증거에 관한 복제 등을, 다음에 기재된 절차 또는 그 준비에 사용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1. 해당 피고사건의 심리 그 밖에 해당 피고사건에 관한 재판을 위한 심리

2. 해당 피고사건에 관해 다음에 기재된 절차

가. 제1편 제16장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상 절차

나. 제349조 제1항의 청구절차

다. 제350조의 청구절차

라. 상소권회복 청구절차

마. 재심 청구절차

바. 비상상고 절차

사. 제500조 제1항의 신청절차

아. 제502조의 신청절차

자. 형사보상법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절차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참작해, 복제 등의 내용, 행위의 목적 및 태양,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는지 여부, 해당 복제 등에 관한 증거가 공판기일에 조사된 것인지 여부, 조사방법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다.

**제281조의 5**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가 검찰관이 피고사건의 심리 준비를 위해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를 부여한 증거에 관한 복제 등을

전조 제1항 각호에 기재된 절차 또는 그 준비에 사용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변호인(제440조에 규정된 변호인을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가 검찰관이 피고사건의 심리준비를 위해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를 부여한 증거에 관한 복제 등을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대가나 그 밖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281조의 6** ①재판소는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사건은 가능한 연일 개정하여 계속해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②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엄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2조** ①공판기일에서의 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를 행한다.

②공판정은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가 列席하고 또 검찰관이 출석하여 이를 개정한다.

**제283조**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284조** 50만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경제관계벌칙의정비에 관한법률의 죄 이외의 죄에 있어서는 당분간 5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285조** ①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판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소는 피고인의 출석이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및 경제관계범죄의정비에관한법률의 죄 이외의 죄에 있어서는 당분간 5만엔)을 초과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제291조의 절차를 하는 경우 및 판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전항 후단의 예에 의한다.

**제286조** 전3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없다.

**제286조의 2**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형사시설 官廳에 의한 인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때에는, 재판소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일의 공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287조**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하려고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에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288조**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가 없으면 퇴정할 수 없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을 在廷시키기 위하여 또는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9조** ①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

②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변호인이 在廷하지 않게 된 때 또는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90조** 제37조 각호의 경우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90조의 2** ①재판소는 다음에 기재된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 등(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상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로부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 특정사항(성명, 주소 그 밖에 해당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공개된 법정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형법 제176조부터 제178조의 2 또는 제181조의 죄, 동법 제225조 또는 제226조의 2 제3항의 죄(외설 또는 결혼 목적에 관한 부분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동법 제227조 제1항(제225조 또는 제226조의 2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할 목적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3항(외설 목적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241조의 죄 또는 이들 죄의 미수죄에 관한 사건
2. 아동복지법 제60조 제1항의 죄 또는 동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동법 제60조 제2항의 죄 또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의 죄에 관한 사건
3. 전2호에 기재된 사건 이외에 범행의 태양, 피해상황 그 밖의 사정에 의해 피해자 특정사항이 공개된 법정에서 밝혀짐에 의해 피해자 등의 명예나 사회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 ② 전항의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에 검찰관은 의견을 붙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 ③ 재판소는 제1항에 정해진 것 이외에 범행의 태양, 피해상황 그 밖의 사정에 의해 피해자 특정사항이 공개된 법정에서 밝혀짐으로 인해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이들을 외포시키거나 곤혹스럽게 할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다루는 경우,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 특정사항을 공개된 법정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재판소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특정사항을 공개된 법정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312조의

규정에 의해 별척조항이 철회 또는 변경되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기재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동항 제3호에 기재된 사건 또는 전항에 규정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제1항 또는 전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1조** ①검찰관은 우선 기소장을 낭독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전항의 기소장 낭독은 피해자 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기소장의 낭독이 끝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지한 후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하여 피고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1조의 2** 피고인이 전조 제3항의 절차에서 기소장에 기재된 訴因에 관하여 유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때에는, 재판소는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유죄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訴因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의 3** 재판소는 전조의 결정이 있는 사건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거나 또는 이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2조** 증거조사는 제291조의 절차가 끝난 후 이를 행한다. 다만 다음 절 第1款에 정한 공판전 정리절차에 있어 쟁점 및 증거정리를 위해 행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2조의 2** ①재판소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에 관한 심정 기타 피고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시킨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검찰관은 의견을 붙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③재판장 또는 배석재판관은 피해자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소송관계인은 피해자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알리고 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의견진술 또는 소송관계인의 피해자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질문이 이미 한 진술 혹은 질문과 중복되는 때 또는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에 미친 때 기타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⑥제157조의 2, 제157조의 3 및 제157조의 4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 준용한다.

⑦재판소는 심리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또는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⑧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또는 그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293조** ①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찰관은 사실 및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4조**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제295조** ①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하는 신문 또는 진술이 이미 한 신문 혹은 진술과 중복되는 때 또는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항에 미친 때 기타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다.

②재판장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혹은 이들의 친족의 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또는 이들을 畏怖시키거나 곤혹하게 하는 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이들의

주거, 근무처 기타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가 특정되는 사항이 밝혀지면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대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검찰관이 하는 신문을 제한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피고인·변호인이 하는 신문을 제한함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판장은 제290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소송관계인의 심문 또는 진술이 피해자 특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심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이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구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같다.

④재판소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해 명령을 받은 검찰관 또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관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관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변호사인 변호인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회 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에 통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를 받은 자는 취한 조치를 재판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296조** 증거조사의 처음에 검찰관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단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서 그 조사를 청구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에 대하여 편견 또는 예단을 발생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제297조** ①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거 조사의 범위, 순서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절차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증거조사의 범위, 순서 또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8조**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9조**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미리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성명 및 주거를 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상대방에게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소가 직권으로 증거조사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9조의 2**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성명 및 주거를 알 기회를 부여하거나 증거서류·증거물을 열람할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증인·감정인·통역인·

번역인 혹은 증거서류·증거물에 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자 혹은 이들의 친족의 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이들을 畏怖시키거나 곤혹하게 하는 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취지를 고지하여 이들의 주거·근무처 기타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가 특정되는 사항이, 범죄의 증명 혹은 범죄의 수사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피고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기타 이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9조의 3** 검찰관은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의 성명 및 주소를 알 기회를 부여하거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사항이 밝혀짐에 의해 피해자 등의 명예 또는 사회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해자나 그 밖의 친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이들을 외포시키거나 곤혹스럽게 할 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인에 대해 그 취지를 알리고 피해자 특정사항이 피고인의 방어에 관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특정사항 중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한한다.

**제300조** 제321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면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반드시 그 조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01조** 제322조 및 제3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자백인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가 조사된 후가 아니면 그 조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302조** 제321조 내지 제323조 또는 제3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찰관은 가능한 한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그 조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03조** 공판준비에서 한 증인 기타의 자의 신문, 검증, 압수 및 수색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및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공판기일에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로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04조** ①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은 재판장 또는 배석재판관이 우선 이를 신문한다.

②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에게 알리고 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조사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청구한 때에는 청구를 한 자가 먼저 신문한다.

③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전2항의 신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4조의 2** 재판소는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제157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및 제157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는 압박을 받아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출석하고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검찰관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의 진술 중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진술종료 후 피고인을 入廷시켜 증언의 요지를 고지하고 그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5조**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서류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장은 그 조사를 청구한 자에게 이를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재판장은 스스로 이를 낭독하거나 또는 배석재판관 또는 재판소서기에게 이를 낭독시킬 수 있다.

② 재판소가 직권으로 증거서류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장은 스스로 그 서류를 낭독하거나 배석재판관 또는 재판소서기에게 이를 낭독시켜야 한다.

③ 제290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의 낭독은 피해자 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행한다.

④ 제15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매체가 그 일부가 된 조서의 조사에 대하여는, 전2항에 의한 낭독에 같음하여 당해 기록매체를 재생한다. 단 재판장은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매체의 재생에 같음하여 당해 조서의 조사를 청구한 자, 배석재판관 혹은 재판소서기관에게 당해 조서에 기록된 진술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직접 이를 고지할 수 있다.

⑤ 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7조의 4 제3항에 규정된 기록 매체를 재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157조의 3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6조**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물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장은 청구를 한 자로 하여금 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재판장은 스스로 이를 제시하거나 배석재판관 또는 재판소서기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재판소가 직권으로 증거물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장은 직접 이를 소송관계인에게 제시하거나 배석재판관 또는 재판소서기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7조** 증거물 중 서면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7조의 2** 제291조의 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제296조, 제297조, 제300조 내지 제302조 및 제30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308조** 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9조**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재판소는 전2항의 신청에 관해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10조** 증거조사가 종료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 없이 이를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11조** ①피고인은 시종 침묵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임의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언제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배석재판관·검찰관·변호인·공동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전항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2조** ①재판소는 검찰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기소장에 기재된 訴因 또는 罰條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재판소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訴因 또는 罰條를 추가,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재판소는 訴因 또는 罰條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속히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부분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재판소는 訴因 또는 罰條의 추가 또는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준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13조** ①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변론을 분리·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②재판소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변론을 분리하여야 한다.

**제313조의 2** ①이 법률 규정에 의해 재판소, 재판장, 재판관이 붙인 변호인의 선임은 변론이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재판소가 이와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4조** ①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검찰관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무죄·면소·형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재판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관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제284조 및 제2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출석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범죄사실의 존부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증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기일 외에서 그 조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5조** 개정 후 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5조의 2** 제291조의 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6조** 지방재판소 또는 가정재판소에서 단독재판관이 한 소송절차는 피고사건이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할 것인 경우에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쟁점 및 증거정리절차

### 第 1 款 공판전 정리절차

#### 第 1 目 통 칙

**제316조의 2** ①재판소는 충실한 공판심리를 계속적, 계획적으로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결정으로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공판준비로서 사건을 공판전 정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②공판전 정리절차는 이 款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서면을 제출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제316조의 3** ①재판소는 충실한 공판심리를 계속적, 계획적으로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판전 정리절차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가능한 신속히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소송관계인은 충실한 공판심리를 계속적, 계획적으로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판전 정리절차에서 상호 협력함과 동시에 그 실시에 관해 재판소에 협력해야 한다.

**제316조의 4** ①공판전 정리절차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그 절차를 행할 수 없다.

②공판전 정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붙여야 한다.

**제316조의 5** ①공판전 정리절차에서는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訴因 또는 罰條를 명확히 하는 것
2. 訴因 또는 罰條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것
3. 공판기일에 할 것으로 예정된 주장을 명백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

하는 것

4. 증거조사의 청구를 시키는 것
5. 전호의 청구에 관한 증거에 대해 입증취지, 심문사항 등을 명백히 하는 것
6. 증거조사 청구에 관한 의견(증거서류에 대한 제326조의 동의여부 의견을 포함)을 명백히 하는 것
7. 증거조사 결정 또는 증거조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8. 증거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증거에 대해 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것
9. 증거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0. 제3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증거開示에 관해 裁定하는 것
11. 제316조의 3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사건 절차 참가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12.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제316조의 6** ①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을 출석시켜 공판전 정리절차를 할 때에는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을 정해야 한다.

②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은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재판장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6조의 7**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에 검찰관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일의 절차를 행할 수 없다.

**제316조의 8** ① 변호인이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 또는 在席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이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6조의 9** ① 피고인은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고인을 출석시켜 공판전 정리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는 최초의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에 우선 피고인에 대해 계속 침묵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제316조의 10** 재판소는 변호인의 진술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 피고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변호인에 대해 피고인과 連署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6조의 11** 재판소는 합의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판전 정리절차(제316조의 5 제2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결정을 제외)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은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316조의 12** ① 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에는 재판소서기관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공판전 정리절차 기일의 절차에 대해서는 재판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전 정리절차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第2目 쟁점 및 증거의 정리

**제316조의 13** ①검찰관은 사건이 공판전 정리절차에 회부되었을 때에는 증명예정사실(공판기일에 증거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기재한 서면을 재판소에 제출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서면에는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증거로서 조사를 청구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소에 사건에 관한 편견 또는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②검찰관은 전항의 증명예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청구해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해 증거조사를 청구함에는 제299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제1항 서면의 제출, 송부 및 제2항의 청구 기한을 정한다.

**제316조의 14** 검찰관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청구한 증거(이하 검찰관 청구증거라고 함)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의 각호에 기재된 증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開示해야 한다.

1.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기회

(변호인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 성명 및 주소를 알 기회를 부여하고 그 자의 진술녹취서 등(진술서, 진술을 녹취한 서면으로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또는 영상 또는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매체로서 진술을 기록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중에 그 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이 명백하게 된 것(해당 진술녹취서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이를 열람시키는 것이 상당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열람할 기회(변호인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제316조의 15** ① 검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開示한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다음 각호에 기재된 증거의 유형에 해당하고, 특정한 검찰관 청구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開示청구가 있을 경우 그 중요도, 그 밖의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開示의 필요성 및 開示에 의해 생길 우려가 있는 폐해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히 동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開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開示의 시기 또는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증거물
2. 제321조 제2항에 규정된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서면
3. 제321조 제3항에 규정된 서면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

4. 제321조 제4항에 규정된 서면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
  5. 다음에 기재된 자의 진술녹취서 등
    - 가. 검찰관이 증인으로서 심문을 청구한 자
    - 나. 검찰관이 조사를 청구한 진술녹취서등의 진술자로서 해당 진술 녹취서 등이 제326조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검찰관이 증인으로서 심문을 청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자
  6. 전호에 기재된 자 이외에,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녹취서등으로서 검찰관이 특정한 검찰관 청구증거에 의해 직접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의 유무에 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
  7. 피고인의 진술녹취서 등
  8. 조사상황의 기록에 관한 준칙에 기초해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직무상 작성할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서면으로서, 신체가 구속당한 자의 조사에 관해 그 연월일, 시간, 장소 그 밖의 조사상황을 기록한 것(피고인에 관한 것에 한함)
-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의 開示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항 각호에 기재된 증거유형 및 開示청구에 관한 증거를 식별함에 족한 사항
  2. 사안의 내용, 특정한 검찰관 청구증거에 대응하는 증명예정사실, 開示청구에 관한 증거와 해당 검찰관 청구증거와의 관계,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해당 開示청구 증거가 해당 검찰관 청구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 그 밖에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해 開示가 필요한 이유

**제316조의 16**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316조의 13 제1항 서면의 송부를 받고 제316조의 14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開示해야 하는 증거를 開示받은 때에는 검찰관 청구증거에 대해 제326조의 동의여부 또는 조사청구에 관한 이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②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전항의 의견을 밝혀야 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316조의 17**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316조의 13 제1항의 서면을 송부 받고 제316조의 14 및 제316조의 1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開示해야 하는 증거를 開示받은 경우, 그 증명예정사실이나 그 밖에 공판기일에 할 것으로 예정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주장이 있을 때에는 재판소 및 검찰관에게 이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316조의 13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의 증명예정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6조의 1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제1항의 주장을 밝혀야 할 기한 및 전항의 청구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316조의 18**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청구한 증거에 대해 신속히 검찰관에게 다음 각호에 기재된 증거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開示해야 한다.

1.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고 등사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 성명 및 주소를 알 기회를 부여하고 그 자의 진술녹취서 등 중에 그 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이 명백하게 된 것(해당 진술녹취서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이를 열람시키는 것이 상당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열람하고 등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제316조의 19** ①검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開示해야 할 증거를 開示 받은 때에는 제31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사를 청구한 증거에 대해 제326조의 동의 여부 또는 조사청구에 관한 이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②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전항의 의견을 밝혀야 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316조의 20** ①검찰관은 제316조의 14 및 제316조의 1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開示한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제316조의 17 제1항의 주장에 관련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開示청구가 있을 경우 그 관련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開示의 필요성 및 開示에 의해 생길 우려가 있는 폐해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히 제316조의 14 제1호에 정한 방법에 의해 開示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開示의 시기 또는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의 開示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開示청구에 관한 증거를 식별하는데 족한 사항
2. 제316조의 17 제1항의 주장과 開示 청구된 증거와의 관련성, 그 밖에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해 해당 開示가 필요한 이유

**제316조의 21** ①검찰관은 제316조의 13부터 전조에 규정된 절차가 종료된 후 증명예정사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그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증명예정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재판소에 제출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6조의 13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검찰관은 증명예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조사 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그 추가해야 할 증거조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1조의 1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제1항의 서면 제출 및 송부와 전항의 청구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④제316조의 14부터 제316조의 16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검찰관이 조사를 청구한 증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16조의 22**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316조의 13부터 제316조의 20에 규정된 절차가 종료된 후 제316조의 17 제1항의 주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재판소 및 검찰관에게 그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할 주장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316조의 13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예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조사 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그 추가해야 할 증거조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6조의 13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제1항의 주장을 밝혀야 할 기한 및 전항의 청구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16조의 18 및 제316조의 19 규정은 제2항 규정에 의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사를 청구한 증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제316조의 20 규정은 제1항의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할 주장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16조의 23** 제299조의 2 및 제299조의 3 규정은 검찰관 또는 변호인이 이 목적 규정에 의해 증거개시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16조의 24** 재판소는 공판전 정리절차를 종료함에 있어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사건의 쟁점 및 증거정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第3目 증거開示에 관한 裁定

**제316조의 25** ① 재판소는 증거개시의 필요성 정도와 증거개시에 의해 생길 우려가 있는 폐해의 내용 및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16조의 14(제316조의 21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개시해야 할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제316조의 18(제316조의 22 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개시해야 할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증거의 개시시기 또는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청구에 대해 결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제316조의 26** ①재판소는 검찰관이 제316조의 14이나 제316조의 15 제1항(제316조의 21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316조의 20 제1항(제316조의 2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개시해야 할 증거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316조의 18(제316조의 2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개시해야 할 증거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증거개시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소는 개시의 시기나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제316조의 27** ①재판소는 제316조의 25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해당 청구 증거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누구에게도 해당 증거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없다.

②재판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 전조 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에게 그 보관하는 증거로서 재판소가 지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의 標目을 기재한 일람표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누구에게도 해당 일람표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316조의 25 제3항 또는 전조 제3항의 즉시항고가 계속된 항고재판소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은 전조 제3항의 즉시항고가 계속된 항고재판소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 第2款 기일간 정리절차

**제316조의 28** ①재판소는 심리경과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1회 공판기일 후에 결정으로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공판준비로서 사건을 기일간 정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②기일간 정리절차에 대해서는 前款(제316조의 2 제1항 및 제316조의 9 제3항을 제외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항의 결정 전에 조사를 청구한 증거에 대해서는 기일간 정리절차에서 조사를 청구한 증거로 간주하고, 제316조의 6부터 제316조의 10 및 제316조의 12 가운데 ‘공판전 정리절차기일’은 ‘기일간 정리절차기일’로 동조 제2항 중 ‘공판전 정리절차 조서’는 ‘기일간 정리절차 조서’로 대체한다.

### 第3款 공판절차의 특례

**제316조의 29** 공판전 정리절차 또는 기일간 정리절차에 회부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도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

**제316조의 30** 공판전 정리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할 사실이나 그 밖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주장이 있을 때에는 제296조의 절차에 이어 이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동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6조의 31** ①공판전 정리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재판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공판기일에 해당 공판전 정리절차의 결과를 밝혀야 한다.

②기일전 정리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재판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가 종료된 후 공판기일에 해당 기일간 정리절차의 결과를 밝혀야 한다.

**제316조의 32** ①공판전 정리절차 또는 기일간 정리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공판전 정리절차 또는 기일간 정리절차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판전 정리절차 또는 기일간 정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 3 절 피해자참가

**제316조의 33** ①재판소는 다음에 기재된 죄에 관한 피고사건의 피해자,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로부터 피고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사건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1. 고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상한 죄
2. 형법 제176조부터 178조, 제211조, 제220조, 제224조부터 제227조의 죄
3. 전호에 기재된 죄 이외에 그 범죄행위에 이들 죄를 포함하는 죄(제1호에 기재된 죄를 제외)
4. 전3호에 기재된 죄의 미수죄

②전항의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의견을 붙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③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피고사건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피해자 참가인이라고 함)가 해당 피고사건의 피해자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 명백해진 때 또는 제312조 규정에 의해 罰條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피고사건이 동항 각호에 기재된 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결정으로 동항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사건 절차에 참가를 인정한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도 같다.

**제316조의 34** ①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은 이를 피해자 참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재판소는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인이 다수일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 전원 또는 그 일부에 대해 그 중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할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재판소는 심리의 상황,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전 각항의 규정은 공판준비에서 증인심문 또는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에 준용한다.

**제316조의 35**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해당 피고사건에 대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의 권한행사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관은 해당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의견을 말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16조의 36** ①재판소는 증인을 심문할 경우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그 증인을 심문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심리의 상황, 신청에 관한 심문사항의 내용, 신청한 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에 관한 사항(범죄사실에 관한 것을 제외함)에 대한 증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증인을 심문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검찰관의 심문이 종료된 후(검찰관의 심문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심문이 종료된 후) 곧바로 심문사항을 명백히 해서 검찰관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스스로 심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③재판장은 제29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하는 심문이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6조의 37** ①재판소는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제311조 제2항의 진술을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상황, 신청에 관계된 질문사항의 내용, 신청한 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한 자가 피고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미리 질문할 사항을 명백히 하여 검찰관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스스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③재판장은 제29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할 질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계가 없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6조의 38** ①재판소는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 부터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 심리상황, 신청한 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기일에 제2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검찰관의 의견 진술 이후에 訴因으로서 특정된 사실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미리 진술할 의견의 요지를 명백히 하여 검찰관에게 해야 한다. 그 경우 검찰관은 의견을 붙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③재판장은 제29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의 의견 진술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넘은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는 되지 않는다.

**제316조의 39** ①재판소는 피해자 참가인이 제316조의 34 제1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4항에 있어서도 같음)의 규정에 의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피해자 참가인의 연령, 심신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 참가인이 현저히 불안 또는 긴장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불안 또는 긴장을 완화함에 적당하고, 재판관이나 소송관계인의 심문이나 피고인에 대해 진술을 구하는 행위, 소송관계인이 하는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 참가인을 돕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 참가인을 돕는 자는 재판관이나 소송관계인의 심문이나 피고인에 대해 진술을 구하는 행위, 소송관계인이 하는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언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③재판소는 제1항 규정에 의해 피해자 참가인을 돕는 자가 재판관이나 소송관계인의 심문이나 피고인에 대해 진술을 구하는 행위, 소송관계인이 하는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그 자로 하여금 피해자 참가인을 돕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동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재판소는 피해자참가인이 제316조의 3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범죄의 성질, 피해자 참가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에 의해 피해자 참가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在席, 심문, 질문 또는 진술을 할 경우 압박을 받아 정신적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변호인이 출석해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과 피해자 참가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참가인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재판소는 피해자 참가인이 제316조의 34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범죄의 성질, 피해자 참가인의 연령, 심신상태, 명예에

대한 영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과 피해자 참가인 사이에 상호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4 절 증 거

**제31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제318조**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제319조** ①강제·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부당한 장기간의 억류 또는 구금된 후의 자백 기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자백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자백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백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③전2항의 자백에는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유죄임을 자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0조** ①제321조 내지 제32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갈음하여 서면을 증거로 하거나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제291조의 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것에

이익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1조** ①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그 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면으로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 재판관의 면전(제157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의 진술을 녹취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진술자가 사망, 정신 혹은 신체의 이상, 소재불명 혹은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 또는 진술자가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 있어서 전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하였을 때
2. 검찰관의 면전에서 진술을 녹취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진술자가 사망, 정신 혹은 신체의 이상, 소재불명 또는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 또는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 전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상이한 진술을 한 때. 단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보다도 전의 진술을 신용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는 때에 한한다.
3. 전2호에 규정된 서면 이외의 서면에 대하여는 진술자가 사망, 정신 혹은 신체의 이상, 소재불명 또는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고 또한 그 진술이 범죄사실의 존부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인 때. 단 그 진술이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한다.

②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녹취한 서면 또는 재판소 혹은 재판관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그 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아 그 진정으로 작성된 것임을 진술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감정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서면으로 감정인이 작성한 것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321조의 2** ①피고사건의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이외의 형사절차 또는 다른 사건의 형사절차에서 제157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증인의 신문 및 진술과 그 상황을 기록한 기록매체가 그 일부로 된 조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그 조서를 조사한 후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그 진술자를 증인으로서 신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30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조서에 기록된 증인의 진술은, 제295조 제1항 전단과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22조** ①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녹취한 서면으로 피고인의 서명 혹은 날인이 있는 것은, 그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 또는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하에서 된 것인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은 그 승인이 자백이 아닌 경우에도 제319조의 규정에 준하여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녹취한 서면은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23조** 전3조의 서면 이외의 서면은 다음의 것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등본·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외국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작성한 서면
2. 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의 통상 과정에서 작성된 서면
3. 전2호에 규정된 것 외에 특히 신용할 수 있는 정황 하에서 작성된 서면

**제324조** ①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3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5조** 재판소는 제321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진술이라도 미리 그 서면에 기재된 진술 또는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내용이 된 타인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가 아니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26조** ①검찰관 및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면 또는 진술은 그 서면이 작성 되거나 진술이 되었을 때의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제321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 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한 후, 문서의 내용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면 진술할 것이 예상되는 그 진술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문서 또는 진술할 자를 조사하지 아니하여도 그 서면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서면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8조** 제321조 내지 제3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면 또는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증인 기타의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제 5 절 공판의 재판

**제329조** 피고사건이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6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제330조** 고등재판소는 그 특별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하급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으로 관할 재판소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331조** ①재판소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개시한 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332조** 간이재판소는 지방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 지방재판소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333조**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제3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그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회부하는 경우도 같다.

**제334조**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을 면제하는 때에는 판결로 그 취지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5조** ①유죄의 선고를 함에는 죄가 되는 사실, 증거의 목록 및 법령의 적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주장된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6조** 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7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을 받은 때
2.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때
3. 大赦가 있는 때
4. 시효가 완성된 때

**제338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제3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3. 공소의 제기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동일 재판소에 공소가 제기된 때
4. 공소제기의 절차가 그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제339조** ①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2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2.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때
  3. 공소가 취소된 때
  4.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하여서는 아니될 때
- ②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0조**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41조** 피고인이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퇴정하거나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퇴정을 명령받은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42조** 판결은 공판정에서 선고에 의하여 이를 고지한다.

**제343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보석 또는 구류의 집행정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이 보석 또는 구류의 집행정지의 결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4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의 선고가 있는 후에는 제60조 제2항 단서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5조** 무죄·면소·형면제·형의 집행유예·공소기각(제338조 제4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의 고지가 있는 때에는 구류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46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하는 선고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347조**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장물의 대가로서 얻은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交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예에 의한다.

③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48조** ①재판소는 벌금·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서는 그 집행을 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집행을 하기에 현저한 곤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임시로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假納付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그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假納付의 재판은 즉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349조** ①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 대하여 그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형법 제26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청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기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349조의 2** ①전조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형법 제26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 선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유예선고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보호관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50조**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한 재판소에 그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즉결재판절차

### 제 1 절 즉결재판절차의 신청

**제350조의 2** ①검찰관은 공소를 제기하려는 사건의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증거조사가 신속히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즉결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신청은 즉결재판절차에 의하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③검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 경우 검찰관은 피의자에게 즉결재판절차를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포함)을 설명하고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④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은 피의자가 제2항의 동의를 하는 이외에 변호인이 즉결재판절차에 의할 것을 동의하거나 그 의견을 보류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피의자가 제2항의 동의를 하고, 변호인이 전항의 동의를 하거나 그 의견을 보류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서면에는 전항의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350조의 3** ①전조 제3항의 확인을 요구받은 피의자가 즉결재판절차에 의할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백히 하려고 할 경우 피의자가 빈곤 그 밖의 사정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은 그 청구에 의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이외의 자가 선임한 변호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7조의 3 규정은 전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 제 2 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의 특례

**제350조의 4** 즉결재판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가능한 신속히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한다.

**제350조의 5** 검찰관은 즉결재판절차의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거서류를 열람할 기회 그 밖의 동향에 규정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히 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50조의 6** ①재판소는 즉결재판절차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즉결재판절차에 의하는 것에 대해 그 의견을 보류하고 있는 때 또는 즉결재판절차의 신청이 있는 후 변호인이 선임된 때에는 변호인에게 가능한 신속히 즉결재판절차에 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변호인은 전항의 동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제350조의 7** 재판장은 즉결재판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그 신청 후(전조 제1항 규정의 경우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후) 가능한 신속히 공판기일을 정해야 한다.

**제350조의 8** 재판소는 즉결재판절차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해 제291조 제3항의 절차가 이루어질 때 피고인이 기소장에 기재된 訴因에 대해 유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결재판절차에 의해 심판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

1. 제350조의 2 제2항 또는 제4항의 동의가 철회된 때
2. 제350조의 6 제1항에 규정된 경우 동항의 동의가 없었거나 동의를 철회된 때
3. 전2호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해당사건이 즉결재판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4. 해당사건이 즉결재판절차에 의하기에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

**제350조의 9** 전조의 절차를 행하는 공판기일 및 즉결재판절차에 의한 공판기일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한다.

**제350조의 10** ①제350조의 8의 결정을 위한 심리 및 즉결재판절차에 의한 심판에 대해서는 제284조, 제285조, 제296조, 제297조, 제300조부터 제302조, 제304조부터 제30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즉결재판절차에 의한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50조의 11** ①재판소는 제350조의 8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1.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즉결재판절차에 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철회한 때
2.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이 기소장에 기재된 訴因에 대해 유죄라는 취지의 진술을 철회한 때
3. 전2호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해당사건이 즉결재판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4. 해당사건이 즉결재판절차에 의하기에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350조의 8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절 증거의 특례

**제350조의 12** 제350조의 8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대해 제320조 제1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것에 이의를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절 공판재판의 특례

**제350조의 13** 재판소는 제350조의 8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당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제350조의 14** 즉결재판절차에 있어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

## 제 3 편 상 소

### 제 1 장 통 칙

**제351조** ①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②제26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하여 심판되어 한 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 및 당해 다른 사건의 검찰관은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52조** 검찰관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로서 결정을 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53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좌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54조** 구류에 대하여는 구류이유의 開示가 있는 때는, 그 開示의 청구를

한 자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그 상소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같다.

**제355조** 원심에서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56조** 전3조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할 수 없다.

**제357조**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를 한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제359조**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52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제360조** 제353조 또는 제354조에 규정된 자는 서면에 의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제360조의 2**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금고에 처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제360조의 3** 상소포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61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자는, 그 사건에 관해서 다시 상소할 수 없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동의한 피고인도 같다.

**제362조** 제351조 내지 제3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할 수 없었던 때에는, 원재판소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63조**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의 제기를 하여야 한다.

**제364조**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관하여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원재판소는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66조** ①형사시설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제기서를 형사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②피고인이 스스로 제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이를 代書하거나 또는 소속 관리에게 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7조** 전조의 규정은 형사시설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혹은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8조부터 제371조까지** 삭제

## 제 2 장 항 소

**제372조** 항소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가 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73조** 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제374조** 항소를 함에는 제기서를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5조** 항소의 제기가 명백히 항소권의 소멸 후에 된 것인 때에는 제1심 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6조** ①항소제기자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소이유서에는 이 법률 또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소명자료 또는 검찰관 혹은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7조** 다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재판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
2. 법령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관이 판결에 관여한 것
3. 심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것

**제378조** 다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소송기록 및 원재판소에서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는 사실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믿기에 충분한 것을 원용하여야 한다.

1. 불법하게 관할 또는 관할위반을 인정한 것
2. 불법하게 공소를 수리하거나 또는 이를 기각한 것
3. 심판의 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심판의 청구를 받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

**제379조** 전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에 법령의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함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소송기록 및 원재판소에서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는 사실로서 명백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원용하여야 한다.

**제380조** 법령적용에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함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그 오류 및 그 오류가 명백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제381조** 형의 量定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소송기록 및 원재판소에서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는 사실로서 형의 양정이 부당한 것임을 믿기에 충분한 것을 원용하여야 한다.

**제382조** 사실의 오인이 있고 그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함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소송기록 및 원재판소에서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는 사실로서 명백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인이 있음을 믿기에 충분한 것을 원용하여야 한다.

**제382조의 2** ①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조사를 청구할 수 없었던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서 전2조에 규정된 항소제기의 이유가 있음을 믿기에 충분한 것은, 소송기록 및 원재판소에서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는 사실 이외의 사실이라도 항소이유서에 이를 원용할 수 있다.

②제1심 변론종결 후 판결 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전2조에 규정된 항소제기의 이유가 있음을 믿기에 충분한 것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그 증거의 조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취지를 소명하는 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3조** 다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
2.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 혹은 변경 또는 大赦가 있는 것

**제384조** 항소의 제기는 제377조 내지 제382조 및 전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85조** ①항소의 제기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거나 또는 항소권의 소멸 후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28조 제2항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6조** ①다음의 경우에는 항소재판소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376조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항소이유서가 이 법률이나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한 때 또는 항소이유서에 이 법률이나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 혹은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3.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제기의 이유가 명백히 제377조 내지 제382조 및 제383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7조**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388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을 위한 변론은 변호인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389조** 공판기일에는 검찰관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기하여 변론을 하여야 한다.

**제390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재판소는 50만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경제관계처벌의 정비에관한법률의 죄 이외의 죄에 관하여는 당분간 5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이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391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이 법률에 의하여 변호인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결정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관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92조** ①항소재판소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실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소재판소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77조 내지 제382조 및 제383조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93조** ①항소재판소는 전조의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제382조의 2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의 오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소재판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제1심 판결 후의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상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조사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이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지방 재판소·가정재판소 혹은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 및 수탁재판관은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검찰관 및 변호인은 그 결과에 기하여 변론을 할 수 있다.

**제394조** 제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95조** 항소의 제기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거나 또는 항소권

소멸 후에 행하여진 것인 때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96조** 제377조 내지 제382조 및 제383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97조** ①제377조 내지 제382조 및 제38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원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명백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 원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제398조** 불법하게 관할위반을 신고하거나 또는 공소를 기각하였음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재판소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99조** 불법하게 관할을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 제1심 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하여서 제1심의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서 심판하여야 한다.

**제400조** 전2조에 규정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재판소에 환송하거나 또는 원재판소와 동등한 다른 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재판소는 소송기록과 원재판소 및 항소재판소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즉시 판결할 수 있는 것이

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다.

**제401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02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03조** ①원재판소가 불법하게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38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3조의 2** ①즉결재판절차에서 행하여진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는 제38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판결에서 선고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38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②원재판소가 즉결재판절차에 의해 판결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39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재판소는 당해 판결에서 선고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38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는 원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제404조**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장 상 고

**제405조** 고등재판소가 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다.

1. 헌법위반이 있거나 또는 헌법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
2. 최고재판소의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것
3.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大審院 혹은 상고재판소인 고등재판소의 판례 또는 이 법률 시행 후의 항소재판소인 고등재판소의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것

**제406조** 최고재판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 전에 한하여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직접 상고심으로서 그 사건을 수리할 수 있다.

**제407조** 상고이유서에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상고제기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08조** 상고재판소는 상고이유서 기타 서류에 의하여 상고제기의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제409조**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10조** ①상고재판소는 제405조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40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 있는 경우에 상고재판소가 그 판례를 변경하여 원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1조** 상고재판소는 제405조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원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령위반이 있는 것
2. 형의 量定이 심히 부당한 것
3.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것
4.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
5. 판결이 있는 후에 형의 폐지 혹은 변경 또는 大赦가 있는 것

**제412조** 불법하게 관할을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 항소재판소 또는 관할 제1심 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3조** 전조에 규정된 이유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재판소 혹은 제1심 재판소에 환송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다른 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상고재판소는 소송기록과

원재판소 및 제1심 재판소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즉시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다.

**제413조의 2** 제1심 재판소가 즉결재판절차에 의해 판결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고재판소는 당해 판결에서 선고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조 제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는 원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제414조** 前章의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의 심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5조** ①상고재판소는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상고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6조** 訂正판결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

**제417조** ①상고재판소는 訂正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속히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②訂正판결에 대하여는 제415조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18조** 상고재판소의 판결은 선고가 있는 날부터 제415조의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또는 그 기간 내에 동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訂正 판결 혹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 제 4 장 항 고

**제419조** 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재판소가 한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 ①재판소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한 판결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 법률에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류·보석·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결정 및 감정을 위한 유치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구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제421조**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이를 할 수 있다. 단 원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2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제423조** ①항고를 함에는 제기서를 원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재판소는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항고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24조** ①항고는 즉시항고를 제외하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재판소는 결정으로 항고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항고재판소는 결정으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 및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26조** ①항고의 절차가 그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27조**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428조** ①고등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결정과 제419조 및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결정으로, 고등재판소가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고등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9조** ①재판관이 다음의 재판을 한 경우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간이 재판소의 재판관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재판소에, 기타의 재판관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그 재판관 소속의 재판소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재판
2. 구류·보석·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을 위한 유치를 명하는 재판
4.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재판
5. 신체의 검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재판

②제420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재판소 또는 가정재판소는 합의체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는 그 재판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청구기간내 및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30조** ①검찰관 또는 검찰사무관이 한 제39조 제3항(피의자의 交通權의 제한)의 처분 또는 압수 혹은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검찰관 또는 검찰사무관이 소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재판소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직원이 한 전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사법경찰직원의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1조** 전2조의 청구를 함에는 청구서를 관할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2조** 제424조, 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제429조 및 제430조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3조** ①이 법률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는 제405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재판소에 특별히 항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5일로 한다.

**제434조** 제423조, 제424조 및 제426조의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조 제1항의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4편 재 심

**제435조** 재심의 청구는 다음의 경우에 유죄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였음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였음이 증명된 때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를 무고한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무고에 의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한한다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에 의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6.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혹은 면소를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하거나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하여야 할 명백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
7. 원판결에 관여한 재판관,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의 작성에 관여한 재판관 또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면을 작성하거나 진술을 한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을 하기 전에 재판관,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재판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 한한다.

**제436조** ①재심의 청구는 다음의 경우에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할 수 있다.

1.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
2. 원판결 또는 그 증거가 된 증거서류의 작성에 관여한 재판관에 관하여 전조 제7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의 판결이 있는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의 판결이 있는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37조** 전2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음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하여야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재판소가 이를 관할한다.

**제439조** ①재심의 청구는 다음의 자가 할 수 있다.

1. 검찰관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및 보좌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의 형제자매
- ②제435조 제7호 또는 제4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도록 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440조** ①검찰관 이외의 자는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441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442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단 관할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43조** ①재심의 청구는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는 다시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44조** 제366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 및 그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5조** 재심의 청구를 받은 재판소는 필요할 때에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혹은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 및 수탁재판관은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446조** 재심청구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거나 또는 청구권의 소멸 후에 된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7조** ①재심청구가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도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제448조** ①재심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49조** ①항소를 기각한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재판소가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재판소는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재판소 또는 항소재판소가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재판소는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50조** 제446조, 제447조 제1항, 제448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1조** ①재판소는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제44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제314조 제1항 본문 및 제33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가망이 없는 심신상실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된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이 있기 전에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 그 회복가망이 없는 때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없더라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경우에 재심의 청구를 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52조**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53조**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 및 신문에 게재하여 그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5편 비상상고

**제454조** 검사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최고재판소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55조** 비상상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최고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6조** 공판기일에는 검찰관은 신청서에 기하여 진술을 하여야 한다.

**제457조** 비상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58조** 비상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을 위하여 불이익한 때에는 이를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제459조**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제460조** ①재판소는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재판소는 재판소의 관할, 공소의 수리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9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편 약식절차

**제461조** 간이재판소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판전 약식명령으로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하거나 몰수를 과하거나 기타 부수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461조의 2** ①검찰관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미리 약식 절차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약식절차에 의할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피의자는 약식절차에 의할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제462조** ①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에는 전조 제2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3조** ①전조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이를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이 제461조의 2에 규정된 절차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전조 제2항에 위반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재판소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하는 때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2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은 전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2개월로 한다.

**제463조의 2** ①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제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소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이 이미 검찰관에게 고지되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을 취소한 후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제464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과형 및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5조** ①약식명령을 받은 자 또는 검찰관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재판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신속히 그 취지를 검찰관 또는 약식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6조**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67조** 제353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제359조, 제360조 및 제361조 내지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8조**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거나 또는 청구권의 소멸 후에 된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를 적법하다고 하는 때에는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469조**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판결을 한 때에는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70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 제7편 재판의 집행

**제471조**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된 후에 이를 집행한다.

**제472조**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이 이를 지휘한다. 단 제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제10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기타 그 성질상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지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에 의하여 하급재판소의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상소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재판소 또는 그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이 이를 지휘한다.

**제473조** 재판의 집행지휘는 서면으로 하며, 이에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 혹은 초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認印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74조** 2 이상의 주형의 집행은 벌금 및 과료를 제외하고는 그 중한 형을 먼저 한다. 단 검찰관은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5조** ①사형의 집행은 법무대신의 명령에 의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재판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상소 권회복 혹은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 또는 恩赦의 出願 혹은 신청이 되어 그 절차가 종료하기까지의 기간 및 공동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이를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6조** 법무대신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477조** ①사형은 검찰관·검찰사무관 및 형사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자가 입회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검찰관 또는 형사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형장에 들어 갈 수 없다.

**제478조** 사형의 집행에 입회한 검찰사무관은 집행시말서를 작성하고 검찰관 및 형사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79조**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한다.

②사형의 선고를 받은 여자가 懷胎하고 있는 때에는 법무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회복한 후 또는 출산 후에 법무대신의 명령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

④제47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판결확정일은 심신상실의 상태가 회복된 날 또는 출산일로 한다.

**제480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제481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고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형사시설에 유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82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선고를 한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때 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受胎後 150일 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형의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6. 조부모 또는 부모가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 혹은 불구로 달리 이를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7. 子 또는 孫子が 幼年으로 달리 이를 보호할 친족이 없을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483조** 제500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 및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정지된다.

**제484조**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찰관은 집행을 위하여 이를 호출하여야 한다. 호출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收監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85조**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즉시 收監狀을 발부하거나 사법경찰원으로 하여금 이를 발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486조** ①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은 검사장에게 그 수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청구를 받은 검사장은 그 관내의 검찰관으로 하여금 수감장을 발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7조** 수감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거·연령·刑名·형기 기타 수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88조** 수감장은 구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9조** 수감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인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0조** ①벌금·과료·몰수·추징·과료·몰취·소송비용·비용배상 또는 假納付의 재판은 검찰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전항의 재판의 집행은 민사집행법(昭和54 법률 제4호) 기타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91조** 몰수 또는 조세 기타 公課 혹은 專賣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한 벌금 또는 추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판결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492조** 법인에 대하여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경우에 그 법인이 판결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93조** ①제1심과 제2심에서 假納付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제1심의 假納付의 재판에 대하여 이미 집행이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이를 제2심의 假納付의 재판에서 납부를 명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의 假納付재판에 대한 집행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1심의 假納付의 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얻은 금액이 제2심의 假納付재판에서 납부를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환부하여야 한다.

**제494조** ①假納付재판의 집행이 있는 후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假納付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얻은 금액이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환부하여야 한다.

**제495조** ①상소제기기간중의 미결구류일수는 상소제기후의 미결구류일수를 제외하고 전부 본형에 통산한다.

②상소제기후의 미결구류일수는 다음의 경우 전부 본형에 통산한다.

1. 검찰관이 상소를 제기하였을 때
2. 검찰관 이외의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상소심에서 원판결이 파기되었을 때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에 대하여는 미결구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4000엔으로 계산한다.

④상소재판소가 원판결을 파기한 후의 미결구류는 상소중의 미결구류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96조** 몰수물은 검찰관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97조** ①몰수를 집행한 후 3개월 이내에 권리를 가진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찰관은 파괴하거나 또는 폐기하여야 할 물건을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98조** ①위조 또는 변조된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을 그 물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출시켜 전항에 규정된 절차를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하는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의 부분을 공무소에 통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99조** 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아야 할 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그 물건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취지를 政令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를 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전항의 기간 내라도 가치가 없는 물건은 폐기하고, 보관이 불편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500조**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받은 자는, 빈곤으로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재판집행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소송비용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00조의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검찰관에게 소송비용의 概算額의 예납을 할 수 있다.

**제500조의 3** ①검찰관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 전조의 규정에 의해 예납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예납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소송비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당해 금액을 당해 소송비용의 납부에 충당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해 예납된 금액으로부터 소송비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서 잔액이 남을 때에는 그 잔액은 그 예납을 한 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제500조의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0조의 2 규정에 의해 예납된 금액은 그 예납을 한 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1.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해 변호인의 선임이 효력을 잃는 때
2.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없는 때
3. 소송비용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가 소송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그 재판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

**제501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재판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고를 한 재판소에 재판의 해석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02조** 재판의 집행을 받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輔佐人은 집행에 관하여 검찰관이 한 처분이 부당한 때에는 선고를 한 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03조** ①제500조 및 전2조의 신청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66조의 규정은 제500조 및 전2조의 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4조** 제500조, 제501조 및 제502조의 신청에 관하여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05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6조** 제490조 제1항의 재판의 집행비용은 집행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하며, 민사집행법 기타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과 동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07조** 검찰관 또는 재판소 혹은 재판관은 재판의 집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해서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다.

제 3장

## 일본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

昭和 23(1948년) 12. 1. 최고재판소규칙 제32호  
최종개정 : 平成 20(2008년) 10. 21. 최고재판소규칙 제17호

### 제1편 총 칙

**제1조(이 규칙의 해석, 운용)** ①이 규칙은 헌법이 기대하는 재판의 신속과 공정을 도모하도록 이를 해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소송상의 권리는 성실히 이를 행사하며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 장 재판소의 관할

**제2조(관할의 지정, 이전청구의 방식·법 제15조 등)**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 재판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관할의 지정, 이전청구의 통지·법 제15조 등)** 검찰관은 재판소에 계속 하는 사건에 관하여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서 등본의 교부, 의견서의 제출·법 제17조)** ①검찰관은 재판소에 계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昭和23년 법률 제131호, 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관할이전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구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은 등본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피고인의 관할이전청구·법 제17조)** ①피고인이 관할이전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계속하는 재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이를 그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절차의 정지·법 제15조 등)** 재판소에 계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송청구의 방식·법 제19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법 제19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직권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 2 장 재판소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9조(기피신청·법 제21조)** ①합의체의 구성원인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재판관 소속의 재판소에, 수명재판관, 지방재판소의 단독재판관 또는 가정재판소 혹은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피하는 재판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기피의 원인 및 기피신청을 한 자가 사건에 관하여 청구 혹은 진술을 할 때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몰랐다는 사실 또는 기피의 원인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 혹은 진술을 한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에 대한 의견서·법 제23조)** 기피된 재판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재판소의 단독재판관 또는 가정재판소 혹은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기피신청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
2.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만 한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각하할 때
3. 기피신청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전조 제2항 혹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각하할 때

**제11조(소송절차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척의 재판·법 제23조)** ①기피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재판관은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당해 재판관은 제1항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④재판소가 당해 재판관의 退去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直近 상급재판소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회피)** ①재판관은 기피되어야 할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신청은 재판관 소속의 재판소에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재판소는 회피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회피에 관하여는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척·회피재판의 송달)** 전2조의 결정은 이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준용규정)** ①재판소서기관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수명재판관에 부속된 재판소서기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부속하는 재판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 제 3 장 소송능력

**제16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선임청구·법 제29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당해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소속 관공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제 4 장 변호 및 보좌

**제17조(피의자의 변호인선임·법 제30조)** 공소제기전에 한 변호인의 선임은, 변호인과 連署한 서면을 당해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1심에서도 그 효력을 갖는다.

**제18조(피고인의 변호인선임방식·법 제30조)** 공소의 제기후의 변호인선임은 변호인과 連署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추가기소사건의 변호인선임·법 제30조)** 법 제30조에 규정된 자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의 선임은, 그 사건의 공소제기후 동일 재판소에 공소가 제기되고 또 이와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을 갖는다. 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 3(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통지·법 제31조의 2)** ①형사수용시설(형사

시설, 유치시설 및 해상보안유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 수용되거나 또는 유치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법 제3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형사시설의 장, 유치업무관리자(형사수용시설 및피수용자등의처우에관한법률(平成17년 법률제50호)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치업무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동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한다.

②형사시설의 장, 유치업무관리자 또는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는 즉시 당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주임변호인·법 제33조)** ①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1인을 주임변호인으로 한다. 단 지방재판소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주임변호인으로 할 수 없다.

②주임변호인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쉰변호인의 합의로 이를 지정한다.

③주임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쉰변호인이 하는 주임변호인의 지정 또는 그 변경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할 수 없다.

**제20조(주임변호인 지정·변경의 방식·법 제33조)** 피고인 또는 쉰변호인이 하는 주임변호인의 지정 또는 그 변경은 서면을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에서 주임변호인의 지정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구두로 진술하면 충분하다.

**제21조(재판장이 지정하는 주임변호인·법 제33조)** ①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주임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주임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주임변호인은 제19조의 주임변호인이 지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2조(주임변호인 지정·변경의 통지·법 제33조)** 주임변호인의 지정 또는 그 변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 및 주임변호인이 된 자에게, 수변호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 및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부주임변호인·법 제33조)** ①재판장은 주임변호인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인 중 1인을 부주임변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주임변호인이 미리 재판소에 부주임변호인이 될 자를 신고한 경우, 그 자를 부주임변호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부주임변호인의 지정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전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주임변호인·부주임변호인의 사임·해임·법 제33조)** ①주임변호인 또는 부주임변호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임변호인 또는 副주임변호인의 사임 또는 해임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해임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5조(주임변호인·副주임변호인의 권한·법 제34조)** ①주임변호인 또는 副주임변호인은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다른 변호인을 대표한다.

②주임변호인 및 副주임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은 재판장 또는 재판관의 허가 및 주임변호인 또는 副주임변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신청·청구·질문·신문 또는 진술을 할 수 없다. 단 증거물의 등사허가의 청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 및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에 하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피고인의 변호인의 수의 제한·법 제35조)** ①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수를 각 피고인에 대하여 3인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제한의 결정은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함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피고인의 변호인의 수를 제한한 경우에 제한한 수를 초과하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각 변호인 및 이들 변호인을 선임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한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지가 있었던 날부터 7일을 경과함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전항의 제한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여전히 제한된 수를 초과하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선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7조(피의자의 변호인수의 제한·법 제35조)** ① 피의자의 변호인의 수는 각 피의자에 대하여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해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소속 관공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허가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 또는 그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허가는 허가할 변호인의 수를 지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법 제36조)** 법 제36조, 제37조의 2 또는 제350조의 3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지 재판관·법 제37조의 2)** 법 제37조의 2의 청구는 구류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 그 소속하는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의 소재지(그 지분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 3(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등의 제출·법 제37조의 2등)** ① 형사수용 시설에 수용되거나 또는 유치되어 있는 피의자가 법 제37조의 2 또는 제350조의 3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소서기관의 면전에서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시설의 장, 유치업무관리자 혹은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을 경유해서 청구서 및 법 제3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자력신고서를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형사시설의 장, 유치업무관리자 혹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의자로부터 동항의 서면을 받은 때는 즉시 이를 재판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350조의 3 제1항의 청구를 제외하고, 구류가 청구되지 않은 피의자로부터 전항의 서면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피의자가 구류가 청구된 직후에 이를 재판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형사시설의 장, 유치업무관리자 혹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서면을 팩스로 송신하는 것에 의해 재판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해 송부된 때에는 그 때에 제1항의 서면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재판관은 전항에 규정된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 유치업무관리자 또는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해 送信에 사용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 4(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처분을 할 재판관)** 법 제37조의 4에 의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처분은 구류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 그가 소속하는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의 소재지(그 支部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 5** 법 제37조의 2 제1항 또는 제37조의 4에 의해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 제37조의 5에 의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처분은 최초 변호인을

선임한 재판관, 그가 소속된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의 소재지(그 지부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이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국선변호인의 선임·법 제38조)** ①법규정에 기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 선임하여야 하는 변호인은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중에서 재판장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그 관할구역 내에 선임할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없는 때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인접한 다른 지방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그 밖에 적당한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규정은 법규정에 기하여 재판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소재판소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재판장은 원심의 변호인(법규정에 기해 재판소 혹은 재판장 또는 재판관이 선임한 것에 한한다.)이었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전항의 규정은 상고재판소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이를 준용한다.
- ⑤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때는 동일한 변호인에게 수인의 변호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 2(변호인의 해임에 관한 처분을 할 재판관, 법 제38조의 3)** 법 제38조의 3 제4항에 의한 변호인 해임에 관한 처분은 당해 변호인을 선임한 재판관,

그가 소속하는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의 소재지(그 支部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간이 재판소의 재판관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 3(국선변호인의 선임 등의 통지, 법 제38조등)** ①법규정에 기해 재판장 또는 재판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때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일본사법지원 센터에도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규정에 기해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변호인을 해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재판소에서의 접견 등·법 제39조)** 재판소는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재판소의 構內에 있는 경우에 도망, 죄증의 인멸 또는 계호에 지장이 있는 물건의 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접견에 관하여는 그 일시,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고, 또 서류 혹은 물건의 수수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31조(변호인의 서류열람 등·법 제40조)**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 기타의 자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좌인 신고의 방식·법 제42조)** 보좌인이 되기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 판

**제33조(결정·명령의 절차·법 제43조)** ①결정은 신청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하는 때 또는 공판정에서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명령은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조사 또는 처분에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재판의 고지)**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재판의 선고)** ①재판의 선고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판결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주문 및 이유를 낭독하거나 또는 주문의 낭독과 동시에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90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있는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선고는 피해자특정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제36조(등본·초본의 송부)** ①검찰관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신속히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초본이 제5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판결서 또는 판결을 기재한 조서의 초본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지휘에 필요한 것인 때에는 신속히 그 판결서 또는 판결을 기재한 조서의 초본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을 검찰관에게 추송하여야 한다.

## 제 6 장 서류 및 송달

**제37조(소송서류의 작성자)** 소송에 관한 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서기관이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증인 등의 신문조서)** ①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문에 입회한 자의 성명
2.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
3.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供述과 이들을 신문할 기회를 입회한 자에게 부여한 사실

4. 법 제15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 증인의 동반자의 성명 및 그와 증인의 관계
5. 법 제157조의 3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
6. 법 제157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증인신문을 행한 것
7. 법 제15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의 동의를 얻어 그 신문 및 공술, 그 상황을 기록매체(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것과 그 기록매체의 종류 및 수량
8. 법 제316조의 39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과 피해자참가인(법 제316조의 33 제3항에 규정된 피해자참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반자의 성명 및 그 자와 피해자참가인의 관계
9. 법 제316조의 39 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
  - ③조서(법 제157조의 4 제2항에 의해 증인의 신문 및 공술, 그 상황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제외한다. 다음 항 및 제5항에 있어서도 같다.)는 재판소 서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供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供述者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그 기재의 상위가 있는 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 ④供述者가 증감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신문에 입회한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기재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을 한 재판관은 그 신청에 관한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⑥조서에는 供述者에게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법 제157조의 4 제3항에 의해 기록매체가 그 일부로 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조서상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제39조(피고인·피의자의 진술의 조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을 알리고, 이에 관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 제3호 전단,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속기·녹음)**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과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진술에 관하여는 재판소 속기관 및 기타의 속기자에게 이를 속기하도록 하거나 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이를 녹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검증·압수의 조서)** ①검증 또는 압수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하는 압수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증에 입회한 자의 성명
2. 법 제316조의 39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 피해자참가인의 동반자의 성명 및 그와 피해자참가인과의 관계
3. 법 제316조의 39 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

③압수를 한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조서의 기재요건)** ①제38조, 제39조 및 전조의 조서에는 재판소 서기관이 조사 또는 처분을 한 연월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명날인

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한 자가 認印하여야 한다. 단 재판소가 조사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認印은 재판장이 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조서에는 처분한 시간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압수장·수색장의 집행조서·수색조서)** ①압수장 혹은 수색장의 집행 또는 구인장 혹은 구류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수색에 관하여는 집행 또는 수색을 하는 자가 직접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행 또는 수색을 한 연월일 및 장소
2. 집행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③제1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법 제48조)** ①공판조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2. 공판을 한 재판소 및 연월일
3. 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법정을 개정할 때에는 그 장소
4.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관의 관직성명
5. 경찰관의 관직성명
6. 출석한 피고인·변호인·대리인 및 보좌인의 성명

7. 재판장이 제18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한 사실
8. 출석한 피해자참가인 및 그 위탁을 받아 변호인의 성명
9. 법 제316조의 39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사실, 피해자참가인의 동반자의 성명 및 그와 피해자참가인의 관계
10. 법 제316조의 39 제4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사실
11. 공개를 금지한 사실 및 그 이유
12.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등,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을 한 사실
13. 법 제291조 제2항의 기회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사건에 관한 진술
14. 증거조사의 청구 및 기타의 신청
15. 증거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 (증거標目 자체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를 제외한다)
16. 조사를 청구하는 증거가 법 제328조의 증거인 때에는 그 취지
17. 법 제309조의 이의신청 및 그 이유
18. 주임변호인의 지정을 변경하는 취지의 의견개진
19. 피고인에 대한 질문 및 그 공술
20. 출석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및 번역인의 성명
21.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지 아니한 사실 및 그 사유
22.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
23. 증인, 기타의 자가 선서·증언 등을 거부한 사실 및 그 사유
24. 법 제15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사실, 증인의 동반자의 성명 및 그와 증인의 관계

25. 법 제157조의 3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사실
26. 법 제157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행한 사실
27. 법 제157조의 4 제2항에 의해 증인의 동의를 얻어 그 신문 및 공술,  
그 상황을 기록매체에 기록한 사실, 그 기록매체의 종류 및 수량
28. 재판장이 제202조의 조치를 한 사실
29. 법 제326조의 동의
30. 조사한 증거의 標目 및 그 조사의 순서
31. 공판정에서 한 검증 및 압수
32. 제194조의 7의 절차를 한 사실
33. 법 제335조 제2항의 주장
34. 訴因 또는 罰條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기소장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5. 법 제292조의 2 제1항에 의해 의견을 진술한 자의 성명
36. 전호에 규정된 자가 진술한 의견의 요지
37. 법 제292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5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사실, 제15호에 규정된 자의 동반자의 성명 및 그와 동호에  
규정된 자의 관계
38. 법 제292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7조의 3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사실
39. 법 제292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7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법 제292조의 2 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게 한 사실
40. 법 제292조의 2 제8항에 의한 절차를 한 사실
41.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에 진술한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의 요지

- 42. 법 제316조의 38 제1항에 의해 진술을 한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인의 의견의 요지
  - 4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종진술의 요지
  - 44. 판결선고를 한 사실
  - 45. 결정 및 명령. 단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모두진술의 허가 (제198조)
    - 나. 증거조사의 범위, 순서 및 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결정 (법제297조)
    - 다. 피고인 退廷의 허가 (법제288조)
    - 라. 주임변호인 및 副주임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의 신청·청구·질문 등의 허가 (제25조)
    - 마. 증거결정에 관한 提示명령 (제192조)
    - 바. 속기·녹음·촬영 등의 허가 (제47조 및 제215조)
    - 사. 증인의 신문 및 공술, 그 상황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취지의 결정(법제157조의4 제2항)
    - 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등본제출의 허가 (법제310조)
  - 46. 공판절차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취지 및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과 다른 진술을 한 때에는 그 진술
    - 나. 조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서면 및 물건
- ②전항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이라도,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중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재를 명령한 사항은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공판조서의 供述기재의 간이화·법 제48조)** 소송관계인이 동의하고 또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질문 및 그 공술과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의 기재에 갈음하여, 이들의 공술의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에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공판조서의 작성절차·법 제48조)** ①공판조서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供述者の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그 공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 신문된 자가 증감변경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공술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공판조서의 서명날인·認印·법 제48조)**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소서기관이 서명날인하고, 재판장이 認印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에게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의 1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認印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재판소의 단독재판관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재판소서기관에게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認印하여야 한다.

**제47조(공판정의 속기·녹음)** ①공판정에서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 피고인에 대한 질문 및 공술과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진술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이의신청의 기재·법 제50조)**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의 공술요지의 정확성 또는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장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고, 재판장이 認印하여야 한다.

**제49조(조서에의 인용)** 조서에는 서면·사진 기타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49조의 2(조서의 기재사항별 편철)** 조서는 기재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서가 일체로 된다는 것을 당해 조서상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50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법 제49조)** ①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은, 재판소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피고인이 읽지 못하는 때 또는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 하여야 할 공판조서의 낭독은, 재판장의 命에 의하여 재판소서기관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증인의 공술요지 등의 고지·법 제50조)** 재판소서기관이 공판 기일의  
에서 전회의 공판기일에서의 증인공술의 요지 또는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면전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공판조서의 정리·법 제48조 등)**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해 공판  
조서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의 관계에 있어 그 공판조서를 정리할 최종일에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 2(공판준비에서의 증인 등의 신문조서)** ①공판준비에서 재판소·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  
하는 경우의 조서에 관하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에 입회하고,  
또 입회하였던 소송관계인 및 공술자가 동의한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할 수 있다.

1. 증인 기타의 자의 신문 및 공술의 기재에 같음하여, 이들의 공술  
요지만을 기재하는 것

2. 제3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하지 아니하는 것

②전항 각호의 예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소송관계인 및 공술자가  
동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한 조서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재판장, 수명  
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의 면전에서 증인 기타의 자의 공술요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술요지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장·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재판장·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이 認印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한 조서를 공판기일에서 조사한 경우에,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 3(속기록의 작성)** 재판소서기관은 속기를 한 때에는 신속히 속기 원본을 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제52조의 4 단서 또는 제52조의 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의 인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52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의 4(증인신문조서 등에서의 속기록의 인용)**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과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진술을 재판소 속기관에게 속기하도록 한 경우에는 속기록을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단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신문 또는 절차에 입회한 검찰관 및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속기록의 인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의 5(속기록을 인용하는 경우의 조치)** ①전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을 속기한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함에 있어서는 제3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1. 재판소속기관에게 속기원본을 譯讀하도록 하여, 供述者에게 그 속기가 상위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
2. 供述者가 증감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그 공술을 속기하도록 하는 것
3. 신문에 입회한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속기원본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속기하도록 하는 것이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을 한 재판관은 그 신청에 관한 의견을 속기하도록 할 수 있다.
4. 재판소서기관에게 제1호에 정한 절차를 하였다는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또 供述者로 하여금 그 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

③供述者가 속기원본의 譯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또 신문에 입회하였던 검찰관 및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또 供述者로 하여금 그 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판준비에서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을 속기한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供述者가 속기원본의 譯讀을 청구한 때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절차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6** ①전조의 예에 의한 조서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문에 입회하거나 또는 입회할 수 있었던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재판소속기관에게 요구하여 속기원본을 譯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속기원본이 공판준비에서의 신문 및 공술을 속기한 것인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속기원본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이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또 그 신청에 관한 재판장·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재판장·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이 認印하여야 한다.

④전조의 예에 의하여 공판준비에서의 신문 및 공술을 속기한 속기록을 그 일부로 한 조서를 공판기일에서 조사한 경우에,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 7(공판조서에서의 속기록의 인용)** 공판정에서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 피고인에 대한 질문 및 공술과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진술을 재판소속기관에게 속기하도록 한 경우에는 속기록을 공판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공판조서의 일부로 한다. 단 재판소가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속기록의 인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의 8(공판조서에서의 속기원본의 인용)** 전조의 재판소속기관에 의하여 속기가 된 경우에,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또 소송관계인이 동의한 때에는 속기원본을 공판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공판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에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의 9(속기원본의 譯讀 등)** 제52조의 7 본문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 공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속기관에게 그 공술에 관한 부분의 속기원본을 譯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문된 자가 증감변경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공술을 속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10** ①제52조의 7 본문 또는 제52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을 공판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에, 그 공판조서가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회 공판기일에서 또는 그 기일까지 재판소속기관에게 요구하여 전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의 신문 및 공술을 속기한 속기원본을 譯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청구를 한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속기원본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서기관이 전회의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 그 사항이 재판소속기관에 의하여 속기된 것인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재판소속기관에게 요구하여

그 속기원본을 譯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의 11** ①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재판소속기관에게 요구하여 제52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조서의 일부로 한 속기원본의 譯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속기원본의 정확성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 12(속기원본의 反譯 등)** ①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는 재판소속 기관에게 제52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신속히 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 단 그 제기가 명백히 상소권 소멸 후에 행하여진 것인 때를 제외한다.
3.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재판소서기관은 전항의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그 취지를 기록상 명확히 하고 또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에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의 13(속기록을 첨부한 경우의 이의신청기간·법 제51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최종공판기일 후에 된 때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관한 이의신청은 속기록의 부분에 관한 한, 그 통지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단,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선고를 한 공판기일후에 정리된 공판조서에 대하여, 이를 정리할 최종 일전에 전조 제2항에 의한 통지가 된 때에는 그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52조의 14(녹음反譯에 의한 증인의 신문조서 등)**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의 신문 및 공술과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진술을 녹음하도록 한 경우에,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녹음한 것(이하 「録音體」라 한다)을 反譯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의 15(녹음反譯의 경우의 조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을 녹음한 録音體를 反譯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절차에 의한다.

1. 재판소서기관에게 録音體를 재생하도록 하여, 供述者에게 그 녹음의 상위가 있는 여부를 묻는 것
2. 供述者가 증감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그 공술을 녹음하도록 하는 것
3. 신문에 입회한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録音體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녹음하도록 하는 것. 이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을 한 재판관은 그 신청에 관한 의견을 녹음하도록 할 수 있다.

4. 재판소서기관에게 제1호의 절차를 하였다는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또 供述者로 하여금 그 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

③供述者가 錄音體의 재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또 신문에 입회한 검찰관 및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또 供述者로 하여금 그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판준비에서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을 녹음한 錄音體를 反譯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供述者가 錄音體의 재생을 청구한 때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16** ①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서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문에 입회하거나 또는 입회할 수 있었던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錄音體를 재생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錄音體가 공판준비에서의 신문 및 공술을 녹음한 것인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錄音體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이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또 그 신청에 관한 재판장,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해서 서명날인하고, 재판장,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이 認印하여야 한다.

④전조 제4항에 규정하는 조서를 공판기일에서 取調한 경우에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 17(녹음反譯에 의한 공판조서)** 공판정에서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 피고인에 대한 질문 및 공술과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진술을 녹음하도록 한 경우에,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録音體를 反譯한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의 18(공판조서에서의 녹음反譯의 경우의 조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供述者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 서기관에게 그 공술에 관한 부분의 録音體를 재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문된 자가 증감변경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공술을 녹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19(공판조서 미정리의 경우의 録音體의 재생등)** ①공판조서가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때, 재판소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서 또는 그 기일까지, 전회의 공판기일에서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 피고인에 대한 질문 및 공술과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진술을 녹음한 録音體 또는 법 제157조의 4 제2항에 의해 증인의 신문 및 공술, 그 상황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대하여 재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전항에 의해 재생할 기회를 준 경우에는 이로써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지의 고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재판소서기관이 전회의 공판기일에서 한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린 때는 録音體를 재생하는 방법에 의해 이를 할 수 있다.

**제52조의 20(공판조서에서 録音體의 인용)** 공판정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및 공술, 피고인에 대한 질문 및 供述과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진술을 녹음하도록 한 경우에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 때는 録音體를 공판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해서 공판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52조의 21(録音體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전조의 규정에 의해 공판조서의 일부로 된 録音體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신속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판결확정전에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신청이 있는 때. 단, 그 신청이 명백히 상소권 소멸후에 행해진 것인 때는 제외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3조(재판서의 작성)** 재판을 하는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재판서의 작성자)** 재판서는 재판관이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5조(재판서의 서명날인)** 재판서에는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의 1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며, 다른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6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공판기일에 출석한 검찰관의 관직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재판서 등의 등본, 초본)** ①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판결서 또는 판결을 기재한 조서의 초본은, 재판의 집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주거 및 본적, 죄명, 주문, 적용罰條, 선고 연월일, 재판소와 재판관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전항의 초본은 판결을 한 재판관이 그 기재가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 認印한 것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제55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서명날인에 같음

하여 認印할 수 있다.

⑤판결서에 공소장, 기타의 서면에 기재된 사실이 인용된 경우에는 그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공소장, 기타의 서면에 기재된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초본에 관하여 당해 부분을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판결서에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거의 標目이 인용된 경우에, 소송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거의 標目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관리 기타의 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그 소속 관공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재판관 기타의 재판소직원이 작성하여야 할 재판서, 조서 또는 등본 혹은 초본 중 소송관계인 기타의 자에게 송달, 송부 또는 교부(재판소 또는 재판관에 대하여 하는 경우 및 피고사건의 종결 기타 이에 유사한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여야 하는 것에 관하여는 매장에 간인하거나 또는 간인에 갈음하여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검찰관·검찰사무관·사법경찰직원 기타의 공무원(재판관 기타의 재판소직원을 제외한다)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재판소 또는 재판관에 대한 신청, 의견의 진술, 통지 기타 이들에 유사한 소송행위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다)에는 매장에 간인하여야 한다. 단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조(공무원의 서류의 정정)** 관리 기타의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改變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자를 추가, 삭제 또는 欄外에 기입한 때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정한 부분에 認印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이를 읽을 수 있도록 字體를 남겨야 한다.

**제60조(공무원 이외의 자의 서류)** 관리 기타의 공무원 이외의 자가 작성하여야 할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0조의 2(서명날인에 갈음하는 기명날인)** ①재판관 기타의 재판소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을 할 수 있다. 단 판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에 열거하는 자가 재판소 혹은 재판관에 대한 신청, 의견진술, 통지, 신고 기타 이에 유사한 소송행위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할 경우 또는 서류의 등본 혹은 초본에 서명날인하여야 할 경우도 전항과 같다.

1. 검찰관·검찰사무관·사법경찰직원 기타의 공무원(전항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변호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3. 법 제316조의 33 제1항에 규정된 변호사 또는 피해자참가인의 위탁을 받아 법 제316조의 34 혹은 제316조의 36부터 제316조의 38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변호사

**제61조(서명날인에 갈음하는 代書 또는 摺印)** ①관리 기타의 공무원 이외의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할 수 없는 때(전조 제2항에 의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타인에게 代書하도록 하고,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摺印하여야 한다.

②타인에게 代書하도록 한 경우에는 代書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2조(송달을 위한 신고·법 제54조)** ①피고인·대리인·변호인 또는 보좌인은 서류의 송달을 받기 위하여, 서면으로 그 주거 또는 사무소를 재판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를 갖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를 갖는 자를 송달수취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와 連署한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동일지역에 있는 각 심급의 재판소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③전2항의 규정은, 在監者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송달에 관하여는, 송달수취인은 이를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이를 본인의 주거로 본다.

**제63조(등기우편으로 하는 송달·법 제54조)** ①주거·사무소 또는 송달수취인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소 서기관은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사업자 혹은 특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우편역무 중 등기우편에 준하는 것으로서 특히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하는 것(다음 항에 있어 ‘등기우편등’ 이라 한다)으로 부쳐

그 송달을 할 수 있다. 단 공소장 및 약식명령의 등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부친 때에 이를 송달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의 2(취업장소에서의 송달의 요건·법 제54조)** 서류의 송달은 이를 받아야 할 자에게 이의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자가 고용·위임 기타 법률상의 행위에 기하여 취업하는 타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64조(검찰관에 대한 송달·법 제54조)** 검찰관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검찰청에 송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교부송달·법 제54조)** 재판소서기관이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그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제 7 장 기 간

**제66조(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자를 위한 결정기간의 연장·법 제56조)**

①재판소는 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재판소의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편의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연장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선고한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제기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 2(검찰관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자를 위한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56조)** ①검찰관은 검찰관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검찰청의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편의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재판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재판관은 전항의 청구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속히 연장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재판은, 검찰관에게 고지함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검찰관은 전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 소송행위를 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8 장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

**제67조(소환의 유예기간·법 제57조)** ①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과 출석의 사이에는 최소한 12시간의 유예를 두어야 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에게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구인·구류에 관한 신체, 명예의 보전)** 피고인의 구인 또는 구류에 관하여는 그 신체 및 명예의 보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69조(재판소서기관의 입회·법 제61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을 알리고 이에 관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구류장의 기재요건·법 제64조)** 구류장에는 법 제64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6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재판장의 영장의 기재요건·법 제69조)** 재판장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구인장·구류장의 원본의 송부·법 제70조)**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부한 재판소 또는 재판관은 그 원본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3조(구인장의 수통 교부)** 구인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이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74조(구인장·구류장의 등본교부의 청구)** 구인장 또는 구류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은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구인장·구류장 집행후의 조치)** ①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집행한 때에는 이에 집행장소 및 연월일시를 기재하고, 이를 집행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구인장 또는 구류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찰관 또는 재판관을 경유하여 구인장 또는 구류장을 발부한 재판소 또는 재판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인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재판소 또는 재판관은 재판소서기관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연월일시를 구인장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촉탁에 의한 구인장·법 제67조)** ①촉탁에 의하여 구인장을 발부한 재판관은 구인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연월일시를 구인장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촉탁에 의하여 구인장을 발부한 재판관은 피고인을 지정된 재판소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구인장에 피고인이 지정된 재판소에 도착하여야 할 기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구인의 촉탁을 한 재판소 또는 재판관은 구인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피고인이 도착한 연월일시를 구인장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재판소서기관의 입회·법 제76조 등)**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법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조서의 작성·법 제76조 등)** 법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처분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9조(구류의 통지·법 제79조)** 피고인을 구류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변호인·법정대리인·보좌인·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자 1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피고인의 이감)** ①검찰관은 재판장의 동의를 받아,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을 다른 형사시설로 옮길 수 있다.

②검찰관은 피고인을 다른 형사시설로 옮긴 때에는 즉시 그 취지 및 그 형사시설을 재판소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보좌인·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그 취지 및 그 형사시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구류이유 개시의 청구방식·법 제82조)** ①구류이유 개시의 청구는 청구를 하는 자마다 각각 별도의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82조 제2항에 열거하는 자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1조의 2(開示청구의 각하)**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구류이유 개시의 청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82조(開示의 절차·법 제83조)** ①구류이유개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개시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개시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개시기일은 검찰관·변호인 및 보좌인과 청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공판기일에서의 開示·법 제83조)** ①구류이유개시는 공판기일에서도 이를 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에서 구류이유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취지 및 개시하여야 할 공판기일을 검찰관·피고인·변호인 및 보좌인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開示의 통지와 開示기일)** 구류이유의 개시를 하여야 할 기일과 그 청구가 있었던 날의 사이에는 5일 이상을 둘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開示기일의 변경)** 재판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의 2(피고인·변호인의 퇴정중의 개시·법 제83조)** 개시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퇴정하거나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퇴정을 명령받은 때에는 그 자가 在廷하지 아니한 채로 구류이유의 개시를 할 수 있다.

**제85조의 3(開示기일에서의 의견진술시간의 제한 등·법 제84조)** ①법 제84조 제2항 본문에 열거하는 자가 開示기일에서 의견을 진술할 시간은 각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항의 자는 그 의견진술에 갈음하거나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6조(開示기일의 조서)** 개시기일에서의 절차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소서기관이 서명날인하고 재판장이 認印하여야 한다.

**제86조의 2** 구류이유개시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은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87조(보석보증서의 기재사항·법 제94조)** 보석보증서에는 보증금액 및 언제라도 그 보증금을 납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청취·법 제95조)** 구류의 집행을 정지함에 있어서는 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삭제**

**제90조(위탁에 의한 집행정지·법 제95조)**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여 구류의 집행을 정지함에 있어서는,

이들로부터 언제라도 소환에 응하여 피고인을 출석하게 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91조(보증금의 환부·법 제96조, 제343조 등)** ①다음의 경우에는 沒取되어 있지 아니한 보증금은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1. 구류가 취소되거나 또는 구류장이 효력을 상실한 때
2. 보석이 취소되거나 또는 효력을 상실하여 피고인이 수감된 때
3. 보석이 취소되거나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피고인이 수감되기 전에, 새로이 보석결정이 있어 보증금이 납부된 때 또는 구류의 집행이 정지된 때

②전항 제3호의 보석결정이 있는 때에는 전에 납부된 보증금은, 새로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92조(상소중 사건 등의 구류에 관한 처분·법 제97조)** ①상소제기기간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제기가 없는 것에 관하여 구류기간을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재판소가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상소중의 사건으로 소송기록이 상소재판소에 도달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구류기간을 갱신하고, 구류를 취소하거나 또는 보석 혹은 구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혹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구류이유를 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상소재판소는 피고인이 구류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원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의 2(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피고인의 수감절차·법 제98조)** 법 제34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수감함에 있어서는 선고한 형 및 판결선고를 한 연월일 및 재판소를 기재하고 또 재판장 또는 재판관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 認印한 구류장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 충분하다.

## 제 9 장 압수 및 수색

**제93조(압수·수색에 관한 비밀·명예의 보호)** 압수 및 수색에 관하여는 비밀을 보호하고 또 처분을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4조(압수장·수색장의 기재사항·법 제107조)** 압수장 또는 수색장에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준용규정)** 압수장 또는 수색장에 관하여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수색증명서·압수품목록의 작성자·법 제190조 등)** 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의 증명서 또는 목록은, 수색 또는 압수가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97조(압수장·수색장 집행 후의 조치)**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을 한 자는 신속히 집행에 관한 서류 및 압수한 물건을 영장을 발부한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을 한 경우에는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8조(압수물의 조치)** 압수물에 관하여는 상실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압수장 집행조서의 기재)** 압수장의 집행을 한 자는 제96조 혹은 전조 또는 법 제121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0조(압수·수색의 입회)** ①압수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수색을 하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압수장 또는 수색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각각 다른 검찰사무관·사법경찰 직원 또는 재판소서기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0 장 검 증

**제101조(검증에 관한 주의)** 검증을 함에 있어, 사체를 해부하거나 또는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예의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때에는 이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피고인의 신체검사의 소환장 등의 기재요건·법 제63조 등)**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위한 소환장 또는 구인장에는 신체검사를 위하여 소환 또는 구인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피고인 이외의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 등의 기재요건·법 제136조 등)** ①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하여야 할 연월일시 및 장소, 신체검사를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료 또는 형벌에 처하여지고 또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위한 구인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장소, 신체검사를 위하여 구인한다는 취지, 유효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4조(준용규정)** 신체검사를 위하여 하는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구인에 관하여는 제72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검증의 입회)** 검증을 하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1 장 증인신문

**제106조(신문사항서·법 제304조 등)** ①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는 재판관의 신문에 참고로 이용하도록 신속히 신문사항 또는 증인이 증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에서 소송관계인에게 먼저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도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전항 본문의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사항의 전부에 미쳐야 한다.

④공판기일외에서 증인의 신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⑤공판기일외에서 증인의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방 및 그 변호인의 수에 상응하는 제1항의 서면의 등본을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청구의 각하)**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증인신문의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07조의 2(결정의 고지, 법 제157조의 2등)** ①법 제15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결정, 법제157조의 3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결정, 법 제157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증인신문을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동조 제2항에 의해 증인의 신문 및 공술, 그

상황을 기록매체에 기록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공판기일전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각각의 결정의 내용을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신문사항의 고지 등·법 제158조)** ①재판소는 공판기일외에서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관계된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106조 제1항의 서면을 참고로 하여 신문할 사항을 정하여 상대방 및 그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은 서면으로 전항의 신문사항에 부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9조(직권에 의한 공판기일외의 신문·법 제158조)** ①재판소는 직권으로 공판기일외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신문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면으로 전항의 신문사항에 부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0조(소환장·구인장의 기재요건·법 제153조 등)** ①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할 연월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료 또는 형벌에 처하여지거나 또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증인에 대한 구인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연월일시 및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1조(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과 출석의 사이에는 최소한 24시간의 유예를 두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준용규정)**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신문상의 주의, 在廷증인)** ①소환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은 신속히 이를 신문하여야 한다.

②증인이 재판소의 構内に 있는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문할 수 있다.

**제114조(신문의 입회)** 증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5조(인정신문)** 증인에 대하여는 우선 그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16조(선서취지의 설명 등·법 제155조)**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이 점에 관하여 신문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17조(선서의 시기·법 제154조)** 선서는 신문전에 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선서의 방식·법 제154조)**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고 아무 것도 감추지 아니하고 또 아무 것도 보태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또 이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소 서기관에게 이를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개별선서·법 제154조)** 증인의 선서는 각각 별도로 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0조(위증의 경고·법 제154조)** 선서를 하도록 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21조(증언거부권의 고지·법 제146조 등)** ①증인에 대하여는 신문전에 자기 또는 법 제147조에 규정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49조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2조(증언의 거부·법 제146조 등)** ①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는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②증언을 거부하는 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료 및 기타의 제재를 받는다는 취지를 경고하고 증언을 명하여야 한다.

**제123조(개별신문)** ①증인은 각각 별도로 이를 신문하여야 한다.

②후에 신문할 증인이 在廷하는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24조(대질)**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대질시킬 수 있다.

**제125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6조(공판기일외의 신문조서의 열람 등·법 제159조)** ①재판소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외에서의 증인신문에 입회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증인신문조서가 정리된 때 또는 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입회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은 전항의 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③피고인이 읽을 수 없는 때 또는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신문조서의 낭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수명·수탁재판관의 신문·법 제163조)**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이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제10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와 전조의 절차는 재판소가 이를 하여야 한다.

## 제 12 장 감 정

**제128조(선서·법 제166조)** ①감정인의 선서는 감정을 하기 전에 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선서한다는 취지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129조(감정의 보고)** ①감정의 경과 및 결과는 감정인에게 감정서에 의하여 또는 구두로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여러 명 있는 때에는 공동하여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경과 및 결과를 감정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공판기일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재판소외의 감정)** ①재판소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외에서 감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에 관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30조의 2(감정유치장의 기재요건·법 제167조)**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유효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0조의 3(看守신청의 방식·법 제167조)** 법 제1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 4(감정유치기간의 연장, 단축·법 제167조)**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0조의 5(수용비의 지급·법 제167조)** ①재판소는 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의 장소에 유치한 경우에는 그 장소의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비용의 금액은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1조(준용규정)**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 구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준용규정)** 감정인이 사체를 해부하거나 또는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감정허가장의 기재요건·법 제168조)** ①법 제168조의 허가장에는, 유효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에는 허가된 처분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하여야 할 신체검사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전항의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4조(감정을 위한 열람 등)**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혹은 등사하거나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 혹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이에 입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7조의 4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록매체는 등사할 수 없다.

③감정인은 피고인에 대한 질문 혹은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이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제135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前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3 장 통역 및 번역

**제136조(준용규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하여는 前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4 장 증거보전

**제137조(처분을 할 재판관·법 제179조)**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처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전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에 가장 편리하다고 사료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8조(청구의 방식·법 제179조)** ① 증거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그 보전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③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 15 장 비용의 보상

**제138조의 2(청구할 재판소·법 제187조의 2)** 법 제187조의 2의 청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검찰관이 소속사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 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38조의 3(청구의 방식·법 제187조의 2)** 법 제187조의 2의 청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피의자가 아닌 때에는 피의자의 성명 및 연령
3.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
4.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을 했다는 사실
5.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할 이유
6. 부담해야할 소송비용

**제138조의 4(자료의 제공·법 제187조의 2)** 법 제187조의 2의 청구를 하려면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1.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2. 부담해야할 소송비용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138조의 5(청구서 등본의 제출, 송달·법 제187조의 2)** ①법 제187조의 2의 청구를 하는 때는 검찰관은 청구와 동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을 청구당하는 자의 수만큼의 청구서 등본을 재판소에 제출해야한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당하는 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38조의 6(의견의 청취·법 제187조의 2)** 법 제187조의 2의 청구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의 청구를 당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8조의 7(청구의 각하·법 제187조의 2)** 법 제187조의 2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는 때 또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때는 결정으로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 제 16 장 비용의 보상

**제138조의 8(준용규정)** 서면에 의한 법 제188조의 4의 보상청구에 관해서는 제227조 및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의 9(재판소서기관에 의한 계산·법 제187조의 3 등) 법 제188조의 2**  
제1항 또는 제188조의 4의 보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재판소  
서기관에게 보상해야 할 비용 금액의 산정을 시킬 수 있다.

## 제 2 편 제1십

### 제 1 장 수 사

**제139조(영장청구의 방식)** ①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체포장의 청구서에는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0조(영장청구의 각하)** 재판관이 영장청구를 각하함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교부하면 충분하다.

**제141조(영장청구서의 반환)** 재판관은 영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영장청구를  
각하하는 때에는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영장의 청구서를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1조의 2(체포장청구권자의 지정·변경의 통지)**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都道府縣 공안위원회는, 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경찰원을 지정한 때에는 국가공안위원회에서는  
최고재판소에, 都道府縣 공안위원회에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재판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도 같다.

**제142조(체포장청구의 기재요건)** ①체포장의 청구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기타 체포장에 기재할 것을 요하는 사항 및 체포장 발부의 요건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2.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
  3. 피의자의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청구자의 관공직성명
  5. 청구자가 경찰관인 사법경찰원인 때에는 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라는 취지
  6. 7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7. 수통의 체포장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8. 동일한 범죄사실 또는 현재 수사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장의 청구 또는 그 발부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
- ②피의자의 성명이 불명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항으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피의자의 연령·직업 또는 주거가 불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제143조(자료의 제공)** 체포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체포의 이유(체포의

필요를 제외한 체포장 발부의 요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체포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3조의 2(체포장청구자의 진술청취 등)** 체포장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장의 청구를 한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듣거나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3조의 3(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는 경우)** 체포장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체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 및 환경과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없고 또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장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44조(체포장의 기재요건)** 체포장에는 청구자의 관공직·성명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5조(체포장의 작성)** 체포장은 체포장청구서 및 그 기재를 이용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146조(수통의 체포장)** 체포장은 청구에 의하여 수통을 발부할 수 있다.

**제147조(구류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04조 등)** ①피의자의 구류청구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2.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인 때에는, 죄를 범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3. 법 제6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
  4.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시간 제한에 따를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5.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 ②피의자의 연령·직업 혹은 주거·죄명 또는 피의사실 요지의 기재에 관하여는 이들 사항이 체포장 청구서의 기재와 동일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지를 청구서에 기재하면 충분하다.
-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8조(자료의 제공·법 제204조 등)** ①피의자의 구류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그 체포가 체포장에 의한 때에는 체포장청구서와 체포의 연월일시 및 장소, 인치의 연월일시, 송치하는 절차를 한 연월일시 및 송치를 받은 연월일시가 기재되고 각각의 기재에 관한 기명날인이 있는 체포장
  2. 그 체포가 현행범 체포인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서 기타의 서류
  3. 법에 정한 구류이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
- ②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법에 정한 시간의 제한에 따를 수 없었던 때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9조(구류장의 기재요건·법 제207조 등)**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하는 구류장에는, 구류청구의 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0조(서류의 송부)** 재판관은 피의자를 구류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관한 서류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 2(피의자의 구류기간의 재연장·법 제208조의 2)** 법 제20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51조(기간연장의 청구·법 제208조 등)** ①법 제208조 제2항 또는 제20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에는 부득이한 사유 및 연장을 요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2조(자료의 제공 등·법 제208조 등)**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구류장을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3조(기간연장의 재판·법 제208조 등)** ①재판관은 제151조 제1항의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류장에 연장하는 기간 및 이유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또 재판소서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검찰관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연장의 재판은, 동항의 교부를 함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재판소서기관은 구류장을 검찰관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구류장에 교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검찰관은 구류장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형사시설官吏로 하여금 이를 피의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제151조 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40조, 제141조 및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4조(등본교부의 청구·법 제208조 등)** 전조 제1항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는 그 재판의 기재가 있는 구류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5조(압수 등의 영장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18조)** ①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하거나 혹은 검증할 장소·신체 혹은 물건
  2. 청구자의 관공직성명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4.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5. 7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②신체검사영장의 청구서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218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제156조(자료의 제공·법 제218조 등)** ①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사료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우편물, 신서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서류로 법령의 규정에 기해 통신 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 또는 소지하는 것(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부터 발해지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발해진 것을 제외한다)의 압수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려면 그 물건이 피의사건 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충분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에 관한 수색을 위한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의 존재를 인정함에 충분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7조(신체검사영장의 기재요건·법 제219조)** 신체검사영장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과료 또는 형벌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7조의 2(체포장 등의 반환에 관한 기재)** 체포장 또는 법 제218조 제1항의 영장에는 유효기간내이라도 그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8조(처벌 등의 청구·법 제222조)** 법 제2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거부한 자를 과료에 처하거나 또는 이에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는, 청구자의 소속 관공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의 2(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24조) ①** 감정을 위하여 하는

피의자 유치의 청구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2.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
3. 청구자의 관공직성명
4. 유치의 장소
5. 유치를 필요로 하는 기간
6. 감정의 목적
7. 감정인의 성명 및 직업
8.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9조(감정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25조) ①** 법 제225조 제1항의

허가청구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관공직성명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3.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
4. 감정인의 성명 및 직업
5. 감정인이 들어갈 주거, 저택, 건조물 혹은 선박,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또는 파괴할 물건

6. 허가장이 7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0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26조 등)** ①법 제226조 또는 제227조의 증인신문의 청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또는 증인이 증언하여야 할 사항
  6. 법 제226조 또는 제227조에 규정하는 사유
  7.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자료의 제공·법 제226조)** 법 제226조의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동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162조(증인신문의 입회·법 제228조)** 법 제226조 또는 제 227조의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그 신문에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3조(서류의 송부·법 제226조 등)** 재판관은 법 제226조 또는 제227조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관한 서류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 2 장 공 소

**제164조(기소장의 기재요건·법 제256조)** 기소장에는 법 제256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연령·직업·주거 및 본적. 단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거
2. 전항 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제165조(기소장 등본 등의 제출·법 제271조 등)** ①검찰관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기소장의 등본을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후 신속히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에게 제출된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기소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또 공소제기 후 신속히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은 공소제기 전에 법의 규정에 기하여 재판관이 부친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소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공소제기후 신속하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증명자료의 제출·법 제255조)**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숨어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기소장 혹은 약식명령의 등본의 송달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공소제기 후 신속히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판관에게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7조(체포장·구류장의 제출·법 제280조)** ①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신속히 그 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체포장 또는 체포장 및 구류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구류된 후 석방된 피고인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같다.  
 ②재판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재판소의 재판관이 구류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항의 체포장 및 구류장을 그 재판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판관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때에는 신속히 체포장·구류장 및 구류에 관한 처분의 서류를 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8조(공소취소의 방식·법 제257조)**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9조(심판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62조)** 법 제262조의 청구서에는 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0조(청구취하의 방식·법 제263조)** 법 제262조의 청구취하는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71조(서류 등의 송부)** 검찰관은 법 제262조의 청구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이를 동조에 규정하는 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2조(청구 등의 통지)** ①전조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신속히 법 제262조의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62조의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신속히 이를 검찰관 및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3조(피의자의 조사·법 제265조)** ①법 제262조의 청구를 받은 재판소는 피의자의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소서기관이 서명날인하고, 재판장이 認印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38조 제2항 제3호 전단,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4조(심판에 회부하는 결정·법 제266조)** ①법 제266조 제2호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소장에 기재할 사항을 재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의 등본은 검찰관 및 피의자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75조(심판에 회부하는 결정후의 처분·법 제267조)** ①재판소는 법 제266조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속히 다음에 열거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건을 그 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하는 때에는 재판서를 제외하고 서류 및 증거물을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에게 송부한다.
2. 사건을 다른 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하는 때에는 재판서를 그 재판소에, 서류 및 증거물을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에게 송부한다.

## 제 3 장 공 판

### 제 1 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제176조(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법 제271조)** ①재판소는 기소장의 등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판소는 기소장의 등본의 송달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변호인선임에 관한 통지·법 제272조 등)** 재판소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및 빈곤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외에, 사형 또는 무기 혹은 장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도 알려야 한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조치·법 제289조 등)** ①재판소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 혹은 장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전단의 사건에 관하여, 전항의 기간 내에 회답이 없거나 또는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즉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78조의 2(제1회 공판기일전에서의 소송관계인의 준비)** 소송관계인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가능한 한 증거수집 및 정리를 하여, 심리가 신속히 행하여지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78조의 3(검찰관·변호인의 성명의 고지 등)** 재판소는 검찰관 및 변호인의 소송준비에 관한 상호의 연락이, 공소제기후 신속히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명하여, 검찰관 및 변호인의 성명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8조의 4(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일전에 소송관계인이 하여야 할 소송의 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78조의 5(심리에 할당할 수 있는 예상시간의 고지)** 재판소는 공판기일의 심리가 충실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검찰관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일의 심리에 할당이 가능한 예상 시간을 알려야 한다.

**제178조의 6(제1회 공판기일전의 검찰관·변호인의 준비의 내용)** ①재판관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다음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 기회를 부여할 것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이 열람할 기회를 부여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법 제326조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 또는 그 조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지 여부의 예상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것

②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다음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기타의 관계자를 면접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
2.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이 열람할 기회를 부여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 가능한 한 법 제326조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 또는 그 조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지 여부의 예상을 검찰관에게 통지하는 것

3. 법 제29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에 대하여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제시하여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

③검찰관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전2항에 열거된 사항을 행하는 외에, 상대방과 연락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기소장에 기재된 訴因 혹은 罰條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가능한 한 협의해 두는 것
2. 증거조사 기타의 심리에 소요되는 예상시간 등 재판소가 개정 횟수의 전망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재판소에 신고하는 것

**제178조의 7(증인 등의 성명 및 주거를 알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전에 법 제29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증인 등의 성명 및 주거를 알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그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8조의 8(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在廷증인)** 검찰관 및 변호인은, 증인으로 신문을 청구하려고 하는 자로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조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관하여, 이를 在廷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8조의 9(검찰관·변호인의 준비의 진행에 관한 문의 등)** 재판소는 재판소 서기관에게 명하여, 검찰관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준비의 진행에 관한 문의 또는 그 준비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8조의 10(검찰관·변호인과의 사전협의)** ①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검찰관 및 변호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단 사건에 대하여 예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에 미칠 수 없다. ②전항의 조치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8조의 11(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의 활용)** 검찰관은 소송제기후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압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의 준비를 함에 있어 가능한 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3조(압수물의 환부·가환부)의 규정의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9조(제1회 공판기일·법 제275조)** 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의 소환장의 송달은 기소장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②제1회 공판기일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의 사이에는 적어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간이재판소에 있어서는 3일의 유예기간을 두면 충분하다. ③피고인에게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9조의 2 삭제

**제179조의 3(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조치)** 공판기일에 소환을 받은 피고인 또는 기타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피고인의 구인), 제96조(보석의 취소 등) 및 제150조부터 제153조까지(증인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 등의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9조의 4(공판기일변경의 청구·법 제276조)** ①소송관계인은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재판소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그것이 계속될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또 진단서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 기일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사유를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동항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79조의 5(사선변호인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의 조치·법 제289조 등)** ① 법 제30조에 열거된 자가 선임한 변호인은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전조 제1항의 절차를 하는 외에, 그 사유 및 그것이 계속될 예상기간을 피고인 및 피고인 이외의 선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사유를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장기간에 걸쳐 심리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동항에 열거하는 피고인 및 피고인 이외의 선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지 여부의 회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간 내에 회답이 없거나 또는 다른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단 현저히 피고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제2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이 없어도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출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개정할 수 있다.

**제179조의 6(국선변호인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의 조치·법 제36조 등)**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 선정한 변호인은 기일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179조의 4 제1항의 절차를 하는 외에 그 사유 및 그것이 계속될 예상기간을 피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0조(기일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법 제276조)** 공판기일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미리 직권으로 이를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청구에 의하여 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조(기일변경청구 각하결정의 송달·법 제276조)** 공판기일의 변경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은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82조(공판기일의 불변경·법 제277조)** ①재판소는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

②재판소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소송관계인은 서면으로 재판소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관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 재판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83조(불출석하는 경우의 자료·법 제278조)** ①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소환을 받은 경우에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할 만한 의사의 진단서 기타 자료를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소는 의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작성을 촉탁할 수 있다.
- ③전2항의 진단서에 병명 및 증상 외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병상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 또는 변호인과 협력하여 적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출석하거나 또는 심리를 받음에 의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태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지 여부의 점에 관한 의사의 구체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제184조(진단서의 불수리 등·법 제278조)** ①재판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가 동조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재판소는 전조의 진단서가 동조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소환하여 의사로서의 적격성 및 진단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증인으로서 신문하거나 또는 다른 적격성 있는 공평한 의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病狀에 관한 감정을 명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5조(부당한 진단서·법 제278조)** 재판소는 의사가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로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동조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거나 또는 내용을 불명확하게 하거나 기타 상당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厚生労働大臣 혹은 의사로 조직되는 단체가 그 의사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이들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6조(준용규정)** 공판기일에 소환을 받은 피고인 이외의 자 및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전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7조(勾留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재판관·법 제280조)** ①공소의 제기가 있는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의 구류에 관한 처분은, 공소의 제기를 받은 재판소의 재판관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여야 할 재판관은 그 처분을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동항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의 재판관은 동일지역에 있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그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 또는 동일지역에 그 처분을 청구할 만한 재판소의 재판장이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그 처분을 하여도 무방하다.

③전항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재판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출석을 명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사건심리에 관여하여야 할 재판관은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없다.

⑤지방법재판소의 지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재판소와 별개의 지방재판소로 본다.

**제187조의 2(출석거부의 통지·법 제286조의 2)**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이 소환을 받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거부하고, 형사시설官吏에 의한 인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즉시 그 취지를 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7조의 3(출석거부에 관한 조서·법 제286조의 2)** ①재판소는 법 제2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공판절차를 행함에 있어서는 미리 동조에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시설 직원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그 진술을 듣거나 또는 이들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7조의 4(불출석 상태로 공판절차를 행한다는 취지의 고지·법 제286조의 2)** 법 제2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공판절차를 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그 취지를 소송관계인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8조(증거조사청구의 시기·법 제298조)** 증거조사의 청구는 공판기일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의 2(증거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의 서면의 제출·법 제298조)** ①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거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증거서류 기타의 서면의 조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標目を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8조의 3(증인신문시간의 신고·법 제298조)** ①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인신문에 필요한 예상시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의 상대방은 증인을 신문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문의 예상 소요시간을 신고해야한다.

③직권에 의해 증인을 신문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신문의 예상소요시간을 신고해야한다.

**제189조(증거조사의 청구방식·법 제298조)** ①증거조사의 청구는 증거로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증거서류 기타 서면의 일부의 조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특히 그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의 청구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전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전 각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증거조사의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89조의 2(증거의 엄선·제298조)** 증거조사의 청구는 증명해야할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여 해야 한다.

**제190조(증거결정·법 제298조)** ①증거조사 또는 증거조사의 청구의 각하는, 결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조사의 청구에 기한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1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1조(증거결정의 송달)** ①증인·감정인·통역인 및 번역인을 신문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공판기일전에 이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즉시 그 성명을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1조의 2(증인 등의 출석)** 증인·감정인·통역인 및 번역인을 신문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사를 청구한 소송관계인은 이들을

기일에 출석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1조의 3(증인신문의 준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증인 및 기타의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적절한 신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92조(증거결정에 관한 제시명령)** 증거조사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관계인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제193조(증거조사의 청구의 순서·법 제298조)** ①검찰관은 우선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조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의 청구가 종료한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4조 및 제195조 삭제**

**제196조(인정질문)** 재판장은 검찰관의 기소장의 낭독에 앞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물어야 한다.

**제196조의 2(법 제290조의 2 제1항의 신고 취지의 통지의 방식)** 법 제290조의 2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6조의 3(공개법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사항의 고지·**

**법 제290조의 2)** 검찰관은 법 제290조의 2 제1항 또는 3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사건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특정사항 중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이외에 공개법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판소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으로 한다.

**제196조의 4(호칭의 정함·법 제290조의 2)** 재판소는 법 제290조의 2 제1항 또는 3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해자의 성명 기타 피해자 특정사항에 관계되는 명칭에 대신할 호칭을 정할 수 있다.

**제196조의 5(결정의 고지·법 제290조의 2)** ①재판소는 법 제290조의 2 제1항 또는 3항의 결정 또는 동조 제4항의 결정에 의해 이들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 동조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도 같다.

②재판소는 법 제290조의 2 제1항의 결정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동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항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 때에도 같다.

**제197조(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지사항·법 제291조)** ①재판장은 기소장의 낭독이 종료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하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 외에 진술할 수도 있다는 취지 및 진술을 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도 되고 또 유리한 증거도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피고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되는 피고인 보호를 위한 권리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7조의 2(간이공판절차에 의하기 위한 조치·법 제291조의 2)** 피고인이 법 제291조의 제3항의 기회에 공판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였는지 및 법 제291조의 2에 규정하는 유죄의 진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재판소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거나 또는 이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8조(변호인 등의 진술)** ①재판소는 검찰관이 증거조사의 모두에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명확히 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명확히 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로 할 수 없거나 또는 증거로서 그 조사를 청구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에 관하여 편견 또는 예단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진술할 수 없다.

**제198조의 2(다툼 없는 사실의 증거조사)** 소송관계인은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해서는 유도신문, 법 제326조 제1항의 서면 또는 진술 및 법 제327조의 서면활용을 검토하는 등으로 해서 당해사실 및 증거의 내용 및 성질에 상응하는 적절한 증거조사가 행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제198조의 3(범죄사실에 관련 없음이 명백한 정황에 관한 증거의 조사)** 범죄사실에 관련 없음이 명백한 정황에 관한 증거의 조사는 가능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 조사와 구별하여 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198조의 4(조사상황에 관한 입증)**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술에 관해 그 조사상황을 입증하려고 할 때는 가능한 한 조사상황을 기록한 서면 기타 조사상황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는 등으로 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입증에 노력해야 한다.

**제199조(증거조사의 순서)** ①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우선 검찰관이 조사를 청구한 증거로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것이 종료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사를 청구한 증거로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조사한다. 단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필요로 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에도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시 증거를 조사하여도 무방하다.

**제199조의 2(증인신문의 순서·법 제304조)** ① 소송관계인이 먼저 증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의 신문 (주신문)
  2. 상대방의 신문 (반대신문)
  3.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의 재차의 신문 (再주신문)
- ②소송관계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시 신문할 수 있다.

**제199조의 3(주신문·법 제304조 등)** ①주신문은 입증할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주신문에서는 증인의 공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신문할 수 있다.

③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1. 증인의 신분·경력·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때
2. 소송관계인에게 쟁점이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관한 때
3. 증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그 기억을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
4. 증인이 주신문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나타낸 때
5. 증인이 증언을 피하려고 하는 사항에 관한 때
6. 증인이 전의 공술과 상반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다른 공술을 한 경우에, 그 공술한 사항에 관한 때
7.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④유도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서면의 낭독 기타 증인의 공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방법을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9조의 4(반대신문·법 제304조 등)** ①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하는 사항과 증인의 공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반대신문에서는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유도신문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9조의 5(반대신문의 기회에서의 새로운 사항의 신문·법 제304조)** ①증인 신문을 청구한 자의 상대방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반대신문의 기회에,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도 신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은 동항의 사항에 관한 주신문으로 본다.

**제199조의 6(공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법 제304조)**

증인의 공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은, 증인의 관찰·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편견·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단 함부로 증인의 명예를 해하는 사항에 미쳐서는 아니된다.

- 제199조의 7(再主신문·법 제304조 등)** ①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 ②재주신문에 관하여는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 ③제199조의 5의 규정은, 재주신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9조의 8(보충신문·법 제304조)** 재판장 또는 배석재판관이 우선 증인을 신문한 후에 하는 소송관계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 상대방의 구분에 따라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9조의 9(직권에 의한 증인의 보충신문·법 제304조)** 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배석재판관이 신문한 후, 소송관계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 제199조의 10(서면 또는 물건의 제시·법 제304조 등)** ①소송관계인은 서면 또는 물건에 관하여 그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서면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서면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종료한 것이 아닌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상대방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의 11(기억환기를 위한 서면 등의 제시·법 제304조 등)** ①소송관계인은 증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그 기억을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면(공술을  
녹취한 서면을 제외한다) 또는 물건을 제시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 관하여는, 서면의 내용이 증인의 공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9조의 12(도면 등의 이용·법 제304조 등)** ①소송관계인은 증인의 공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도면·  
사진·모형·장치 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99조의 10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9조의 13(증인신문의 방법, 제304조 등)** ①소송관계인은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개별적·구체적인 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②소송관계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문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신문
2. 이미 한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요구하거나 또는 토론에 이르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신문

**제199조의 14(관련성의 명시·제295조 등)** ①소송관계인은 입증할 사항  
또는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에서 현출된 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신문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명확하도록 신문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재판소에 그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한다.

②증인의 관찰,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기타 증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 또는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예단 기타 증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신문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00조(배석재판관의 신문·법 제304조)** 배석재판관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취지를 재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1조(재판장의 신문·법 제304조)**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관계인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신문을 중지시키고 직접 그 사항에 관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송관계인이 법 제295조의 제한 하에서 증인 기타 전항에 규정된 자를 충분히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2조(방청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특정한 방청인의 면전(증인에 관해서는 법 제157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한 경우 및 법 제157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충분한 공술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그 공술을 하는 동안 그 방청인을 퇴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3조(소송관계인의 신문의 기회·법 제304조)** 재판장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이들을 신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3조의 2(증거서류 등의 조사방법·법 제305조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중 서면의 의의가 증거가 되는 것의 조사를 하는 것에 관한 낭독에 갈음하여 그 조사를 청구한 자, 배석재판관 혹은 재판소서기관에게 그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직접 이를 고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중 서면의 의의가 증거가 되는 것의 조사를 하는 것에 관한 낭독에 갈음하여 직접 그 요지를 고지하거나 또는 배석재판관 혹은 재판소서기관에게 그 요지를 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3조의 3(간이재판소절차에 의한 경우의 특례·법 제307조의 2)**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98조, 제199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4조(증거의 증명력을 다룰 기회·법 제308조)** 재판장은 재판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회에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반증조사의 청구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다룰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05조(이의신청의 사유·법 제309조)** ①법 제309조 제1항의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 또는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단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없다.

②법 제309조 제2항의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05조의 2(이의신청의 방법·시기·법 제309조)** 이의신청은 각각의 행위·처분 또는 결정마다 간결하게 그 이유를 적시하여 즉시 하여야 한다.

**제205조의 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기·법 제309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5조의 4(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의 결정·법 제309조)** 시기에 늦게 행하여진 이의신청,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한 이의신청, 기타 부적합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단 시기에 늦게 행하여진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그 신청한 사항이 중요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기에 늦게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5조의 5(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의 결정·법 제309조 등)** 이의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05조의 6(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의 결정·법 제309조)** ①이의신청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가 신청된 행위의 중지·철회·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등 그 신청에 대응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조사한 증거가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6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법 제309조)**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으로 판단된 사항에 관하여는 거듭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207조(직권에 의한 배제결정)** 재판소는 조사한 증거가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임이 판명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08조(석명 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배석재판관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송관계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석명을 위한 發問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9조(訴因·罰條의 추가·철회·변경·법 제312조)** ①訴因 또는 罰條의 추가·철회·변경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재판소는 전항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검찰관은 전항의 송달이 있는 후, 지체 없이 공판기일에서 제1항의 서면을 낭독하여야 한다.
- ⑤법 제290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있는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낭독은 피해자 특정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행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⑥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在廷하는 공판정에서는 구두에 의한 訴因 또는 罰條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0조(변론의 분리·법 제313조)** 재판소는 피고인의 방어가 상호 상반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변론을 분리하여야 한다.

**제210조의 2(의견진술신고가 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의 방식·법 제292조의 2)**  
법 제292조의 2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의 3(의견진술이 행해지는 공판기일의 통지)** ①재판소는 법 제292조의 2 제1항에 의해 의견진술을 하는 공판기일을 그 진술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당해 공판기일에서 전항에서 규정

하는 자에게 법 제29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을 시킨다는 취지를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제210조의 4(의견진술의 시간)** 재판소장은 법 제292조의 2 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에 충분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210조의 5(의견진술을 대신하는 조치 등의 결정 고지)** 법 제292조의 2 제7항의 결정은 공판기일 전에 하는 경우에서도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동항의 결정내용을 법 제29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신고를 한 자 및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제210조의 6(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것의 통지)** 재판소는 법 제292조의 2 제7항에 의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제210조의 7(준용규정)** ① 법 제2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관해서는 제115조 및 제1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92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채용하는 취지의 결정에 관해서는 제10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92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7조의 3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채용하는 취지의 결정 및 법 제292조의 2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7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의견진술을 행하는 취지의 결정에 관해서도 같다.

**제211조(최종진술·법 제293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최종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11조의 2(변론의 시기)**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후에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증거조사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해야 한다.

**제211조의 3(변론의 방법)**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후에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의견과 증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야 한다.

**제212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이 증거조사 후에 하는 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3조(공판절차의 갱신)** ①개정후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한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개정후 장기간에 걸쳐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할 수 있다.

**제213조의 2(갱신의 절차)** ①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의 예에 의한다.

1. 재판장은 우선 검찰관에게 기소장(기소장訂正書 또는 訴因 혹은 罰條를 추가 혹은 변경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에 기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전호의 절차가 종료한 후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하여, 피고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혹은 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 또는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소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서면과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조사한 서면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로서 조사하여야 한다. 단 재판소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서면 또는 물건 및 증거로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또 소송관계인이 조사하지 아니함에 이의가 없는 서면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재판장은 전호 본문에 열거하는 서면 또는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소송 관계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낭독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5. 재판장은 조사한 각각의 증거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의 의견 및 辨解를 들어야 한다.

**제214조(변론재개청구의 각하결정의 송달)** 종결한 변론의 재개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은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15조(공판정의 사진촬영 등의 제한)** 공판정에서의 사진촬영·녹음 또는 방송은 재판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6조(판결선고기일의 고지·법 제284조 등)** ①법 제284조 또는 제285조에 열거하는 사건에 관하여 판결의 선고만을 할 공판기일의 소환장에는 그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다는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건에 관하여 동항의 공판기일을 형사시설직원에게 통지하여 소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에 판결의 선고를 한다는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시설 직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7조(파기후의 절차)** 사건이 상소재판소부터 환송되거나 또는 이송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1. 제1회 공판기일까지의 구류에 관한 처분은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2. 제188조 단서 및 제194조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증거보전의 청구 또는 법 제226조 혹은 제227조의 증인신문의 청구는 이를 할 수 없다.

## 제2절 쟁점 및 증거정리절차

### 第1款 공판전 정리절차

#### 第1目 통 칙

**제217조의 2조(심리예정의 책정·법 제316조의 2 등)** ①재판소는 공판정리 절차에 있어서 충실한 공판심리를 계속적, 계획적 및 신속하게 행할

수 있도록 공판 심리 예정을 정해야한다.

②소송관계인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의해 전항의 심리예정의 책정에 협력해야한다.

**제217조의 3(공판전정리절차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결정의 송달·법 제316조의 2 등)** 공판전정리절차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17조의 4(변호인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법 제316조의 4등)** 재판소는 사건을 공판전정리절차에 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대해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전정리절차를 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해 사건이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217조의 5(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결정·법 제316조의 6)**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을 정함에 관하여는 그 기일 전에 소송관계인이 해야 할 준비를 고려해야 한다.

**제217조의 6(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변경 청구·법 제316조의 6)** ①소송 관계인은 공판전정리절차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즉시 재판장에 대해 그 사유 및 그것이 계속될 예정시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기일변경을 청구해야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항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제217조의 7(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변경에 관해서 의견 청구·법 제316조의 6)**

공판전정리절차기일을 변경함에 관해서는 우선 직권으로 이를 할 경우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청구에 의해 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7조의 8(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변경에 관한 명령의 송달·법 제316조의 6)**

공판전정리절차기일의 변경에 관한 명령은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217조의 9(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불변경·법 제316조의 6)** 재판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

**제217조의 10(피고인의 공판전정리절차 출석에 관한 통지·법 제316조의 9)**

재판소는 피고인에게 대해 공판전정리절차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검찰관 및 변호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제217조의 11(공판전정리절차를 수명재판관에게 시키는 취지의 결정의 송달·**

**법 제316조의 11)** 합의체 구성원에게 명하여 공판전정리절차를 시키는 취지의 결정은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17조의 12(공판전정리절차 기일에서의 결정 등의 고지)**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에서 한 결정 또는 명령은 이에 입회한 소송관계인에게는 송달 또는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17조의 13(결정의 고지·법 제316조의 5)** 공판전정리절차에서 법 제316의 5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제217조의 14(공판전정리절차의 기재요건·법 제316조의 12)** 공판전정리 절차조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피고 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2. 공판전정리절차를 한 재판소 또는 수명재판관, 연월일 및 장소
3. 재판관 및 재판소 서기관의 관성명
4. 출석한 검찰관의 관성명
5. 출두한 피고인, 변호인, 대리인 및 보좌인의 성명
6. 출두한 통역인의 성명
7. 통역인의 신문 및 진술
8. 증명예정사실 기타 공판기일에서 할 예정에 있는 사실 및 법률상의 주장
9. 증거조사 청구 기타 신청
10. 증거와 증명해야할 사실과의 관계(증거의 표목자체에 의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11. 조사를 청구하는 증거가 법 제318조의 증거인 경우에는 그 취지

12. 법 제319조의 이의의 신청 및 그 이유
13. 법 제326조의 동의
14. 訴因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기소장 정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증거개시에 관한 재정에 관한 사항
16. 결정 및 명령. 단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결정(법 제316조의 5 제8호)
  - 나. 주임변호인 및 부주임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의 신청, 청구, 질문등의 허가(제25조)
  - 다. 증거결정에 관한 제시 명령(제192조)
17. 사건의 쟁점 및 증거정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취지 및 그 내용
 

②전항에서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이라도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에서 절차 중,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기재를 명한 사항은 이를 공판전정리절차 조서에 기재해야한다.

**제217조의 15(공판전정리절차조서의 서명날인, 認印·법 제316조의 12)**

- ①공판전정리절차조서에는 재판소서기관이 서명날인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認印하여야 한다.
- ②재판장에게 장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 1인이 그 사유를 부기해서 認印하여야 한다.
- ③지방법원 1인의 재판관, 간이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수명재판관에게 장애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이 그 사유를 부기해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재판소서기관에게 장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해서 認印하여야 한다.

**제217조의 16(공판전정리절차조서의 정리·법 제316조의 12)** 공판전정리 절차조서는 각 공판전정리절차기일 후 신속히,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까지는 이를 정리해야한다.

**제217조의 17(공판전정리절차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등·법 제316조의 12)** 공판전정리절차조서에 관해서는 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및 제52조 및 이 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법 제52조 중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는 「공판전정리절차기일에서의 절차」로, 제48조 중 「재판장」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으로 바꾸어 읽기로 한다.

**제217조의 18(공판전정리절차에 회부된 경우의 특례·법 제316조의 2)** 공판전정리절차조서에 회부된 취지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제178조의 6 제1항 및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제178조의 7, 제178조의 8 및 제19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第2目 쟁점 및 증거의 정리

**제217조의 19조(증명예정사실 등의 명시방법·법 제316조의 13 등)** ①검찰관은 법 316조의 13 제1항 또는 제316조의 2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에서

증명예정사실을 기재함에 관해서는 사건의 쟁점 및 증거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도 간결하게 명시해야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 제316조의 17 제1항 또는 제316조의 2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명예정사실 기타 공판기일에서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주장을 명확하게 함에 관하여, 사건의 쟁점 및 증거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도 간결하게 명시해야한다.

**제217조의 20조(증명예정사실의 명시에서의 유의 사항·법 제316조의 13 등)**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예정사실을 명확하게 함에 있어서는 사실과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용될 주요한 증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해 사건의 쟁점 및 증거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제217조의 21(기한의 고지·법 제316조의 13 등)** 공판전정리절차에서 법

제316조의 13 제4항, 제316조의 16 제2항(법 제316조의 21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6조의 17 제3항, 제316조의 19 제2항(법 제316조의 2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6조의 21 제3항 또는 제316조의 2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7조의 22조(기한의 엄수·법 제316조의 13 등)** 소송관계인은 전조에서

규정하는 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엄수하고 사건의 쟁점 및 증거정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7조의 23조(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의 조치·법 제316조의 16 등)**

재판소는 공판전정리절차에서 법 제316조의 16 제2항(법 제316조의 21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6조의 17 제3항, 제316조의 17 제2항(법 제316조의 2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6조의 21 제3항 또는 제316조의 2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을 정한 경우에서 당해 기한까지 의견 또는 주장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증거조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서도 공판심리를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판전정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第3目 증거開示에 관한 裁定**

**제217조의 24조(증거불개시의 이유의 고지·법 제316조의 15 등) 검찰관은**

법 제316조의 15 제1항(법 제316조의 21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6조의 20 제1항(법 제316조의 2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개시의 청구가 있는 증거에 관해 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해 개시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217조의 25조(증거개시에 관한 裁定 청구의 방식·법 제316조의 15 등)**

①법 제316조의 25 제1항 또는 제316조의 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개시에 관한 규정의 청구는 서면 제출로 해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한 자는 신속하게 동항의 서면의 등본을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부해야한다.

③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판전 정리절차기일에서는 동항의 청구를 구두로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7조의 26조(증거표목일람표의 기재사항·법 제316조의 27)** 법 제316조의 27 제2항의 일람표에는 증거마다 그 종류, 진술자 또는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외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거 제시를 명할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第2款 기일간 정리절차

**제217조의 27(준용규정)** 기일간정리절차에 관해서는 전관(제217조의 18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들 규정(표제를 포함한다) 중 「공판전정리절차기일」은 「기일간정리절차기일」로, 「공판전정리절차조서」는 「기일간정리절차조서」로 바꿔 읽는 외, 제217조의 2부터 제217조의 11까지의 표제어, 제217조의 13(표제어를 포함한다), 제217조의 14의 표제어 및 동조 제1항 제16호 나항, 제217조의 15부터 제217조의 17까지의 표제어, 제217조의 19(표제어를 포함한다), 제217조의 22의 표제어, 제217조의 23 및 제217조의 24(이들 규정의 표제어를 포함한다.), 제217조의 25의 표제어 및 동조 제1항 및 전조(표제어를 포함한다) 중 「법」은 「제316조의 28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으로, 제217조 16 중 「제1회 공판기일」은 「기일간정리절차 종료 후의 최초의 공판기일」로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 第3款 공판절차의 특례

**제217조의 28조(심리예정에 따른 공판 심리의 진행)** ①재판소는 공판전 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관해서는 공판 심리를 당해 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에서 정해진 예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소송관계인은 공판심리가 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에서 정해진 예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재판소에 협력해야한다.

**제217조의 29조(공판전정리절차등의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법 제316조의**

**31)** ①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관해서 당해 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의 결과를 명확하게 하려면 공판전정리절차조서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조서를 낭독하거나 또는 그 요지를 고지해야한다. 법 제316조의 2 제2항(법 제316조의 28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서면에 관해서도 같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의 결과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명해서 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90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있는 때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정리절차조서 또는 기일간정리조서의 낭독 또는 요지의 고지는 피해자특정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한다. 법 제316조의 2 제2항(법 제316조의 28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서면에 관해서도 같다.

**제217조의 30조(부득이한 사유의 소명·법 제316조의 32)** 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관해서 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증거의 조사를 청구하려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그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제217조의 31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청구할 수 없었던 증거조사의 청구·법 제316조의 32)** 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에 회부된 사건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에서 청구할 수 없었던 증거조사를 청구할 때는 그 사유가 끝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이를 해야 한다.

### 제 3 절 피해자 참가

**제217조의 32조(피해자참가가 신청된 취지의 통지의 방식·법 제316조의 33)** 법 제316조의 33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7조의 33조(위탁의 신고 등·법 제316조의 34 등)** ①법 제316조의 34 및 제316조의 36부터 316조의 38까지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탁한 피해자 참가인은 당해 행위를 당해 변호사에게 행하도록 함에 있어 우선 위탁한 취지를 당해 변호사와 연서한 서면으로 재판소에 신고해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심급마다 한다.

③제1항의 서면에서 위탁한 행위를 특정하는 기재가 없는 때에는, 법 제316조의 34 및 제316조의 36으로부터 제316조의 38까지에서 규정하는 모든 행위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변론이 병합된 사건에서 당해 피해자 참가인이 절차 참가를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당해 피해자참가인이 절차참가를 허락받은 사건 중 당해 신고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피해자참가인이 위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재판소에 신고해야한다.

**제217조의 34조(대표자선정을 구하는 취지의 기록화·법 제316조의 34)**

법 제316조의 34조 제3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음 조에서도 같다)의 규정에 의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에 출석하는 대표자의 선정을 구할 때는 재판소서기관은 이를 기록상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217조의 35조(선정된 대표자의 통지·법 제316조의 34)**

법 제316조의 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에 출석할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재판소에 통지해야한다.

**제217조의 36조(의견진술의 시기·법 제316조의 38)**

법 제316조의 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은 법 제2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의 의견진술 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217조의 37조(의견진술의 시간·법 제316조의 38)** 재판장은 법 제316조의 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에 충분하도록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217조의 38조(결정의 고지·법 제316조의 33 등)** ①재판소는 법 제316조의 33 제1항의 신고에 대한 결정 또는 동향 결정의 취소 결정을 한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동향의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재판소는 법 제316조의 34 제4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에서도 같다)의 규정에 의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에의 출석을 허락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출석을 허락받지 못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재판소는 법 제316조의 36 제1항, 제316조의 37 제1항 또는 제316조의 38 제1항의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한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해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한다.

④재판소는 법 제316조의 33 제1항의 신고에 대한 결정 또는 동향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법 제316조의 3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에의 출석을 허락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 법 제316조의 36 제1항, 제316조의 37 제1항 또는 제316조의 38 제1항의 신고에 대한 결정, 제316조의 3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때는 공판기일에서 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그 취지를 소송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

## 제 4 절 공판의 재판

**제218조(판결서로의 인용)**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서는, 판결서에는 기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訴因 혹은 罰條를 추가 혹은 변경하는 서면에 기재된 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

**제218조의 2**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서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審理를 한 사건의 판결서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거의 標目を 특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제219조(조서판결)** ①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서는, 상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판결주문과 죄가 될 사실의 요지 및 적용한 罰條를 판결의 선고로 한 공판기일의 조서의 말미에 기재하게 하여 이로써 판결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단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또 판결의 확정 전에 판결서의 등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기재에 관하여는, 판결을 한 재판관이 재판소서기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4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55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의 2(공소기각결정의 송달의 특례·법 제339조)** ① 법 제3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은 피고인에게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0조(상소기간 등의 고지)** 유죄판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및 상소제기서를 제출할 재판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20조의 2(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실시·법 제333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취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1조(판결선고후의 훈계)** 재판장은 판결의 선고를 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장래에 관하여 적당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222조(판결의 통지·법 제284조)** 법 제284조에 열거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 및 판결主文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판결선고를 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2조의 2(보호관찰 판결의 통지 등)** ①재판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의 선고를 한 때에는 신속히 판결서의 등본 혹은 초본 또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연령, 주거, 죄명, 판결의 주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선고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그 자의 보호관찰을 담당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소는

그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해야할 특별사항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한다.

②전항의 서면에는 재판소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의 자료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222조의 3(보호관찰 성적의 보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재판소는 보호관찰기간중,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의 성적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2조의 4(집행유예취소의 청구방식·법 제349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의 취소청구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2조의 5(자료의 제출·법 제349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의 취소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그 청구가 형법 제26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선고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인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2조의 6(청구서 등본의 제출, 송달·법 제349조 등)** ①형법 제26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선고의 취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검찰관은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등본을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2조의 7(구두변론청구권의 통지 등·법 제349조의 2)** ①재판소는 형법 제26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선고의 취소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리고 또 구두변론을 청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청구하는 지 여부를 확임함에 있어서는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2조의 8(출석명령·법 제349조 등)** 재판소는 유예의 선고의 취소청구를 받은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222조의 9(구두변론·법 제349조의 2)** 법 제34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두변론에 관하여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1. 재판장은 구두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구두변론기일에는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출석을 명하여야 한다.
3. 구두변론기일은 검찰관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판소는 검찰관,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혹은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구두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5. 구두변론은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법정은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관이 列席하고 또 검찰관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6.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 또는 공공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두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구두변론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222조의 10(준용규정·법 제350조)** 법 제350조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22조의 4, 제222조의 5 전단 및 제222조의 8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즉결재판절차

### 제 1 절 즉결재판절차의 신청

**제222조의 11(서면의 첨부·법 제350조의 2)** 즉결재판절차의 신청서에는 법 제315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222조의 12(동의확인을 위한 국선번호인선임의 청구·법 제350조의 3)**  
법 제350조의 3 제1항의 청구는 법 제350조의 2 제3항의 확인을 구한 검찰관이 소속하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 소재지(그 지부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해야 한다.

**제222조의 13(동의확인을 위한 사선번호인 선임의 신고·법 제350조의 3)**

그 자력(법 제3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자력을 말한다. 제280조의 3 제1항에서와 같다)이 기준액(법 제316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액을 말한다. 제280조의 3 제1항에서와 같다) 이상인 피의자가 법 제350조의 3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법 제31조의 2 제1항의 신고를 해야 하는 변호사회는 법 제350조의 2 제 3항의 확인을 구한 검찰관이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 관할 지방재판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변호사회로 하고, 당해 변호사회가 법 제350조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해야 하는 지방재판소는 당해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로 한다.

## 제 2 절 공판준비 및 공판 절차의 특례

**제222조의 14(즉결재판절차 신청의 각하)** ①재판소는 즉결재판절차의 신청이 있었던 사건에 관해 제350조의 8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법 제291조 제3항의 절차에서 피고인이 기소장에 기재된 소인에 대하여 유죄인 취지로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②전항의 결정은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222조의 15(변호인선임에 관한 통지·법 제350조의 9)** 재판소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장기 3년을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해서 즉결재판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는 제1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및 빈곤 기타의 이유로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없는 때는 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외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50조의 8의 절차를 행하는 공판기일 및 즉결재판절차에 의한 공판기일을 열 수가 없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222조의 16(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처치·법 제350조의 9)** ①재판소는 즉결 재판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제17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재판소는 전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회답을 구해야 한다.

③전항의 기간 내에 회답이 없거나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는 재판장은 즉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해야한다.

**제222조의 17(공판기일의 지정·법 제350조의 7)** 법 제350조의 7의 공판 기일은 가능한 한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일을 정해야 한다.

**제222조의 18(즉결재판절차에 의한 경우의 특례)** 즉결재판절차에 의해 심판을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제198조, 제199조 및 제203조의 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22조의 19** ①즉결재판절차에 의해 심리하고, 즉일 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관해서는 판결을 선고한 공판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리하면 족하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관해서 이의신청 기간과의 관계에서는 그 공판조서를 정리해야할 최종일에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본다.

**제222조의 20** ①즉결재판절차에 의해 심리하고, 즉일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서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제44조 제1항 제19호 및 제22호에서 열거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단, 항소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장이 전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편 상 소

### 제1장 통 칙

**제223조(상소포기의 신청재판소·법 제359조 등)** 상소포기의 신청은 원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제223조의 2(상소취하의 신청재판소)** ①상소취하의 신청은 상소재판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소송기록을 상소재판소에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원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4조(상소취하의 신청방식·법 제359조 등)** 상소취하의 신청은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두로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4조의 2(동의서의 제출·법 제360조)** 법 제353조 또는 제354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하는 때에는 동시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5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법 제363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226조(상소권회복청구의 이유의 소명·법 제363조)** 상소권회복의 이유가 되는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27조(형사시설에 수용중인 피고인의 상소·법 제366조)** ①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함에 있어서는 형사시설의 장 혹은 그 대리자를 경유하여 상소제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형사시설의 장 혹은 그 대리자는 원재판소에 상소 제기서를 송부하고 또 이를 접수한 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8조**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 제기서를 형사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9조(형사시설에 수용중인 피고인의 상소포기 등·법 제367조 등)** 형사 시설에 수용중인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혹은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0조(상소 등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 혹은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신속히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1조부터 제234조까지 삭제

## 제 2 장 항 소

**제235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항소의 제기가 명백히 항소권의 소멸 후에 행하여진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재판소는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신속히 소송기록 및 증거물을 항소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36조(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법 제376조)** ①항소재판소는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최종일을 지정

하여 이를 항소제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소제기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통지는 변호인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통지서를 송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최종일은 항소제기인에 대한 전항의 송달이 있었던 날의 익일 부터 기산하여 21일째 이후의 날이어야 한다.

④제2항의 통지서의 송달이 있는 경우에 제1항의 최종일의 지정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소제기인에 대한 송달이 있었던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1일째의 날을 최종일로 본다.

**제237조(소송기록 도달의 통지)** 항소재판소는 전조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소송기록의 송부가 있었다는 취지를 검찰관 또는 피고인으로서 항소제기인이 아닌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통지는 변호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제238조(기간경과 후의 항소이유서)** 항소재판소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경과 후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그 지연이 부득이한 사정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서 심판할 수 있다.

**제239조(주임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법 제34조)** 항소이유서는 주임변호인 이외의 변호인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0조(항소이유서의 기재)**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의 이유를 간결히 명시

하여야 한다.

**제241조(항소이유서의 등본)** 항소이유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응하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2조(항소이유서의 등본의 송달)** 항소재판소는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그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3조(답변서)** ①항소의 상대방은 항소이유서의 등본의 송달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②검찰관이 상대방인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항소의 이유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응하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항소재판소는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그 등본을 항소제기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4조(피고인의 이감)** ①피고인이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때에는 항소재판소는 그 취지를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은 전항의 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피고인을 항소재판소의 소재지의 형사시설로 옮겨야 한다.

③피고인이 항소재판소의 소재지의 형사시설에 이감된 때에는 검찰관은 신속히 피고인이 이감된 형사시설을 항소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수명재판관의 보고서)** ①재판장은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항소 제기서,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검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은 변론전에 보고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제246조(판결서의 기재)** 판결서에는 항소의 이유 및 중요한 답변에 관하여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

**제247조(최고재판소로의 이송·법 제406조)** 항소재판소는 헌법의 위반이 있음 또는 헌법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만을 이유로 하여 항소제기를 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이를 최고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제248조(이송허가의 신청·법 제406조)** ①전조의 결정은 최고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는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서면에는 원판결의 등본 및 항소이유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9조(이송결정의 효력·법 제406조)** 제247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항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이유에 의한 상고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50조(준용규정)** 항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장 상 고

**제251조(소송기록의 송부)** 상고의 제기가 명백히 상고권의 소멸 후에 행하여진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재판소는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신속히 소송기록을 상고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52조(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법 제414조)** ①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최종일은 그 지정의 통지서가 상고제기인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8일째 이후의 날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일의 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에 그 지정이 동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송달이 있었던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8일째의 날을 최종일로 본다.

**제253조(판례의 적시)**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상고의 제기를 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제254조(도약상고·법 제406조)** ①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가 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서 법률·명령·규칙 혹은 처분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한 판단,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혹은 규칙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한 판단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가 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적합한 것으로 한 판단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제255조(도약상고와 항소·법 제406조)** 전조의 상고는 항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항소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6조(헌법판단사건의 우선심판)** 최고재판소는 원판결에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한 판단이 부당함을 상고의 이유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원재판에서 동종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이를 심판하여야 한다.

**제257조(상고심으로서의 사건수리의 신청·법 제406조)** 고등재판소가 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그 사건이 법령(재판소의 규칙을 포함한다)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상소권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한하여 최고

재판소에 상고심으로서 사건을 수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법405조에 규정하는 사유를 그 이유로 할 수 없다.

**제258조(신청의 방식·법 제406조)** 전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원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8조의 2(원판결 등본의 교부·법 제406조)** ①제257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재판소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등본의 교부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단 신청인이 신청전에 판결의 등본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본문의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지체 없이 판결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은 판결의 등본을 교부한 날을 기록상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제258조의 3(사건수리의 신청이유서·법 제406조)** ①신청인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전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257조의 신청을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유서를 원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유서에 상대방의 수에 상응하는 등본 및 원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유서에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摘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청의 이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59조(원재판소의 기각결정·법 제406조)** 제257조의 신청이 명백히 신청권의 소멸 후에 행하여진 것인 때 또는 전조 제1항의 이유서가 동항의 기간 내에 제출된 때에는 원재판소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260조(신청서의 송부 등·법 제406조)** ①원재판소는 제258조의 3 제1항의 이유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이를 제258조의 신청서와 함께 최고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최고재판소는 전항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그 연월일을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1조(사건수리의 결정·법 제406조)** ①최고재판소는 직접 상고심으로서 사건을 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조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청의 이유 중에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②최고재판소는 전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동항의 기간 내에 이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2조(사건수리결정의 통지·법 제406조)** 최고재판소는 전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원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3조(사건수리결정의 효력 등·법 제406조)** ①제261조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258조의 3 제1항의 이유서는 그 이유(제26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된 이유를 제외한다)를 상고이유로 하는 상고이유서로 본다.

②전항의 이유서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경우에, 제26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에 그 결정의 등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264조(신청의 효력·법 제406조)** 제257조의 신청은 원판결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을 갖는다. 단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261조 제1항의 결정이 되지 아니하고 동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5조(피고인의 이감·법 제409조)**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66조(준용규정)**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前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7조(판결정정신청 등의 방식·법 제415조)** ①판결을 정정하는 신청은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에는 신청이유를 간결히 명시하여야 한다.

③판결訂正의 신청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법 제415조)**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9조(각하결정의 송달·법 제415조)** 판결정정의 신청기간연장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이를 송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70조(판결정정신청에 관한 재판·법 제416조 등)** ①판결정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은 원판결을 한 재판소를 구성하였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소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재판관이 사망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도 원재판을 함에 있어, 반대의견을 표시한 재판관이 다수가 되도록 구성된 재판소에서는 동향의 재판을 할 수 없다.

## 제 4 장 항 고

**제271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원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기록 및 증거물을 항고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재판소는 소송기록 및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2조(항고재판소의 결정의 통지)** 항고재판소의 결정은 이를 원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3조(준용규정)** 법 제429조 및 제430조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특별항고제기서의 기재·법 제433조)** 법 제433조의 항고제기서에는 항고의 취지를 간결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75조(특별항고에 관한 조사의 범위·법 제433조)** 최고재판소는 법 제433조의 항고에 관하여는 제기서에 기재된 항고의 이유에 관하여만 조사한다. 단 법 제405조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76조(준용규정)** 법 제433조의 항고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256조,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편 소년사건의 특별절차

**제277조(심리의 방침)** 소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자상함을 기본 취지로 하며 또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정재판소가 조사한 증거는 가능한 한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8조(소년감별소로의 송치영장의 기재요건·소년법 제44조)** ①소년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소년의 성명, 연령 및 주거,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법 제6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

수용할 소년감별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청구 및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관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영장의 집행은 법 및 이 규칙중 구류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279조(국선변호인·법 제37조 등)** 소년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재판소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정재판소조사관의 觀護를 받게 하는 결정의 효력·소년법 제45조)**  
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조치는 사건을 종국시키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0조의 2(관호조치가 구류로 간주되는 경우의 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 등·소년법 제45조등)** ①소년법 제45조 제7호(동법 제45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조 제1항에서도 같다)의 규정에 의해 피의자에게 구류장이 발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서도 법 제37조의 2 제1항의 청구는, 소년법 제19조 제2항(동법 제2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 제1항에서도 같다) 또는 제20조의 결정을 한 가정재판소의 재판관 그 소속 가정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의 소재지(그 지부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해야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서 법 제3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처분은 소년법 제 19조 제2항 또는 제20조의 결정을 한 가정재판소의 재판관, 그 소속가정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 소재지(그 지부를 포함한다)에 있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이를 해야 한다.

③제1항의 피의자가 동향의 지방재판소의 관할구역 외에 있는 형사시설에 수용된 때에는 동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의 2 제1항의 청구는 그 형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 소재지(그 지부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해야 한다.

④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서 법 제3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처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형사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의 소재지(그 지부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이를 해야 한다. 법 제37조의 5 및 제38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처분에서도 같다.

**제281조(구류에 갈음하는 조치의 청구 · 소년법 제43조)** 소년사건에 있어서 검찰관이 재판관에 대하여 구류청구에 갈음하여 소년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2조(준용규정)** 피고인이 소년감별소에 수용 또는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5 편 재 심

**제283조(청구의 절차)** 재심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서에 원판결의 등본,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4조(준용규정)** 재심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대하여는 제224조, 제227조, 제228조 및 제2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5조(청구의 경합)** ① 제1심의 확정판결과 항소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항소재판소는 결정으로 제1심 재판소의 소송절차가 종료하기에 이르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과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고재판소는 결정으로 제1심 재판소 또는 항소재판소의 소송절차가 종료하기에 이르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286조(의견의 청취)** 재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 및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청구를 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 제 6 편 약식절차

### 제287조 삭제

**제288조(서면의 첨부·법 제461조의 2 등)** 약식명령의 청구서에는 법 제461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절차를 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9조(서류 등의 제출)** 검찰관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0조(약식명령의 시기 등)** ①약식명령은 늦어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재판소는 약식명령의 등본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1조(준용규정)** 법 제463조의 2 제2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1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2조(기소장 등본의 제출 등·법 제463조)** ①검찰관은 법 제463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기소장의 등본을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3(서류 등의 반환)** 재판소는 법 제463조 제3항 또는 제465조 제2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즉시 제289조의 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94조(준용규정)** 정식재판의 청구, 그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24조부터 제228조까지 및 제2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 편 재판의 집행

**제295조(소송비용면제의 신청·법 제500조)**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면제의 신청 또는 재판의 해석을 구하는 신청 혹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하에 관하여도 같다.

②전항의 신청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227조 및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5조의 2(면제의 신청재판소·법 제500조)**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면제신청은 그 재판을 선고한 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단 사건이 상소심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전부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그 상소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소는 그 신청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판소는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선고한 하급재판소에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또 재판장이 認印한 송부서와 함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③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한 때에는 재판소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5조의 3(신청서가 신청재판소 이외의 재판소에 제출된 경우·법 제500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할 재판소 이외의 재판소(사건이 계속하였던 재판소에 한한다)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소는 신속히 신청서를 신청을 하여야 할 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청서가 신청기간내에 제출된 때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제295조의 4(신청서의 기재요건·법 제500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면제의 신청서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재판소를 표시하고 또 소송비용을 완납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295조의 5(검찰관에 대한 통지·법 제500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면제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소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8 편 보 칙

**제296조(신청 기타 의견개진의 방식)** ①재판소 또는 재판관에 대한 신청 기타의 의견개진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를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두에 의한 의견개진은 재판소서기관의 면전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7조(在監者의 의견개진)** 형사시설의 장 혹은 경찰서장 또는 이들의 대리자는 형사시설 또는 형사시설로 대용되고 있는 유치장에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재판소 또는 재판관에 대하여 신청 기타의 의견개진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그 편의를 도모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직접 의견개진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代書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이를 代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8조(서류의 발송, 수리 등)** ①서류의 발송 및 수리는 재판소서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②소송관계인 기타의 자에 대한 통지는 재판소서기관에게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소송관계인 기타의 자에 대하여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상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제299조(재판관에 대한 조사 등의 청구)** ①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의 재판관에 대한 조사·처분 또는 영장청구는 당해 사건의 관할에 불구하고 이들의 소속 관공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는 소년사건에 있어서는 동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자의 소속 관공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제300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영장발부일부터 7일로 한다. 단 재판소 또는 재판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01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 ①재판장 또는 재판관은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재판장 또는 재판관은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서류의 파기 기타 불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소서기관 기타의 재판소 직원을 이에 입회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2조(재판관의 권한)** ①법에서 재판소 혹은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재판소가 하는 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거나 또는

재판소 혹은 재판장에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수명재판관·수탁재판관 기타 재판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도 같다.

②법 제224조 또는 제225조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303조(검찰관 및 변호인의 소송지연행위에 대한 조치)** ①재판소는 검찰관

또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재판소규칙에 위반하여 심리, 공판전정리절차 또는 기일간정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검찰관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재판소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에 있어서는 당해 검찰관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갖는 자에게, 변호인에 있어서는 당해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회 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에 통지하여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자는, 그 취한 조치를 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4조(피고사건 종결 후의 소송기록 송부)** ①재판소는 피고사건의 종결

후, 신속히 소송기록을 제1심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송부는 피고사건이 상소심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당해 피고사건이 계속하였던 하급재판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305조(대체수용 장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등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치시설에 유치된 자에 관해서는 유치시설을 형사시설로, 유치업무관리자를 형사시설의 장으로, 유치담당관(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치담당관을 말한다)을 형사시설직원으로 보아서, 제62조 제3항,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제9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92조의 2, 제153조 제4항, 제187조의 2, 제187조의 3 제2항, 제216조 제2항, 제227조(제138조의 8, 제229조, 제284조, 제294조 및 제295조 제2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8조(138조의 8, 제229조, 제284조, 제294조 및 제29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9조, 제244조, 제280조의 2 제3항 및 제4항 및 제280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록

- ▶▶▶ 1. 刑事訴訟法
- ▶▶▶ 2. 刑事訴訟規則



# 刑事訴訟法

昭和二十三年七月十日 法律第三百十一号

最終改正：平成二一年七月一日 法律第六六号

## 第一編 總則(第一条)

- 第一章 裁判所の管轄(第二条-第十九条)
- 第二章 裁判所職員の除斥及び忌避(第二十条-第二十六条)
- 第三章 訴訟能力(第二十七条-第二十九条)
- 第四章 弁護及び補佐(第三十条-第四十二条)
- 第五章 裁判(第四十三条-第四十六条)
- 第六章 書類及び送達(第四十七条-第五十四条)
- 第七章 期間(第五十五条·第五十六条)
- 第八章 被告人の召喚、勾引及び勾留(第五十七条-第九十八条)
- 第九章 押収及び搜索(第九十九条-第一百二十七条)
- 第十章 檢証(第一百二十八条-第一百四十二条)
- 第十一章 証人尋問(第一百四十三条-第一百六十四条)
- 第十二章 鑑定(第一百六十五条-第一百七十四条)
- 第十三章 通訳及び翻譯(第一百七十五条-第一百七十八条)
- 第十四章 証拠保全(第一百七十九条·第一百八十条)
- 第十五章 訴訟費用(第一百八十一条-第一百八十八条)
- 第十六章 費用の補償(第一百八十八条の二-第一百八十八条の七)

## 第二編 第一審

- 第一章 捜査(第一百八十九条-第二百四十六条)
- 第二章 公訴(第二百四十七条-第二百七十条)
- 第三章 公判
  - 第一節 公判準備及び公判手續(第二百七十一条-第三百十六条)
  - 第二節 争点及び証拠の整理手續
    - 第一款 公判前整理手續

第一目 通則(第三百十六條の二-第三百十六條の十二)

第二目 争点及び証拠の整理

(第三百十六條の十三-第三百十六條の二十四)

第三目 証拠開示に関する裁定

(第三百十六條の二十五-第三百十六條の二十七)

第二款 期日間整理手続(第三百十六條の二十八)

第三款 公判手続の特例

(第三百十六條の二十九-第三百十六條の三十二)

第三節 被害者参加(第三百十六條の三十三-第三百十六條の三十九)

第四節 証拠(第三百十七條-第三百二十八條)

第五節 公判の裁判(第三百二十九條-第三百五十條)

第四章 即決裁判手続

第一節 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

(第三百五十條の二・第三百五十條の三)

第二節 公判準備及び公判手続の特例

(第三百五十條の四-第三百五十條の十一)

第三節 証拠の特例(第三百五十條の十二)

第四節 公判の裁判の特例(第三百五十條の十三・第三百五十條の十四)

### 第三編 上訴

第一章 通則(第三百五十一條-第三百七十一條)

第二章 控訴(第三百七十二條-第四百四條)

第三章 上告(第四百五條-第四百十八條)

第四章 抗告(第四百十九條-第四百三十四條)

### 第四編 再審(第四百三十五條-第四百五十三條)

### 第五編 非常上告(第四百五十四條-第四百六十條)

### 第六編 略式手続(第四百六十一條-第四百七十條)

### 第七編 裁判の執行(第四百七十一條-第五百七條)

## 第一編 總 則

**第一条** この法律は、刑事事件につき、公共の福祉の維持と個人の基本的人権の保障とを全うしつつ、事案の真相を明らかにし、刑罰法令を適正且つ迅速に適用実現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第一章 裁判所の管轄

**第二条** 裁判所の土地管轄は、犯罪地又は被告人の住所、居所若しくは現在地による。

2 国外に在る日本船舶内で犯した罪については、前項に規定する地の外、その船舶の船籍の所在地又は犯罪後その船舶の寄泊した地による。

3 国外に在る日本航空機内で犯した罪については、第一項に規定する地の外、犯罪後その航空機の着陸(着水を含む。)した地による。

**第三条** 事物管轄を異にする数個の事件が関連するときは、上級の裁判所は、併せてこれを管轄することができる。

2 高等裁判所の特別権限に属する事件と他の事件とが関連するときは、高等裁判所は、併せてこれを管轄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条** 事物管轄を異にする数個の関連事件が上級の裁判所に係属する場合において、併せて審判することを必要としないものがあるときは、上級の裁判所は、決定で管轄権を有する下級の裁判所にこれを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条** 数個の関連事件が各別に上級の裁判所及び下級の裁判所に係属するときは、事物管轄にかかわらず、上級の裁判所は、決定で下級の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事件を併せて審判することができる。

2 高等裁判所の特別権限に属する事件が高等裁判所に係属し、これと関連する事件が下級の裁判所に係属するときは、高等裁判所は、決定で下級の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事件を併せて審判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条** 土地管轄を異にする数個の事件が関連するときは、一個の事件につき管轄権を有する裁判所は、併せて他の事件を管轄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他の法律の規定により特定の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事件は、これを管轄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七条** 土地管轄を異にする数個の関連事件が同一裁判所に係属する場合において、併せて審判することを必要としないものがあるときは、その裁判所は、決定で管轄権を有する他の裁判所にこれを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八条** 数個の関連事件が各別に事物管轄を同じくする数個の裁判所に係属するときは、各裁判所は、検察官又は被告人の請求により、決定でこれを一の裁判所に併合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各裁判所の決定が一致しないときは、各裁判所に共通する直近上級の裁判所は、検察官又は被告人の請求により、決定で事件を一の裁判所に併合することができる。

**第九条** 数個の事件は、左の場合に関連するものとする。

- 一 一人が数罪を犯したとき。
  - 二 数人が共に同一又は別個の罪を犯したとき。
  - 三 数人が通謀して各別に罪を犯したとき。
- 2 犯人蔵匿の罪、証憑湮滅の罪、偽証の罪、虚偽の鑑定通訳の罪及び贓物に関する罪とその本犯の罪とは、共に犯したものとみなす。

**第十条** 同一事件が事物管轄を異にする数個の裁判所に係属するときは、上級の裁判所が、これを審判する。

2 上級の裁判所は、検察官又は被告人の請求により、決定で管轄権を有する下級の裁判所にその事件を審判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十一条** 同一事件が事物管轄を同じくする数個の裁判所に係属するときは、最初に公訴を受けた裁判所が、これを審判する。

2 各裁判所に共通する直近上級の裁判所は、検察官又は被告人の請求により、決定で後に公訴を受けた裁判所にその事件を審判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十二条** 裁判所は、事実発見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管轄区域外で職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受命裁判官にこれを準用する。

**第十三条** 訴訟手続は、管轄違の理由によつては、その効力を失わない。

**第十四条** 裁判所は、管轄権を有しないときでも、急速を要する場合には、事実発見のため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受命裁判官にこれを準用する。

**第十五条** 検察官は、左の場合には、関係のある第一審裁判所に共通する直近上級の裁判所に管轄指定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裁判所の管轄区域が明らかでないため管轄裁判所が定まらないとき。

二 管轄違を言い渡した裁判が確定した事件について他に管轄裁判所がないとき。

**第十六条** 法律による管轄裁判所がないとき、又はこれ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検事総長は、最高裁判所に管轄指定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七条** 検察官は、左の場合には、直近上級の裁判所に管轄移転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管轄裁判所が法律上の理由又は特別の事情により裁判権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とき。

二 地方の民心、訴訟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より裁判の公平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虞があるとき。

2 前項各号の場合には、被告人も管轄移転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八条** 犯罪の性質、地方の民心その他の事情により管轄裁判所が審判をするときは公安を害する虞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検事総長は、最高裁判所に管轄移転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 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若しくは被告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決定を以て、その管轄に属する事件を事物管轄を同じくする他の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2 移送の決定は、被告事件につき証拠調を開始した後は、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3 移送の決定又は移送の請求を却下する決定に対しては、その決定により著しく利益を害される場合に限り、その事由を疎明して、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第二章 裁判所職員の除斥及び忌避

**第二十条** 裁判官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職務の執行から除斥される。

- 一 裁判官が被害者であるとき。
- 二 裁判官が被告人又は被害者の親族であるとき、又はあつたとき。
- 三 裁判官が被告人又は被害者の法定代理人、後見監督人、保佐人、保佐監督人、補助人又は補助監督人であるとき。
- 四 裁判官が事件について証人又は鑑定人となつたとき。
- 五 裁判官が事件について被告人の代理人、弁護人又は補佐人となつたとき。
- 六 裁判官が事件について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の職務を行つたとき。
- 七 裁判官が事件について第二百六十六条第二号の決定、略式命令、前審の裁判、第三百九十八条乃至第四百条、第四百十二条若しくは第四百十三條の規定により差し戻し、若しくは移送された場合における原判決又はこれらの裁判の基礎となつた取調べに関与したとき。ただし、受託裁判官として関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十一条** 裁判官が職務の執行から除斥されるべきとき、又は不公平な裁判をする虞があるときは、検察官又は被告人は、これを忌避することができる。

2 弁護人は、被告人のため忌避の申立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被告人の明示した意思に反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二十二条** 事件について請求又は陳述をした後には、不公平な裁判をする虞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裁判官を忌避することはできない。但し、忌避の原因があることを知らなかつたとき、又は忌避の原因がその後に生じ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十三条** 合議体の構成員である裁判官が忌避されたときは、その裁判官所属の裁判所が、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裁判所が地方裁判所であるときは、合議体で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地方裁判所の一人の裁判官又は家庭裁判所の裁判官が忌避されたときはその裁判官所属の裁判所が、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忌避されたときは管轄地方裁判所が、合議体で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忌避された裁判官が忌避の申立てを理由があるものとするときは、その決定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3 忌避された裁判官は、前二項の決定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裁判所が忌避された裁判官の退去により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直近上級の裁判所が、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四条** 訴訟を遅延させる目的のみでされたことの明らかな忌避の申立は、決定で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前条第三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第二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手続に違反してされた忌避の申立を却下する場合も、同様である。

2 前項の場合には、忌避された受命裁判官、地方裁判所の一人の裁判官又は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は、忌避の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五条** 忌避の申立を却下す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六条** この章の規定は、第二十条第七号の規定を除いて、裁判所書記にこれを準用する。

2 決定は、裁判所書記所属の裁判所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第二十四条第一項の場合には、裁判所書記の附属する受命裁判官が、忌避の申立を却下する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 第三章 訴訟能力

**第二十七条** 被告人又は被疑者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代表者が、訴訟行為についてこれを代表する。

2 数人が共同して法人を代表する場合にも、訴訟行為については、各自が、これを代表する。

**第二十八条** 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三十九条又は第四十一条の規定を適用しない罪に当たる事件について、被告人又は被疑者が意思能力を有しないときは、その法定代理人(親権者が二人あるときは、各自。以下同じ。)が、訴訟行為についてこれを代理する。

**第二十九条** 前二条の規定により被告人を代表し、又は代理する者がいない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特別代理人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二条の規定により被疑者を代表し、又は代理する者がいない場合において、検察官、司法警察員又は利害関係人の請求があつたときも、前項と同様である。

3 特別代理人は、被告人又は被疑者を代表し又は代理して訴訟行為をする者ができるまで、その任務を行う。

### 第四章 弁護及び補佐

**第三十条** 被告人又は被疑者は、何時でも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被告人又は被疑者の法定代理人、保佐人、配偶者、直系の親族及び兄弟姉妹は、独立して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一条** 弁護人は、弁護士の中からこれ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簡易裁判所又は地方裁判所においては、裁判所の許可を得たときは、弁護士でない者を弁護人に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地方裁判所においては、他に弁護士の中から選任された弁護人がある場合に限る。

**第三十一条の二** 弁護人を選任しようとする被告人又は被疑者は、弁護士会对し、弁護人の選任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弁護士会は、前項の申出を受けた場合は、速やかに、所属する弁護士の中から弁護人となろうとする者を紹介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弁護士会は、前項の弁護人となろうとする者がいないときは、当該申出をした者に対し、速やか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同項の規定により紹介した弁護士が被告人又は被疑者がした弁護人の選任の申込みを拒んだときも、同様とする。

**第三十二条** 公訴の提起前にした弁護人の選任は、第一審におい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2 公訴の提起後における弁護人の選任は、審級ごと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三条** 被告人に数人の弁護人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規則で、主任弁護人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四条** 前条の規定による主任弁護人の権限について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三十五条** 裁判所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告人又は被疑者の弁護人の数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被告人の弁護人については、特別の事情のあるときに限る。

**第三十六条** 被告人が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所は、その請求により、被告人のため弁護人を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被告人以外の者が選任した弁護人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十六条の二** この法律により弁護人を要する場合を除いて、被告人が前条の請求をするには、資力申告書(その者に属する現金、預金その他政令で定めるこれらに準ずる資産の合計額(以下「資力」という。)及びその内訳を申告する書面をいう。以下同じ。)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六条の三** この法律により弁護人を要する場合を除いて、その資力が基準額(標準的な必要生計費を勘案して一般に弁護人の報酬及び費用を賄うに足りる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額をいう。以下同じ。)以上である被告人が第三十六条の請求をするには、あらかじめ、その請求をする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在る弁護士会に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受けた弁護士会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ときは、前項の地方裁判所又は当該被告事件が係属する裁判所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七条** 左の場合に被告人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裁判所は、職権で弁護人を附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被告人が未成年者であるとき。
- 二 被告人が年齢七十年以上の者であるとき。
- 三 被告人が耳の聞えない者又は口のきけない者であるとき。
- 四 被告人が心神喪失者又は心神耗弱者である疑があるとき。
- 五 その他必要と認めるとき。

**第三十七条の二** 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長期三年を超える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事件について被疑者に対して勾留状が発せら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被疑者が貧困その

他の事由により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官は、その請求により、被疑者のため弁護人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被疑者以外の者が選任した弁護人がある場合又は被疑者が釈放され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請求は、同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勾留を請求された被疑者も、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三十七条の三** 前条第一項の請求をするには、資力申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の資力が基準額以上である被疑者が前条第一項の請求をするには、あらかじめ、その勾留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の所属する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在る弁護士会に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り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受けた弁護士会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ときは、前項の地方裁判所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七条の四** 裁判官は、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被疑者に対して勾留状が発せられ、かつ、これに弁護人がない場合において、精神上の障害その他の事由により弁護人を必要と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疑いがある被疑者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弁護人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疑者が釈放され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十七条の五** 裁判官は、死刑又は無期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事件について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又は前条の規定により弁護人を付する場合又は付した場合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更に弁護人一人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疑者が釈放され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十八条**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いて裁判所若しくは裁判長又は裁判官が付すべき弁護人は、弁護士の中からこれ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弁護人は、旅費、日当、宿泊料及び報酬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八条之二** 裁判官による弁護人の選任は、被疑者がその選任に係る事件について釈放されたときは、その効力を失う。ただし、その釈放が勾留の執行停止によ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十八条之三** 裁判所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裁判所若しくは裁判長又は裁判官が付した弁護人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三十条の規定により弁護人が選任されたことその他の事由により弁護人を付する必要がなくなつたとき。
  - 二 被告人と弁護人との利益が相反する状況にあり弁護人にその職務を継続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き。
  - 三 心身の故障その他の事由により、弁護人が職務を行うことができず、又は職務を行うことが困難となつたとき。
  - 四 弁護人がその任務に著しく反したことによりその職務を継続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き。
  - 五 弁護人に対する暴行、脅迫その他の被告人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り弁護人にその職務を継続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き。
- 2 弁護人を解任するには、あらかじめ、そ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3 弁護人を解任するに当たっては、被告人の権利を不当に制限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公訴の提起前は、裁判官が付した弁護人の解任は、裁判官がこれを行う。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三十八条之四** 裁判所又は裁判官の判断を誤らせる目的で、その資力について虚偽の記載のある資力申告書を提出した者は、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第三十九条** 身体の拘束を受けている被告人又は被疑者は、弁護人又は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者の依頼により弁護人となろうとする者(弁護士でない者にあつては、第三十一条第二項の許可があつた後に限る。)と立会人なくして接見し、又は書類若し

くは物の授受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接見又は授受については、法令(裁判所の規則を含む。以下同じ。)で、被告人又は被疑者の逃亡、罪証の隠滅又は戒護に支障のある物の授受を防ぐため必要な措置を規定することができる。

3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司法警察員及び司法巡查をいう。以下同じ。)は、捜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公訴の提起前に限り、第一項の接見又は授受に関し、その日時、場所及び時間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その指定は、被疑者が防禦の準備をする権利を不当に制限するようなものであつてはならない。

**第四十条** 弁護人は、公訴の提起後は、裁判所において、訴訟に関する書類及び証拠物を閲覧し、且つ謄写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証拠物を謄写するについては、裁判長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媒体は、謄写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四十一条** 弁護人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に限り、独立して訴訟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二条** 被告人の法定代理人、保佐人、配偶者、直系の親族及び兄弟姉妹は、何時でも補佐人となることができる。

2 補佐人となるには、審級ごとにその旨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補佐人は、被告人の明示した意思に反しない限り、被告人がすることのできる訴訟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第五章 裁 判

**第四十三条** 判決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口頭弁論に基い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決定又は命令は、口頭弁論に基いてこれをするを要しない。
- 3 決定又は命令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場合には、事実の取調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前項の取調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又は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四条** 裁判には、理由を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上訴を許さない決定又は命令には、理由を附することを要しない。但し、第四百二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異議の申立をすることができる決定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四十五条** 判決以外の裁判は、判事補が一人でこれをするができる。

**第四十六条** 被告人その他訴訟関係人は、自己の費用で、裁判書又は裁判を記載した調書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第六章 書類及び送達

**第四十七条** 訴訟に関する書類は、公判の開廷前には、これを公にしてはならない。但し、公益上の必要その他の事由があつて、相当と認められ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四十八条** 公判期日における訴訟手続については、公判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公判調書に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判期日における審判に関する重要な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公判調書は、各公判期日後速かに、遅くとも判決を宣告するまでにこれを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判決を宣告する公判期日の調書は当該公判期日後七日以内に、公判期日から判決を宣告する日までの期間が十日に満たない場合における当該公判期日の調書は当該公判期日後十日以内(判決を宣告する日までの期間が三日に満たないときは、当該判決を宣告する公判期日後七日以内)に、整理すれば足りる。

**第四十九条** 被告人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公判調書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告人も、これ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被告人は、読む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目の見えないときは、公判調書の朗読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条** 公判調書が次回の公判期日までに整理されなか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次回の公判期日において又はその期日までに、前回の公判期日における証人の供述の要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請求をした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証人の供述の要旨の正確性につき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その旨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告人及び弁護人の出頭なくして開廷した公判期日の公判調書が、次回の公判期日までに整理されなか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は、次回の公判期日において又はその期日までに、出頭した被告人又は弁護人に前回の公判期日における審理に関する重要な事項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一条**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公判調書の記載の正確性につき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異議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その旨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異議の申立ては、遅くとも当該審級における最終の公判期日後十四日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四十八条第三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判決を宣告する公判期日後に整理された調書については、整理ができ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五十二条** 公判期日における訴訟手続で公判調書に記載されたものは、公判調書のみによつてこれ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三条** 何人も、被告事件の終結後、訴訟記録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訴訟記録の保存又は裁判所若しくは検察庁の事務に支障の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弁論の公開を禁止した事件の訴訟記録又は一般の閲覧に適しないものとしてその閱

覽が禁止された訴訟記録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訴訟関係人又は閲覧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つて特に訴訟記録の保管者の許可を受けた者でなければ、これ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日本国憲法第八十二条第二項 但書に掲げる事件については、閲覧を禁止することはできない。

4 訴訟記録の保管及びその閲覧の手数料については、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五十三条の二** 訴訟に関する書類及び押収物については、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四十二号）及び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四百十号）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訴訟に関する書類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ている個人情報については、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八号）第四章及び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九号）第四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五十四条** 書類の送達については、裁判所の規則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民事訴訟に関する法令の規定(公示送達に関する規定を除く。)を準用する。

## 第七章 期間

**第五十五条** 期間の計算については、時で計算するものは、即時からこれを起算し、日、月又は年で計算するものは、初日を算入しない。但し、時効期間の初日は、時間を論じないで一日としてこれを計算する。

2 月及び年は、暦に従つてこれを計算する。

3 期間の末日が日曜日、土曜日、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二年法律第七十八号）に規定する休日、一月二日、一月三日又は十二月二十九日から十二月三十一日までの日に当たるときは、これを期間に算入しない。ただし、時効期間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五十六条** 法定の期間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訴訟行為をすべき者の住居又は事務所の所在地と裁判所又は検察庁の所在地との距離及び交通通信の便否に従い、これ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宣告した裁判に対する上訴の提起期間には、これを適用しない。

## 第八章 被告人の召喚、勾引及び勾留

**第五十七条** 裁判所は、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相当の猶予期間を置いて、被告人を召喚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八条** 裁判所は、次の場合には、被告人を勾引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被告人が定まつた住居を有しないとき。
- 二 被告人が、正当な理由がなく、召喚に応じないとき、又は応じないおそれがあるとき。

**第五十九条** 勾引した被告人は、裁判所に引致した時から二十四時間以内にこれ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時間内に勾留状が発せられ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六十条** 裁判所は、被告人が罪を犯したことを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場合で、左の各号の一にあたるときは、これを勾留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被告人が定まつた住居を有しないとき。
- 二 被告人が罪証を隠滅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き。
- 三 被告人が逃亡し又は逃亡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き。

2 勾留の期間は、公訴の提起があつた日から二箇月とする。特に継続の必要がある場合においては、具体的にその理由を附した決定で、一箇月ごとにこれ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第八十九条第一号、第三号、第四号又は第六号にあたる場合を除いては、更新は、一回に限るものとする。

3 三十万円(刑法、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大正十五年法律第六十号)及び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昭和十九年法律第四号)の罪以外の罪については、当分の

間、二万円)以下の罰金、拘留又は科料に当たる事件については、被告人が定まつた住居を有しない場合に限り、第一項の規定を適用する。

**第六十一条** 被告人の勾留は、被告人に対し被告事件を告げこれに関する陳述を聴いた後でなければ、これをする事ができない。但し、被告人が逃亡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六十二条** 被告人の召喚、勾引又は勾留は、召喚状、勾引状又は勾留状を發してこれを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 召喚状には、被告人の氏名及び住居、罪名、出頭すべき年月日時及び場所並びに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ときは勾引状を發することがある旨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裁判長又は受命裁判官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四条** 勾引状又は勾留状には、被告人の氏名及び住居、罪名、公訴事実の要旨、引致すべき場所又は勾留すべき刑事施設、有効期間及びその期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令状は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並びに發付の年月日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裁判長又は受命裁判官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告人の氏名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人相、体格その他被告人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項で被告人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3 被告人の住居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これを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六十五条** 召喚状は、これを送達する。

2 被告人から期日に出頭する旨を記載した書面を差し出し、又は出頭した被告人に対し口頭で次回の出頭を命じたときは、召喚状を送達した場合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口頭で出頭を命じた場合には、その旨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に近接する刑事施設にいる被告人に対しては、刑事施設職員(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指名する刑事施設の職員をいう。以下同じ。)に通知してこれを召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被告人が刑事施設職員から通知を受けた時に召喚状の送達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第六十六条** 裁判所は、被告人の所在地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被告人の勾引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

2 受託裁判官は、受託の権限を有する他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転囑することができる。

3 受託裁判官は、受託事項について権限を有しないときは、受託の権限を有する他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囑託を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4 囑託又は移送を受けた裁判官は、勾引状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六十四条の規定は、前項の勾引状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勾引状に囑託によつてこれを発する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七条** 前条の場合には、囑託によつて勾引状を發した裁判官は、被告人を引致した時から二十四時間以内にその人違でないかどうかを取り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告人が人違でないときは、速やかに且つ直接これを指定された裁判所に送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囑託によつて勾引状を發した裁判官は、被告人が指定された裁判所に到着すべき期間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場合には、第五十九条の期間は、被告人が指定された裁判所に到着した時からこれを起算する。

**第六十八条**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指定の場所に被告人の出頭又は同行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被告人が正当な理由がなくこれに応じないときは、その場所に勾引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第五十九条の期間は、被告人をその場所に引致した時からこれを起算する。

**第六十九条** 裁判長は、急速を要する場合には、第五十七条乃至第六十二条、第六十五条、第六十六条及び前条に規定する処分をし、又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条** 勾引状又は勾留状は、検察官の指揮によつて、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がこれを執行する。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には、裁判長、受命裁判官又は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は、その執行を指揮することができる。

2 刑事施設にいる被告人に対して発せられた勾留状は、検察官の指揮によつて、刑事施設職員がこれを執行する。

**第七十一条** 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必要があるときは、管轄区域外で、勾引状若しくは勾留状を執行し、又はその地の検察事務官若しくは司法警察職員にその執行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二条** 被告人の所在地が判らないときは、裁判長は、検事長にその捜査及び勾引状又は勾留状の執行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

2 囑託を受けた検事長は、その管内の検察官に捜査及び勾引状又は勾留状の執行の手続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三条** 勾引状を執行するには、これを被告人に示した上、できる限り速やかに且つ直接、指定された裁判所その他の場所に引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六十六条第四項の勾引状については、これを発した裁判官に引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勾留状を執行するには、これを被告人に示した上、できる限り速やかに、かつ、直接、指定された刑事施設に引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勾引状又は勾留状を所持しないためこれを示す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急速を要するとき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告人に対し公訴事実の要旨及び令状が発せられている旨を告げて、その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令状は、できる限り速やかにこれ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四条** 勾引状又は勾留状の執行を受けた被告人を護送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仮に最寄りの刑事施設にこれを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五条** 勾引状の執行を受けた被告人を引致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これを刑事施設に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六条** 被告人を勾引したときは、直ちに被告人に対し、公訴事実の要旨及び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並びに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自ら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公訴事実の要旨を告げれば足りる。

2 前項の告知は、合議体の構成員又は裁判所書記にこ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第六十六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勾引状を発した場合には、第一項の告知は、その勾引状を発した裁判官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裁判所書記にその告知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七条** 逮捕又は勾引に引き続き勾留する場合を除いて被告人を勾留するには、被告人に対し、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及び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自ら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第六十一条但書の場合には、被告人を勾留した後直ちに、前項に規定する事項の外、公訴事実の要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公訴事実の要旨を告げれば足りる。

3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二項の告知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七十八条** 勾引又は勾留された被告人は、裁判所又は刑事施設の長若しくはその代理者に弁護士、弁護士法人又は弁護士会を指定して弁護人の選任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申出を受けた裁判所又は刑事施設の長若しくはその代理者は、直ちに被告人の指定した弁護士、弁護士法人又は弁護士会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被

告人が二人以上の弁護士又は二以上の弁護士法人若しくは弁護士会を指定して前項の申出をしたときは、そのうちの一人の弁護士又は一の弁護士法人若しくは弁護士会にこれを通知すれば足りる。

**第七十九条** 被告人を勾留したときは、直ちに弁護人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被告人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被告人の法定代理人、保佐人、配偶者、直系の親族及び兄弟姉妹のうち被告人の指定する者一人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条** 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は、第三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以外の者と、法令の範囲内で、接見し、又は書類若しくは物の授受をすることができる。勾引状により刑事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被告人も、同様である。

**第八十一条** 裁判所は、逃亡し又は罪証を隠滅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と第三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以外の者との接見を禁じ、又はこれと授受すべき書類その他の物を検閲し、その授受を禁じ、若しくはこれを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る。但し、糧食の授受を禁じ、又はこれを差し押えることはできない。

**第八十二条** 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は、裁判所に勾留の理由の開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の弁護人、法定代理人、保佐人、配偶者、直系の親族、兄弟姉妹その他利害関係人も、前項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請求は、保釈、勾留の執行停止若しくは勾留の取消があつたとき、又は勾留状の効力が消滅したときは、その効力を失う。

**第八十三条** 勾留の理由の開示は、公開の法廷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法廷は、裁判官及び裁判所書記が列席してこれを開く。

3 被告人及びその弁護人が出頭しないときは、開廷することはできない。但し、被告人の出頭については、被告人が病気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つて出頭することが

できず且つ被告人に異議がないとき、弁護人の出頭については、被告人に異議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八十四条** 法廷においては、裁判長は、勾留の理由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検察官又は被告人及び弁護人並びにこれらの者以外の請求者は、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但し、裁判長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意見の陳述に代え意見を記載した書面を差し出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八十五条** 勾留の理由の開示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八十六条** 同一の勾留について第八十二条の請求が二以上ある場合には、勾留の理由の開示は、最初の請求についてこれを行う。その他の請求は、勾留の理由の開示が終了後、決定で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七条** 勾留の理由又は勾留の必要がなくなつたときは、裁判所は、検察官、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若しくはその弁護人、法定代理人、保佐人、配偶者、直系の親族若しくは兄弟姉妹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決定を以て勾留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八十二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請求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八十八条** 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又はその弁護人、法定代理人、保佐人、配偶者、直系の親族若しくは兄弟姉妹は、保釈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八十二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請求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八十九条** 保釈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次の場合を除いては、これ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被告人が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短期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罪を犯したものであるとき。

- 二 被告人が前に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長期十年を超える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き有罪の宣告を受けたことがあるとき。
- 三 被告人が常習として長期三年以上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を犯したものであるとき。
- 四 被告人が罪証を隠滅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き。
- 五 被告人が、被害者その他事件の審判に必要な知識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者若しくはその親族の身体若しくは財産に害を加え又はこれらの者を畏怖させる行為を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き。
- 六 被告人の氏名又は住居が分からないとき。

**第九十条** 裁判所は、適当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保釈を許すことができる。

**第九十一条** 勾留による拘禁が不当に長くなつたときは、裁判所は、第八十八条に規定する者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決定を以て勾留を取り消し、又は保釈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八十二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請求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九十二条** 裁判所は、保釈を許す決定又は保釈の請求を却下する決定をするには、檢察官の意見を聴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 2 檢察官の請求による場合を除いて、勾留を取り消す決定をするときも、前項と同様である。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九十三条** 保釈を許す場合には、保証金額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保証金額は、犯罪の性質及び情状、証拠の証明力並びに被告人の性格及び資産を考慮して、被告人の出頭を保証するに足りる相当な金額でなければならない。
- 3 保釈を許す場合には、被告人の住居を制限しその他適当と認める条件を附す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四条** 保釈を許す決定は、保証金の納付があつた後でなければ、これを執行する

ことができない。

- 2 裁判所は、保釈請求者でない者に保証金を納め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 3 裁判所は、有価証券又は裁判所の適当と認める被告人以外の者の差し出した保証書を以て保証金に代え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第九十五条** 裁判所は、適当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を親族、保護団体その他の者に委託し、又は被告人の住居を制限して、勾留の執行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六条** 裁判所は、左の各号の一にあたる場合に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決定を以て保釈又は勾留の執行停止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一 被告人が、召喚を受け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とき。
  - 二 被告人が逃亡し又は逃亡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き。
  - 三 被告人が罪証を隠滅し又は罪証を隠滅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き。
  - 四 被告人が、被害者その他事件の審判に必要な知識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者若しくはその親族の身体若しくは財産に害を加え若しくは加えようとし、又はこれらの者を畏怖させる行為をしたとき。
  - 五 被告人が住居の制限その他裁判所の定めた条件に違反したとき。
- 2 保釈を取り消す場合には、裁判所は、決定で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を没取することができる。
- 3 保釈された者が、刑の言渡を受けその判決が確定した後、執行のため呼出を受け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とき、又は逃亡した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決定で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を没取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十七条** 上訴の提起期間内の事件でまだ上訴の提起がないものについて、勾留の間を更新し、勾留を取り消し、又は保釈若しくは勾留の執行停止をし、若しくはこれを取り消すべき場合には、原裁判所が、そ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上訴中の事件で訴訟記録が上訴裁判所に到達し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前項の決定を

すべき裁判所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3 前二項の規定は、勾留の理由の開示をすべき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第九十八条** 保釈若しくは勾留の執行停止を取り消す決定があつたとき、又は勾留の執行停止の期間が満了したときは、検察事務官、司法警察職員又は刑事施設職員は、検察官の指揮により、勾留状の謄本及び保釈若しくは勾留の執行停止を取り消す決定の謄本又は期間を指定した勾留の執行停止の決定の謄本を被告人に示してこれを刑事施設に収容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書面を所持しないためこれを示す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急速を要す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検察官の指揮により、被告人に対し保釈若しくは勾留の執行停止が取り消された旨又は勾留の執行停止の期間が満了した旨を告げて、これを刑事施設に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書面は、できる限り速やかにこれ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七十一条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収容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 第九章 押収及び搜索

**第九十九条**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証拠物又は没収すべき物と思料するものを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る。但し、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裁判所は、差し押えるべき物を指定し、所有者、所持者又は保管者にその物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一百条** 裁判所は、被告人から発し、又は被告人に対して発した郵便物、信書便物又は電信に関する書類で法令の規定に基づき通信事務を取り扱う者が保管し、又は所持するものを差し押え、又は提出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該当しない郵便物、信書便物又は電信に関する書類で法令の規定に基づき通信事務を取り扱う者が保管し、又は所持するものは、被告事件に関係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状況のあるものに限り、これを差し押え、又は提出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発信人又は受信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通知によつて審理が妨げられる虞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百一条** 被告人その他の者が遺留した物又は所有者、所持者若しくは保管者が任意に提出した物は、これを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二条**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被告人の身体、物又は住居その他の場所に就き、搜索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被告人以外の者の身体、物又は住居その他の場所については、押収すべき物の存在を認めるに足りる状況のある場合に限り、搜索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三条** 公務員又は公務員であつた者が保管し、又は所持する物について、本人又は当該公務所から職務上の秘密に関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申し立てたときは、当該監督官庁の承諾がなければ、押収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但し、当該監督官庁は、国の重大な利益を害する場合を除いては、承諾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第百四条** 左に掲げる者が前条の申立をしたときは、第一号に掲げる者についてはその院、第二号に掲げる者については内閣の承諾がなければ、押収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一 衆議院若しくは参議院の議員又はその職に在つた者

二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务大臣又はその職に在つた者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衆議院、参議院又は内閣は、国の重大な利益を害する場合を除いては、承諾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第百五条** 医師、歯科医師、助産師、看護師、弁護士(外国法事務弁護士を含む。)、弁理士、公証人、宗教の職に在る者又はこれらの職に在つた者は、業務上委託を受けたため、保管し、又は所持する物で他人の秘密に関するものについては、押収を拒むことができる。但し、本人が承諾した場合、押収の拒絶が被告人のためのみにする権利の濫用と認められる場合(被告人が本人である場合を除く。)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

事由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百六条** 公判廷外における差押又は搜索は、差押状又は搜索状を發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ぬ。

**第百七条** 差押状又は搜索状には、被告人の氏名、罪名、差し押えるべき物又は搜索すべき場所、身体若しくは物、有効期間及びその期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令状は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並びに發付の年月日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裁判長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六十四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差押状又は搜索状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百八条** 差押状又は搜索状は、檢察官の指揮によつて、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がこれを執行する。但し、裁判所が被告人の保護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裁判長は、裁判所書記又は司法警察職員にその執行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に関し、その執行をする者に対し書面で適當と認める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指示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第七十一条の規定は、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百九条** 檢察事務官又は裁判所書記は、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司法警察職員に補助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百十条** 差押状又は搜索状は、処分を受ける者にこれ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十一条** 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については、錠をはずし、封を開き、その他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公判廷で差押又は搜索をする場合も、同様である。

2 前項の処分は、押収物についても、これをする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十二条** 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中は、何人に対しても、許可を得ないでその場所

に出入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禁止に従わない者は、これを退去させ、又は執行が終るまでこれに看守者を附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十三条**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に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但し、身体の拘束を受けている被告人は、この限りでない。

2 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をする者は、あらかじめ、執行の日時及び場所を前項の規定により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これらの者があらかじめ裁判所に立ち会わない意思を明示した場合及び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裁判所は、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被告人をこれに立ち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

**第百十四条** 公務所内で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をするときは、その長又はこれに代るべき者に通知してその処分に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場合を除いて、人の住居又は人の看守する邸宅、建造物若しくは船舶内で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をするときは、住居主若しくは看守者又はこれらの者に代るべき者をこれに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らの者を立ち合わ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隣人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を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十五条** 女子の身体について搜索状の執行をする場合には、成年の女子をこれに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百十六条** 日出前、日没後には、令状に夜間でも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記載があれば、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のため、人の住居又は人の看守する邸宅、建造物若しくは船舶内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

2 日没前に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に着手したときは、日没後でも、その処分を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百七十七条** 左の場所で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をするについて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制限によることを要しない。

- 一 賭博、富くじ又は風俗を害する行為に常用されるものと認められる場所
- 二 旅館、飲食店その他夜間でも公衆が出入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但し、公開した時間内に限る。

**第一百八十条** 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を中止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執行が終るまでその場所を閉鎖し、又は看守者を置くことができる。

**第一百九十条** 搜索をした場合において証拠物又は没収すべきものがないときは、搜索を受けた者の請求により、その旨の証明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十条** 押収をした場合には、その目録を作り、所有者、所持者若しくは保管者又はこれらの者に代るべき者に、これ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十一条** 運搬又は保管に不便な押収物については、看守者を置き、又は所有者その他の者に、その承諾を得て、これを保管させることができる。

- 2 危険を生ずる虞がある押収物は、これを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二項の処分は、裁判所が特別の指示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差押状の執行をした者も、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二条** 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押収物で滅失若しくは破損の虞があるもの又は保管に不便なものについては、これを売却してその代価を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三条** 押収物で留置の必要がないものは、被告事件の終結を待たないで、決定でこれを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押収物は、所有者、所持者、保管者又は差出人の請求により、決定で仮にこれを還付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決定をするについて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二十四条** 押収した贓物で留置の必要がないものは、被害者に還付すべき理由が明らかとなしに限り、被告事件の終結を待たないで、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決定でこれを被害者に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民事訴訟の手續に従い、利害關係人がその権利を主張することを妨げない。

**第二百二十五条** 押収又は搜索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又はこれをすべき地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

2 受託裁判官は、受託の権限を有する他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転嘱することができる。

3 受託裁判官は、受託事項について権限を有しないときは、受託の権限を有する他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囑託を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4 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がする押収又は搜索については、裁判所がする押収又は搜索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但し、第百条第三項の通知は、裁判所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二十六条** 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勾引状又は勾留状を執行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人の住居又は人の看守する邸宅、建造物若しくは船舶内に入り、被告人の搜索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搜索状は、これを必要としない。

**第二百二十七条** 第百十一条、第百十二条、第百十四条及び第百十八条の規定は、前条の規定により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がする搜索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は、第百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ことを要しない。

## 第十章 検 証

**第二百二十八条** 裁判所は、事実発見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検証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二十九条** 検証については、身体の検査、死体の解剖、墳墓の発掘、物の破壊その他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三十条** 日出前、日没後には、住居主若しくは看守者又はこれらの者に代るべき者の承諾がなければ、検証のため、人の住居又は人の看守する邸宅、建造物若しくは船舶内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但し、日出後では検証の目的を達することができない虞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日没前検証に着手したときは、日没後でもその処分を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百十七条に規定する場所については、第一項に規定する制限によることを要しない。

**第二百三十一条** 身体の検査については、これを受ける者の性別、健康状態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た上、特にその方法に注意し、その者の名誉を害しない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女子の身体を検査する場合には、医師又は成年の女子をこれに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三十二条** 裁判所は、身体の検査のため、被告人以外の者を裁判所又は指定の場所に召喚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三十三条** 前条の規定により召喚を受け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ときは、決定で、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し、かつ、出頭しないために生じた費用の賠償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三十四条** 第三百三十二条の規定により召喚を受け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者は、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拘留に処する。

2 前項の罪を犯した者には、情状により、罰金及び拘留を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三十五条** 第三百三十二条の規定による召喚に応じない者は、更にこれを召喚し、又はこれを勾引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三十六条** 第六十二条、第六十三条及び第六十五条の規定は、第三百三十二条及び前条の規定による召喚について、第六十二条、第六十四条、第六十六条、第六十七条、第七十条、第七十一条及び第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は、前条の規定による勾引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三百三十七条** 被告人又は被告人以外の者が正当な理由がなく身体を検査を拒んだときは、決定で、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し、かつ、その拒絶により生じた費用の賠償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三十八条** 正当な理由がなく身体を検査を拒んだ者は、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拘留に処する。

2 前項の罪を犯した者には、情状により、罰金及び拘留を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三十九条** 裁判所は、身体を検査を拒む者を過料に処し、又はこれに刑を科しても、その効果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まま、身体を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三百四十条** 裁判所は、第三百三十七条の規定により過料を科し、又は前条の規定により身体を検査をするにあたっては、あらかじめ、検察官の意見を聴き、且つ、身体を検査を受ける者の異議の理由を知るため適当な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十一条** 検証をするに必要があるときは、司法警察職員に補助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十二条** 第一百十二条乃至第一百十四条、第一百八条及び第二百二十五条の規定は、検証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 第十一章 証人尋問

**第四百十三条** 裁判所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何人でも証人としてこれを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十四条** 公務員又は公務員であつた者が知り得た事実について、本人又は当該公務所から職務上の秘密に関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申し立てたときは、当該監督官庁の承諾がなければ証人としてこれを尋問することはできない。但し、当該監督官庁は、国の重大な利益を害する場合を除いては、承諾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第四百十五条** 左に掲げる者が前条の申立をしたときは、第一号に掲げる者についてはその院、第二号に掲げる者については内閣の承諾がなければ、証人としてこれを尋問することはできない。

一 衆議院若しくは参議院の議員又はその職に在つた者

二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务大臣又はその職に在つた者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衆議院、参議院又は内閣は、国の重大な利益を害する場合を除いては、承諾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第四百十六条** 何人も、自己が刑事訴追を受け、又は有罪判決を受ける虞のある証言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四百十七条** 何人も、左に掲げる者が刑事訴追を受け、又は有罪判決を受ける虞のあ

る証言を拒むことができる。

- 一 自己の配偶者、三親等内の血族若しくは二親等内の姻族又は自己とこれらの親族関係があつた者
- 二 自己の後見人、後見監督人又は保佐人
- 三 自己を後見人、後見監督人又は保佐人とする者

**第四百八条** 共犯又は共同被告人の一人又は数人に対し前条の関係がある者でも、他の共犯又は共同被告人のみ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証言を拒むことはできない。

**第四百九条** 医師、歯科医師、助産師、看護師、弁護士(外国法事務弁護士を含む。)、弁理士、公証人、宗教の職に在る者又はこれらの職に在つた者は、業務上委託を受けたため知り得た事実で他人の秘密に関するものについては、証言を拒むことができる。但し、本人が承諾した場合、証言の拒絶が被告人のためのみにする権利の濫用と認められる場合(被告人が本人である場合を除く。)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事由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四百五十条** 召喚を受けた証人が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ときは、決定で、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し、かつ、出頭しないために生じた費用の賠償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五十一条** 証人として召喚を受け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者は、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拘留に処する。  
2 前項の罪を犯した者には、情状により、罰金及び拘留を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五十二条** 召喚に応じない証人に対しては、更にこれを召喚し、又はこれを勾引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五十三条** 第六十二条、第六十三条及び第六十五条の規定は、証人の召喚につい

て、第六十二条、第六十四条、第六十六条、第六十七条、第七十条、第七十一条及び第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は、証人の勾引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五十三条の二** 勾引状の執行を受けた証人を護送する場合又は引致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一時最寄の警察署その他の適当な場所にこれを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五十四条** 証人に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宣誓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五十五条** 宣誓の趣旨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は、宣誓をさせないで、これを尋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に掲げる者が宣誓をしたときでも、その供述は、証言としての効力を妨げられない。

**第二百五十六条** 証人には、その実験した事実により推測した事項を供述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供述は、鑑定に属するものでも、証言としての効力を妨げられない。

**第二百五十七条**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証人の尋問に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

2 証人尋問の日時及び場所は、あらかじめ、前項の規定により尋問に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者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これらの者があらかじめ裁判所に立ち会わない意思を明示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第一項に規定する者は、証人の尋問に立ち会ったときは、裁判長に告げて、その証人を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五十七条の二** 裁判所は、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おいて、証人の年齢、心身の状態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証人が著しく不安又は緊張を覚え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その不安又は緊張を緩和するのに適当であり、かつ、裁判官若しくは訴訟関係人の尋問若しくは証人の供述を妨げ、又はその供述の内容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者を、その証人の供述

中、証人に付き添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証人に付き添うこととされた者は、その証人の供述中、裁判官若しくは訴訟関係人の尋問若しくは証人の供述を妨げ、又はその供述の内容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ような言動をしてはならない。

**第二百五十七条の三** 裁判所は、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おいて、犯罪の性質、証人の年齢、心身の状態、被告人との関係その他の事情により、証人が被告人の面前(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供述するときは圧迫を受け精神の平穩を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であつ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被告人とその証人との間で、一方から又は相互に相手の状態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採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告人から証人の状態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については、弁護人が出頭している場合に限り、採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おいて、犯罪の性質、証人の年齢、心身の状態、名誉に対する影響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傍聴人とその証人との間で、相互に相手の状態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採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五十七条の四** 裁判所は、次に掲げる者を証人として尋問する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裁判官及び訴訟関係人が証人を尋問するために在席する場所以外の場所(これらの者が在席する場所と同一の構内に限る。)にその証人を在席させ、映像と音声の送受信により相手の状態を相互に認識しながら通話をすることができる方法によつて、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刑法第七十六条から第七十八条の二 まで若しくは第八十一条の罪、同法第二百二十五条若しくは第二百二十六条の二第三項 の罪(わいせつ又は結婚の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同法第二百二十七条第一項 (第二百二十五条又は第二百二十六条の二第三項の罪を犯した者を幫助する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三項 (わいせつの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

二百四十一条前段の罪又はこれらの罪の未遂罪の被害者

- 二 児童福祉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六十四号)第六十条第一項の罪若しくは同法第三十四条第一項第九号に係る同法第六十条第二項の罪又は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五十二号)第四条から第八条までの罪の被害者
  - 三 前二号に掲げる者のほか、犯罪の性質、証人の年齢、心身の状態、被告人との関係その他の事情により、裁判官及び訴訟関係人が証人を尋問するために在席する場所において供述するときは圧迫を受け精神の平穩を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
- 2 前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証人尋問を行う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その証人が後の刑事手続において同一の事実につき再び証人として供述を求められることがあると思料する場合であつて、証人の同意があ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その証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その状況を記録媒体(映像及び音声を同時に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物をいう。以下同じ。)に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規定により証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その状況を記録した記録媒体は、訴訟記録に添付して調書の一部とするものとする。

**第二百五十八条** 裁判所は、証人の重要性、年齢、職業、健康状態その他の事情と事案の軽重とを考慮した上、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必要と認めるときは、裁判所外にこれを召喚し、又はその現在場所でこれを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場合には、裁判所は、あらかじめ、検察官、被告人及び弁護人に、尋問事項を知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 3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前項の尋問事項に附加して、必要な事項の尋問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五十九条** 裁判所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前条の証人尋問に立ち会わなかつたときは、立ち会わなかつた者に、証人の供述の内容を知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証人の供述が被告人に予期しなかつた著しい不利益なものである場合には、被告人又は弁護人は、更に必要な事項の尋問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所は、前項の請求を理由がないもの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百六十条** 証人が正当な理由がなく宣誓又は証言を拒んだときは、決定で、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し、かつ、その拒絶により生じた費用の賠償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百六十一条** 正当な理由がなく宣誓又は証言を拒んだ者は、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拘留に処する。

2 前項の罪を犯した者には、情状により、罰金及び拘留を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百六十二条**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決定で指定の場所に証人の同行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証人が正当な理由がなく同行に応じないときは、これを勾引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百六十三条** 裁判所外で証人を尋問すべきとき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又は証人の所在地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

2 受託裁判官は、受託の権限を有する他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転囑することができる。

3 受託裁判官は、受託事項について権限を有しないときは、受託の権限を有する他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囑託を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4 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は、証人の尋問に関し、裁判所又は裁判長に属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第一百五十条及び第一百六十条の決定は、裁判所もこれをするることができる。

5 第一百五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一百五十九条に規定する手続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裁判所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六十四条** 証人は、旅費、日当及び宿泊料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正当な理由がなく宣誓又は証言を拒んだ者は、この限りでない。

2 証人は、あらかじめ旅費、日当又は宿泊料の支給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せず又は宣誓若しくは証言を拒んだときは、その支給を受けた費用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二章 鑑定

**第百六十五条** 裁判所は、学識経験のある者に鑑定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六十六条** 鑑定人には、宣誓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六十七条** 被告人の心神又は身体に関する鑑定をさせるについては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期間を定め、病院その他の相当な場所に被告人を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留置は、鑑定留置状を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留置につき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被告人を収容すべき病院その他の場所の管理者の申出により、又は職権で、司法警察職員に被告人の看守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4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留置の期間を延長し又は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

5 勾留に関する規定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第一項の留置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但し、保釈に関する規定は、この限りでない。

6 第一項の留置は、未決勾留日数の算入については、これを勾留とみなす。

**第百六十七条の二** 勾留中の被告人に対し鑑定留置状が執行されたときは、被告人が留置されている間、勾留は、その執行を停止されたものと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前条第一項の処分が取り消され又は留置の期間が満了したときは、第九十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六十八条** 鑑定人は、鑑定について必要がある場合には、裁判所の許可を受けて、

人の住居若しくは人の看守する邸宅、建造物若しくは船舶内に入り、身体を検査し、死体を解剖し、墳墓を発掘し、又は物を破壊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前項の許可をするには、被告人の氏名、罪名及び立ち入るべき場所、検査すべき身体、解剖すべき死体、発掘すべき墳墓又は破壊すべき物並びに鑑定人の氏名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許可状を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身体を検査に関し、相当と認める条件を附することができる。

4 鑑定人は、第一項の処分を受ける者に許可状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三項の規定は、鑑定人が公判廷でする第一項の処分については、これを適用しない。

6 第三百十一条、第三百七条、第三百八条及び第四百条の規定は、鑑定人の第一項の規定によつてする身体を検査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三百六十九条** 裁判所は、合議体の構成員に鑑定について必要な処分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但し、第三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処分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百七十条** 検察官及び弁護人は、鑑定に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第五百七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三百七十一条** 前章の規定は、勾引に関する規定を除いて、鑑定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三百七十二條** 身体を検査を受ける者が、鑑定人の第三百六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つてする身体を検査を拒んだ場合には、鑑定人は、裁判官にその者の身体を検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第十章の規定に準じ身体を検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七十三条** 鑑定人は、旅費、日当及び宿泊料の外、鑑定料を請求し、及び鑑定に必要な費用の支払又は償還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 鑑定人は、あらかじめ鑑定に必要な費用の支払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正当な理由

がなく、出頭せず又は宣誓若しくは鑑定を拒んだときは、その支払を受けた費用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百七十四条** 特別の知識によつて知り得た過去の事実に関する尋問については、この章の規定によらないで、前章の規定を適用する。

### 第十三章 通訳及び翻訳

**第七百七十五条** 国語に通じない者に陳述をさせる場合には、通訳人に通訳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百七十六条** 耳の聞えない者又は口のきけない者に陳述をさせる場合には、通訳人に通訳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七百七十七条** 国語でない文字又は符号は、これを翻訳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七百七十八条** 前章の規定は、通訳及び翻訳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 第十四章 証拠保全

**第七百七十九条** 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は、あらかじめ証拠を保全しておかなければその証拠を使用することが困難な事情があるときは、第一回の公判期日前に限り、裁判官に押収、搜索、検証、証人の尋問又は鑑定の処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その処分に関し、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第八百八十条** 検察官及び弁護人は、裁判所において、前条第一項の処分に関する書類及び証拠物を閲覧し、且つ謄写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弁護人が証拠物の謄写をする

については、裁判官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媒体は、謄写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被告人又は被疑者は、裁判官の許可を受け、裁判所において、第一項の書類及び証拠物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告人又は被疑者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第十五章 訴訟費用

**第八十一条** 刑の言渡をしたときは、被告人に訴訟費用の全部又は一部を負担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被告人が貧困のため訴訟費用を納付することのでき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被告人の責に帰すべき事由によつて生じた費用は、刑の言渡をしない場合にも、被告人にこれ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検察官のみが上訴を申し立てた場合において、上訴が棄却されたとき、又は上訴の取下げがあつたときは、上訴に関する訴訟費用は、これを被告人に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被告人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つて生じた費用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4 公訴が提起され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被疑者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り生じた費用があるときは、被疑者にこれ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八十二条** 共犯の訴訟費用は、共犯人に、連帯して、これ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八十三条** 告訴、告発又は請求により公訴の提起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被告人が無罪又は免訴の裁判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告訴人、告発人又は請求人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つたときは、その者に訴訟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告訴、告発又は請求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公訴が提起され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告訴人、告発人又は請求人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つ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百八十四条** 検察官以外の者が上訴又は再審若しくは正式裁判の請求を取り下げた場合には、その者に上訴、再審又は正式裁判に関する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五条** 裁判によつて訴訟手続が終了する場合において、被告人に訴訟費用を負担させるときは、職権でその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裁判に対しては、本案の裁判について上訴があつたときに限り、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六条** 裁判によつて訴訟手続が終了する場合において、被告人以外の者に訴訟費用を負担させるときは、職権で別にそ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七条** 裁判によらないで訴訟手続が終了する場合において、訴訟費用を負担させるときは、最終に事件の係属した裁判所が、職権でそ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七条の二** 公訴が提起され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訴訟費用を負担させ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裁判所が決定をもつてこれを行う。こ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八条** 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にその額を表示しないときは、執行の指揮をすべき検察官が、これを算定する。

## 第十六章 費用の補償

**第百八十八条の二** 無罪の判決が確定したときは、国は、当該事件の被告人であつた者に対し、その裁判に要した費用の補償をする。ただし、被告人であつた者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つて生じた費用については、補償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2 被告人であつた者が、捜査又は審判を誤らせる目的で、虚偽の自白をし、又は他の

有罪の証拠を作ることにより、公訴の提起を受けるに至つた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は、前項の補償の全部又は一部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3 第百八十八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補償の請求がされている場合には、第百八十八条の四の規定により補償される費用については、第一項の補償をしない。

**第百八十八条の三** 前条第一項の補償は、被告人であつた者の請求により、無罪の判決をした裁判所が、決定をもつてこれを行う。

2 前項の請求は、無罪の判決が確定した後六箇月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補償に関す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八条の四** 検察官のみが上訴をした場合において、上訴が棄却され又は取り下げられて当該上訴に係る原裁判が確定したときは、これによつて無罪の判決が確定した場合を除き、国は、当該事件の被告人又は被告人であつた者に対し、上訴によりその審級において生じた費用の補償をする。ただし、被告人又は被告人であつた者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つて生じた費用については、補償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八条の五** 前条の補償は、被告人又は被告人であつた者の請求により、当該上訴裁判所であつた最高裁判所又は高等裁判所が、決定をもつてこれを行う。

2 前項の請求は、当該上訴に係る原裁判が確定した後二箇月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補償に関する決定で高等裁判所がしたものに対しては、第四百二十八条第二項の異議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即時抗告に関する規定をも準用する。

**第百八十八条の六** 第百八十八条の二第一項又は第百八十八条の四の規定により補償される費用の範囲は、被告人若しくは被告人であつた者又はそれらの者の弁護人であつた者が公判準備及び公判期日に出頭するに要した旅費、日当及び宿泊料並びに弁護人であつた者に対する報酬に限るものとし、その額に関しては、刑事訴訟費用に関する法律の規定中、被告人又は被告人であつた者については証人、弁護人であつた者につい

ては弁護人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2 裁判所は、公判準備又は公判期日に出頭した弁護人が二人以上あつたときは、事件の性質、審理の状況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前項の弁護人であつた者の旅費、日当及び宿泊料を主任弁護人その他一部の弁護人に係るものに限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八条の七** 補償の請求その他補償に関する手続、補償と他の法律による損害賠償との関係、補償を受ける権利の譲渡又は差押え及び被告人又は被告人であつた者の相続人に対する補償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のほか、刑事補償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一号)第一条に規定する補償の例による。

## 第二編 第一審

### 第一章 捜査

**第百八十九条** 警察官は、それぞれ、他の法律又は国家公安委員会若しくは都道府県公安委員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司法警察職員として職務を行う。

2 司法警察職員は、犯罪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犯人及び証拠を捜査するものとする。

**第百九十条** 森林、鉄道その他特別の事項について司法警察職員として職務を行うべき者及びその職務の範囲は、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百九十一条** 検察官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自ら犯罪を捜査することができる。

2 検察事務官は、検察官の指揮を受け、捜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九十二条** 検察官と都道府県公安委員会及び司法警察職員とは、捜査に関し、互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九十三条** 檢察官は、その管轄区域により、司法警察職員に対し、その捜査に関し、必要な一般的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ける指示は、捜査を適正にし、その他公訴の遂行を全う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に関する一般的な準則を定めることによつて行うものとする。

2 檢察官は、その管轄区域により、司法警察職員に対し、捜査の協力を求めるため必要な一般的指揮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檢察官は、自ら犯罪を捜査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司法警察職員を指揮して捜査の補助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前三項の場合において、司法警察職員は、檢察官の指示又は指揮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九十四条** 検事総長、検事長又は検事正は、司法警察職員が正当な理由がなく檢察官の指示又は指揮に従わない場合において必要と認めるときは、警察官たる司法警察職員については、国家公安委員会又は都道府県公安委員会に、警察官たる者以外の司法警察職員については、その者を懲戒し又は罷免する権限を有する者に、それぞれ懲戒又は罷免の訴追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国家公安委員会、都道府県公安委員会又は警察官たる者以外の司法警察職員を懲戒し若しくは罷免する権限を有する者は、前項の訴追が理由のあ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訴追を受けた者を懲戒し又は罷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九十五条** 檢察官及び檢察事務官は、捜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管轄区域外で職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百九十六条** 檢察官、檢察事務官及び司法警察職員並びに弁護士その他職務上捜査に関係のある者は、被疑者その他の者の名誉を害しないように注意し、且つ、捜査の妨げとならない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十七条** 捜査については、その目的を達するため必要な取調をすることができる。

但し、強制の処分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でなければ、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2 捜査については、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八条**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犯罪の捜査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被疑者の出頭を求め、これを取り調べるができる。但し、被疑者は、逮捕又は勾留されている場合を除いては、出頭を拒み、又は出頭後、何時でも退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取調に際しては、被疑者に対し、あらかじめ、自己の意思に反して供述をする必要がない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被疑者の供述は、これを調書に録取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調書は、これを被疑者に閲覧させ、又は読み聞かせて、誤がないかどうかを問い、被疑者が増減変更の申立をしたときは、その供述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被疑者が、調書に誤のないことを申し立てたときは、これに署名押印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但し、これを拒絶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九十九条**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被疑者が罪を犯したことを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裁判官のあらかじめ発する逮捕状により、これを逮捕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三十万円(刑法 〇、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及び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の罪以外の罪については、当分の間、二万円)以下の罰金、拘留又は科料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被疑者が定まつた住居を有しない場合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前条の規定による出頭の求めに応じない場合に限る。

2 裁判官は、被疑者が罪を犯したことを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警察官たる司法警察員については、国家公安委員会又は都道府県公安委員会が指定する警部以上の者に限る。以下本条において同じ。)の請求により、前項の逮捕状を発する。但し、明らかに逮捕の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

の限りでない。

3 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は、第一項の逮捕状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同一の犯罪事実についてその被疑者に対し前に逮捕状の請求又はその発付があつたときは、その旨を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条** 逮捕状には、被疑者の氏名及び住居、罪名、被疑事実の要旨、引致すべき官公署その他の場所、有効期間及びその期間経過後は逮捕をすることができず令状は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並びに発付の年月日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裁判官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六十四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逮捕状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一条** 逮捕状により被疑者を逮捕するには、逮捕状を被疑者に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七十三条第三項の規定は、逮捕状により被疑者を逮捕する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二条** 検察事務官又は司法巡査が逮捕状により被疑者を逮捕したときは、直ちに、検察事務官はこれを検察官に、司法巡査はこれを司法警察員に引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三条** 司法警察員は、逮捕状により被疑者を逮捕したとき、又は逮捕状により逮捕された被疑者を受け取つたときは、直ちに犯罪事実の要旨及び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た上、弁解の機会を与え、留置の必要がないと思料するときは直ちにこれを釈放し、留置の必要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被疑者が身体を拘束された時から四十八時間以内に書類及び証拠物とともにこれを検察官に送致す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被疑者に弁護人の有無を尋ね、弁護人があるときは、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は、これを告げることを要しない。

3 司法警察員は、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り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るに当たっては、被疑者に対し、引き続き勾

留を請求された場合において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自ら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官に対して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並びに裁判官に対して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には資力申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及びその資力が基準額以上で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弁護士会(第三十七条の三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すべき弁護士会をいう。)に弁護人の選任の申出を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教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時間の制限内に送致の手続をしないときは、直ちに被疑者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四条** 検察官は、逮捕状により被疑者を逮捕したとき、又は逮捕状により逮捕された被疑者(前条の規定により送致された被疑者を除く。)を受け取つたときは、直ちに犯罪事実の要旨及び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た上、弁解の機会を与え、留置の必要がないと料るときは直ちにこれを釈放し、留置の必要があると料るときは被疑者が身体を拘束された時から四十八時間以内に裁判官に被疑者の勾留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時間の制限内に公訴を提起したときは、勾留の請求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2 検察官は、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るに当たつては、被疑者に対し、引き続き勾留を請求された場合において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自ら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官に対して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並びに裁判官に対して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には資力申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及びその資力が基準額以上で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弁護士会(第三十七条の三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すべき弁護士会をいう。)に弁護人の選任の申出を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教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時間の制限内に勾留の請求又は公訴の提起をしないときは、直ちに被疑者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条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五条** 検察官は、第二百三条の規定により送致された被疑者を受け取つたときは、弁解の機会を与え、留置の必要がないと思料するときは直ちにこれを釈放し、留置の必要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被疑者を受け取つた時から二十四時間以内に裁判官に被疑者の勾留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時間の制限は、被疑者が身体を拘束された時から七十二時間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3 前二項の時間の制限内に公訴を提起したときは、勾留の請求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第一項及び第二項の時間の制限内に勾留の請求又は公訴の提起をしないときは、直ちに被疑者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条第二項の規定は、検察官が、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以外の事件について逮捕され、第二百三条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送致された被疑者に対し、第一項の規定により弁解の機会を与える場合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ただし、被疑者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百六条** 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がやむを得ない事情によつて前三条の時間の制限に従うことができなかつたときは、検察官は、裁判官にその事由を疎明して、被疑者の勾留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その遅延がやむを得ない事由に基く正当なものであると認める場合でなければ、勾留状を発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百七条** 前三条の規定による勾留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その処分に関し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但し、保釈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裁判官は、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勾留を請求された被疑者に被疑事件を告げる際に、被疑者に対し、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及び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自ら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被疑者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り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るに当たつては、

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には資力申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及びその資力が基準額以上で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弁護士会(第三十七条の三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すべき弁護士会をいう。)に弁護人の選任の申出を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教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裁判官は、第一項の勾留の請求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勾留状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勾留の理由がないと認めるとき、及び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勾留状を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勾留状を発しないで、直ちに被疑者の釈放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八条** 前条の規定により被疑者を勾留した事件につき、勾留の請求をした日から十日以内に公訴を提起しないときは、検察官は、直ちに被疑者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官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前項の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期間の延長は、通じて十日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百八条の二** 裁判官は、刑法第二編第二章 乃至第四章 又は第八章 の罪にあたる事件について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延長された期間を更に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期間の延長は、通じて五日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百九条** 第七十四条、第七十五条及び第七十八条の規定は、逮捕状による逮捕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十条**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長期三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あたる罪を犯したことを疑うに足りる充分な理由がある場合で、急速を要し、裁判官の逮捕状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理由を告げて被疑者を逮捕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直ちに裁判官の逮捕状を求め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逮捕状が発せられないときは、直ちに被疑者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二百条の規定は、前項の逮捕状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十一条** 前条の規定により被疑者が逮捕された場合には、第百九十九条の規定により被疑者が逮捕された場合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第二百十二条** 現に罪を行い、又は現に罪を行い終つた者を現行犯人とする。

2 左の各号の一にあたる者が、罪を行い終つてから間がない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ときは、これを現行犯人とみなす。

- 一 犯人として追呼されているとき。
- 二 贓物又は明らかに犯罪の用に供したと思われる兇器その他の物を所持しているとき。
- 三 身体又は被服に犯罪の顕著な証跡があるとき。
- 四 誰何されて逃走しようとするとき。

**第二百十三条** 現行犯人は、何人でも、逮捕状なくしてこれを逮捕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四条** 検察官、検察事務官及び司法警察職員以外の者は、現行犯人を逮捕したときは、直ちにこれを地方検察庁若しくは区検察庁の検察官又は司法警察職員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十五条** 司法巡査は、現行犯人を受け取つたときは、速やかにこれを司法警察員に引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司法巡査は、犯人を受け取つた場合には、逮捕者の氏名、住居及び逮捕の事由を聴き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があるときは、逮捕者に対しともに官公署に行く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六条** 現行犯人が逮捕された場合には、第百九十九条の規定により被疑者が逮捕された場合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第二百十七条** 三十万円(刑法、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及び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の罪以外の罪については、当分の間、二万円)以下の罰金、拘留又は科料に

当たる罪の現行犯については、犯人の住居若しくは氏名が明らかでない場合又は犯人が逃亡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限り、第二百十三條から前條までの規定を適用する。

**第二百十八條** 檢察官、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犯罪の捜査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官の発する令状により、差押、搜索又は檢証を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において身体の検査は、身体検査令状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身体の拘束を受けている被疑者の指紋若しくは足型を採取し、身長若しくは体重を測定し、又は写真を撮影するには、被疑者を裸にしない限り、前項の令状によることを要しない。

3 第一項の令状は、檢察官、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員の請求により、これを発する。

4 檢察官、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員は、身体検査令状の請求をするには、身体の検査を必要とする理由及び身体の検査を受ける者の性別、健康状態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事項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裁判官は、身体の検査に関し、相当と認める条件を附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九條** 前條の令状には、被疑者若しくは被告人の氏名、罪名、差し押えるべき物、搜索すべき場所、身体若しくは物、檢証すべき場所若しくは物又は検査すべき身体及び身体の検査に関する条件、有効期間及びその期間経過後は差押、搜索又は檢証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令状は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並びに発付の年月日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裁判官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六十四條第二項の規定は、前條の令状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二十條** 檢察官、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第九十九條の規定により被疑者を逮捕する場合又は現行犯人を逮捕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左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第二百十條の規定により被疑者を逮捕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も、同様である。

一 人の住居又は人の看守する邸宅、建造物若しくは船舶内に入り被疑者の搜索をすること。

- 二 逮捕の現場で差押、搜索又は檢証をすること。
- 2 前項後段の場合において逮捕状が得られなかつたときは、差押物は、直ちにこれを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処分をするには、令状は、これを必要としない。
- 4 第一項第二号及び前項の規定は、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が勾引状又は勾留状を執行する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被疑者に対して発せられた勾引状又は勾留状を執行する場合には、第一項第一号の規定をも準用する。

**第二百二十一条** 檢察官、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被疑者その他の者が遺留した物又は所有者、所持者若しくは保管者が任意に提出した物は、これを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二十二条** 第九十九条、第一百条、第一百条乃至第一百五條、第一百条乃至第一百二十二條、第一百四條、第一百五條及び第一百八條乃至第二十四條の規定は、檢察官、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が第二百八條、第二百二十條及び前條の規定によつてする押収又は搜索について、第一百条、第一百二十二條、第一百四條、第一百八條、第二十九條、第三十一條及び第三十七條乃至第四十條の規定は、檢察官、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が第二百八條又は第二百二十條の規定によつてする檢証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但し、司法巡查は、第二百二十二條乃至第二十四條に規定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第二百二十條の規定により被疑者を搜索する場合において急速を要するときは、第一百四條第二項の規定によることを要しない。
- 3 第一百六條及び第一百七條の規定は、檢察官、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が第二百八條の規定によつてする押収又は搜索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 4 日出前、日没後には、令状に夜間でも檢証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記載がなければ、檢察官、檢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第二百八條の規定によつてする檢証のため、人の住居又は人の看守する邸宅、建造物若しくは船舶内に入ることができない。但し、第一百七條に規定する場所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5 日没前検証に着手したときは、日没後でもその処分を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 6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第二百十八条の規定により差押、搜索又は検証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被疑者をこれに立ち会わせることができる。
- 7 第一項の規定により、身体の検査を拒んだ者を過料に処し、又はこれに賠償を命ずべきときは、裁判所にその処分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二十二条の二** 通信の当事者のいずれの同意も得ないで電気通信の傍受を行う強制の処分について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二百二十三条**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は、犯罪の捜査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被疑者以外の者の出頭を求め、これを取り調べ、又はこれに鑑定、通訳若しくは翻訳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

- 2 第九十八条第一項但書及び第三項乃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二十四条**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鑑定を囑託する場合において第六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処分を必要とするときは、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員は、裁判官にその処分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裁判官は、前項の請求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第六十七条の場合に準じてその処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第六十七条の二の規定を準用する。

**第二百二十五条** 第二百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鑑定の囑託を受けた者は、裁判官の許可を受けて、第六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許可の請求は、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員から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裁判官は、前項の請求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許可状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六十八条第二項乃至第四項及び第六項の規定は、前項の許可状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二十六条** 犯罪の捜査に欠くことのできない知識を有す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者が、第二百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取調に対して、出頭又は供述を拒んだ場合には、第一回の公判期日前に限り、検察官は、裁判官にその者の証人尋問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二十七条** 第二百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の取調べに際して任意の供述をした者が、公判期日においては前にした供述と異なる供述をするおそれがあり、かつ、その者の供述が犯罪の証明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第一回の公判期日前に限り、検察官は、裁判官にその者の証人尋問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請求をするには、検察官は、証人尋問を必要とする理由及びそれが犯罪の証明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二十八条** 前二条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証人の尋問に関し、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2 裁判官は、捜査に支障を生ずる虞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を前項の尋問に立ち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二十九条** 変死者又は変死の疑のある死体があるときは、そ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検察庁又は区検察庁の検察官は、検視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検察官は、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員に前項の処分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三十条** 犯罪により害を被つた者は、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三十一条** 被害者の法定代理人は、独立して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被害者が死亡したときは、その配偶者、直系の親族又は兄弟姉妹は、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被害者の明示した意思に反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二百三十二条** 被害者の法定代理人が被疑者であるとき、被疑者の配偶者であるとき、又は被疑者の四親等内の血族若しくは三親等内の姻族であるときは、被害者の親族は、独立して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三十三条** 死者の名誉を毀損した罪については、死者の親族又は子孫は、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名誉を毀損した罪について被害者が告訴をしないで死亡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である。但し、被害者の明示した意思に反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二百三十四条** 親告罪について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がない場合には、検察官は、利害関係人の申立により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三十五条** 親告罪の告訴は、犯人を知つた日から六箇月を経過したときは、これをする事ができない。ただし、次に掲げる告訴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刑法第七十六条から第七十八条まで、第二百二十五条若しくは第二百二十七条第一項(第二百二十五条の罪を犯した者を幫助する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三項の罪又はこれらの罪に係る未遂罪につき行う告訴
  - 二 刑法第二百三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外国の代表者が行う告訴及び日本国に派遣された外国の使節に対する同法第二百三十条又は第二百三十一条の罪につきその使節が行う告訴
- 2 刑法第二百二十九条但書の場合における告訴は、婚姻の無効又は取消の裁判が確定した日から六箇月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その効力がない。

**第二百三十六条** 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が数人ある場合には、一人の期間の徒過は、他の者に対しその効力を及ぼさない。

**第二百三十七条** 告訴は、公訴の提起があるまで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2 告訴の取消をした者は、更に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前二項の規定は、請求を待つて受理すべき事件についての請求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三十八条** 親告罪について共犯の一人又は数人に対してした告訴又はその取消は、他の共犯に対しても、その効力を生ずる。

2 前項の規定は、告発又は請求を待つて受理すべき事件についての告発若しくは請求又はその取消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三十九条** 何人でも、犯罪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告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官吏又は公吏は、その職務を行うことにより犯罪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告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四十条** 告訴は、代理人によ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告訴の取消についても、同様である。

**第二百四十一条** 告訴又は告発は、書面又は口頭で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に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は、口頭による告訴又は告発を受けたときは調書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四十二条** 司法警察員は、告訴又は告発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これに関する書類及び証拠物を検察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四十三条** 前二条の規定は、告訴又は告発の取消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四十四条** 刑法第二百三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外国の代表者が行う告訴又はその取消は、第二百四十一条及び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外務大臣に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日本国に派遣された外国の使節に対する刑法第二百三十条又は第二百三十一条の罪につきその使節が行う告訴又はその取消も、同様である。

**第二百四十五条** 第二百四十一条及び第二百四十二条の規定は、自首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二百四十六条** 司法警察員は、犯罪の捜査をしたとき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速やかに書類及び証拠物とともに事件を検察官に送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検察官が指定した事件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第二章 公 訴

**第二百四十七条** 公訴は、検察官がこれを行う。

**第二百四十八条** 犯人の性格、年齢及び境遇、犯罪の軽重及び情状並びに犯罪後の情況により訴追を必要としないときは、公訴を提起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二百四十九条** 公訴は、検察官の指定した被告人以外の者にその効力を及ぼさない。

**第二百五十条** 時効は、次に掲げる期間を経過することによつて完成する。

- 一 死刑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二十五年
- 二 無期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十五年
- 三 長期十五年以上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十年
- 四 長期十五年未満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七年
- 五 長期十年未満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五年
- 六 長期五年未満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罰金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三年
- 七 拘留又は科料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一年

**第二百五十一条** 二以上の主刑を併科し、又は二以上の主刑中その一を科すべき罪については、その重い刑に従つて、前条の規定を適用する。

**第二百五十二条** 刑法 により刑を加重し、又は減輕すべき場合には、加重し、又は減輕

しない刑に従つて、第二百五十条の規定を適用する。

**第二百五十三条** 時効は、犯罪行為が終つた時から進行する。

2 共犯の場合には、最終の行為が終つた時から、すべての共犯に対して時効の期間を起算する。

**第二百五十四条** 時効は、当該事件についてした公訴の提起によつてその進行を停止し、管轄違又は公訴棄却の裁判が確定した時からその進行を始める。

2 共犯の一人に対してした公訴の提起による時効の停止は、他の共犯に対してその効力を有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停止した時効は、当該事件についてした裁判が確定した時からその進行を始める。

**第二百五十五条** 犯人が国外にいる場合又は犯人が逃げ隠れているため有効に起訴状の謄本の送達若しくは略式命令の告知ができなかつた場合には、時効は、その国外にいる期間又は逃げ隠れている期間その進行を停止する。

2 犯人が国外にいること又は犯人が逃げ隠れているため有効に起訴状の謄本の送達若しくは略式命令の告知ができなかつたことの証明に必要な事項は、裁判所の規則でこれを定める。

**第二百五十六条** 公訴の提起は、起訴状を提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起訴状には、左の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被告人の氏名その他被告人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項
- 二 公訴事実
- 三 罪名

3 公訴事實は、訴因を明示してこれ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訴因を明示するには、できる限り日時、場所及び方法を以て罪となるべき事實を特定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罪名は、適用すべき罰条を示してこれ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罰条の記

載の誤は、被告人の防禦に実質的な不利益を生ずる虞がない限り、公訴提起の効力に影響を及ぼさない。

5 数個の訴因及び罰条は、予備的に又は択一的にこれ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6 起訴状には、裁判官に事件につき予断を生ぜしめる虞のある書類その他の物を添附し、又はその内容を引用してはならない。

**第二百五十七条** 公訴は、第一審の判決があるまで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五十八条** 検察官は、事件がその所属検察庁の対応する裁判所の管轄に属しないものと思料するときは、書類及び証拠物とともにその事件を管轄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に送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五十九条** 検察官は、事件につき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場合において、被疑者の請求がある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これに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六十条** 検察官は、告訴、告発又は請求のあつた事件について、公訴を提起し、又はこれ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告訴人、告発人又は請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公訴を取り消し、又は事件を他の検察庁の検察官に送致したときも、同様である。

**第二百六十一条** 検察官は、告訴、告発又は請求のあつた事件について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場合において、告訴人、告発人又は請求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速やかに告訴人、告発人又は請求人にその理由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六十二条** 刑法第九十三条から第九十六条まで又は破壊活動防止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四十号）第四十五条若しくは無差別大量殺人行為を行った団体の規制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四百七号）第四十二条若しくは第四十三条の罪について告訴又は告発をした者は、検察官の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に不服があるときは、

その検察官所属の検察庁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に事件を裁判所の審判に付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請求は、第二百六十条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七日以内に、請求書を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検察官に差し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六十三条** 前条第一項の請求は、第二百六十六条の決定があるまでこれ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取下をした者は、その事件について更に前条第一項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百六十四条** 検察官は、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の請求を理由があ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公訴を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六十五条** 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の請求についての審理及び裁判は、合議体でこれを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合議体の構成員に事実の取調をさせ、又は地方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受命裁判官及び受託裁判官は、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第二百六十六条** 裁判所は、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の請求を受けたときは、左の区別に従い、決定を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請求が法令上の方式に違反し、若しくは請求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又は請求が理由のないときは、請求を棄却する。

二 請求が理由のあるときは、事件を管轄地方裁判所の審判に付する。

**第二百六十七条** 前条第二号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その事件について公訴の提起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第二百六十七条の二** 裁判所は、第二百六十六条第二号の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同

一の事件について、検察審査会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四百七号）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審査を行う検察審査会又は同法第四十一条の六第一項の起訴議決をした検察審査会（同法第四十一条の九第一項の規定により公訴の提起及びその維持に当たる者が指定された後は、その者）があるときは、これに当該決定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六十八条** 裁判所は、第二百六十六条第二号の規定により事件がその裁判所の審判に付されたときは、その事件について公訴の維持にあたる者を弁護士の中から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指定を受けた弁護士は、事件について公訴を維持するため、裁判の確定に至るまで検察官の職務を行う。但し、検察事務官及び司法警察職員に対する捜査の指揮は、検察官に囑託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り検察官の職務を行う弁護士は、これを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職員とみなす。

4 裁判所は、第一項の指定を受けた弁護士がその職務を行うに適さないと認めるときその他特別の事情があるときは、何時でもそ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5 第一項の指定を受けた弁護士には、政令で定める額の手当を給する。

**第二百六十九条** 裁判所は、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の請求を棄却する場合又はその請求の取下があつた場合には、決定で、請求者に、その請求に関する手続によつて生じた費用の全部又は一部の賠償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七十条** 検察官は、公訴の提起後は、訴訟に関する書類及び証拠物を閲覧し、且つ謄写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二百五十七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媒体は、謄写することができない。

### 第三章 公 判

#### 第一節 公判準備及び公判手續

**第二百七十一条** 裁判所は、公訴の提起があつたときは、遅滞なく起訴状の謄本を被告人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公訴の提起があつた日から二箇月以内に起訴状の謄本が送達されないときは、公訴の提起は、さかのぼつてその効力を失う。

**第二百七十二条** 裁判所は、公訴の提起があつたときは、遅滞なく被告人に対し、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及び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裁判所は、この法律により弁護人を要する場合を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知らせるに当たつては、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には資力申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及びその資力が基準額以上で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弁護士会(第三十六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すべき弁護士会をいう。)に弁護人の選任の申出を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教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七十三条** 裁判長は、公判期日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公判期日には、被告人を召喚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公判期日は、これを検察官、弁護人及び補佐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七十四条** 裁判所の構内にいる被告人に対し公判期日を通知したときは、召喚状の送達があつた場合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第二百七十五条** 第一回の公判期日と被告人に対する召喚状の送達との間には、裁判所

の規則で定める猶予期間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七十六条** 裁判所は、検察官、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公判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2 公判期日を変更するに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前項但書の場合には、変更後の公判期日において、まず、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異議を申し立て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七十七条** 裁判所がその権限を濫用して公判期日を変更したときは、訴訟関係人は、最高裁判所の規則又は訓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司法行政監督上の措置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七十八条** 公判期日に召喚を受けた者が病気その他の事由によつて出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医師の診断書その他の資料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七十八条の二** 裁判所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又は弁護人に対し、公判準備又は公判期日に出頭し、かつ、これらの手続が行われている間在席し又は在廷す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長は、急速を要する場合には、前項に規定する命令をし、又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検察官又は弁護人が正当な理由がなくこれに従わないときは、決定で、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し、かつ、その命令に従わないために生じた費用の賠償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5 裁判所は、第三項の決定をしたときは、検察官については当該検察官を指揮監督する

権限を有する者に、弁護士である弁護人については当該弁護士の所属する弁護士会又は日本弁護士連合会に通知し、適当な処置をとるべきこと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受けた者は、そのとつた処置を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七十九条** 裁判所は、検察官、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八十条** 公訴の提起があつた後第一回の公判期日までは、勾留に関する処分は、裁判官がこれを行う。

2 第百九十九条若しくは第二百十条の規定により逮捕され、又は現行犯人として逮捕された被疑者でまだ勾留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第二百四条又は第二百五条の時間の制限内に公訴の提起があつた場合には、裁判官は、速やかに、被告事件を告げ、これに関する陳述を聴き、勾留状を発しないときは、直ちにその釈放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の裁判官は、その処分に関し、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第二百八十一条** 証人については、裁判所は、第百五十八条に掲げる事項を考慮した上、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必要と認めるときに限り、公判期日外においてこれを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八十一条の二** 裁判所は、公判期日外における証人尋問に被告人が立ち会つた場合において、証人が被告人の面前(第百五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場合及び第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は圧迫を受け十分な供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弁護人が立ち会つている場合に限り、検察官及び弁護人の意見を聴き、その証人の供述中被告人を退席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供述終了後被告人に証言の要旨を告知し、その証人を尋問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八十一条の三** 弁護人は、検察官において被告事件の審理の準備のために閲覧又は謄写の機会を与えた証拠に係る複製等(複製その他証拠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まま記録した物及び書面をいう。以下同じ。)を適正に管理し、その保管をみだりに他人にゆだねてはならない。

**第二百八十一条の四** 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第四百四十条に規定する弁護人を含む。)又はこれらであつた者は、検察官において被告事件の審理の準備のために閲覧又は謄写の機会を与えた証拠に係る複製等を、次に掲げる手続又はその準備に使用する目的以外の目的で、人に交付し、又は提示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てはならない。

一 当該被告事件の審理その他の当該被告事件に係る裁判のための審理

二 当該被告事件に関する次に掲げる手続

イ 第一編第十六章の規定による費用の補償の手続

ロ 第三百四十九条第一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の手続

ハ 第三百五十条の請求があつた場合の手続

ニ 上訴権回復の請求の手続

ホ 再審の請求の手続

ヘ 非常上告の手続

ト 第五百条第一項の申立ての手続

チ 第五百二条の申立ての手続

リ 刑事補償法 の規定による補償の請求の手続

2 前項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の措置については、被告人の防御権を踏まえ、複製等の内容、行為の目的及び態様、関係人の名誉、その私生活又は業務の平穩を害されているかどうか、当該複製等に係る証拠が公判期日において取り調べられたものであるかどうか、その取調べの方法その他の事情を考慮するものとする。

**第二百八十一条の五** 被告人又は被告人であつた者が、検察官において被告事件の審理の準備のために閲覧又は謄写の機会を与えた証拠に係る複製等を、前条第一項各号に

掲げる手続又はその準備に使用する目的以外の目的で、人に交付し、又は提示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弁護人(第四百四十条に規定する弁護人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又は弁護人であつた者が、検察官において被告事件の審理の準備のために閲覧又は謄写の機会を与えた証拠に係る複製等を、対価として財産上の利益その他の利益を得る目的で、人に交付し、又は提示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二百八十一条の六** 裁判所は、審理に二日以上を要する事件については、できる限り、連日開廷し、継続して審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訴訟関係人は、期日を厳守し、審理に支障を来さ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八十二条** 公判期日における取調は、公判廷で行う。

2 公判廷は、裁判官及び裁判所書記が列席し、且つ検察官が出席してこれを開く。

**第二百八十三条** 被告人が法人である場合には、代理人を出頭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八十四条** 五十万円(刑法、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及び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の罪以外の罪については、当分の間、五万円)以下の罰金又は科料に当たる事件については、被告人は、公判期日に出頭することを要しない。ただし、被告人は、代理人を出頭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八十五条** 拘留にあたる事件の被告人は、判決の宣告をする場合には、公判期日に出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他の場合には、裁判所は、被告人の出頭がその権利の保護のため重要でないとき、被告人に対し公判期日に出頭しない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長期三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五十万円(刑法、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

律及び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の罪以外の罪については、当分の間、五万円)を超える罰金に当たる事件の被告人は、第二百九十一条の手續をする場合及び判決の宣告をする場合には、公判期日に出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他の場合には、前項後段の例による。

**第二百八十六条** 前三条に規定する場合の外、被告人が公判期日に出頭しないときは、開廷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二百八十六条の二** 被告人が出頭しなければ開廷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が、公判期日に召喚を受け、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を拒否し、刑事施設職員による引致を著しく困難にしたときは、裁判所は、被告人が出頭しないでも、その期日の公判手続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八十七条** 公判廷においては、被告人の身体を拘束してはならない。但し、被告人が暴力を振り又は逃亡を企て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被告人の身体を拘束しない場合にも、これに看守者を附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八十八条** 被告人は、裁判長の許可がなければ、退廷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裁判長は、被告人を在廷させるため、又は法廷の秩序を維持するため相当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八十九条** 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長期三年を超える懲役若しくは禁錮にあたる事件を審理する場合には、弁護人がなければ開廷することはできない。

2 弁護人がなければ開廷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弁護人が出頭しないとき若しくは在廷しなくなつたとき、又は弁護人がないときは、裁判長は、職権で弁護人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弁護人がなければ開廷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弁護人が出頭しないおそれ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職権で弁護人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九十条** 第三十七条各号の場合に弁護人が出頭しないときは、裁判所は、職権で弁護人を附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九十条の二** 裁判所は、次に掲げる事件を取り扱う場合において、当該事件の被害者等(被害者又は被害者が死亡した場合若しくはその心身に重大な故障がある場合におけるその配偶者、直系の親族若しくは兄弟姉妹をいう。以下同じ。)若しく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又はこれらの者から委託を受けた弁護士から申出があると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相当と認めるときは、被害者特定事項(氏名及び住所その他の当該事件の被害者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いう。以下同じ。)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刑法第七十六条から第七十八条の二 まで若しくは第八十一条の罪、同法第二百二十五条若しくは第二百二十六条の二第三項の罪(わいせつ又は結婚の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同法第二百二十七条第一項 (第二百二十五条又は第二百二十六条の二第三項の罪を犯した者を幫助する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三項 (わいせつの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二百四十一条の罪又はこれらの罪の未遂罪に係る事件
  - 二 児童福祉法第六十条第一項の罪若しくは同法第三十四条第一項第九号 に係る同法第六十条第二項 の罪又は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第四条から第八条までの罪に係る事件
  - 三 前二号に掲げる事件のほか、犯行の態様、被害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より、被害者特定事項が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被害者等の名誉又は社会生活の平穩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事件
- 2 前項の申出は、あらかじめ、検察官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 3 裁判所は、第一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犯行の態様、被害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より、被害者特定事項が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被害者若しくはその親族の身体若しくは財産に害を加え又はこれらの者を畏怖させ若しくは困惑させる行為がな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事件を取り扱う場合において、検察官及び被告人又

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相当と認めるときは、被害者特定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裁判所は、第一項又は前項の決定をした事件について、被害者特定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ことが相当でないとするに至ったとき、第三百十二条の規定により罰条が撤回若しくは変更されたため第一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掲げる事件に該当しなくなつたとき又は同項第三号に掲げる事件若しくは前項に規定する事件に該当しないと認めると至つたときは、決定で、第一項又は前項の決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九十一条** 検察官は、まず、起訴状を朗読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前項の起訴状の朗読は、被害者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検察官は、被告人に起訴状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長は、起訴状の朗読が終つた後、被告人に対し、終始沈黙し、又は個々の質問に対し陳述を拒むことができる旨その他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被告人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必要な事項を告げた上、被告人及び弁護人に対し、被告事件について陳述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九十一条の二** 被告人が、前条第三項の手續に際し、起訴状に記載された訴因について有罪である旨を陳述したときは、裁判所は、検察官、被告人及び弁護人の意見を聴き、有罪である旨の陳述のあつた訴因に限り、簡易公判手續によつて審判をする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短期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事件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百九十一条の三** 裁判所は、前条の決定があつた事件が簡易公判手續によることができなものであり、又はこれによることが相当でない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決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九十二条** 証拠調べは、第二百九十一条の手續が終つた後、これを行う。ただし、次節第一款に定める公判前整理手續において争点及び証拠の整理のために行う手續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百九十二条の二** 裁判所は、被害者等又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から、被害に関する心情その他の被告事件に関する意見の陳述の申出があるときは、公判期日において、その意見を陳述させ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の申出は、あらかじめ、検察官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裁判長又は陪席の裁判官は、被害者等又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が意見を陳述した後、その趣旨を明確にするため、これらの者に質問することができる。

4 訴訟関係人は、被害者等又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が意見を陳述した後、その趣旨を明確にするため、裁判長に告げて、これらの者に質問することができる。

5 裁判長は、被害者等若しく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の意見の陳述又は訴訟関係人の被害者等若しく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に対する質問が既にした陳述若しくは質問と重複するとき、又は事件に関係のない事項にわたるときその他相当でない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6 第二百五十七条の二、第二百五十七条の三及び第二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について準用する。

7 裁判所は、審理の状況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意見の陳述に代え意見を記載した書面を提出させ、又は意見の陳述を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8 前項の規定により書面が提出された場合には、裁判長は、公判期日において、その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裁判長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書面を朗読し、又はその要旨を告げることができる。

9 第一項の規定による陳述又は第七項の規定による書面は、犯罪事実の認定のための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百九十三条** 証拠調べが終つた後、検察官は、事実及び法律の適用について意見を陳

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告人及び弁護人は、意見を陳述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九十四条** 公判期日における訴訟の指揮は、裁判長が行う。

**第二百九十五条** 裁判長は、訴訟関係人のする尋問又は陳述が既にした尋問若しくは陳述と重複するとき、又は事件に関係のない事項にわたるときその他相当でないときは、訴訟関係人の本質的な権利を害しない限り、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訴訟関係人の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についても同様である。

2 裁判長は、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を尋問する場合において、証人、鑑定人、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若しくはこれらの親族の身体若しくは財産に害を加え又はこれらの者を畏怖させ若しくは困惑させる行為がなされるおそれがあり、これらの者の住居、勤務先その他その通常所在する場所が特定される事項が明らかにされたならば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が十分な供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尋問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検察官のする尋問を制限することにより犯罪の証明に重大な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又は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のする尋問を制限することにより被告人の防御に実質的な不利益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裁判長は、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項の決定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訴訟関係人のする尋問又は陳述が被害者特定事項にわたる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により、犯罪の証明に重大な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又は被告人の防御に実質的な不利益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尋問又は陳述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訴訟関係人の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4 裁判所は、前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検察官又は弁護士である弁護人がこれに従わなかつた場合には、検察官については当該検察官を指揮監督する権限を有する者に、弁護士である弁護人については当該弁護士の所属する弁護士会又は日本弁護士連合会に通知し、適当な処置をとる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5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受けた者は、そのとつた処置を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九十六条** 証拠調のはじめに、検察官は、証拠により証明すべき事実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ず、又は証拠としてその取調を請求する意思のない資料に基いて、裁判所に事件について偏見又は予断を生ぜしめる虞のある事項を述べることはできない。

**第二百九十七条** 裁判所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証拠調の範囲、順序及び方法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手続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所は、適当と認めるときは、何時でも、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第一項の規定により定めた証拠調の範囲、順序又は方法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九十八条**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証拠調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証拠調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九十九条**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を請求するについては、あらかじめ、相手方に対し、その氏名及び住居を知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証拠書類又は証拠物の取調を請求するについては、あらかじめ、相手方にこれを閲覧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相手方に異議の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裁判所が職権で証拠調の決定をするについて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九十九条の二** 検察官又は弁護人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証人、鑑定人、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の氏名及び住居を知る機会を与え又は証拠書類若しくは証拠物を閲覧する機会を与えるに当たり、証人、鑑定人、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若しくは証拠書類若しくは証拠物にその氏名が記載されている者若しくはこれらの親族の身体若しくは財産に害を加え又はこれらの者を畏怖させ若しくは困惑させる行為がな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相手方に対し、その旨を告げ、これらの者の住居、勤務

先その他その通常所在する場所が特定される事項が、犯罪の証明若しくは犯罪の捜査又は被告人の防御に関し必要がある場合を除き、関係者(被告人を含む。)に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その他これらの者の安全が脅かさ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配慮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九十九条の三** 検察官は、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証人の氏名及び住居を知る機会を与え又は証拠書類若しくは証拠物を閲覧する機会を与えるに当たり、被害者特定事項が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被害者等の名誉若しくは社会生活の平穩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被害者若しくはその親族の身体若しくは財産に害を加え若しくはこれらの者を畏怖させ若しくは困惑させる行為がな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弁護人に対し、その旨を告げ、被害者特定事項が、被告人の防御に関し必要がある場合を除き、被告人その他の者に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告人に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については、被害者特定事項のうち起訴状に記載された事項以外のものに限る。

**第三百条** 第三百二十一条第一項第二号後段の規定により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書面については、検察官は、必ずその取調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一条** 第三百二十二条及び第三百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被告人の供述が自白である場合には、犯罪事実に関する他の証拠が取り調べられた後でなければ、その取調を請求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三百二条** 第三百二十一条乃至第三百二十三条又は第三百二十六条の規定により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書面が捜査記録の一部であるときは、検察官は、できる限り他の部分と分離してその取調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三条** 公判準備においてした証人その他の者の尋問、検証、押収及び捜索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並びに押収した物については、裁判所は、公判期日において証拠書類

又は証拠物としてこれを取り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四条**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は、裁判長又は陪席の裁判官が、まず、これを尋問する。

2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前項の尋問が終つた後、裁判長に告げて、その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を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取調が、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にかかるものであるときは、請求をした者が、先に尋問する。

3 裁判所は、適当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前二項の尋問の順序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四条の二** 裁判所は、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おいて、証人が被告人の面前(第二百五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場合及び第二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は圧迫を受け十分な供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弁護人が出頭している場合に限り、検察官及び弁護人の意見を聴き、その証人の供述中被告人を退廷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供述終了後被告人を入廷させ、これに証言の要旨を告知し、その証人を尋問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五条**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証拠書類の取調をするについては、裁判長は、その取調を請求した者にこれを朗読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裁判長は、自らこれを朗読し、又は陪席の裁判官若しくは裁判所書記にこれを朗読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が職権で証拠書類の取調をするについては、裁判長は、自らその書類を朗読し、又は陪席の裁判官若しくは裁判所書記にこれを朗読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項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証拠書類の朗読は、被害者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行うものとする。

4 第二百五十七条の四第三項の規定により記録媒体がその一部とされた調書の取調べに

ついて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朗読に代えて、当該記録媒体を再生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裁判長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記録媒体の再生に代えて、当該調書の取調べを請求した者、陪席の裁判官若しくは裁判所書記官に当該調書に記録された供述の内容を告げさせ、又は自らこれを告げることができる。

5 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り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媒体を再生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第一百五十七条の三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六条**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証拠物の取調をするについては、裁判長は、請求をした者をしてこれを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裁判長は、自らこれを示し、又は陪席の裁判官若しくは裁判所書記にこれを示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が職権で証拠物の取調をするについては、裁判長は、自らこれを訴訟関係人に示し、又は陪席の裁判官若しくは裁判所書記にこれを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七条** 証拠物中書面の意義が証拠となるものの取調をするについては、前条の規定による外、第三百五条の規定による。

**第三百七条の二** 第二百九十一条の二の決定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第二百九十六条、第二百九十七条、第三百条乃至第三百二条及び第三百四条乃至前条の規定は、これを適用せず、証拠調は、公判期日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方法で行うことができる。

**第三百八条** 裁判所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証拠の証明力を争うために必要とする適当な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九条**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証拠調に関し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2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の外、裁判長の処分に対して異

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所は、前二項の申立について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条** 証拠調を終った証拠書類又は証拠物は、遅滞なくこれを裁判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裁判所の許可を得たときは、原本に代え、その謄本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一条** 被告人は、終始沈黙し、又は個々の質問に対し、供述を拒むことができる。

2 被告人が任意に供述をする場合には、裁判長は、何時でも必要とする事項につき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陪席の裁判官、検察官、弁護人、共同被告人又はその弁護人は、裁判長に告げて、前項の供述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二条** 裁判所は、検察官の請求があるときは、公訴事実の同一性を害しない限度において、起訴状に記載された訴因又は罰条の追加、撤回又は変更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審理の経過に鑑み適当と認めるときは、訴因又は罰条を追加又は変更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所は、訴因又は罰条の追加、撤回又は変更があつたときは、速やかに追加、撤回又は変更された部分を被告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裁判所は、訴因又は罰条の追加又は変更により被告人の防禦に実質的な不利益を生ずる虞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決定で、被告人に充分な防禦の準備をさせるため必要な期間公判手続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三条** 裁判所は、適当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決定を以て、弁論を分離し若しくは併合し、又は終結した弁論を再開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被告人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

ところにより、決定を以て弁論を分離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三條の二**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いて裁判所若しくは裁判長又は裁判官が付した弁護人の選任は、弁論が併合された事件につい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ただし、裁判所がこれと異なる決定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ただし書の決定をするには、あらかじめ、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四條** 被告人が心神喪失の状態に在るときは、検察官及び弁護人の意見を聴き、決定で、その状態の続いている間公判手続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無罪、免訴、刑の免除又は公訴棄却の裁判をすべきことが明らかな場合には、被告人の出頭を待たないで、直ちにその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被告人が病気のため出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検察官及び弁護人の意見を聴き、決定で、出頭することができるまで公判手続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第二百八十四条及び第二百八十五条の規定により代理人を出頭させ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犯罪事実の存否の証明に欠くことのできない証人が病気のため公判期日に出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公判期日外においてその取調をするのを適当と認める場合の外、決定で、出頭することができるまで公判手続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により公判手続を停止するには、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五條** 開廷後裁判官がかわつたときは、公判手続を更新しなければならない。

但し、判決の宣告を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百十五條の二** 第二百九十一条の二の決定が取り消されたときは、公判手続を更新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異議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百十六条** 地方裁判所において一人の裁判官のした訴訟手続は、被告事件が合議体で審判すべきものであつた場合にも、その効力を失わない。

## 第二節 争点及び証拠の整理手続

### 第一款 公判前整理手続

#### 第一目 通則

**第三百十六条の二** 裁判所は、充実した公判の審理を継続的、計画的かつ迅速に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いて、第一回公判期日前に、決定で、事件の争点及び証拠を整理するための公判準備として、事件を公判前整理手続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公判前整理手続は、この款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訴訟関係人を出頭させて陳述させ、又は訴訟関係人に書面を提出させる方法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第三百十六条の三** 裁判所は、充実した公判の審理を継続的、計画的かつ迅速に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十分な準備が行われるようにするとともに、できる限り早期にこれを終結させ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訴訟関係人は、充実した公判の審理を継続的、計画的かつ迅速に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相互に協力するとともに、その実施に関し、裁判所に進んで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六条の四** 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は、被告人に弁護人がなければその手続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2 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被告人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裁判長は、職権で弁護人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六條の五** 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行うことができる。

- 一 訴因又は罰条を明確にさせること。
- 二 訴因又は罰条の追加、撤回又は変更を許すこと。
- 三 公判期日においてすることを予定している主張を明らかにさせて事件の争点を整理すること。
- 四 証拠調べの請求をさせること。
- 五 前号の請求に係る証拠について、その立証趣旨、尋問事項等を明らかにさせること。
- 六 証拠調べの請求に関する意見(証拠書類について第三百二十六条の同意をするかどうかの意見を含む。)を確かめること。
- 七 証拠調べをする決定又は証拠調べの請求を却下する決定をすること。
- 八 証拠調べをする決定をした証拠について、その取調べの順序及び方法を定めること。
- 九 証拠調べに関する異議の申立てに対して決定をすること。
- 十 第三目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証拠開示に関する裁定をすること。
- 十一 第三百十六条の三十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事件の手続への参加の申出に対する決定又は当該決定を取り消す決定をすること。
- 十二 公判期日を定め、又は変更することその他公判手続の進行上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

**第三百十六條の六** 裁判長は、訴訟関係人を出頭させて公判前整理手続をするときは、公判前整理手続期日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は、これを検察官、被告人及び弁護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裁判長は、検察官、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公判前整理手続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六條の七**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検察官又は弁護人が出頭しないときは、その期日の手続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第三百十六条の八** 弁護人が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出頭しないとき、又は在席しなくなつたときは、裁判長は、職権で弁護人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弁護人が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出頭しないおそれ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職権で弁護人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六条の九** 被告人は、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出頭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被告人に対し、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出頭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長は、被告人を出頭させて公判前整理手続をする場合には、被告人が出頭する最初の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おいて、まず、被告人に対し、終始沈黙し、又は個々の質問に対し陳述を拒むことができる旨を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六条の十** 裁判所は、弁護人の陳述又は弁護人が提出する書面について被告人の意思を確かめ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おいて被告人に対し質問を發し、及び弁護人に対し被告人と連署した書面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六条の十一** 裁判所は、合議体の構成員に命じ、公判前整理手続(第三百十六条の五第二号、第七号及び第九号から第十一号までの決定を除く。)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受命裁判官は、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第三百十六条の十二**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は、裁判所書記官を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おける手続について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判前整理手続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二目 争点及び証拠の整理

**第三百十六条の十三** 検察官は、事件が公判前整理手続に付されたときは、その証明予定事実(公判期日において証拠により証明しようとする事実をいう。以下同じ。)を記載した書面を、裁判所に提出し、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

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書面には、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ず、又は証拠としてその取調べを請求する意思のない資料に基づいて、裁判所に事件について偏見又は予断を生じさせるおそれのあ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検察官は、前項の証明予定事実を証明するために用いる証拠の取調べ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り証拠の取調べを請求するについては、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4 裁判所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いた上で、第一項の書面の提出及び送付並びに第二項の請求の期限を定めるものとする。

**第三百十六条の十四** 検察官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取調べを請求した証拠(以下「検察官請求証拠」という。)については、速やかに、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次の各号に掲げる証拠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方法による開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証拠書類又は証拠物 当該証拠書類又は証拠物を閲覧する機会(弁護人に対しては、閲覧し、かつ、謄写する機会)を与えること。
- 二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 その氏名及び住居を知る機会を与え、かつ、その者の供述録取書等(供述書、供述を録取した書面で供述者の署名若しくは押印のあるもの又は映像若しくは音声を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記録媒体であつて供述を記録したものをいう。以下同じ。)のうち、その者が公判期日において供述すると思料する内容が明らかになるもの(当該供述録取書等が存在しないとき、又はこれを閲覧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にあつては、その者が公判期日において供述すると思料する内容の要旨を記載した書面)を閲覧する機会(弁護人に対しては、閲覧し、かつ、謄写する機会)を与えること。

**第三百十六条の十五** 検察官は、前条の規定による開示をした証拠以外の証拠であつて、次の各号に掲げる証拠の類型のいずれかに該当し、かつ、特定の検察官請求証拠の証明力を判断するために重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について、被告人又は弁護人から開示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重要性の程度その他の被告人の防御の準備の

ために当該開示をすることの必要性の程度並びに当該開示によつて生じるおそれのある弊害の内容及び程度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速やかに、同条第一号に定める方法による開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開示の時期若しくは方法を指定し、又は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証拠物

二 第三百二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裁判所又は裁判官の検証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

三 第三百二十一条第三項に規定する書面又はこれに準ずる書面

四 第三百二十一条第四項に規定する書面又はこれに準ずる書面

五 次に掲げる者の供述録取書等

イ 検察官が証人として尋問を請求した者

ロ 検察官が取調べを請求した供述録取書等の供述者であつて、当該供述録取書等が第三百二十六条の同意がされない場合には、検察官が証人として尋問を請求することを予定しているもの

六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被告人以外の者の供述録取書等であつて、検察官が特定の検察官請求証拠により直接証明しようとする事実の有無に関する供述を内容とするもの

七 被告人の供述録取書等

八 取調べ状況の記録に関する準則に基づき、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が職務上作成することを義務付けられている書面であつて、身体の拘束を受けている者の取調べに関し、その年月日、時間、場所その他の取調べの状況を記録したもの(被告人に係るものに限る。)

2 被告人又は弁護人は、前項の開示の請求を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各号に掲げる証拠の種類及び開示の請求に係る証拠を識別するに足りる事項

二 事案の内容、特定の検察官請求証拠に対応する証明予定事実、開示の請求に係る証拠と当該検察官請求証拠との関係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当該開示の請求に係る証拠が当該検察官請求証拠の証明力を判断するために重要であることその他の被告人の防御の準備のために当該開示が必要である理由

**第三百十六条の十六** 被告人又は弁護人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第一項の書面の送付を受け、かつ、第三百十六条の十四及び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開示をすべき証拠の開示を受けたときは、検察官請求証拠について、第三百二十六条の同意をするかどうか又はその取調べの請求に関し異議がないかどうかの意見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いた上で、前項の意見を明らかにすべき期限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六条の十七** 被告人又は弁護人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第一項の書面の送付を受け、かつ、第三百十六条の十四及び第三百十六条の十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開示をすべき証拠の開示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証明予定事実その他の公判期日においてすることを予定している事実上及び法律上の主張があるときは、裁判所及び検察官に対し、これ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第一項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2 被告人又は弁護人は、前項の証明予定事実があるときは、これを証明するために用いる証拠の取調べ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3 裁判所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いた上で、第一項の主張を明らかにすべき期限及び前項の請求の期限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六条の十八** 被告人又は弁護人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取調べを請求した証拠については、速やかに、検察官に対し、次の各号に掲げる証拠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方法による開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証拠書類又は証拠物 当該証拠書類又は証拠物を閲覧し、かつ、謄写する機会を与えること。

二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 その氏名及び住居を知る機会を与え、かつ、その者の供述録取書等のうち、その者が公判期日において供述すると思料する内容が明らかになるもの(当該供述録取書等が存在しないとき、又はこれを閲覧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にあつては、その者が公判期日において供述すると思

料する内容の要旨を記載した書面)を閲覧し、かつ、謄写する機会を与えること。

**第三百十六条の十九** 検察官は、前条の規定による開示をすべき証拠の開示を受けたときは、第三百十六条の十七第二項の規定により被告人又は弁護人が取調べを請求した証拠について、第三百二十六条の同意をするかどうか又はその取調べの請求に関し異議がないかどうかの意見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いた上で、前項の意見を明らかにすべき期限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六条の二十** 検察官は、第三百十六条の十四及び第三百十六条の十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開示をした証拠以外の証拠であつて、第三百十六条の十七第一項の主張に関連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について、被告人又は弁護人から開示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関連性の程度その他の被告人の防御の準備のために当該開示をすることの必要性の程度並びに当該開示によつて生じるおそれのある弊害の内容及び程度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速やかに、第三百十六条の十四第一号に定める方法による開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開示の時期若しくは方法を指定し、又は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被告人又は弁護人は、前項の開示の請求を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開示の請求に係る証拠を識別するに足りる事項
- 二 第三百十六条の十七第一項の主張と開示の請求に係る証拠との関連性その他の被告人の防御の準備のために当該開示が必要である理由

**第三百十六条の二十一** 検察官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手続が終わつた後、その証明予定事実を追加し又は変更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速やかに、その追加し又は変更すべき証明予定事実を記載した書面を、裁判所に提出し、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第一項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 2 検察官は、その証明予定事実を証明するために用いる証拠の取調べの請求を追加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速やかに、その追加すべき証拠の取調べ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 3 裁判所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いた上で、第一項の書面の提出及び送付並びに前項の請求の期限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4 第三百十六条の十四から第三百十六条の十六までの規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検察官が取調べを請求した証拠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三百十六条の二十二** 被告人又は弁護人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から第三百十六条の二十までに規定する手続が終わった後、第三百十六条の十七第一項の主張を追加し又は変更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速やかに、裁判所及び検察官に対し、その追加し又は変更すべき主張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第一項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 2 被告人又は弁護人は、その証明予定事実を証明するために用いる証拠の取調べの請求を追加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速やかに、その追加すべき証拠の取調べ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三百十六条の十三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 3 裁判所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いた上で、第一項の主張を明らかにすべき期限及び前項の請求の期限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4 第三百十六条の十八及び第三百十六条の十九の規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被告人又は弁護人が取調べを請求した証拠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 5 第三百十六条の二十の規定は、第一項の追加し又は変更すべき主張に関連すると認められる証拠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三百十六条の二十三** 第二百九十九条の二及び第二百九十九条の三の規定は、検察官又は弁護人がこの目の規定による証拠の開示をする場合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三百十六条の二十四** 裁判所は、公判前整理手続を終了するに当たり、検察官及び

被告人又は弁護人との間で、事件の争点及び証拠の整理の結果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三目 証拠開示に関する裁定

**第三百十六条の二十五** 裁判所は、証拠の開示の必要性の程度並びに証拠の開示によつて生じるおそれのある弊害の内容及び程度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必要と認めるときは、第三百十六条の十四(第三百十六条の二十一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開示をすべき証拠について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第三百十六条の十八(第三百十六条の二十二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開示をすべき証拠について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決定で、当該証拠の開示の時期若しくは方法を指定し、又は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前項の請求について決定をするときは、相手方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請求についてした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六条の二十六** 裁判所は、検察官が第三百十六条の十四若しくは第三百十六条の十五第一項(第三百十六条の二十一第四項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三百十六条の二十第一項(第三百十六条の二十二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開示をすべき証拠を開示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又は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が第三百十六条の十八(第三百十六条の二十二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開示をすべき証拠を開示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相手方の請求により、決定で、当該証拠の開示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開示の時期若しくは方法を指定し、又は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前項の請求について決定をするときは、相手方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請求についてした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六条の二十七** 裁判所は、第三百十六条の二十五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の請求

について決定をするに当た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当該請求に係る証拠の提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何人にも、当該証拠の閲覧又は謄写を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

2 裁判所は、被告人又は弁護人がする前条第一項の請求について決定をするに当た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に対し、その保管する証拠であつて、裁判所の指定する範囲に属するものの標目を記載した一覧表の提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何人にも、当該一覧表の閲覧又は謄写を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

3 第一項の規定は第三百十六条の二十五第三項又は前条第三項の即時抗告が係属する抗告裁判所について、前項の規定は同条第三項の即時抗告が係属する抗告裁判所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

## 第二款 期日間整理手続

**第三百十六条の二十八** 裁判所は、審理の経過にかんがみ必要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いて、第一回公判期日後に、決定で、事件の争点及び証拠を整理するための公判準備として、事件を期日間整理手続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

2 期日間整理手続については、前款(第三百十六条の二第一項及び第三百十六条の九第三項を除く。)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前項の決定前に取調べを請求している証拠については、期日間整理手続において取調べを請求した証拠とみなし、第三百十六条の六から第三百十六条の十まで及び第三百十六条の十二中「公判前整理手続期日」とあるのは「期日間整理手続期日」と、同条第二項中「公判前整理手続調書」とあるのは「期日間整理手続調書」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三款 公判手続の特例

**第三百十六条の二十九** 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付された事件を審理する場合には、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該当しないときであつても、弁護

人がなければ開廷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三百十六條の三十** 公判前整理手続に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は、被告人又は弁護人は、証拠により証明すべき事実その他の事実上及び法律上の主張があるときは、第二百九十六條の手続に引き続き、これ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同条ただし書の規定を準用する。

**第三百十六條の三十一** 公判前整理手続に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は、裁判所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條の手続が終わつた後、公判期日において、当該公判前整理手続の結果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期日間整理手続に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は、裁判所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手続が終わつた後、公判期日において、当該期日間整理手続の結果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六條の三十二** 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は、第二百九十八條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つて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おい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ものを除き、当該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が終わつた後には、証拠調べ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は、裁判所が、必要と認めるときに、職権で証拠調べをするこ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 第三節 被害者参加

**第三百十六條の三十三** 裁判所は、次に掲げる罪に係る被告事件の被害者等若しく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又はこれらの者から委託を受けた弁護士から、被告事件の手続への参加の申出があると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犯罪の性質、被告人との関係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当該被害者等又は当

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の被告事件の手續への参加を許すものとする。

- 一 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人を死傷させた罪
- 二 刑法第七十六条から第七十八条まで、第二百十一条、第二百二十条又は第二百二十四条から第二百二十七条までの罪
- 三 前号に掲げる罪のほか、その犯罪行為にこれらの罪の犯罪行為を含む罪(第一号に掲げる罪を除く。)
- 四 前三号に掲げる罪の未遂罪

2 前項の申出は、あらかじめ、検察官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被告事件の手續への参加を許された者(以下「被害者参加人」という。)が当該被告事件の被害者等若しく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に該当せず若しくは該当しなくなつたことが明らかになつたとき、又は第三百十二条の規定により罰条が撤回若しくは変更されたため当該被告事件が同項各号に掲げる罪に係るものに該当しなくなつたときは、決定で、同項の決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犯罪の性質、被告人との関係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被告事件の手續への参加を認め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に至つたときも、同様とする。

**第三百十六条の三十四** 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は、公判期日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

2 公判期日は、これを被害者参加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が多数であ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らの者の全員又はその一部に対し、その中から、公判期日に出席する代表者を選定す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

4 裁判所は、審理の状況、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の数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公判期日の全部又は一部への出席を許さないことができる。

5 前各項の規定は、公判準備において証人の尋問又は検証が行われ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百十六條の三十五** 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は、検察官に対し、当該被告事件についての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検察官の権限の行使に関し、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当該権限を行使し又は行使しないこととしたときは、必要に応じ、当該意見を述べた者に対し、その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十六條の三十六** 裁判所は、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おいて、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から、その者がその証人を尋問することの申出があると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審理の状況、申出に係る尋問事項の内容、申出をした者の数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情状に関する事項(犯罪事実に関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の証人の供述の証明力を争うために必要な事項について、申出をした者がその証人を尋問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2 前項の申出は、検察官の尋問が終わった後(検察官の尋問がないと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尋問が終わった後)直ちに、尋問事項を明らかにして、検察官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当該事項について自ら尋問する場合を除き、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裁判長は、第二百九十五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に規定する場合のほか、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のする尋問が第一項に規定する事項以外の事項にわたる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六條の三十七** 裁判所は、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から、その者が被告人に対して第三百十一条第二項の供述を求めるための質問を発することの申出があると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が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であつて、審理の状況、申出に係る質問をする事項の内容、申出をした者の数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申出をした者が被告人に対してその質問を発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2 前項の申出は、あらかじめ、質問をする事項を明らかにして、検察官にしなければ

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当該事項について自ら供述を求める場合を除き、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裁判長は、第二百九十五条第一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のほか、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とする質問が第一項に規定する意見の陳述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事項に関係のない事項にわたる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十六条の三十八** 裁判所は、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から、事実又は法律の適用について意見を陳述することの申出がある場合において、審理の状況、申出をした者の数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公判期日において、第二百九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検察官の意見の陳述の後に、訴因として特定された事実の範囲内で、申出をした者がその意見を陳述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2 前項の申出は、あらかじめ、陳述する意見の要旨を明らかにして、検察官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裁判長は、第二百九十五条第一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のほか、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の意見の陳述が第一項に規定する範囲を超える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陳述は、証拠とはならないものとする。

**第三百十六条の三十九** 裁判所は、被害者参加人が第三百十六条の三十四第一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公判期日又は公判準備に出席する場合において、被害者参加人の年齢、心身の状態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被害者参加人が著しく不安又は緊張を覚え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その不安又は緊張を緩和するのに適当であり、かつ、裁判官若しくは訴訟関係人の尋問若しくは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若しくは訴訟関係人がする陳述を妨げ、又はその陳述の内容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者を、被害者参加人に付き添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被害者参加人に付き添うこととされた者は、裁判官若しくは訴訟

關係人の尋問若しくは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若しくは訴訟關係人がする陳述を妨げ、又はその陳述の内容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ような言動をしてはならない。

3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被害者参加人に付き添うこととされた者が、裁判官若しくは訴訟關係人の尋問若しくは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若しくは訴訟關係人がする陳述を妨げ、又はその陳述の内容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に至つたときその他その者を被害者参加人に付き添わ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に至つたときは、決定で、同項の決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4 裁判所は、被害者参加人が第三百十六条の三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り公判期日又は公判準備に出席する場合において、犯罪の性質、被害者参加人の年齢、心身の状態、被告人との関係その他の事情により、被害者参加人が被告人の面前において在席、尋問、質問又は陳述をするときは圧迫を受け精神の平穩を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であつ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檢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弁護人が出頭している場合に限り、被告人とその被害者参加人との間で、被告人から被害者参加人の状態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採ることができる。

5 裁判所は、被害者参加人が第三百十六条の三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り公判期日に出席する場合において、犯罪の性質、被害者参加人の年齢、心身の状態、名誉に対する影響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檢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傍聴人とその被害者参加人との間で、相互に相手の状態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採ることができる。

#### 第四節 証 拠

**第三百十七条** 事実の認定は、証拠による。

**第三百十八条** 証拠の証明力は、裁判官の自由な判断に委ねる。

**第三百十九条** 強制、拷問又は脅迫による自白、不当に長く抑留又は拘禁された後の自白

その他任意にされたものでない疑のある自白は、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被告人は、公判廷における自白であると否とを問わず、その自白が自己に不利益な唯一の証拠である場合には、有罪とされない。

3 前二項の自白には、起訴された犯罪について有罪であることを自認する場合を含む。

**第三百二十条** 第三百二十一条乃至第三百二十八条に規定する場合を除いては、公判期日における供述に代えて書面を証拠とし、又は公判期日外における他の者の供述を内容とする供述を証拠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

2 第二百九十一条の二の決定があつた事件の証拠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但し、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証拠とすることに異議を述べたもの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百二十一条** 被告人以外の者が作成した供述書又はその者の供述を録取した書面で供述者の署名若しくは押印のあるものは、次に掲げる場合に限り、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裁判官の面前(第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る場合を含む。)における供述を録取した書面については、その供述者が死亡、精神若しくは身体の故障、所在不明若しくは国外にいるため公判準備若しくは公判期日において供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供述者が公判準備若しくは公判期日において前の供述と異つた供述をしたとき。

二 検察官の面前における供述を録取した書面については、その供述者が死亡、精神若しくは身体の故障、所在不明若しくは国外にいるため公判準備若しくは公判期日において供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公判準備若しくは公判期日において前の供述と相反するか若しくは実質的に異つた供述をしたとき。但し、公判準備又は公判期日における供述よりも前の供述を信用すべき特別の状況の存するときに限る。

三 前二号に掲げる書面以外の書面については、供述者が死亡、精神若しくは身体の故障、所在不明又は国外にいるため公判準備又は公判期日において供述すること

ができず、且つ、その供述が犯罪事実の存否の証明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き。但し、その供述が特に信用すべき状況の下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に限る。

- 2 被告人以外の者の公判準備若しくは公判期日における供述を録取した書面又は裁判所若しくは裁判官の検証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
- 3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の検証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は、その供述者が公判期日において証人として尋問を受け、その真正に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供述した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
- 4 鑑定人の経過及び結果を記載した書面で鑑定人の作成したもの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である。

**第三百二十一条の二** 被告事件の公判準備若しくは公判期日における手続以外の刑事手続又は他の事件の刑事手続において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された証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その状況を記録した記録媒体がその一部とされた調書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その調書を取り調べた後、訴訟関係人に対し、その供述者を証人として尋問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より調書を取り調べる場合においては、第三百五条第四項ただし書の規定は、適用し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取り調べられた調書に記録された証人の供述は、第二百九十五条第一項前段並びに前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の適用については、被告事件の公判期日においてされたものとみなす。

**第三百二十二条** 被告人が作成した供述書又は被告人の供述を録取した書面で被告人の署名若しくは押印のあるものは、その供述が被告人に不利益な事実の承認を内容とするものであるとき、又は特に信用すべき状況の下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に限り、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被告人に不利益な事実の承認を内容とする書面

は、その承認が自白でない場合においても、第三百十九条の規定に準じ、任意にされたものでない疑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被告人の公判準備又は公判期日における供述を録取した書面は、その供述が任意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に限り、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二十三条** 前三条に掲げる書面以外の書面は、次に掲げるものに限り、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戸籍謄本、公正証書謄本その他公務員(外国の公務員を含む。)がその職務上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事実についてその公務員の作成した書面
- 二 商業帳簿、航海日誌その他業務の通常の過程において作成された書面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外特に信用すべき状況の下に作成された書面

**第三百二十四条** 被告人以外の者の公判準備又は公判期日における供述で被告人の供述をその内容とするものについては、第三百二十二条の規定を準用する。

2 被告人以外の者の公判準備又は公判期日における供述で被告人以外の者の供述をその内容とするものについては、第三百二十一条第一項第三号の規定を準用する。

**第三百二十五条** 裁判所は、第三百二十一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により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書面又は供述であつても、あらかじめ、その書面に記載された供述又は公判準備若しくは公判期日における供述の内容となつた他の者の供述が任意にされたものかどうかを調査した後でなければ、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百二十六条** 検察官及び被告人が証拠とすることに同意した書面又は供述は、その書面が作成され又は供述のされたときの状況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に限り、第三百二十一条乃至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

2 被告人が出頭しないでも証拠調を行うことができる場合において、被告人が出頭しないときは、前項の同意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但し、代理人又は弁護人が出頭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百二十七条** 裁判所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が合意の上、文書の内容又は公判期日に出頭すれば供述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その供述の内容を書面に記載して提出したときは、その文書又は供述すべき者を取り調べないでも、その書面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も、その書面の証明力を争うことを妨げない。

**第三百二十八条** 第三百二十一条乃至第三百二十四条の規定により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書面又は供述であつても、公判準備又は公判期日における被告人、証人その他の者の供述の証明力を争うためには、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

### 第五節 公判の裁判

**第三百二十九条** 被告事件が裁判所の管轄に属しないときは、判決で管轄違の言渡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第二百六十六条第二号の規定により地方裁判所の審判に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は、管轄違の言渡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三百三十条** 高等裁判所は、その特別権限に属する事件として公訴の提起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事件が下級の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決定で管轄裁判所にこれを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三十一条** 裁判所は、被告人の申立がなければ、土地管轄について、管轄違の言渡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管轄違の申立は、被告事件につき証拠調を開始した後は、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第三百三十二条** 簡易裁判所は、地方裁判所において審判するの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管轄地方裁判所にこれを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三十三条** 被告事件について犯罪の証明があつたときは、第三百三十四条の場合を除いては、判決で刑の言渡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刑の執行猶予は、刑の言渡しと同時に、判決でその言渡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刑法第二十五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護観察に付する場合も、同様である。

**第三百三十四条** 被告事件について刑を免除するときは、判決でその旨の言渡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三十五条** 有罪の言渡しをするには、罪となるべき事実、証拠の標目及び法令の適用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法律上犯罪の成立を妨げる理由又は刑の加重減免の理由となる事実が主張されたときは、これに対する判断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三十六條** 被告事件が罪とならないとき、又は被告事件について犯罪の証明がないときは、判決で無罪の言渡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三十七条** 左の場合には、判決で免訴の言渡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確定判決を経たとき。
- 二 犯罪後の法令により刑が廃止されたとき。
- 三 大赦があつたとき。
- 四 時効が完成したとき。

**第三百三十八條** 左の場合には、判決で公訴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被告人に対して裁判権を有しないとき。
- 二 第三百四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公訴が提起されたとき。
- 三 公訴の提起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更に同一裁判所に公訴が提起されたとき。
- 四 公訴提起の手續がその規定に違反したため無効であるとき。

**第三百三十九條** 左の場合には、決定で公訴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二百七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公訴の提起がその効力を失つたとき。

- 二 起訴狀に記載された事實が眞實であつても、何らの罪となるべき事實を包含していないとき。
  - 三 公訴が取り消されたとき。
  - 四 被告人が死亡し、又は被告人たる法人が存続しなくなつたとき。
  - 五 第十条又は第十一条の規定により審判してはならないとき。
- 2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四十条** 公訴の取消による公訴棄却の決定が確定したときは、公訴の取消後犯罪事實につきあらたに重要な証拠を発見した場合に限り、同一事件について更に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四十一条** 被告人が陳述をせず、許可を受けなくて退廷し、又は秩序維持のため裁判長から退廷を命ぜられたときは、その陳述を聴かないで判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四十二条** 判決は、公判廷において、宣告によりこれを告知する。

**第三百四十三条** 禁錮以上の刑に処する判決の宣告があつたときは、保釈又は勾留の執行停止は、その効力を失う。この場合には、あらたに保釈又は勾留の執行停止の決定がないときに限り、第九十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三百四十四条** 禁錮以上の刑に処する判決の宣告があつた後は、第六十条第二項但書及び第八十九条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

**第三百四十五条** 無罪、免訴、刑の免除、刑の執行猶予、公訴棄却(第三百三十八条第四号による場合を除く。)、罰金又は科料の裁判の告知があつたときは、勾留状は、その効力を失う。

**第三百四十六条** 押収した物について、没収の言渡がないときは、押収を解く言渡があ

つたものとする。

**第三百四十七条** 押収した贓物で被害者に還付すべき理由が明らかなものは、これを被害者に還付する言渡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贓物の対価として得た物について、被害者から交付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前項の例による。

3 仮に還付した物について、別段の言渡がないときは、還付の言渡があつたものとする。

4 前三項の規定は、民事訴訟の手續に従い、利害関係人がその権利を主張することを妨げない。

**第三百四十八条** 裁判所は、罰金、科料又は追徴を言い渡す場合において、判決の確定を待つてはその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ず、又はその執行をするのに著しい困難を生ずる虞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被告人に対し、仮に罰金、科料又は追徴に相当する金額を納付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仮納付の裁判は、刑の言渡と同時に、判決でその言渡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仮納付の裁判は、直ちにこれ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四十九条** 刑の執行猶予の言渡を取り消すべき場合には、検察官は、刑の言渡を受けた者の所在地又は最後の住所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に対しそ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刑法第二十六条の二第二号の規定により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取り消すべき場合には、前項の請求は、保護観察所の長の申出に基づい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四十九条の二** 前条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裁判所は、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又はその代理人の意見を聴いて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が刑法第二十六条の二第二号の規定による猶予の言渡しの取消しを求めるものであつて、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の請求があるときは、口頭弁論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決定をするについて口頭弁論を経る場合には、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は、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4 第一項の決定をするについて口頭弁論を経る場合には、検察官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保護観察官に意見を述べさせることができる。
- 5 第一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五十条** 刑法第五十二条の規定により刑を定むべき場合には、検察官は、その犯罪事実について最終の判決をした裁判所にそ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前条第一項及び第五項の規定を準用する。

## 第四章 即決裁判手続

### 第一節 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

**第三百五十条の二** 検察官は、公訴を提起しようとする事件について、事案が明白であり、かつ、軽微であること、証拠調べが速やかに終わると見込まれること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公訴の提起と同時に、書面により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短期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事件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2 前項の申立ては、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についての被疑者の同意がなければ、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 3 検察官は、被疑者に対し、前項の同意をするかどうかの確認を求めるときは、これを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被疑者に対し、即決裁判手続を理解させるために必要な事項(被疑者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次条の規定により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含む。)を説明し、通常の規定に従い審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 4 被疑者に弁護人がある場合には、第一項の申立ては、被疑者が第二項の同意をするほか、弁護人が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について同意をし又はその意見を留保してい

るときに限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 5 被疑者が第二項の同意をし、及び弁護人が前項の同意をし又はその意見を留保するときは、書面でその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第一項の書面には、前項の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五十条の三** 前条第三項の確認を求められた被疑者が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について同意をするかどうか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被疑者が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官は、その請求により、被疑者のため弁護人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被疑者以外の者が選任した弁護人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2 第三十七条の三の規定は、前項の請求をする場合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 第二節 公判準備及び公判手続の特例

**第三百五十条の四** 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被告人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裁判長は、できる限り速やかに、職権で弁護人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五十条の五** 検察官は、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をした事件について、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証拠書類を閲覧する機会その他の同項に規定する機会を与えるべき場合には、できる限り速やかに、そ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五十条の六** 裁判所は、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弁護人が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についてその意見を留保しているとき、又は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があつた後に弁護人が選任されたときは、弁護人に対し、できる限り速やかに、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について同意をするかどうかの確認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弁護人は、前項の同意をするときは、書面でその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五十条の七** 裁判長は、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があつた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

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いた上で、その申立て後(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は、同項の同意があつた後)、できる限り早い時期の公判期日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五十条の八** 裁判所は、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第二百九十一条第三項の手続に際し、被告人が起訴状に記載された訴因について有罪である旨の陳述をしたとき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即決裁判手続によつて審判をする旨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三百五十条の二第二項又は第四項の同意が撤回されたとき。
- 二 第三百五十条の六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項の同意がされなかつたとき、又はその同意が撤回されたとき。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事件が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
- 四 当該事件が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が相当でない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

**第三百五十条の九** 前条の手続を行う公判期日及び即決裁判手続による公判期日については、弁護人がないときは、これを開くことができない。

**第三百五十条の十** 第三百五十条の八の決定のための審理及び即決裁判手続による審判については、第二百八十四条、第二百八十五条、第二百九十六条、第二百九十七条、第三百条から第三百二条まで及び第三百四条から第三百七条まで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

- 2 即決裁判手続による証拠調べは、公判期日において、適当と認める方法で行うことができる。

**第三百五十条の十一** 裁判所は、第三百五十条の八の決定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場合には、当該決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判決の言渡し前に、被告人又は弁護人が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についての同意を撤回したとき。

- 二 判決の言渡し前に、被告人が起訴状に記載された訴因について有罪である旨の陳述を撤回したとき。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事件が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
  - 四 当該事件が即決裁判手続によることが相当でない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
- 2 前項の規定により第三百五十条の八の決定が取り消されたときは、公判手続を更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異議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第三節 証拠の特例

**第三百五十条の十二** 第三百五十条の八の決定があつた事件の証拠については、第三百二十条第一項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ただし、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証拠とすることに異議を述べたもの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第四節 公判の裁判の特例

**第三百五十条の十三** 裁判所は、第三百五十条の八の決定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できる限り、即日判決の言渡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五十条の十四** 即決裁判手続において懲役又は禁錮の言渡しをする場合には、その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三編 上 訴

### 第一章 通 則

**第三百五十一条** 検察官又は被告人は、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第二百六十六条第二号の規定により裁判所の審判に付された事件と他の事件とが併

合して審判され、一個の裁判があつた場合には、第二百六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検察官の職務を行う弁護士及び当該他の事件の検察官は、その裁判に対し各々独立して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五十二条** 検察官又は被告人以外の者で決定を受けたものは、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五十三条** 被告人の法定代理人又は保佐人は、被告人のため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五十四条** 勾留に対しては、勾留の理由の開示があつたときは、その開示の請求をした者も、被告人のため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上訴を棄却する決定に対しても、同様である。

**第三百五十五条** 原審における代理人又は弁護人は、被告人のため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五十六条** 前三条の上訴は、被告人の明示した意思に反して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百五十七条** 上訴は、裁判の一部に対して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部分を限らないで上訴をしたときは、裁判の全部に対してしたものとみなす。

**第三百五十八条** 上訴の提起期間は、裁判が告知された日から進行する。

**第三百五十九条** 検察官、被告人又は第三百五十二条に規定する者は、上訴の放棄又は取下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六十条** 第三百五十三条又は第三百五十四条に規定する者は、書面による被告人の同意を得て、上訴の放棄又は取下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六十条之二** 死刑又は無期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処する判決に対する上訴は、前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を放棄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百六十条之三** 上訴放棄の申立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六十一条** 上訴の放棄又は取下をした者は、その事件について更に上訴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上訴の放棄又は取下に同意をした被告人も、同様である。

**第三百六十二条** 第三百五十一条乃至第三百五十五条の規定により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は、自己又は代人の責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によつて上訴の提起期間内に上訴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ときは、原裁判所に上訴権回復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六十三条** 上訴権回復の請求は、事由が止んだ日から上訴の提起期間に相当する期間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上訴権回復の請求をする者は、その請求と同時に上訴の申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六十四条** 上訴権回復の請求についてした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六十五条** 上訴権回復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原裁判所は、前条の決定をするまで裁判の執行を停止する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被告人に対し勾留状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六十六条** 刑事施設にいる被告人が上訴の提起期間内に上訴の申立書を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代理者に差し出したときは、上訴の提起期間内に上訴をしたものとみなす。

2 被告人が自ら申立書を作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代理者は、これを代書し、又は所属の職員にこれ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六十七条** 前条の規定は、刑事施設にいる被告人が上訴の放棄若しくは取下げ又は上訴権回復の請求をする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第三百六十八条** 削除

**第三百六十九条** 削除

**第三百七十条** 削除

**第三百七十一条** 削除

## 第二章 控 訴

**第三百七十二條** 控訴は、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がした第一審の判決に対し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三百七十三條** 控訴の提起期間は、十四日とする。

**第三百七十四條** 控訴をするには、申立書を第一審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七十五條** 控訴の申立が明らかに控訴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第一審裁判所は、決定でこれ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三百七十六條** 控訴申立人は、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期間内に控訴趣意書を控訴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控訴趣意書には、この法律又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疎明資料又は検察官若しくは弁護人の保証書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七十七条** 左の事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控訴の申立をした場合には、控訴趣意書に、その事由があることの十分な証明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検察官又は弁護人の保証書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法律に従つて判決裁判所を構成しなかつたこと。
- 二 法令により判決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裁判官が判決に関与したこと。
- 三 審判の公開に関する規定に違反したこと。

**第三百七十八条** 左の事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控訴の申立をした場合には、控訴趣意書に、訴訟記録及び原裁判所において取り調べた証拠に現われている事実であつてその事由があることを信ずるに足りるものを援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不法に管轄又は管轄違を認めたこと。
- 二 不法に、公訴を受理し、又はこれを棄却したこと。
- 三 審判の請求を受けた事件について判決をせず、又は審判の請求を受けない事件について判決をしたこと。
- 四 判決に理由を附せず、又は理由にくいちがいがあること。

**第三百七十九条** 前二条の場合を除いて、訴訟手続に法令の違反があつてその違反が判決に影響を及ぼすことが明らか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控訴の申立をした場合には、控訴趣意書に、訴訟記録及び原裁判所において取り調べた証拠に現われている事実であつて明らかに判決に影響を及ぼすべき法令の違反があることを信ずるに足りるものを援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八十条** 法令の適用に誤があつてその誤が判決に影響を及ぼすことが明らか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控訴の申立をした場合には、控訴趣意書に、その誤及びその誤が明らかに判決に影響を及ぼすべきこと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八十一条** 刑の量定が不当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控訴の申立をした場合には、控訴趣意書に、訴訟記録及び原裁判所において取り調べた証拠に現われている事実で

あつて刑の量定が不当であることを信ずるに足りるものを援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八十二条** 事実の誤認があつてその誤認が判決に影響を及ぼすことが明らか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控訴の申立をした場合には、控訴趣意書に、訴訟記録及び原裁判所において取り調べた証拠に現われている事実であつて明らかに判決に影響を及ぼすべき誤認があることを信ずるに足りるものを援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八十二条の二** 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つて第一審の弁論終結前に取調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証拠によつて証明することのできる事実であつて前二条に規定する控訴申立の理由があることを信ずるに足りるものは、訴訟記録及び原裁判所において取り調べた証拠に現われている事実以外の事実であつても、控訴趣意書にこれ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一審の弁論終結後判決前に生じた事実であつて前二条に規定する控訴申立の理由があることを信ずるに足りるもの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である。

3 前二項の場合には、控訴趣意書に、その事実を疎明する資料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一項の場合には、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つてその証拠の取調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旨を疎明する資料をも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八十三条** 左の事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控訴の申立をした場合には、控訴趣意書に、その事由があることを疎明する資料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再審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当たる事由があること。

二 判決があつた後に刑の廃止若しくは変更又は大赦があつたこと。

**第三百八十四条** 控訴の申立は、第三百七十七条乃至第三百八十二条及び前条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するときに限り、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八十五条** 控訴の申立が法令上の方式に違反し、又は控訴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なきは、控訴裁判所は、決定でこれ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第四百二十八条第二項の異議の申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には、即時抗告に関する規定をも準用する。

**第三百八十六条** 左の場合には、控訴裁判所は、決定で控訴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三百七十六条第一項に定める期間内に控訴趣意書を差し出さないとき。
  - 二 控訴趣意書がこの法律若しくは裁判所の規則で定める方式に違反しているとき、  
又は控訴趣意書にこの法律若しく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従い必要な疎  
明資料若しくは保証書を添附しないとき。
  - 三 控訴趣意書に記載された控訴の申立の理由が、明らかに第三百七十七条乃至第三  
百八十二条及び第三百八十三条に規定する事由に該当しないとき。
-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決定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三百八十七条** 控訴審では、弁護士以外の者を弁護人に選任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三百八十八条** 控訴審では、被告人のためにする弁論は、弁護人でなければ、これ  
を  
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百八十九条** 公判期日には、検察官及び弁護人は、控訴趣意書に基いて弁論をしな  
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九十条** 控訴審においては、被告人は、公判期日に出頭することを要しない。た  
だし、裁判所は、五十万円(刑法 〃、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及び経済関係罰則の  
整備に関する法律の罪以外の罪については、当分の間、五万円)以下の罰金又は科料に  
当たる事件以外の事件について、被告人の出頭がその権利の保護のため重要であると  
認めるときは、被告人の出頭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九十一条** 弁護人が出頭しないとき、又は弁護人の選任がないときは、この法律  
により弁護人を要する場合又は決定で弁護人を附した場合を除いては、検察官の陳述

を聴いて判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九十二条** 控訴裁判所は、控訴趣意書に包含された事項は、これを調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控訴裁判所は、控訴趣意書に包含されない事項であつても、第三百七十七条乃至第三百八十二条及び第三百八十三条に規定する事由に関しては、職権で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九十三条** 控訴裁判所は、前条の調査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検察官、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事実の取調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第三百八十二条の二の疎明があつたものについては、刑の量定の不当又は判決に影響を及ぼすべき事実の誤認を証明するために欠くことのできない場合に限り、これを取り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

2 控訴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第一審判決後の刑の量定に影響を及ぼすべき情状につき取調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取調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又は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受命裁判官及び受託裁判官は、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取調をしたときは、検察官及び弁護人は、その結果に基いて弁論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九十四条** 第一審において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た証拠は、控訴審においても、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九十五条** 控訴の申立が法令上の方式に違反し、又は控訴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判決で控訴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九十六条** 第三百七十七条乃至第三百八十二条及び第三百八十三条に規定する事

由がないときは、判決で控訴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九十七条** 第三百七十七条乃至第三百八十二条及び第三百八十三条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判決で原判決を破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三百九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取調の結果、原判決を破棄しなければ明らかに正義に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判決で原判決を破棄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百九十八条** 不法に、管轄違を言い渡し、又は公訴を棄却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原判決を破棄するときは、判決で事件を原裁判所に差し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百九十九条** 不法に管轄を認めたことを理由として原判決を破棄するときは、判決で事件を管轄第一審裁判所に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控訴裁判所は、その事件について第一審の管轄権を有するときは、第一審として審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条** 前二条に規定する理由以外の理由によつて原判決を破棄するときは、判決で、事件を原裁判所に差し戻し、又は原裁判所と同等の他の裁判所に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控訴裁判所は、訴訟記録並びに原裁判所及び控訴裁判所において取り調べた証拠によつて、直ちに判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被告事件について更に判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一条** 被告人の利益のため原判決を破棄する場合において、破棄の理由が控訴をした共同被告人に共通であるときは、その共同被告人のためにも原判決を破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二条** 被告人が控訴をし、又は被告人のため控訴をした事件については、原判決の刑より重い刑を言い渡すことはできない。

**第四百三条** 原裁判所が不法に公訴棄却の決定をしなかつたときは、決定で公訴を棄却

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三百八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決定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四百三条の二** 即決裁判手続においてされた判決に対する控訴の申立ては、第三百八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判決の言渡しにおいて示された罪となるべき事実について第三百八十二条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は、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原裁判所が即決裁判手続によつて判決をした事件については、第三百九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控訴裁判所は、当該判決の言渡しにおいて示された罪となるべき事実について第三百八十二条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は、原判決を破棄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四百四条** 第二編中公判に関する規定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控訴の審判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 第三章 上 告

**第四百五条** 高等裁判所がした第一審又は第二審の判決に対しては、左の事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上告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憲法の違反があること又は憲法の解釈に誤があること。
- 二 最高裁判所の判例と相反する判断をしたこと。
- 三 最高裁判所の判例がない場合に、大審院若しくは上告裁判所たる高等裁判所の判例又はこの法律施行後の控訴裁判所たる高等裁判所の判例と相反する判断をしたこと。

**第四百六条** 最高裁判所は、前条の規定により上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以外の場合であつても、法令の解釈に関する重要な事項を含むものと認められる事件については、その判決確定前に限り、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ら上告審としてその事件を受理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七条** 上告趣意書に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上告の申立の理由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八条** 上告裁判所は、上告趣意書その他の書類によつて、上告の申立の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弁論を経ないで、判決で上告を棄却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九条** 上告審においては、公判期日に被告人を召喚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四百十条** 上告裁判所は、第四百五条各号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判決で原判決を破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判決に影響を及ぼさないことが明らかな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第四百五条第二号又は第三号に規定する事由のみがある場合において、上告裁判所がその判例を変更して原判決を維持するのを相当と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

**第四百十一条** 上告裁判所は、第四百五条各号に規定する事由がない場合であつても、左の事由があつて原判決を破棄しなければ著しく正義に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判決で原判決を破棄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判決に影響を及ぼすべき法令の違反があること。
- 二 刑の量定が甚しく不当であること。
- 三 判決に影響を及ぼすべき重大な事実の誤認があること。
- 四 再審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当たる事由があること。
- 五 判決があつた後に刑の廃止若しくは変更又は大赦があつたこと。

**第四百十二条** 不法に管轄を認めたことを理由として原判決を破棄するときは、判決で事件を管轄控訴裁判所又は管轄第一審裁判所に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十三條** 前條に規定する理由以外の理由によつて原判決を破棄するときは、判決で、事件を原裁判所若しくは第一審裁判所に差し戻し、又はこれらと同等の他の裁判所に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上告裁判所は、訴訟記録並びに原裁判所及び第一審裁判所において取り調べた証拠によつて、直ちに判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被告事件について更に判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十三條之二** 第一審裁判所が即決裁判手続によつて判決をした事件については、第四百十一條の規定にかかわらず、上告裁判所は、当該判決の言渡しにおいて示された罪となるべき事実について同條第三号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は、原判決を破棄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四百十四條** 前章の規定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上告の審判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四百十五條** 上告裁判所は、その判決の内容に誤のあることを発見したとき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申立により、判決でこれを訂正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申立は、判決の宣告があつた日から十日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上告裁判所は、適當と認めるときは、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申立により、前項の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十六條** 訂正の判決は、弁論を経ないでも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四百十七條** 上告裁判所は、訂正の判決をしないときは、速やかに決定で申立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訂正の判決に対しては、第四百十五條第一項の申立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四百十八條** 上告裁判所の判決は、宣告があつた日から第四百十五條の期間を経過したとき、又はその期間内に同條第一項の申立があつた場合には訂正の判決若しくは申

立を棄却する決定があつたときに、確定する。

## 第四章 抗 告

**第四百十九条** 抗告は、特に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規定がある場合の外、裁判所のした決定に対し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但し、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四百二十条** 裁判所の管轄又は訴訟手続に関し判決前にした決定に対しては、この法律に特に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抗告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は、勾留、保釈、押収又は押収物の還付に関する決定及び鑑定のためにする留置に関する決定については、これを適用しない。

3 勾留に対して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犯罪の嫌疑がないことを理由として抗告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四百二十一条** 抗告は、即時抗告を除いては、何時でも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但し、原決定を取り消しても実益がないようにな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四百二十二条** 即時抗告の提起期間は、三日とする。

**第四百二十三条** 抗告をするには、申立書を原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原裁判所は、抗告を理由があ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決定を更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抗告の全部又は一部を理由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申立書を受け取つた日から三日以内に意見書を添えて、これを抗告裁判所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二十四条** 抗告は、即時抗告を除いては、裁判の執行を停止する効力を有しない。但し、原裁判所は、決定で、抗告の裁判があるまで執行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

2 抗告裁判所は、決定で裁判の執行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二十五条** 即時抗告の提起期間内及びそ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裁判の執行は、停止される。

**第四百二十六条** 抗告の手續がそ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又は抗告が理由のないときは、決定で抗告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抗告が理由のあるときは、決定で原決定を取り消し、必要がある場合には、更に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二十七条** 抗告裁判所の決定に対しては、抗告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四百二十八条** 高等裁判所の決定に対しては、抗告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2 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規定がある決定並びに第四百十九条及び第四百二十条の規定により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決定で高等裁判所がしたものに対しては、その高等裁判所に異議の申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異議の申立に関しては、抗告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規定がある決定に対する異議の申立に関しては、即時抗告に関する規定をも準用する。

**第四百二十九条** 裁判官が左の裁判をした場合において、不服がある者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した裁判に対しては管轄地方裁判所に、その他の裁判官がした裁判に対してはその裁判官所属の裁判所にその裁判の取消又は変更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忌避の申立を却下する裁判

二 勾留、保釈、押収又は押収物の還付に関する裁判

三 鑑定のため留置を命ずる裁判

四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に対して過料又は費用の賠償を命ずる裁判

五 身体の検査を受ける者に対して過料又は費用の賠償を命ずる裁判

- 2 第四百二十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請求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 3 第一項の請求を受けた地方裁判所又は家庭裁判所は、合議体で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一項第四号又は第五号の裁判の取消又は変更の請求は、その裁判のあつた日から三日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前項の請求期間内及びそ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裁判の執行は、停止される。

**第四百三十条** 検察官又は検察事務官のした第三十九条第三項の処分又は押収若しくは押収物の還付に関する処分に不服がある者は、その検察官又は検察事務官が所属する検察庁の対応する裁判所にその処分の取消又は変更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司法警察職員のした前項の処分に不服がある者は、司法警察職員の職務執行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にその処分の取消又は変更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二項の請求については、行政事件訴訟に関する法令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

**第四百三十一条** 前二条の請求をするには、請求書を管轄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三十二条** 第四百二十四条、第四百二十六条及び第四百二十七条の規定は、第四百二十九条及び第四百三十条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第四百三十三条** この法律により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決定又は命令に対しては、第四百五条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する場合に限り、最高裁判所に特に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抗告の提起期間は、五日とする。

**第四百三十四条** 第四百二十三条、第四百二十四条及び第四百二十六条の規定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前条第一項の抗告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 第四編 再 審

**第四百三十五条** 再審の請求は、左の場合において、有罪の言渡をした確定判決に対して、その言渡を受けた者の利益のために、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原判決の証拠となつた証拠書類又は証拠物が確定判決により偽造又は変造であつたことが証明されたとき。
- 二 原判決の証拠となつた証言、鑑定、通訳又は翻訳が確定判決により虚偽であつたことが証明されたとき。
- 三 有罪の言渡を受けた者を誣告した罪が確定判決により証明されたとき。但し、誣告により有罪の言渡を受けたときに限る。
- 四 原判決の証拠となつた裁判が確定裁判により変更されたとき。
- 五 特許権、実用新案権、意匠権又は商標権を害した罪により有罪の言渡をした事件について、その権利の無効の審決が確定したとき、又は無効の判決があつたとき。
- 六 有罪の言渡を受けた者に対して無罪若しくは免訴を言い渡し、刑の言渡を受けた者に対して刑の免除を言い渡し、又は原判決において認めた罪より軽い罪を認めるべき明らかな証拠をあらたに発見したとき。
- 七 原判決に参与した裁判官、原判決の証拠となつた証拠書類の作成に参与した裁判官又は原判決の証拠となつた書面を作成し若しくは供述をした検察官、検察事務官若しくは司法警察職員が被告事件について職務に関する罪を犯したことが確定判決により証明されたとき。但し、原判決をする前に裁判官、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に対して公訴の提起があつた場合には、原判決をした裁判所がその事実を知らなかつたときに限る。

**第四百三十六条** 再審の請求は、左の場合において、控訴又は上告を棄却した確定判決に対して、その言渡を受けた者の利益のために、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とき。
- 二 原判決又はその証拠となつた証拠書類の作成に参与した裁判官について前条第七号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とき。

2 第一審の確定判決に対して再審の請求をした事件について再審の判決があつた後は、控訴棄却の判決に対しては、再審の請求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3 第一審又は第二審の確定判決に対して再審の請求をした事件について再審の判決があつた後は、上告棄却の判決に対しては、再審の請求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四百三十七条** 前二条の規定に従い、確定判決により犯罪が証明されたことを再審の請求の理由とすべき場合において、その確定判決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事実を証明して再審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証拠がないという理由によつて確定判決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四百三十八条** 再審の請求は、原判決をした裁判所がこれを管轄する。

**第四百三十九条** 再審の請求は、左の者がこれをする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検察官
  - 二 有罪の言渡を受けた者
  - 三 有罪の言渡を受けた者の法定代理人及び保佐人
  - 四 有罪の言渡を受けた者が死亡し、又は心神喪失の状態に在る場合には、その配偶者、直系の親族及び兄弟姉妹
- 2 第四百三十五条第七号又は第四百三十六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事由による再審の請求は、有罪の言渡を受けた者がその罪を犯させた場合には、検察官でなければこれをするできない。

**第四百四十条** 検察官以外の者は、再審の請求をする場合には、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弁護人の選任は、再審の判決があるまでその効力を有する。

**第四百四十一条** 再審の請求は、刑の執行が終り、又はその執行を受けないようになつたときでも、これをする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四十二条** 再審の請求は、刑の執行を停止する効力を有しない。但し、管轄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は、再審の請求についての裁判があるまで刑の執行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四十三条** 再審の請求は、これ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2 再審の請求を取り下げた者は、同一の理由によつては、更に再審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四百四十四条** 第三百六十六条の規定は、再審の請求及びその取下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四百四十五条** 再審の請求を受けた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合議体の構成員に再審の請求の理由について、事実の取調をさせ、又は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受命裁判官及び受託裁判官は、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第四百四十六条** 再審の請求が法令上の方式に違反し、又は請求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決定でこれ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四十七条** 再審の請求が理由のないときは、決定でこれ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何人も、同一の理由によつては、更に再審の請求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四百四十八条** 再審の請求が理由のあるときは、再審開始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再審開始の決定をしたときは、決定で刑の執行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四十九条** 控訴を棄却した確定判決とその判決によつて確定した第一審の判決とに対して再審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第一審裁判所が再審の判決をしたときは、

控訴裁判所は、決定で再審の請求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一審又は第二審の判決に対する上告を棄却した判決とその判決によつて確定した第一審又は第二審の判決とに対して再審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第一審裁判所又は控訴裁判所が再審の判決をしたときは、上告裁判所は、決定で再審の請求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五十条** 第四百四十六条、第四百四十七条第一項、第四百四十八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五十一条** 裁判所は、再審開始の決定が確定した事件については、第四百四十九条の場合を除いては、その審級に従い、更に審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左の場合には、第三百十四条第一項本文及び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第四号の規定は、前項の審判にこれを適用しない。

一 死亡者又は回復の見込がない心神喪失者のために再審の請求がされたとき。

二 有罪の言渡を受けた者が、再審の判決がある前に、死亡し、又は心神喪失の状態に陥りその回復の見込がないとき。

3 前項の場合には、被告人の出頭がなくても、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弁護人が出頭しなければ開廷することはできない。

4 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再審の請求をした者が弁護人を選任しないときは、裁判長は、職権で弁護人を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五十二条** 再審においては、原判決の刑より重い刑を言い渡すことはできない。

**第四百五十三条** 再審において無罪の言渡をしたときは、官報及び新聞紙に掲載して、その判決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五編 非常上告

**第四百五十四条** 検事総長は、判決が確定した後その事件の審判が法令に違反したことを発見したときは、最高裁判所に非常上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五十五条** 非常上告をするには、その理由を記載した申立書を最高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五十六条** 公判期日には、検察官は、申立書に基いて陳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五十七条** 非常上告が理由のないときは、判決でこれ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五十八条** 非常上告が理由のあるときは、左の区別に従い、判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原判決が法令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違反した部分を破棄する。但し、原判決が被告人のため不利益であるときは、これを破棄して、被告事件について更に判決をする。
- 二 訴訟手続が法令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違反した手続を破棄する。

**第四百五十九条** 非常上告の判決は、前条第一号但書の規定によりされたものを除いては、その効力を被告人に及ぼさない。

**第四百六十条** 裁判所は、申立書に含まれた事項に限り、調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裁判所は、裁判所の管轄、公訴の受理及び訴訟手続に関しては、事実の取調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第三百九十三条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 第六編 略式手続

**第四百六十一条** 簡易裁判所は、檢察官の請求により、その管轄に属する事件について、公判前、略式命令で、百万円以下の罰金又は料金を科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刑の執行猶予をし、没収を科し、その他付随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六十一条の二** 檢察官は、略式命令の請求に際し、被疑者に対し、あらかじめ、略式手続を理解させ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説明し、通常の規定に従い審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た上、略式手続によることについて異議がないかどうかを確か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疑者は、略式手続によることについて異議がないときは、書面でその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六十二条** 略式命令の請求は、公訴の提起と同時に、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書面には、前条第二項の書面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六十三条** 前条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事件が略式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り、又はこれを行うことが相当でないもので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通常の規定に従い、審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檢察官が、第四百六十一条の二に定める手続をせず、又は前条第二項に違反して略式命令を請求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である。

3 裁判所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通常の規定に従い審判をするときは、直ちに檢察官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及び第二項の場合には、第二百七十一条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とする。但し、同条第二項に定める期間は、前項の通知があつた日から二箇月とする。

**第四百六十三条の二** 前条の場合を除いて、略式命令の請求があつた日から四箇月以内

に略式命令が被告人に告知されないときは、公訴の提起は、さかのぼつてその効力を失う。

2 前項の場合には、裁判所は、決定で、公訴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略式命令が既に検察官に告知されているときは、略式命令を取り消した上、そ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六十四条** 略式命令には、罪となるべき事実、適用した法令、科すべき刑及び附随の処分並びに略式命令の告知があつ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正式裁判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六十五条** 略式命令を受けた者又は検察官は、そ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正式裁判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正式裁判の請求は、略式命令をした裁判所に、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正式裁判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裁判所は、速やかにその旨を検察官又は略式命令を受け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六十六条** 正式裁判の請求は、第一審の判決があるまでこれ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六十七条** 第三百五十三条、第三百五十五条乃至第三百五十七条、第三百五十九条、第三百六十条及び第三百六十一条乃至第三百六十五条の規定は、正式裁判の請求又はその取下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四百六十八条** 正式裁判の請求が法令上の方式に違反し、又は請求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決定でこれ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正式裁判の請求を適法とするときは、通常の規定に従い、審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略式命令に拘束されない。

**第四百六十九条** 正式裁判の請求により判決をしたときは、略式命令は、その効力を失う。

**第四百七十条** 略式命令は、正式裁判の請求期間の経過又はその請求の取下により、確定判決と同一の効力を生ずる。正式裁判の請求を棄却する裁判が確定したときも、同様である。

## 第七編 裁判の執行

**第四百七十一条** 裁判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確定した後これを執行する。

**第四百七十二条** 裁判の執行は、その裁判をした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がこれを指揮する。但し、第七十条第一項但書の場合、第八十条第一項但書の場合その他その性質上裁判所又は裁判官が指揮すべき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上訴の裁判又は上訴の取下により下級の裁判所の裁判を執行する場合には、上訴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がこれを指揮する。但し、訴訟記録が下級の裁判所又はその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に在るときは、その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が、これを指揮する。

**第四百七十三条** 裁判の執行の指揮は、書面でこれをし、これに裁判書又は裁判を記載した調書の謄本又は抄本を添え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刑の執行を指揮する場合を除いては、裁判書の原本、謄本若しくは抄本又は裁判を記載した調書の謄本若しくは抄本に認印して、これをする事ができる。

**第四百七十四条** 二以上の主刑の執行は、罰金及び科料を除いては、その重いものを先にする。但し、検察官は、重い刑の執行を停止して、他の刑の執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七十五条** 死刑の執行は、法務大臣の命令による。

2 前項の命令は、判決確定の日から六箇月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上訴権回復若しくは再審の請求、非常上告又は恩赦の出願若しくは申出がされその手続が終了するまでの期間及び共同被告人であつた者に対する判決が確定するまでの期間は、これをその期間に算入しない。

**第四百七十六条** 法務大臣が死刑の執行を命じたときは、五日以内にその執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七十七条** 死刑は、検察官、検察事務官及び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代理者の立会いの上、これを執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検察官又は刑事施設の長の許可を受けた者でなければ、刑場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

**第四百七十八条** 死刑の執行に立ち会つた検察事務官は、執行始末書を作り、検察官及び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代理者とともに、これに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七十九条** 死刑の言渡を受けた者が心神喪失の状態に在るときは、法務大臣の命令によつて執行を停止する。

2 死刑の言渡を受けた女子が懐胎しているときは、法務大臣の命令によつて執行を停止す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死刑の執行を停止した場合には、心神喪失の状態が回復した後又は出産の後に法務大臣の命令がなければ、執行することはできない。

4 第四百七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命令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判決確定の日とあるのは、心神喪失の状態が回復した日又は出産の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四百八十条** 懲役、禁錮又は拘留の言渡を受けた者が心神喪失の状態に在るときは、刑の言渡をした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又は刑の言渡を受けた者の所在地を

管轄する地方検察庁の検察官の指揮によつて、その状態が回復するまで執行を停止する。

**第四百八十一条** 前条の規定により刑の執行を停止した場合には、検察官は、刑の言渡を受けた者を監護義務者又は地方公共団体の長に引き渡し、病院その他の適当な場所に入れ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刑の執行を停止された者は、前項の処分があるまでこれを刑事施設に留置し、その期間を刑期に算入する。

**第四百八十二条** 懲役、禁錮又は拘留の言渡を受けた者について左の事由があるときは、刑の言渡をした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又は刑の言渡を受けた者の現在地を管轄する地方検察庁の検察官の指揮によつて執行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刑の執行によつて、著しく健康を害するとき、又は生命を保つことのできない虞があるとき。
- 二 年齢七十年以上であるとき。
- 三 受胎後百五十日以上であるとき。
- 四 出産後六十日を経過しないとき。
- 五 刑の執行によつて回復することのできない不利益を生ずる虞があるとき。
- 六 祖父母又は父母が年齢七十年以上又は重病若しくは不具で、他にこれを保護する親族がないとき。
- 七 子又は孫が幼年で、他にこれを保護する親族がないとき。
- 八 その他重大な事由があるとき。

**第四百八十三条** 第五百条に規定する申立の期間内及びそ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の執行は、その申立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停止される。

**第四百八十四条** 死刑、懲役、禁錮又は拘留の言渡しを受けた者が拘禁されていないときは、検察官は、執行のためこれを呼び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呼出しに応じないときは、収容状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八十五条** 死刑、懲役、禁錮又は拘留の言渡しを受けた者が逃亡したとき、又は逃亡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検察官は、直ちに収容状を発し、又は司法警察員にこれを発せしめ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八十六条** 死刑、懲役、禁錮又は拘留の言渡しを受けた者の所在地が分からないときは、検察官は、検事長にその者の刑事施設への収容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請求を受けた検事長は、その管内の検察官に収容状を発せし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八十七条** 収容状には、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の氏名、住居、年齢、刑名、刑期その他収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八十八条** 収容状は、勾引状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第四百八十九条** 収容状の執行については、勾引状の執行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第四百九十条** 罰金、科料、没収、追徴、過料、没取、訴訟費用、費用賠償又は仮納付の裁判は、検察官の命令によつてこれを執行する。この命令は、執行力のある債務名義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2 前項の裁判の執行は、民事執行法（昭和五十四年法律第四号）その他強制執行の手續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従つてする。ただし、執行前に裁判の送達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四百九十一条** 没収又は租税その他の公課若しくは専売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より言い渡した罰金若しくは追徴は、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が判決の確定した後死亡した場合には、相続財産についてこれ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九十二条** 法人に対して罰金、科料、没収又は追徴を言い渡した場合に、その法人が判決の確定した後合併によつて消滅したときは、合併の後存続する法人又は合併

によつて設立された法人に対して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百九十三条** 第一審と第二審とにおいて、仮納付の裁判があつた場合に、第一審の仮納付の裁判について既に執行があつたときは、その執行は、これを第二審の仮納付の裁判で納付を命ぜられた金額の限度において、第二審の仮納付の裁判についての執行とみなす。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一審の仮納付の裁判の執行によつて得た金額が第二審の仮納付の裁判で納付を命ぜられた金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超過額は、これを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九十四条** 仮納付の裁判の執行があつた後に、罰金、科料又は追徴の裁判が確定したときは、その金額の限度において刑の執行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仮納付の裁判の執行によつて得た金額が罰金、科料又は追徴の金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超過額は、これを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九十五条** 上訴の提起期間中の未決勾留の日数は、上訴申立後の未決勾留の日数を除き、全部これを本刑に通算する。

2 上訴申立後の未決勾留の日数は、左の場合には、全部これを本刑に通算する。

一 検察官が上訴を申し立てたとき。

二 検察官以外の者が上訴を申し立てた場合においてその上訴審において原判決が破棄されたとき。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通算については、未決勾留の一日を刑期の一日又は金額の四千元に折算する。

4 上訴裁判所が原判決を破棄した後の未決勾留は、上訴中の未決勾留日数に準じて、これを通算する。

**第四百九十六条** 没収物は、検察官がこれを処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九十七条** 沒收を執行した後三箇月以内に、権利を有する者が沒收物の交付を請求したときは、檢察官は、破壊し、又は廢棄すべき物を除いては、これ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沒收物を処分した後前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は、檢察官は、公売によつて得た代價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九十八条** 偽造し、又は変造された物を返還する場合には、偽造又は変造の部分をその物に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偽造し、又は変造された物が押収されていないときは、これを提出させて、前項に規定す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物が公務所に属するときは、偽造又は変造の部分を公務所に通知して相当な処分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百九十九条** 押収物の還付を受けるべき者の所在が判らないため、又はその他の事由によつて、その物を還付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檢察官は、その旨を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つて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公告をしたときから六箇月以内に還付の請求がないときは、その物は、国庫に帰属する。

3 前項の期間内でも、価値のない物は、これを廢棄し、保管に不便な物は、これを公売してその代價を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百条** 訴訟費用の負担を命ぜられた者は、貧困のためこれ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所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訴訟費用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その裁判の執行の免除の申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申立は、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が確定した後二十日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百条の二** 被告人又は被疑者は、檢察官に訴訟費用の概算額の子納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百条の三** 檢察官は、訴訟費用の裁判を執行する場合において、前条の規定による

予納がされた金額があるときは、その予納がされた金額から当該訴訟費用の額に相当する金額を控除し、当該金額を当該訴訟費用の納付に充て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予納がされた金額から訴訟費用の額に相当する金額を控除して残余があるときは、その残余の額は、その予納をした者の請求により返還する。

**第五百条の四**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第五百条の二の規定による予納がされた金額は、その予納をした者の請求により返還する。

- 一 第三十八条の二の規定により弁護人の選任が効力を失つたとき。
- 二 訴訟手続が終了する場合において、被告人に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がなされなかつたとき。
- 三 訴訟費用の負担を命ぜられた者が、訴訟費用の全部について、その裁判の執行の免除を受けたとき。

**第五百一条** 刑の言渡を受けた者は、裁判の解釈について疑があるときは、言渡をした裁判所に裁判の解釈を求める申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百二条** 裁判の執行を受ける者又はその法定代理人若しくは保佐人は、執行に関し検察官のした処分を不当とするときは、言渡をした裁判所に異議の申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百三条** 第五百条及び前二条の申立ては、決定があるまでこれ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2 第三百六十六条の規定は、第五百条及び前二条の申立て及びその取下げ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第五百四条** 第五百条、第五百一条及び第五百二条の申立てについてした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百五条** 罰金又は科料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ける労役場留置の執行については、刑の執行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第五百六条** 第四百九十条第一項の裁判の執行の費用は、執行を受ける者の負担とし、民事執行法その他強制執行の手續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従い、執行と同時にこれを取り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百七条** 検察官又は裁判所若しくは裁判官は、裁判の執行に関し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刑事訴訟規則

昭和二十三年十二月一日 最高裁判所規則 第三十二号  
最終改正：昭和二十四年五月二八日 最高裁判所規則 第八号

### 第一編 總則(第一条)

- 第一章 裁判所の管轄(第二条-第八条)
- 第二章 裁判所職員の除斥、忌避及び回避(第九条-第十五条)
- 第三章 訴訟能力(第十六条)
- 第四章 弁護及び補佐(第十七条-第三十二条)
- 第五章 裁判(第三十三条-第三十六条)
- 第六章 書類及び送達(第三十七条-第六十五条)
- 第七章 期間(第六十六条·第六十六条の二)
- 第八章 被告人の召喚、勾引及び勾留(第六十七条-第九十二条の二)
- 第九章 押収及び搜索(第九十三条-第一百条)
- 第十章 検証(第一百一条-第一百五条)
- 第十一章 証人尋問(第一百六条-第一百二十七条)
- 第十二章 鑑定(第一百二十八条-第一百三十五条)
- 第十三章 通訳及び翻訳(第一百三十六条)
- 第十四章 証拠保全(第一百三十七条·第一百三十八条)
- 第十五章 訴訟費用(第一百三十八条の二-第一百三十八条の七)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 第十六章 費用の補償(第一百三十八条の八·第一百三十八条の九)  
(平一八最裁規一一·旧第十五章繰下)

### 第二編 第一審

- 第一章 搜索(第一百三十九条-第一百六十三条)
- 第二章 公訴(第一百六十四条-第一百七十五条)
- 第三章 公判

第一節 公判準備及び公判手続(第七十六條-第二百十七條)

第二節 争点及び証拠の整理手続(平二〇最裁規六·旧第一節の二線下)

第一款 公判前整理手続

第一目 通則(第二百十七條の二-第二百十七條の十八)

第二目 争点及び証拠の整理

(第二百十七條の十九-第二百十七條の二十三)

第三目 証拠開示に関する裁定

(第二百十七條の二十四-第二百十七條の二十六)

第二款 期日間整理手続(第二百十七條の二十七)

第三款 公判手続の特例

(第二百十七條の二十八-第二百十七條の三十一)

第三節 被害者参加(第二百十七條の三十二-第二百十七條の三十八)

(平二〇最裁規六·追加)

第四節 公判の裁判(第二百十八條-第二百二十二條の十)

(平二〇最裁規六·旧第二節線下)

第四章 即決裁判手続(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第一節 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

(第二百二十二條の十一-第二百二十二條の十三)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第二節 公判準備及び公判手続の特例

(第二百二十二條の十四-第二百二十二條の二十)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第三編 上訴

第一章 通則(第二百二十三條-第二百三十四條)

第二章 控訴(第二百三十五條-第二百五十條)

第三章 上告(第二百五十一條-第二百七十條)

第四章 抗告(第二百七十一條-第二百七十六條)

第四編 少年事件の特別手続

(第二百七十七條-第二百八十二條)

第五編	再審(第二百八十三条-第二百八十六条)
第六編	略式手続(第二百八十七条-第二百九十四条)
第七編	裁判の執行(第二百九十五条-第二百九十五条の五)
第八編	補則(第二百九十六条-第三百五条)
附則	

## 第一編 総則

(この規則の解釈、運用)

**第一条** この規則は、憲法の所期する裁判の迅速と公正とを図るようにこれを解釈し、運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訴訟上の権利は、誠実にこれを行使し、濫用してはならない。

### 第一章 裁判所の管轄

(管轄の指定、移転の請求の方式・法第十五条等)

**第二条** 管轄の指定又は移転の請求をするには、理由を附した請求書を管轄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管轄の指定、移転の請求の通知・法第十五条等)

**第三条** 検察官は、裁判所に係属する事件について管轄の指定又は移転の請求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請求書の謄本の交付、意見書の差出・法第十七条)

**第四条** 検察官は、裁判所に係属する事件について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三百一十一号。以下法という。)第十七条第一項各号に規定する事由のため管轄移転の請求をした場合には、速やかに請求書の謄本を被告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告人は、謄本の交付を受けた日から三日以内に管轄裁判所に意見書を差し出すことができる。

**(被告人の管轄移転の請求・法第十七条)**

**第五条** 被告人が管轄移転の請求書を差し出すには、事件の係属する裁判所を経由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裁判所は、請求書を受け取つたときは、速やかにこれをその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訴訟手続の停止・法第十五条等)**

**第六条** 裁判所に係属する事件について管轄の指定又は移転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決定があるまで訴訟手続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移送の請求の方式・法第十九条)**

**第七条** 法第十九条の規定による移送の請求をするには、理由を附した請求書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意見の聴取・法第十九条)**

**第八条** 法第十九条の規定による移送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相手方又はその弁護人の意見を聴いて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職権で法第十九条の規定による移送の決定をするに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二章 裁判所職員の除斥、忌避及び回避

**(忌避の申立て・法第二十一条)**

**第九条** 合議体の構成員である裁判官に対する忌避の申立ては、その裁判官所属の裁判

所に、受命裁判官、地方裁判所の一人の裁判官又は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対する忌避の申立ては、忌避すべき裁判官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忌避の申立てをするには、その原因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忌避の原因及び忌避の申立てをした者が事件について請求若しくは陳述をした際に忌避の原因があることを知らなかつたこと又は忌避の原因が事件について請求若しくは陳述をした後に生じたことは、申立てをした日から三日以内に書面でこれ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八・平一三最裁規一・平二〇最裁規一四・一部改正)

(申立てに対する意見書・法第二十三条)

**第十条** 忌避された裁判官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いては、忌避の申立てに対し意見書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地方裁判所の一人の裁判官又は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忌避の申立てを理由があるものとするとき。
- 二 忌避の申立てが訴訟を遅延させる目的のみでされ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してこれを却下するとき。
- 三 忌避の申立てが法第二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前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に定める手続に違反してされたものとしてこれを却下するとき。

(昭二四最裁規八・平一三最裁規一・平二〇最裁規一四・一部改正)

(訴訟手続の停止)

**第十一条** 忌避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前条第二号及び第三号の場合を除いては、訴訟手続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除斥の裁判・法第二十三条)

**第十二条** 忌避の申立について決定をすべき裁判所は、法第二十条各号の一に該当する

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除斥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決定をするには、当該裁判官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当該裁判官は、第一項の決定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裁判所が当該裁判官の退去により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直近上級の裁判所が、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回避)

**第十三条** 裁判官は、忌避されるべき原因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回避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回避の申立は、裁判官所属の裁判所に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忌避の申立について決定をすべき裁判所は、回避の申立について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回避については、前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を準用する。

#### (除斥、回避の裁判の送達)

**第十四条** 前二条の決定は、これを送達しない。

#### (準用規定)

**第十五条** 裁判所書記官については、この章の規定を準用する。

2 受命裁判官に附属する裁判所書記官に対する忌避の申立は、その附属する裁判官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 第三章 訴訟能力

#### (被疑者の特別代理人選任の請求・法第二十九条)

**第十六条** 被疑者の特別代理人の選任の請求は、当該被疑事件を取り扱う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の所属の官公署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四章 弁護及び補佐

### (被疑者の弁護人の選任・法第三十条)

**第十七条** 公訴の提起前にした弁護人の選任は、弁護人と連署した書面を当該被疑事件を取り扱う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に差し出した場合に限り、第一審におい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 (被告人の弁護人の選任の方式・法第三十条)

**第十八条** 公訴の提起後における弁護人の選任は、弁護人と連署した書面を差し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追起訴された事件の弁護人の選任・法第三十条)

**第十八条の二** 法第三十条に定める者が一の事件についてした弁護人の選任は、その事件の公訴の提起後同一裁判所に公訴が提起され且つこれと併合された他の事件につい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但し、被告人又は弁護人がこれと異なる申述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 (被告人、被疑者に対する通知・法第三十一条の二)

**第十八条の三** 刑事収容施設(刑事施設、留置施設及び海上保安留置施設をいう。以下同じ。)に収容され、又は留置されている被告人又は被疑者に対する法第三十一条の二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刑事施設の長、留置業務管理者(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留置業務管理者をいう。以下同じ。)又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同法第二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をいう。以下同じ。)にする。

2 刑事施設の長、留置業務管理者又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前項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当該被告人又は被疑者にその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平一九最裁規六·一部改正)

(主任弁護人·法第三十三条)

**第十九条** 被告人に数人の弁護人があるときは、その一人を主任弁護人とする。但し、地方裁判所においては、弁護士でない者を主任弁護人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

2 主任弁護人は、被告人が単独で、又は全弁護人の合意でこれを指定する。

3 主任弁護人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者は、その指定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4 全弁護人のする主任弁護人の指定又はその変更は、被告人の明示した意思に反し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主任弁護人の指定、変更の方式·法第三十三条)

**第二十条** 被告人又は全弁護人のする主任弁護人の指定又はその変更は、書面を裁判所に差し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公判期日において主任弁護人の指定を変更するには、その旨を口頭で申述すれば足りる。

(昭二六最裁規一五·全改)

(裁判長の指定する主任弁護人·法第三十三条)

**第二十一条** 被告人に数人の弁護人がある場合に主任弁護人がないときは、裁判長は、主任弁護人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長は、前項の指定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主任弁護人は、第十九条の主任弁護人ができるまで、その職務を行う。

(主任弁護人の指定、変更の通知·法第三十三条)

**第二十二条** 主任弁護人の指定又はその変更については、被告人がこれ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検察官及び主任弁護人となつた者に、全弁護人又は裁判長がこれ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検察官及び被告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副主任弁護人・法第三十三条)**

**第二十三条** 裁判長は、主任弁護人に事故がある場合には、他の弁護人のうち一人を副主任弁護人に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2 主任弁護人があらかじめ裁判所に副主任弁護人となるべき者を届け出た場合には、その者を副主任弁護人に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長は、第一項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4 副主任弁護人の指定又はその取消については、前条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主任弁護人、副主任弁護人の辞任、解任・法第三十三条)**

**第二十四条** 主任弁護人又は副主任弁護人の辞任又は解任については、第二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2 主任弁護人又は副主任弁護人の辞任又は解任があつたときは、直ちにこれを訴訟関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被告人が解任をしたときは、被告人に対しては、通知することを要しない。

**(主任弁護人、副主任弁護人の権限・法第三十四条)**

**第二十五条** 主任弁護人又は副主任弁護人は、弁護人に対する通知又は書類の送達について他の弁護人を代表する。

2 主任弁護人及び副主任弁護人以外の弁護人は、裁判長又は裁判官の許可及び主任弁護人又は副主任弁護人の同意がなければ、申立、請求、質問、尋問又は陳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但し、証拠物の謄写の許可の請求、裁判書又は裁判を記載した調書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及び公判期日において証拠調が終つた後にする意見の陳述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被告人の弁護人の数の制限・法第三十五条)**

**第二十六条** 裁判所は、特別の事情があるときは、弁護人の数を各被告人について三人までに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制限の決定は、被告人にこれを告知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 3 被告人の弁護人の数を制限した場合において制限した数を超える弁護人がある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各弁護人及びこれらの弁護人を選任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制限の決定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告知のあつた日から七日の期間を経過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 4 前項の制限の決定が効力を生じた場合になお制限された数を超える弁護人があるときは、弁護人の選任は、その効力を失う。

**(被疑者の弁護人の数の制限・法第三十五条)**

- 第二十七条** 被疑者の弁護人の数は、各被疑者について三人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但し、当該被疑事件を取り扱う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の所属の官公署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が特別の事情があるものと認めて許可を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2 前項但書の許可は、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者又はその依頼により弁護人となろうとする者の請求により、これをする。
  - 3 第一項但書の許可は、許可すべき弁護人の数を指定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国選弁護人選任の請求・法第三十六条等)**

- 第二十八条** 法第三十六条、第三十七条の二又は第三百五十条の三第一項の請求をするには、その理由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一部改正)**

**(国選弁護人選任の請求先裁判官・法第三十七条の二)**

- 第二十八条の二** 法第三十七条の二の請求は、勾留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その所属する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その支部の所在地を含む。)に在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国選弁護人選任請求書等の提出・法第三十七条の二等)**

**第二十八条の三** 刑事収容施設に收容され、又は留置されている被疑者が法第三十七条の二又は第三百五十条の三第一項の請求をするには、裁判所書記官の面前で行う場合を除き、刑事施設の長、留置業務管理者若しく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又はその代理者を經由して、請求書及び法第三十六条の二に規定する資力申告書を裁判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留置業務管理者若しく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又はその代理者は、被疑者から同項の書面を受け取つたときは、直ちにこれを裁判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法第三百五十条の三第一項の請求をする場合を除き、勾留を請求されていない被疑者から前項の書面を受け取つた場合には、当該被疑者が勾留を請求された後直ちにこれを裁判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留置業務管理者若しく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又はその代理者は、第一項の書面をファクシミリを利用して送信することにより裁判官に送付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による送付がされたときは、その時に、第一項の書面の提出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5 裁判官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刑事施設の長、留置業務管理者又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に対し、送信に使用した書面を提出させることができる。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平一九最裁規六・一部改正)**

**(弁護人の選任に関する処分をすべき裁判官)**

**第二十八条の四** 法第三十七条の四の規定による弁護人の選任に関する処分は、勾留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その所属する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その支部の所在地を含む。)に在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第二十八条の五** 法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十七条の四の規定により弁護人が付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法第三十七条の五の規定による弁護人の選任に関する処分は、最初の弁護人を付した裁判官、その所属する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その支部の所在地を含む。)に在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国選弁護人の選任・法第三十八条)

**第二十九条** 法の規定に基づいて裁判所又は裁判長が付すべき弁護人は、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在る弁護士会に所属する弁護士の中から裁判長がこれ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管轄区域内に選任すべき事件について弁護士としての活動をすることのできる弁護士がないとき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これに隣接する他の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在る弁護士会に所属する弁護士その他適当な弁護士の中からこれ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法の規定に基づいて裁判官が弁護人を付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控訴裁判所が弁護人を付する場合であつて、控訴審の審理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裁判長は、原審における弁護人(法の規定に基づいて裁判所若しくは裁判長又は裁判官が付したものに限る。)であつた弁護士を弁護人に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は、上告裁判所が弁護人を付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5 被告人又は被疑者の利害が相反しないときは、同一の弁護人に数人の弁護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昭二五最裁規二八・平一八最裁規一一・一部改正)

(弁護人の解任に関する処分をすべき裁判官・法第三十八条の三)

**第二十九条の二** 法第三十八条の三第四項の規定による弁護人の解任に関する処分は、

当該弁護人を付した裁判官、その所属する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その支部の所在地を含む。)に在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国選弁護人の選任等の通知・法第三十八条等)

**第二十九条の三** 法の規定に基づいて裁判長又は裁判官が弁護人を選任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被疑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にも直ち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法の規定に基づいて裁判所又は裁判官が弁護人を解任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裁判所における接見等・法第三十九条)

**第三十条** 裁判所は、身体の拘束を受けている被告人又は被疑者が裁判所の構内にいる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者の逃亡、罪証の隠滅又は戒護に支障のある物の授受を防ぐ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これらの者と弁護人又は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者の依頼により弁護人となろうとする者との接見については、その日時、場所及び時間を指定し、又、書類若しくは物の授受については、これ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弁護人の書類の閲覧等・法第四十条)

**第三十一条** 弁護人は、裁判長の許可を受けて、自己の使用人その他の者に訴訟に関する書類及び証拠物を閲覧又は謄写させることができる。

(補佐人の届出の方式・法第四十二条)

**第三十二条** 補佐人となるための届出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五章 裁 判

### (決定、命令の手續·法第四十三條)

**第三十三條** 決定は、申立により公判廷でするとき、又は公判廷における申立によりするときは、訴訟關係人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他の場合には、訴訟關係人の陳述を聴かないで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但し、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命令は、訴訟關係人の陳述を聴かないで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3 決定又は命令をするについて事實の取調を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法及びこの規則の規定により、証人を尋問し、又は鑑定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と認めるときは、檢察官、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を取調又は処分に立ち合わせるができる。

### (裁判の告知)

**第三十四條** 裁判の告知は、公判廷においては、宣告によつてこれをし、その他の場合には、裁判書の謄本を送達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裁判の宣告)

**第三十五條** 裁判の宣告は、裁判長が行う。

2 判決の宣告をするには、主文及び理由を朗読し、又は主文の朗読と同時に理由の要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項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判決の宣告は、被害者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行うものとする。

### (平一九最裁規一五・一部改正)

(謄本、抄本の送付)

**第三十六条** 検察官の執行指揮を要する裁判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裁判書又は裁判を記載した調書の謄本又は抄本を検察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送付した抄本が第五十七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る判決書又は判決を記載した調書の抄本で懲役又は禁錮の刑の執行指揮に必要なものであるときは、すみやかに、その判決書又は判決を記載した調書の抄本で罪となるべき事実を記載したものを検察官に追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 第六章 書類及び送達

(訴訟書類の作成者)

**第三十七条** 訴訟に関する書類は、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裁判所書記官がこ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証人等の尋問調書)

**第三十八条**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については、調書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調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尋問に立ち会った者の氏名
- 二 証人が宣誓をしないときは、その事由
- 三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これらの者を尋問する機会を尋問に立ち会った者に与えたこと。
- 四 法第一百五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ったこと並びに証人に付き添った

者の氏名及びその者と証人との関係

- 五 法第一百五十七条の三に規定する措置を採つたこと。
  - 六 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証人尋問を行つたこと。
  - 七 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二項の規定により証人の同意を得てそ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その状況を記録媒体(映像及び音声を同時に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物をいう。以下同じ。)に記録したこと並びにその記録媒体の種類及び数量
  - 八 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九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つたこと並びに被害者参加人(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三第三項に規定する被害者参加人をいう。以下同じ。)に付き添つた者の氏名及びその者と被害者参加人との関係
  - 九 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九第四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つたこと。
- 3 調書(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二項の規定により証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その状況を記録した記録媒体を除く。次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同じ。)は、裁判所書記官をしてこれを供述者に読み聞かせせ、又は供述者に閲覧させて、その記載が相違ないかどうか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
- 4 供述者が増減変更を申し立てたときは、その供述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尋問に立ち会つた検察官、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が調書の記載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申立の要旨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裁判長又は尋問をした裁判官は、その申立についての意見を調書に記載させることができる。
- 6 調書には、供述者に署名押印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7 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三項の規定により記録媒体がその一部とされた調書については、その旨を調書上明らか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条・同第二条・平二〇最裁規六・一部改正)

(被告人、被疑者の陳述の調書)

**第三十九条** 被告人又は被疑者に対し、被告事件又は被疑事件を告げこれに関する陳述を聴く場合には、調書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調書については、前条第二項第三号前段、第三項、第四項及び第六項の規定を準用する。

**(速記、録音)**

**第四十条**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訴訟関係人の申立又は陳述については、裁判所速記官その他の速記者にこれを速記させ、又は録音装置を使用してこれを録取させることができる。

**(昭三五最裁規二・全改)**

**(検証、押収の調書)**

**第四十一条** 検証又は差押状を発しないでする押収については、調書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検証調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検証に立ち会った者の氏名

二 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九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ったこと並びに被害者参加人に付き添った者の氏名及びその者と被害者参加人との関係

三 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九第四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ったこと。

3 押収をしたときは、その品目を記載した目録を作り、これを調書に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二〇最裁規六・一部改正)**

**(調書の記載要件)**

**第四十二条** 第三十八条、第三十九条及び前条の調書には、裁判所書記官が取調又は処分をした年月日及び場所を記載して署名押印し、その取調又は処分をした者が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裁判所が取調又は処分をしたときは、認印は裁判長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の調書には、処分をした時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昭二六最裁規一五・一部改正)

(差押状、搜索状の執行調書、搜索調書)

**第四十三条** 差押状若しくは搜索状の執行又は勾引状若しくは勾留状を執行する場合における被告人若しくは被疑者の搜索については、執行又は搜索をする者が、自ら調書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調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執行又は搜索をした年月日時及び場所

二 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ときは、その事由

3 第一項の調書については、第四十一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平二〇最裁規六・一部改正)

(公判調書の記載要件・法第四十八条)

**第四十四条** 公判調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被告事件名及び被告人の氏名

二 公判をした裁判所及び年月日

三 裁判所法第六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他の場所で法廷を開いたときは、その場所

四 裁判官及び裁判所書記官の官氏名

五 検察官の官氏名

六 出頭した被告人、弁護人、代理人及び補佐人の氏名

七 裁判長が第百八十七条の四の規定による告知をしたこと。

八 出席した被害者参加人及び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の氏名

九 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九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つたこと並びに被害者参加人に付き添つた者の氏名及びその者と被害者参加人との関係

十 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九第四項又は第五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つたこと。

- 十一 公開を禁じたこと及びその理由
- 十二 裁判長が被告人を退廷させる等法廷における秩序維持のための処分をしたこと。
- 十三 法第二百九十一条第三項の機会にした被告人及び弁護人の被告事件についての陳述
- 十四 証拠調べの請求その他の申立て
- 十五 証拠と証明すべき事実との関係(証拠の標目自体によつて明らかである場合を除く。)
- 十六 取調べを請求する証拠が法第三百二十八条の証拠であるときはその旨
- 十七 法第三百九条の異議の申立て及びその理由
- 十八 主任弁護人の指定を変更する旨の申述
- 十九 被告人に対する質問及びその供述
- 二十 出頭した証人、鑑定人、通訳人及び翻訳人の氏名
- 二十一 証人に宣誓をさせなかつたこと及びその事由
- 二十二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
- 二十三 証人その他の者が宣誓、証言等を拒んだこと及びその事由
- 二十四 法第五百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つたこと並びに証人に付き添つた者の氏名及びその者と証人との関係
- 二十五 法第五百七条の三に規定する措置を採つたこと。
- 二十六 法第五百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証人尋問を行つたこと。
- 二十七 法第五百七条の四第二項の規定により証人の同意を得てそ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その状況を記録媒体に記録したこと並びにその記録媒体の種類及び数量
- 二十八 裁判長が第二百二条の処置をしたこと。
- 二十九 法第三百二十六条の同意
- 三十 取り調べた証拠の標目及びその取調べの順序
- 三十一 公判廷においてした検証及び押収
- 三十二 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一の手續をしたこと。
- 三十三 法第三百三十五条第二項の主張
- 三十四 訴因又は罰条の追加、撤回又は変更に関する事項(起訴状の訂正に関する事項を含む。)

- 三十五 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意見を陳述した者の氏名
- 三十六 前号に規定する者が陳述した意見の要旨
- 三十七 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一百五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つたこと並びに第三十五号に規定する者に付き添つた者の氏名及びその者と同号に規定する者との関係
- 三十八 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一百五十七条の三に規定する措置を採つたこと。
- 三十九 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をさせたこと。
- 四十 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八項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たこと。
- 四十一 証拠調べが終わつた後に陳述した検察官、被告人及び弁護人の意見の要旨
- 四十二 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八第一項の規定により陳述した被害者参加人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弁護士の意見の要旨
- 四十三 被告人又は弁護人の最終陳述の要旨
- 四十四 判決の宣告をしたこと。
- 四十五 決定及び命令。ただし、次に掲げるものを除く。
- イ 被告人又は弁護人の冒頭陳述の許可(第九十八条)
  - ロ 証拠調べの範囲、順序及び方法を定め、又は変更する決定(法第二百九十七条)
  - ハ 被告人の退廷の許可(法第二百八十八条)
  - ニ 主任弁護士及び副主任弁護士以外の弁護人の申立て、請求、質問等の許可(第二十五条)
  - ホ 証拠決定についての提示命令(第九十二条)
  - へ 速記、録音、撮影等の許可(第四十七条及び第二十五条)
  - ト 証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その状況を記録媒体に記録する旨の決定(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二項)
  - チ 証拠書類又は証拠物の謄本の提出の許可(法第三百十条)
- 四十六 公判手続の更新をしたときは、その旨及び次に掲げる事項

イ 被告事件について被告人及び弁護人が前と異なる陳述をしたときは、その陳述

ロ 取り調べない旨の決定をした書面及び物

2 前項に掲げる事項以外の事項であつても、公判期日における訴訟手続中裁判長が訴訟関係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記載を命じた事項は、これを公判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全改、昭二八最裁規二一・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条・同第二条・平一七最裁規一〇・平二〇最裁規六・一部改正)

(公判調書の供述の記載の簡易化・法第四十八条)

**第四十四条之二** 訴訟関係人が同意し、且つ裁判長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公判調書には、被告人に対する質問及びその供述並びに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の記載に代えて、これらの者の供述の要旨のみ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その公判調書に訴訟関係人が同意した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公判調書の作成の手続・法第四十八条)

**第四十五条** 公判調書については、第三十八条第三項、第四項及び第六項の規定による手続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2 供述者の請求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にその供述に関する部分を読み聞かせなければならない。尋問された者が増減変更の申立をしたときは、その供述を記載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公判調書の署名押印、認印・法第四十八条)

**第四十六条** 公判調書には、裁判所書記官が署名押印し、裁判長が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裁判長に差し支えがあるときは、他の裁判官の一人が、その事由を付記して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地方裁判所の一人の裁判官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差し支え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が、その事由を付記して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裁判所書記官に差し支えがあるときは、裁判長が、その事由を付記して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八・昭二四最裁規一二・昭二六最裁規一五・平一三最裁規一・平二〇最裁規一四・一部改正)

(公判廷の速記、録音)

**第四十七条** 公判廷における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被告人に対する質問及び供述並びに訴訟関係人の申立又は陳述については、第四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 2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裁判長の許可を受けて、前項の規定による処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

(昭三五最裁規二・一部改正)

(異議の申立の記載・法第五十条等)

**第四十八条** 公判期日における証人の供述の要旨の正確性又は公判調書の記載の正確性についての異議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申立の年月日及びその要旨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がその申立についての裁判長の意見を調書に記載して署名押印し、裁判長が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昭二六最裁規一五・一部改正)

(調書への引用)

**第四十九条** 調書には、書面、写真その他裁判所又は裁判官が適當と認めるものを引用し、訴訟記録に添附して、これを調書の一部とすることができる。

(調書の記載事項別編てつ)

**第四十九条の二** 調書は、記載事項により区分して訴訟記録に編てつ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調書が一体となるものであることを当該調書上明らか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五一最裁規八・追加、平成一一最裁規九・一部改正)

(被告人の公判調書の閲覽・法第四十九条)

**第五十条** 弁護人のない被告人の公判調書の閲覽は、裁判所におい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被告人が読む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目の見えないときにすべき公判調書の朗読は、裁判長の命により、裁判所書記官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証人の供述の要旨等の告知・法第五十条)

**第五十一条** 裁判所書記官が公判期日外において前回の公判期日における証人の供述の要旨又は審理に関する重要な事項を告げるときは、裁判長の面前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公判調書の整理・法第四十八条等)

**第五十二条** 法第四十八条第三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公判調書を整理した場合には、

その公判調書の記載の正確性についての異議の申立期間との関係においては、その公判調書を整理すべき最終日にこれを整理したものとみなす。

(平二〇最裁規五・一部改正)

(公判準備における証人等の尋問調書)

**第五十二条の二** 公判準備において裁判所、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が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を尋問する場合の調書については、被告人又は弁護人が尋問に立ち会い、且つ立ち会った訴訟関係人及び供述者が同意したときは、次の例によることができる。

- 一 証人その他の者の尋問及び供述の記載に代えて、これらの者の供述の要旨のみを記載すること。
- 二 第三十八条第三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いこと。
- 2 前項各号の例によつた場合には、その調書に訴訟関係人及び供述者が同意した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第二号の例による調書が整理され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裁判長、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の面前で、証人その他の者の供述の要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供述の要旨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申立の年月日及びその要旨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がその申立についての裁判長、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の意見を調書に記載して署名押印し、裁判長、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が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一項第二号の例による調書を公判期日において取り調べた場合において、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調書の記載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前項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昭三五最裁規二・一部改正)

(速記録の作成)

**第五十二条の三** 裁判所速記官は、速記をしたときは、すみやかに速記原本を反訳して速記録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五十二条の四ただし書又は第五十二条の七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速記録の引用が相当でないときとされる場合及び第五十二条の八の規定により速記原本が公判調書の一部とされ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昭三五最裁規二・追加)

(証人の尋問調書等における速記録の引用)

**第五十二条の四**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訴訟関係人の申立又は陳述を裁判所速記官に速記させた場合には、速記録を調書に引用し、訴訟記録に添附して調書の一部と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裁判所又は裁判官が、尋問又は手続に立ち会った検察官及び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速記録の引用を相当でないとき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昭三五最裁規二・追加)

(速記録引用の場合の措置)

**第五十二条の五** 前条本文の規定により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を速記した速記録を調書の一部とするについては、第三十八条第三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い。

2 前項の場合には、次の例による。

- 一 裁判所速記官に速記原本を訳読させ、供述者にその速記が相違ないかどうかを問うこと。
- 二 供述者が増減変更を申し立てたときは、その供述を速記させること。
- 三 尋問に立ち会った検察官、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が速記原本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その申立を速記させること。この場合には、裁判長又は尋問をした裁判官は、その申立についての意見を速記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と。

- 四 裁判所書記官に第一号に定める手続をした旨を調書に記載させ、かつ、供述者をしてその調書に署名押印させること。
- 3 供述者が速記原本の訳読を必要としない旨を述べ、かつ、尋問に立ち会った検察官及び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に異議がないときは、前項の手続をしない。この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にその旨を調書に記載させ、かつ、供述者をしてその調書に署名押印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4 公判準備における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を速記した速記録を調書の一部とする場合には、前二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ただし、供述者が速記原本の訳読を請求したときは、第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定め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五最裁規二・追加)

**第五十二条の六** 前条の例による調書が整理され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尋問に立ち会い又は立ち会うことのできた検察官、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裁判所速記官に求めて速記原本の訳読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その速記原本が公判準備における尋問及び供述を速記したものであるとき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速記原本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異議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が申立の年月日及びその要旨を調書に記載し、かつ、その申立についての裁判長、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の意見を調書に記載して署名押印し、裁判長、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が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条の例により公判準備における尋問及び供述を速記した速記録をその一部とした調書を公判期日において取り調べた場合において、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調書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前項の規定を準用する。

(昭三五最裁規二・追加)

**(公判調書における速記録の引用)**

**第五十二条の七** 公判廷における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被告人に対する質問及び供述並びに訴訟関係人の申立又は陳述を裁判所速記官に速記させた場合には、速記録を公判調書に引用し、訴訟記録に添附して公判調書の一部と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裁判所が、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速記録の引用を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昭三五最裁規二・追加)**

**(公判調書における速記原本の引用)**

**第五十二条の八** 前条の裁判所速記官による速記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裁判所が相当と認め、かつ、訴訟関係人が同意したときは、速記原本を公判調書に引用し、訴訟記録に添附して公判調書の一部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その公判調書に訴訟関係人が同意した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五最裁規二・追加)**

**(速記原本の訳読等)**

**第五十二条の九** 第五十二条の七本文又は前条の規定により速記録又は速記原本が公判調書の一部とされる場合において、供述者の請求があるときは、裁判所速記官にその供述に関する部分の速記原本を訳読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尋問された者が増減変更の申立をしたときは、その供述を速記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五最裁規二・追加)**

**第五十二条の十** 第五十二条の七本文又は第五十二条の八の規定により速記録又は速記原本を公判調書の一部と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公判調書が次回の公判期日までに整理されなか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

次回の公判期日において又はその期日までに、裁判所速記官に求めて前回の公判期日における証人の尋問及び供述を速記した速記原本の訳読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請求をした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速記原本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第四十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

2 法第五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裁判所書記官が前回の公判期日における審理に関する重要な事項を告げる場合において、その事項が裁判所速記官により速記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裁判所速記官に求めてその速記原本の訳読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昭三五最裁規二・追加)**

**第五十二条の十一** 検察官又は弁護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裁判所速記官に求めて第五十二条の八の規定により公判調書の一部とした速記原本の訳読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弁護人のない被告人の請求があるときも、同様であ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速記原本の正確性についての異議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第四十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

**(昭三五最裁規二・追加)**

**(速記原本の反訳等)**

**第五十二条の十二** 裁判所は、次の場合には、裁判所速記官に第五十二条の八の規定により公判調書の一部とされた速記原本をすみやかに反訳して速記録を作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があるとき。
- 二 上訴の申立があつたとき。ただし、その申立が明らかに上訴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を除く。
- 三 その他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2 裁判所書記官は、前項の速記録を訴訟記録に添附し、その旨を記録上明らかにし、

かつ、訴訟關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り訴訟記録に添附された速記録は、公判調書の一部とされた速記原本に代わるものとする。

(昭三五最裁規二・追加)

(速記録添附の場合の異議申立期間・法第五十一条)

**第五十二条の十三**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が最終の公判期日後にされたときは、公判調書の記載の正確性についての異議の申立ては、速記録の部分に関する限り、その通知のあつ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法第四十八条第三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判決を宣告する公判期日後に整理された公判調書について、これを整理すべき最終日前に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がされたときは、その最終日から十四日以内に行うことができる。

(昭三五最裁規二・追加、平二〇最裁規五・一部改正)

(録音反訳による証人の尋問調書等)

**第五十二条の十四**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訴訟關係人の申立て又は陳述を録音させた場合において、裁判所又は裁判官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録音したもの(以下「録音体」という。)を反訳した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九最裁規五・追加)

(録音反訳の場合の措置)

**第五十二条の十五** 前条の規定により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を録音した録音体を反訳した調書を作成する場合においては、第三十八条第三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手続による。

- 一 裁判所書記官に録音体を再生させ、供述者にその録音が相違ないかどうかを問うこと。
  - 二 供述者が増減変更を申し立てたときは、その供述を録音させること。
  - 三 尋問に立ち会った検察官、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が録音体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その申立てを録音させること。この場合には、裁判長又は尋問をした裁判官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意見を録音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と。
  - 四 裁判所書記官に第一号の手續をした旨を調書に記載させ、かつ、供述者をしてその調書に署名押印させること。
- 3 供述者が録音体の再生を必要としない旨を述べ、かつ、尋問に立ち会った検察官及び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に異議がないときは、前項の手續をしない。この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にその旨を調書に記載させ、かつ、供述者をしてその調書に署名押印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4 公判準備における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を録音した録音体を反訳した調書を作成する場合には、前二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ただし、供述者が録音体の再生を請求したときは、第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の手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九最裁規五·追加)

**第五十二条の十六**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調書が整理され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尋問に立ち会い又は立ち会うことのできた検察官、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録音体を再生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録音体が公判準備における尋問及び供述を録音したものであるとき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録音体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に規定する異議の申立てがあ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が、申立ての年月日及びその要旨を調書に記載し、かつ、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長、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の意見を調書に記載して署名押印し、裁判長、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が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条第四項に規定する調書を公判期日において取り調べた場合において、検察官、被告

人又は弁護人が調書の正確性について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前項の規定を準用する。

(平九最裁規五・追加)

(録音反訳による公判調書)

第五十二条の十七 公判廷における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被告人に対する質問及び供述並びに訴訟関係人の申立て又は陳述を録音させた場合において、裁判所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録音体を反訳した公判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九最裁規五・追加)

(公判調書における録音反訳の場合の措置)

第五十二条の十八 前条の規定により公判調書を作成する場合において、供述者の請求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にその供述に関する部分の録音体を再生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尋問された者が増減変更の申立てをしたときは、その供述を録音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平九最裁規五・追加)

(公判調書未整理の場合の録音体の再生等)

第五十二条の十九 公判調書が次回の公判期日までに整理されなかつたときは、裁判所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次回の公判期日において又はその期日までに、前回の公判期日における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被告人に対する質問及び供述並びに訴訟関係人の申立て又は陳述を録音した録音体又は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二項の規定により証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その状況を記録した記録媒体について、再生する機会を与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再生する機会を与えた場合には、これをもつて法第五十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る要旨の告知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3 法第五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裁判所書記官が前回の公判期日における審理に関する重要な事項を告げるときは、録音体を再生する方法によ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平九最裁規五・追加、平二〇最裁規五・全改)

(公判調書における録音体の引用)

**第五十二条の二十** 公判廷における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及び供述、被告人に対する質問及び供述並びに訴訟関係人の申立て又は陳述を録音させた場合において、裁判所が相当と認め、かつ、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が同意したときは、録音体を公判調書に引用し、訴訟記録に添付して公判調書の一部とすることができる。

(平二〇最裁規五・追加)

(録音体の内容を記載した書面の作成)

**第五十二条の二十一** 裁判所は、次の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に前条の規定により公判調書の一部とされた録音体の内容を記載した書面を速やかに作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判決の確定前に、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があるとき。
- 二 上訴の申立てがあつたとき。ただし、その申立てが明らかに上訴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を除く。
- 三 その他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平二〇最裁規五・追加)

(裁判書の作成)

**第五十三条** 裁判をするときは、裁判書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決定又は命令を宣告する場合には、裁判書を作らないで、これを調書に記載させることができる。

**(裁判書の作成者)**

**第五十四条** 裁判書は、裁判官がこ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裁判書の署名押印)**

**第五十五条** 裁判書には、裁判をした裁判官が、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裁判長が署名押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他の裁判官の一人が、その事由を附記して署名押印し、他の裁判官が署名押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長が、その事由を附記して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平四最裁規一・一部改正)**

**(裁判書の記載要件)**

**第五十六条** 裁判書には、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裁判を受ける者の氏名、年齢、職業及び住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裁判を受ける者が法人(法人でない社団、財団又は団体を含む。以下同じ。)であるときは、その名称及び事務所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判決書には、前項に規定する事項の外、公判期日に出席した検察官の官氏名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裁判書等の謄本、抄本)**

**第五十七条** 裁判書又は裁判を記載した調書の謄本又は抄本は、原本又は謄本によりこ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判決書又は判決を記載した調書の抄本は、裁判の執行をすべき場合において急速を要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告人の氏名、年齢、職業、住居及び本籍、罪名、主文、適用した罰条、宣告をした年月日、裁判所並びに裁判官の氏名を記載してこれを作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抄本は、判決をした裁判官がその記載が相違ないことを証明する旨を附記して認印したもの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 4 前項の場合には、第五十五条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ただし、署名押印に代えて認印することができる。
- 5 判決書に起訴状その他の書面に記載された事実が引用された場合には、その判決書の謄本又は抄本には、その起訴状その他の書面に記載された事実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抄本について当該部分を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6 判決書に公判調書に記載された証拠の標目が引用された場合において、訴訟関係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その判決書の謄本又は抄本には、その公判調書に記載された証拠の標目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昭三五最裁規二・平四最裁規一・一部改正)

#### (公務員の書類)

**第五十八条** 官吏その他の公務員が作るべき書類には、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年月日を記載して署名押印し、その所属の官公署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官その他の裁判所職員が作成すべき裁判書、調書又はそれらの謄本若しくは抄本のうち、訴訟関係人その他の者に送達、送付又は交付(裁判所又は裁判官に対してする場合及び被告事件の終結その他これに類する事由による場合を除く。)をすべきものについては、毎葉に契印し、又は契印に代えて、これに準ず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検察官、検察事務官、司法警察職員その他の公務員(裁判官その他の裁判所職員を除く。)が作成すべき書類(裁判所又は裁判官に対する申立て、意見の陳述、通知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訴訟行為に関する書類を除く。)には、毎葉に契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謄本又は抄本を作成する場合には、契印に代えて、これに準ずる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

(平四最裁規一・平一一最裁規九・一部改正)

(公務員の書類の訂正)

**第五十九条** 官吏その他の公務員が書類を作成するには、文字を改変してはならない。

文字を加え、削り、又は欄外に記入したときは、その範囲を明らかにして、訂正した部分に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削つた部分は、これを読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字体を残さ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一最裁規九・一部改正)

(公務員以外の者の書類)

**第六十条** 官吏その他の公務員以外の者が作るべき書類には、年月日を記載して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署名押印に代わる記名押印)

**第六十条の二** 裁判官その他の裁判所職員が署名押印すべき場合には、署名押印に代えて記名押印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判決書に署名押印すべき場合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次に掲げる者が、裁判所若しくは裁判官に対する申立て、意見の陳述、通知、届出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訴訟行為に関する書類に署名押印すべき場合又は書類の謄本若しくは抄本に署名押印すべき場合も、前項と同様とする。

一 検察官、検察事務官、司法警察職員その他の公務員(前項に規定する者を除く。)

二 弁護士又は弁護士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者の依頼により弁護士となろうとする者

三 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三第一項に規定する弁護士又は被害者参加人の委託を受けて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若しくは第三百十六條の三十六から第三百十六條の三十八までに規定する行為を行う弁護士

(平四最裁規一・追加、平二〇最裁規一七・一部改正)

(署名押印に代わる代書又は指印)

**第六十一条** 官吏その他の公務員以外の者が署名押印すべき場合に、署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前条第二項により記名押印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除く。)は、他人に代書させ、押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指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他人に代書させた場合には、代書した者が、その事由を記載して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四最裁規一・一部改正)

(送達のための届出・法第五十四条)

**第六十二条** 被告人、代理人、弁護人又は補佐人は、書類の送達を受けるため、書面でその住居又は事務所を裁判所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裁判所の所在地に住居又は事務所を有しないときは、その所在地に住居又は事務所を有する者を送達受取人を選任し、その者と連署した書面でこれ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は、同一の地に在る各審級の裁判所に対してその効力を有する。

3 前二項の規定は、刑事施設に收容されている者には、これを適用しない。

4 送達については、送達受取人は、これを本人とみなし、その住居又は事務所は、これを本人の住居とみなす。

(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書留郵便等に付する送達・法第五十四条)

**第六十三条** 住居、事務所又は送達受取人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者がその届出をしない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書類を書留郵便又は一般信書便事業者若しくは特定信書便事業者の提供する信書便の役務のうち書留郵便に準ずるものとして別に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もの(次項において「書留郵便等」という。)に付して、その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起訴状及び略式命令の謄本の送達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送達は、書類を書留郵便等に付した時に、これをしたものとみなす。

(昭二四最裁規一二・平一五最裁規七・一部改正)

(就業場所における送達の要件・法第五十四条)

第六十三条の二 書類の送達は、これを受けるべき者に異議がないときに限り、その者が雇用、委任その他の法律上の行為に基づき就業する他人の住居又は事務所におい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昭五七最裁規七・追加)

(検察官に対する送達・法第五十四条)

第六十四条 検察官に対する送達は、書類を検察庁に送付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交付送達・法第五十四条)

第六十五条 裁判所書記官が本人に送達すべき書類を交付したときは、その送達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 第七章 期間

(裁判所に対する訴訟行為をする者のための法定期間の延長・法第五十六条)

第六十六条 裁判所は、裁判所に対する訴訟行為をすべき者の住居又は事務所の所在地と裁判所の所在地との距離及び交通通信の便否を考慮し、法定の期間を延長するの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延長する期間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宣告した裁判に対する上訴の提起期間には、これを適用し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全改)

**(檢察官に対する訴訟行為をする者のための法定期間の延長・法第五十六条)**

**第六十六条の二** 檢察官は、檢察官に対する訴訟行為をすべき者の住居又は事務所の所在地と檢察庁の所在地との距離及び交通通信の便否を考慮し、法定の期間を延長するのを相当と思料するときは、裁判官にその期間の延長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官は、前項の請求を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すみやかに延長する期間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裁判は、檢察官に告知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4 檢察官は、前項の裁判の告知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これを当該訴訟行為をすべき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第八章 被告人の召喚、勾引及び勾留**

**(召喚の猶予期間・法第五十七条)**

**第六十七条** 被告人に対する召喚状の送達と出頭との間には、少くとも十二時間の猶予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被告人に異議がないときは、前項の猶予期間を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勾引、勾留についての身体、名誉の保全)**

**第六十八条** 被告人の勾引又は勾留については、その身体及び名誉を保全すること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裁判所書記官の立会・法第六十一条)**

**第六十九条** 法第六十一条の規定により被告人に対し被告事件を告げこれに関する陳述を聴く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を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勾留状の記載要件・法第六十四条)**

**第七十条** 勾留状には、法第六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の外、法第六十条第一項各号に定める事由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裁判長の令状の記載要件・法第六十九条)**

**第七十一条** 裁判長は、法第六十九条の規定により召喚状、勾引状又は勾留状を発する場合には、その旨を令状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勾引状、勾留状の原本の送付・法第七十条)**

**第七十二条** 検察官の指揮により勾引状又は勾留状を執行する場合には、これを発した裁判所又は裁判官は、その原本を検察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勾引状の数通交付)**

**第七十三条** 勾引状は、数通を作り、これを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数人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勾引状、勾留状の謄本交付の請求)**

**第七十四条** 勾引状又は勾留状の執行を受けた被告人は、その謄本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勾引状、勾留状執行後の処置)**

**第七十五条** 勾引状又は勾留状を執行したときは、これに執行の場所及び年月日時を記載し、これ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ときは、その事由を記載して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勾引状又は勾留状の執行に関する書類は、執行を指揮した検察官又は裁判官を経由して、勾引状又は勾留状を発した裁判所又は裁判官にこれ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勾引状の執行に関する書類を受け取つた裁判所又は裁判官は、裁判所書記官に被告人が引致された年月日時を勾引状に記載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囑託による勾引状・法第六十七条)

**第七十六条** 囑託によつて勾引状を發した裁判官は、勾引状の執行に関する書類を受け取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に被告人が引致された年月日時を勾引状に記載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囑託によつて勾引状を發した裁判官は、被告人を指定された裁判所に送致する場合には、勾引状に被告人が指定された裁判所に到着すべき期間を記載して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勾引の囑託をした裁判所又は裁判官は、勾引状の執行に関する書類を受け取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に被告人が到着した年月日時を勾引状に記載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裁判所書記官の立会・法第七十六条等)

**第七十七条** 裁判所又は裁判官が法第七十六条又は第七十七条の処分をす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を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調書の作成・法第七十六条等)

**第七十八条** 法第七十六条又は第七十七条の処分については、調書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勾留の通知・法第七十九条)

**第七十九条** 被告人を勾留した場合において被告人に弁護人、法定代理人、保佐人、配偶者、直系の親族及び兄弟姉妹がないときは、被告人の申出により、その指定する者一人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被告人の移送)**

**第八十条** 検察官は、裁判長の同意を得て、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を他の刑事施設に移すことができる。

2 検察官は、被告人を他の刑事施設に移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及びその刑事施設を裁判所及び弁護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被告人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被告人の法定代理人、保佐人、配偶者、直系の親族及び兄弟姉妹のうち被告人の指定する者一人にその旨及びその刑事施設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場合には、前条の規定を準用する。

**(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勾留の理由開示の請求の方式・法第八十二条)**

**第八十一条** 勾留の理由の開示の請求は、請求をする者ごとに、各別の書面で、これを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法第八十二条第二項に掲げる者が前項の請求をするには、被告人との関係を書面で具体的に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全改)**

**(開示の請求の却下)**

**第八十一条の二** 前条の規定に違反してされた勾留の理由の開示の請求は、決定で、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

**(開示の手続・法第八十三条)**

**第八十二条** 勾留の理由の開示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裁判長は、開示期日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開示期日には、被告人を召喚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開示期日は、検察官、弁護人及び補佐人並びに請求者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公判期日における開示・法第八十三条)**

**第八十三条** 勾留の理由の開示は、公判期日においても、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 2 公判期日において勾留の理由の開示をするには、あらかじめ、その旨及び開示をすべき公判期日を検察官、被告人、弁護人及び補佐人並びに請求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開示の請求と開示期日)**

**第八十四条** 勾留の理由の開示をすべき期日とその請求があつた日との間には、五日以上を置くことはできない。但し、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開示期日の変更)**

**第八十五条** 裁判所は、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開示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被告人、弁護人の退廷中の開示・法第八十三条)**

**第八十五条の二** 開示期日において被告人又は弁護人が許可を受けないで退廷し、又は秩序維持のため裁判長から退廷を命ぜられたときは、その者の在廷しないままで勾留の理由の開示を行うことができ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開示期日における意見陳述の時間の制限等・法第八十四条)**

**第八十五条の三** 法第八十四条第二項本文に掲げる者が開示期日において意見を述べる時間は、各十分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 2 前項の者は、その意見の陳述に代え又はこれを補うため、書面を差し出すことができる。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昭二八最裁規二一・旧第八十五条の二繰下、一部改正)

(開示期日の調書)

第八十六条 開示期日における手続については、調書を作り、裁判所書記官が署名押印し、  
裁判長が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全改)

(開示の請求の却下決定の送達)

第八十六条の二 勾留の理由の開示の請求を却下する決定は、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  
し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

(保釈の保証書の記載事項・法第九十四条)

第八十七条 保釈の保証書には、保証金額及び何時でもその保証金を納める旨を記載し  
なければならない。

(執行停止についての意見の聴取・法第九十五条)

第八十八条 勾留の執行を停止するには、検察官の意見を聴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  
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八十九条 削除(昭二六最裁規一五)

(委託による執行停止・法第九十五条)

第九十条 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を親族、保護団体その他の者に委託して勾留の執行を  
停止するには、これらの者から何時でも召喚に応じ被告人を出頭させる旨の書面を差  
し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保証金の還付・法第九十六条、第三百四十三条等)**

**第九十一条** 次の場合には、没取されなかつた保証金は、これを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勾留が取り消され、又は勾留状が効力を失つたとき。
  - 二 保釈が取り消され又は効力を失つたため被告人が刑事施設に収容されたとき。
  - 三 保釈が取り消され又は効力を失つた場合において、被告人が刑事施設に収容される前に、新たに、保釈の決定があつて保証金が納付されたとき又は勾留の執行が停止されたとき。
- 2 前項第三号の保釈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前に納付された保証金は、あらたな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として納付されたものとみなす。

**(昭二六最裁規一五・全改、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上訴中の事件等の勾留に関する処分・法第九十七条)**

**第九十二条** 上訴の提起期間内の事件でまだ上訴の提起がないものについて勾留の期間を更新すべき場合には、原裁判所が、そ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上訴中の事件で訴訟記録が上訴裁判所に到達し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勾留の期間を更新し、勾留を取り消し、又は保釈若しくは勾留の執行停止をし、若しくはこれを取り消すべき場合にも、前項と同様である。
- 3 勾留の理由の開示をすべき場合には、前項の規定を準用する。
- 4 上訴裁判所は、被告人が勾留されている事件について訴訟記録を受け取つ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原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被告人の収容手続・法第九十八条)**

**第九十二条の二** 法第三百四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九十八条の規定により被告人を刑事施設に収容するには、言い渡した刑並びに判決の宣告をした年月日及び裁判所を記載し、かつ、裁判長又は裁判官が相違ないことを証明する旨付記して認印した勾留状の謄本を被告人に示せば足りる。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 第九章 押収及び搜索

(押収、搜索についての秘密、名誉の保持)

**第九十三条** 押収及び搜索については、秘密を保ち、且つ処分を受ける者の名誉を害しない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差押状、搜索状の記載事項・法第一百七条)

**第九十四条** 差押状又は搜索状に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差押又は搜索をすべき事由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準用規定)

**第九十五条** 差押状又は搜索状については、第七十二条の規定を準用する。

(搜索証明書、押収品目録の作成者・法第一百十九条等)

**第九十六条** 法第一百十九条又は第一百二十条の証明書又は目録は、搜索又は差押が令状の執行によつて行われた場合には、その執行をした者がこれを作つて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差押状、搜索状執行後の処置)

**第九十七条** 差押状又は搜索状の執行をした者は、速やかに執行に関する書類及び差し押えた物を令状を發した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檢察官の指揮により執行をした場合には、檢察官を経由しなければならない。

(押収物の処置)

**第九十八条** 押収物については、喪失又は破損を防ぐため、相当の処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差押状の執行調書の記載)

**第九十九条** 差押状の執行をした者は、第九十六条若しくは前条又は法第二百二十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処分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押収、搜索の立会)

**第一百条** 差押状を發しないで押収をす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を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差押状又は搜索状を執行するときは、それぞれ他の檢察事務官、司法警察職員又は裁判所書記官を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 第十章 檢 証

(檢証についての注意)

**第一百一条** 檢証をするについて、死体を解剖し、又は墳墓を發掘する場合には、礼を失わないように注意し、配偶者、直系の親族又は兄弟姉妹があるときは、これ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被告人の身体検査の召喚状等の記載要件・法第六十三条等)

**第一百二条** 被告人に対する身体の検査のための召喚状又は勾引状には、身体の検査のために召喚又は勾引する旨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被告人以外の者の身体検査の召喚状等の記載要件・法第三百三十六條等)

**第一百三条** 被告人以外の者に対する身体の検査のための召喚状には、その氏名及び住居、被告人の氏名、罪名、出頭すべき年月日時及び場所、身体の検査のために召喚する旨並びに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ときは過料又は刑罰に処せられ且つ勾引状を發することがある旨を記載し、裁判長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告人以外の者に対する身体の検査のための勾引状には、その氏名及び住居、被告人の氏名、罪名、引致すべき場所、身体の検査のために勾引する旨、有効期間及びその期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令状は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並びに発付の年月日を記載し、裁判長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準用規定)

**第百四条** 身体の検査のためにする被告人以外の者に対する勾引については、第七十二条から第七十六条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検証の立会)

**第百五条** 検証をす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を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 第十一章 証人尋問

(尋問事項書・法第三百四条等)

**第百六条** 証人の尋問を請求した者は、裁判官の尋問の参考に供するため、速やかに尋問事項又は証人が証言す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公判期日において訴訟関係人にまず証人を尋問させ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但書の場合においても、裁判所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証人の尋問を請求した者に対し、前項本文の書面を差し出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は、証人の証言により立証しようとする事項のすべてにわた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公判期日外において証人の尋問をする場合を除いて、裁判長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書面を差し出さない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5 公判期日外において証人の尋問をする場合には、速やかに相手方及びその弁護人の数に応ずる第一項の書面の謄本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一部改正)

(請求の却下)

**第一百七条** 前条の規定に違反してされた証人尋問の請求は、これ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決定の告知・法第一百五十七条の二等)

**第一百七条の二** 法第一百五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旨の決定、法第一百五十七条の三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旨の決定、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証人尋問を行う旨の決定並びに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証人の尋問及び供述並びにその状況を記録媒体に記録する旨の決定は、公判期日前にする場合においても、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2 前項の場合には、速やかに、それぞれ決定の内容を訴訟関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条・追加、同第二条・一部改正)

(尋問事項の告知等・法第一百五十八条)

**第一百八条** 裁判所は、公判期日外において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請求にかかる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は、第一百六条第一項の書面を参考として尋問すべき事項を定め、相手方及びその弁護人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相手方又はその弁護人は、書面で、前項の尋問事項に附加して、必要な事項の尋問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職権による公判期日外の尋問・法第一百五十八条)

**第一百九条** 裁判所は、職権で公判期日外において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検察官、被告人及び弁護人に尋問事項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書面で、前項の尋問事項に附加して、必要な事項の尋問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召喚状、勾引状の記載要件・法第五十三條等)

**第一百十條** 証人に対する召喚状には、その氏名及び住居、被告人の氏名、罪名、出頭すべき年月日時及び場所並びに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ときは過料又は刑罰に処せられ且つ勾引状を發することがある旨を記載し、裁判長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証人に対する勾引状には、その氏名及び住居、被告人の氏名、罪名、引致すべき年月日時及び場所、有効期間及びその期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令状は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並びに發付の年月日を記載し、裁判長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召喚の猶予期間)

**第一百十一條** 証人に対する召喚状の送達と出頭との間には、少くとも二十四時間の猶予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準用規定)

**第一百十二條** 証人の勾引については、第七十二條から第七十六條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尋問上の注意、在廷証人)

**第一百十三條** 召喚により出頭した証人は、速やかにこれを尋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証人が裁判所の構内にいるときは、召喚をしない場合でも、これを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尋問の立会)

**第一百十四條** 証人を尋問す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を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人定尋問)

第一百五條 証人に対しては、まず、その人違でないかどうかを取り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

(宣誓の趣旨の説明等・法第一百五十五條)

第一百六條 証人が宣誓の趣旨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者で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疑があるときは、宣誓前に、この点について尋問し、且つ、必要と認めるときは、宣誓の趣旨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宣誓の時期・法第一百五十四條)

第一百七條 宣誓は、尋問前に、これ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宣誓の方式・法第一百五十四條)

第一百八條 宣誓は、宣誓書により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宣誓書には、良心に従つて、眞實を述べ何事も隠さず、又何事も附け加えないことを誓う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長は、証人に宣誓書を朗読させ、且つこれに署名押印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証人が宣誓書を朗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長は、裁判所書記官にこれを朗読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4 宣誓は、起立して厳肅に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個別宣誓・法第一百五十四條)

第一百九條 証人の宣誓は、各別にこれ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偽証の警告・法第一百五十四條)

第二十條 宣誓をさせた証人には、尋問前に、偽証の罰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証言拒絶権の告知・法第四百四十六条等)**

**第二百一十一条** 証人に対しては、尋問前に、自己又は法第四百四十七条に規定する者が刑事訴追を受け、又は有罪判決を受ける虞のある証言を拒む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法第四百四十九条に規定する者に対して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同条の規定により証言を拒む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証言の拒絶・法第四百四十六条等)**

**第二百二十二条** 証言を拒む者は、これを拒む事由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証言を拒む者がこれを拒む事由を示さないときは、過料その他の制裁を受けることがある旨を告げて、証言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個別尋問)**

**第二百二十三条** 証人は、各別にこれを尋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後に尋問すべき証人が在廷するときは、退廷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対質)**

**第二百二十四条** 必要があるときは、証人と他の証人又は被告人と対質させることができる。

**(書面による尋問)**

**第二百二十五条** 証人が耳が聞えないときは、書面で問い、口がきけないときは、書面で答えさせることができる。

**(公判期日外の尋問調書の閲覧等・法第五百五十九条)**

**第二百二十六条** 裁判所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が公判期日外における証人尋問に立ち会わ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証人尋問調書が整理されたとき、又はその送付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立ち会わなかつ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告人は、前項の尋問調書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

3 被告人は、読む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目の見えないときは、第一項の尋問調書の朗読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4 前二項の場合には、第五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受命、受託裁判官の尋問・法第六十三條)**

**第二百七條** 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が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おいても、第六條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五項、第七條から第九條まで並びに前條の手續は、裁判所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一部改正)**

## 第十二章 鑑定

**(宣誓・法第六十六條)**

**第二百八條** 鑑定人の宣誓は、鑑定をする前に、これ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宣誓は、宣誓書により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宣誓書には、良心に従つて誠実に鑑定をすることを誓う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鑑定の報告)**

**第二百九條** 鑑定の経過及び結果は、鑑定人に鑑定書により又は口頭でこれを報告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鑑定人が数人あるときは、共同して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鑑定の経過及び結果を鑑定書により報告させる場合には、鑑定人に対し、鑑定書に記載した事項に関し公判期日において尋問を受けることがあ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裁判所外の鑑定)**

**第三十條** 裁判所は、必要がある場合には、裁判所外で鑑定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は、鑑定に関する物を鑑定人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鑑定留置状の記載要件・法第百六十七条)

第百三十条の二 鑑定留置状には、被告人の氏名及び住居、罪名、公訴事実の要旨、留置すべき場所、留置の期間、鑑定の目的、有効期間及びその期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令状は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並びに発付の年月日を記載し、裁判長が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看守の申出の方式・法第百六十七条)

第百三十条の三 法第百六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申出は、被告人の看守を必要とする事由を記載した書面を差し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鑑定留置期間の延長、短縮・法第百六十七条)

第百三十条の四 鑑定のためにする被告人の留置の期間の延長又は短縮は、決定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収容費の支払・法第百六十七条)

第百三十条の五 裁判所は、鑑定のため被告人を病院その他の場所に留置した場合には、その場所の管理者の請求により、入院料その他の収容に要した費用を支払う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支払うべき費用の額は、裁判所の相当と認めるところによ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準用規定)

第三百十一条 鑑定のためにする被告人の留置については、この規則に特別の定のあるもののほか、勾留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但し、保釈に関する規定は、この限りで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準用規定)

第三百十二条 鑑定人が死体を解剖し、又は墳墓を発掘する場合には、第一百一条の規定を準用する。

(鑑定許可状の記載要件・法第六十八条)

第三百十三条 法第六十八条の許可状には、有効期間及びその期間経過後は許可された処分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令状は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並びに発付の年月日をも記載し、裁判長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鑑定人のすべき身体の検査に関し条件を附した場合には、これを前項の許可状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鑑定のための閲覧等)

第三百十四条 鑑定人は、鑑定について必要がある場合には、裁判長の許可を受けて、書類及び証拠物を閲覧し、若しくは謄写し、又は被告人に対し質問する場合若しくは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これに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第五十七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媒体は、謄写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鑑定人は、被告人に対する質問若しくは証人の尋問を求め、又は裁判長の許可を受けてこれらの者に対し直接に問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

(平一二最裁規一二第二条・一部改正)

(準用規定)

第三百三十五条 鑑定については、勾引に関する規定を除いて、前章の規定を準用する。

### 第十三章 通訳及び翻訳

(準用規定)

第三百三十六条 通訳及び翻訳については、前章の規定を準用する。

### 第十四章 証拠保全

(処分をすべき裁判官・法第七十九条)

第三百三十七条 証拠保全の請求は、次に掲げる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押収については、押収すべき物の所在地
  - 二 搜索又は検証については、搜索又は検証すべき場所、身体又は物の所在地
  - 三 証人の尋問については、証人の所在地
  - 四 鑑定については、鑑定の対象の所在地又は所在地
- 2 鑑定の処分の請求をする場合において前項第四号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処分をするのに最も便宜であると思料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そ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請求の方式・法第七十九条)

第三百三十八条 証拠保全の請求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書面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事件の概要
  - 二 証明すべき事実
  - 三 証拠及びその保全の方法
  - 四 証拠保全を必要とする事由

3 証拠保全を必要とする事由は、これ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五章 訴訟費用(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請求先裁判所·法第百八十七条の二)

第三百三十八条の二 法第百八十七条の二の請求は、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検察官が所属する検察庁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請求の方式·法第百八十七条の二)

第三百三十八条の三 法第百八十七条の二の請求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訴訟費用を負担すべき者の氏名、年齢、職業及び住居
- 二 前号に規定する者が被疑者でないときは、被疑者の氏名及び年齢
- 三 罪名及び被疑事実の要旨
- 四 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こと。
- 五 訴訟費用を負担すべき理由
- 六 負担すべき訴訟費用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資料の提供·法第百八十七条の二)

第三百三十八条の四 法第百八十七条の二の請求をするには、次に掲げる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訴訟費用を負担すべき理由が存在す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
- 二 負担すべき訴訟費用の額の算定に必要な資料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請求書の謄本の差出し、送達・法第百八十七条の二)

第百三十八条の五 法第百八十七条の二の請求をするときは、検察官は、請求と同時に訴訟費用の負担を求められた者の数に応ずる請求書の謄本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前項の謄本を受け取つ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訴訟費用の負担を求められた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意見の聴取・法第百八十七条の二)

第百三十八条の六 法第百八十七条の二の請求について決定をする場合には、訴訟費用の負担を求められた者の意見を聴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請求の却下・法第百八十七条の二)

第百三十八条の七 法第百八十七条の二の請求が法令上の方式に違反しているとき、又は訴訟費用を負担させないときは、決定で請求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 第十六章 費用の補償

(準用規定)

第百三十八条の八 書面による法第百八十八条の四の補償の請求については、第二百二十七条及び第二百二十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五一最裁規四·追加、平一八最裁規一一·旧第三百三十八条の二繰下)

(裁判所書記官による計算·法第百八十八条の三等)

**第三百三十八条の九** 法第百八十八条の二第一項又は第百八十八条の四の補償の決定をする場合には、裁判所は、裁判所書記官に補償すべき費用の額の計算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昭五一最裁規四·追加、平一八最裁規一一·旧第三百三十八条の三繰下)

## 第二編 第一審

### 第一章 捜査

(令状請求の方式)

**第三百三十九条** 令状の請求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逮捕状の請求書には、謄本一通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令状請求の却下)

**第四百十条** 裁判官が令状の請求を却下するには、請求書にその旨を記載し、記名押印してこれを請求者に交付すれば足りる。

(令状請求書の返還)

**第四百十一条** 裁判官は、令状を発し、又は令状の請求を却下したときは、前条の場合を除いて、速やかに令状の請求書を請求者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逮捕状請求権者の指定、変更の通知)

**第四百十一条の二** 国家公安委員会又は都道府県公安委員会は、法第百九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逮捕状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司法警察員を指定したときは、国家公安委員会

においては最高裁判所に、都道府県公安委員会においてはそ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通知の内容に変更を生じたときも、同様であ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昭三二最裁規一・一部改正)

(逮捕状請求書の記載要件)

**第四百二十二条** 逮捕状の請求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逮捕状に記載することを要する事項及び逮捕状発付の要件た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被疑者の氏名、年齢、職業及び住居
  - 二 罪名及び被疑事実の要旨
  - 三 被疑者の逮捕を必要とする事由
  - 四 請求者の官公職氏名
  - 五 請求者が警察官たる司法警察員であるときは、法第九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者である旨
  - 六 七日を超える有効期間を必要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事由
  - 七 逮捕状を数通必要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事由
  - 八 同一の犯罪事実又は現に捜査中である他の犯罪事実についてその被疑者に対し前に逮捕状の請求又はその発付があつた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犯罪事実
- 2 被疑者の氏名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人相、体格その他被疑者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項でこれ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被疑者の年齢、職業又は住居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その旨を記載すれば足りる。

(昭二八最裁規二一・昭三二最裁規一・一部改正)

(資料の提供)

**第四百十三条** 逮捕状を請求するには、逮捕の理由(逮捕の必要を除く逮捕状発付の要件をいう。以下同じ。)及び逮捕の必要があ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逮捕狀請求者の陳述聴取等)

第四百三十三条之二 逮捕狀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逮捕狀の請求をした者の出頭を求めてその陳述を聴き、又はその者に対し書類その他の物の提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明らかに逮捕の必要がない場合)

第四百三十三条之三 逮捕狀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逮捕の理由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も、被疑者の年齢及び境遇並びに犯罪の軽重及び態様その他諸般の事情に照らし、被疑者が逃亡する虞がなく、かつ、罪証を隠滅する虞がない等明らかに逮捕の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逮捕狀の請求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逮捕狀の記載要件)

第四百四十四条 逮捕狀には、請求者の官公職氏名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逮捕狀の作成)

第四百四十五条 逮捕狀は、逮捕狀請求書及びその記載を利用してこれを作ることができる。

(数通の逮捕狀)

第四百四十六条 逮捕狀は、請求により、数通を發することができる。

(勾留請求書の記載要件・法第二百四条等)

第四百四十七条 被疑者の勾留の請求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被疑者の氏名、年齢、職業及び住居
  - 二 罪名、被疑事実の要旨及び被疑者が現行犯人として逮捕された者であるときは、罪を犯したことを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
  - 三 法第六十条第一項各号に定める事由
  - 四 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がやむを得ない事情によつて法に定める時間の制限に従うことができなかつたときは、その事由
  - 五 被疑者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その氏名
- 2 被疑者の年齢、職業若しくは住居、罪名又は被疑事実の要旨の記載については、これらの事項が逮捕状請求書の記載と同一であ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旨を請求書に記載すれば足りる。
- 3 第一項の場合には、第四百四十二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六最裁規一五・一部改正)

(資料の提供・法第二百四条等)

**第四百四十八条** 被疑者の勾留を請求するには、次に掲げる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その逮捕が逮捕状によるときは、逮捕状請求書並びに逮捕の年月日時及び場所、引致の年月日時、送致する手続をした年月日時及び送致を受けた年月日時が記載されそれぞれその記載についての記名押印のある逮捕状
  - 二 その逮捕が現行犯逮捕であるときは、前号に規定する事項を記載した調書その他の書類
  - 三 法に定める勾留の理由が存在す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
- 2 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がやむを得ない事情によつて法に定める時間の制限に従うことができなかつたときは、これを認めるべき資料をも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勾留状の記載要件・法第二百七条等)

**第四百九十九条** 被疑者に対して発する勾留状には、勾留の請求の年月日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書類の送付)

第二百五十条 裁判官は、被疑者を勾留したときは、速やかにこれに関する書類を検察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被疑者の勾留期間の再延長・法第二百八条の二)

第二百五十条の二 法第二百八条の二の規定による期間の延長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に限り、することができ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期間の延長の請求・法第二百八条等)

第五十一条 法第二百八条第二項又は第二百八条の二の規定による期間の延長の請求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書面には、やむを得ない事由及び延長を求める期間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資料の提供等・法第二百八条等)

第五十二条 前条第一項の請求をするには、勾留状を差し出し、且つ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期間の延長の裁判・法第二百八条等)

第五十三条 裁判官は、第五十一条第一項の請求を理由があ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勾留状に延長する期間及び理由を記載して記名押印し、且つ裁判所書記官をしてこれを検察官に交付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延長の裁判は、同項の交付を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 3 裁判所書記官は、勾留状を檢察官に交付する場合には、勾留状に交付の年月日を記載して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檢察官は、勾留状の交付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刑事施設職員をしてこれを被疑者に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一百五十一条第一項の請求については、第四百十条、第四百十一条及び第五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四最裁規一二・昭二八最裁規二一・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謄本交付の請求・法第二百八条等)

**第一百五十四条** 前条第一項の裁判があつたときは、被疑者は、その裁判の記載のある勾留状の謄本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差押等の令状請求書の記載要件・法第二百十八条)

**第一百五十五条** 差押、搜索又は檢証のための令状の請求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差し押えるべき物又は搜索し若しくは檢証すべき場所、身体若しくは物
  - 二 請求者の官公職氏名
  - 三 被疑者又は被告人の氏名(被疑者又は被告人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名称)
  - 四 罪名及び犯罪事実の要旨
  - 五 七日を超える有効期間を必要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事由
  - 六 日出前又は日没後に差押、搜索又は檢証を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旨及び事由
- 2 身体検査令状の請求書には、前項に規定する事項の外、法第二百十八条第四項に規定す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被疑者又は被告人の氏名又は名称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その旨を記載すれば足りる。

(昭二六最裁規一五・一部改正)

(資料の提供・法第二百十八条等)

**第二百五十六条** 前条第一項の請求をするには、被疑者又は被告人が罪を犯したと思料されるべき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郵便物、信書便物又は電信に関する書類で法令の規定に基づき通信事務を取り扱う者が保管し、又は所持するもの(被疑者若しくは被告人から発し、又は被疑者若しくは被告人に対して発したものを除く。)の差押えのための令状を請求するには、その物が被疑事件又は被告事件に関係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状況があ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被疑者又は被告人以外の者の身体、物又は住居その他の場所についての搜索のための令状を請求するには、差し押さえるべき物の存在を認めるに足りる状況があ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五最裁規七・一部改正)

(身体検査令状の記載要件・法第二百十九条)

**第二百五十七条** 身体検査令状には、正当な理由がなく身体を検査を拒んだときは過料又は刑罰に処せられることがある旨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逮捕状等の返還に関する記載)

**第二百五十七条の二** 逮捕状又は法第二百十八条第一項の令状には、有効期間内であつても、その必要がなくなつたときは、直ちに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処罰等の請求・法第二百二十二条)

**第二百五十八条** 法第二百二十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り身体を検査を拒んだ者を過料に処し又はこれに賠償を命ずべき旨の請求は、請求者の所属の官公署の所在地を管轄する

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鑑定留置請求書の記載要件・法第二百二十四条)**

**第二百五十八条の二** 鑑定のためにする被疑者の留置の請求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被疑者の氏名、年齢、職業及び住居
  - 二 罪名及び被疑事実の要旨
  - 三 請求者の官公職氏名
  - 四 留置の場所
  - 五 留置を必要とする期間
  - 六 鑑定の目的
  - 七 鑑定人の氏名及び職業
  - 八 被疑者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その氏名
- 2 前項の場合には、第四百十二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鑑定処分許可請求書の記載要件・法第二百二十五条)**

**第五十九条** 法第二百二十五条第一項の許可の請求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請求者の官公職氏名
  - 二 被疑者又は被告人の氏名(被疑者又は被告人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名称)
  - 三 罪名及び犯罪事実の要旨
  - 四 鑑定人の氏名及び職業
  - 五 鑑定人が立ち入るべき住居、邸宅、建造物若しくは船舶、検査すべき身体、解剖すべき死体、発掘すべき墳墓又は破壊すべき物
  - 六 許可状が七日を超える有効期間を必要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事由
- 2 前項の場合には、第五十五条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証人尋問請求書の記載要件・法第二百二十六条等)**

**第一百六十条** 法第二百二十六条又は第二百二十七条の証人尋問の請求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証人の氏名、年齢、職業及び住居
  - 二 被疑者又は被告人の氏名(被疑者又は被告人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名称)
  - 三 罪名及び犯罪事実の要旨
  - 四 証明すべき事実
  - 五 尋問事項又は証人が証言すべき事項
  - 六 法第二百二十六条又は第二百二十七条に規定する事由
  - 七 被疑者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その氏名
- 2 前項の場合には、第百五十五条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六最裁規一五・一部改正)**

**(資料の提供・法第二百二十六条)**

**第一百六十一条** 法第二百二十六条の証人尋問を請求するには、同条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証人尋問の立会・法第二百二十八条)**

**第一百六十二条** 法第二百二十六条又は第二百二十七条の証人尋問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捜査に支障を生ずる虞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被告人、被疑者又は弁護人をその尋問に立ち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

**(書類の送付・法第二百二十六条等)**

**第一百六十三条** 裁判官は、法第二百二十六条又は第二百二十七条の請求により証人を尋問したときは、速やかにこれに関する書類を検察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二章 公 訴

### (起訴状の記載要件・法第二百五十六条)

**第百六十四条** 起訴状には、法第二百五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の外、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被告人の年齢、職業、住居及び本籍。但し、被告人が法人であるときは、事務所並びに代表者又は管理人の氏名及び住居
  - 二 被告人が逮捕又は勾留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旨
- 2 前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その旨を記載すれば足りる。

### (起訴状の謄本等の差出し等・法第二百七十一条等)

**第百六十五条** 検察官は、公訴の提起と同時に被告人の数に応ずる起訴状の謄本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公訴の提起後、速やかにこれ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検察官は、公訴の提起と同時に、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に差し出された弁護人選任書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同時に差し出す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起訴状にその旨を記載し、且つ公訴の提起後、速やかにこれ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検察官は、公訴の提起前に法の規定に基づいて裁判官が付した弁護人があるときは、公訴の提起と同時にその旨を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は、略式命令の請求を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昭二八最裁規二一・平一八最裁規一一・一部改正)

### (証明資料の差出・法第二百五十五条)

**第百六十六条** 公訴を提起するについて、犯人が国外にいたこと又は犯人が逃げ隠れていたため有効に起訴状若しくは略式命令の謄本の送達ができなかつたことを証明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検察官は、公訴の提起後、速やかにこれを証明すべき資料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裁判官に事件につき予断を生ぜしめる虞のあ

る書類その他の物を差し出しては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逮捕状、勾留状の差出・法第二百八十条)

**第百六十七条** 検察官は、逮捕又は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について公訴を提起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裁判所の裁判官に逮捕状又は逮捕状及び勾留状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逮捕又は勾留された後釈放された被告人について公訴を提起したときも、同様である。

2 裁判官は、第百八十七条の規定により他の裁判所の裁判官が勾留に関する処分をすべき場合には、直ちに前項の逮捕状及び勾留状をその裁判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官は、第一回の公判期日が開かれたときは、速やかに逮捕状、勾留状及び勾留に関する処分の書類を裁判所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公訴取消の方式・法第二百五十七条)

**第百六十八条** 公訴の取消は、理由を記載した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審判請求書の記載要件・法第二百六十二条)

**第百六十九条** 法第二百六十二条の請求書には、裁判所の審判に付せられるべき事件の犯罪事実及び証拠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請求の取下の方式・法第二百六十三条)

**第百七十条** 法第二百六十二条の請求の取下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書類等の送付)

**第百七十一条** 検察官は、法第二百六十二条の請求を理由がないものと認めるときは、

請求書を受け取つた日から七日以内に意見書を添えて書類及び証拠物とともにこれを同条に規定する裁判所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意見書には、公訴を提起しない理由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請求等の通知)**

**第一百七十二条** 前条の送付があ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速やかに法第二百六十二条の請求があつた旨を被疑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法第二百六十二条の請求の取下があ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速やかにこれを検察官及び被疑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被疑者の取調・法第二百六十五条)**

**第一百七十三条** 法第二百六十二条の請求を受けた裁判所は、被疑者の取調をす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を立ち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は、調書を作り、裁判所書記官が署名押印し、裁判長が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調書については、第三十八条第二項第三号前段、第三項、第四項及び第六項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四最裁規一二・昭二六最裁規一五・一部改正)**

**(審判に付する決定・法第二百六十六条)**

**第一百七十四条** 法第二百六十六条第二号の決定をするには、裁判書に起訴状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決定の謄本は、検察官及び被疑者にも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審判に付する決定後の処分・法第二百六十七條)

**第二百七十五條** 裁判所は、法第二百六十六條第二号の決定をした場合には、速やかに次に掲げる処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事件をその裁判所の審判に付したときは、裁判書を除いて、書類及び証拠物を事件について公訴の維持にあたる弁護士に送付する。
- 二 事件を他の裁判所の審判に付したときは、裁判書をその裁判所に、書類及び証拠物を事件について公訴の維持にあたる弁護士に送付する。

### 第三章 公判

#### 第一節 公判準備及び公判手続

(起訴状の謄本の送達等・法第二百七十一條)

**第二百七十六條** 裁判所は、起訴状の謄本を受け取つたときは、直ちにこれを被告人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裁判所は、起訴状の謄本の送達ができなかつ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檢察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弁護人選任に関する通知・法第二百七十二條等)

**第二百七十七條** 裁判所は、公訴の提起があつたときは、遅滞なく、被告人に対し、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及び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外、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長期三年を超える懲役若しくは禁錮にあたる事件については、弁護人がなければ開廷することができない旨をも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弁護人のない事件の処置・法第二百八十九条等)**

**第七十八条** 裁判所は、公訴の提起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被告人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遅滞なく、被告人に対し、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長期三年を超える懲役若しくは禁錮にあたる事件については、弁護人を選任するかどうかを、その他の事件については、法第三十六条の規定による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かどうかを確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前項の処置をするについては、被告人に対し、一定の期間を定めて回答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前段の事件について、前項の期間内に回答がなく又は弁護人の選任がないときは、裁判長は、直ちに被告人のため弁護人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一部改正)**

**(第一回公判期日前における訴訟関係人の準備)**

**第七十八条の二** 訴訟関係人は、第一回の公判期日前に、できる限り証拠の収集及び整理をし、審理が迅速に行われるように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

**(検察官、弁護人の氏名の告知等)**

**第七十八条の三** 裁判所は、検察官及び弁護人の訴訟の準備に関する相互の連絡が、公訴の提起後すみやかに行なわれるように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に命じて、検察官及び弁護人の氏名を相手方に知らせる等適当な措置をと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六最裁規六・全改)**

**(第一回公判期日の指定)**

**第七十八条の四** 第一回の公判期日を定めるについては、その期日前に訴訟関係人が

なすべき訴訟の準備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六最裁規六・追加)

(審理に充てることのできる見込み時間の告知)

**第一百七十八条の五** 裁判所は、公判期日の審理が充実して行なわれるようにするため相当と認めるときは、あらかじめ、検察官又は弁護人に対し、その期日の審理に充てることのできる見込みの時間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六最裁規六・追加)

(第一回公判期日前における検察官、弁護人の準備の内容)

**第一百七十八条の六** 検察官は、第一回の公判期日前に、次のこと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法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り、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閲覧する機会を与えるべき証拠書類又は証拠物があるときは、公訴の提起後なるべくすみやかに、その機会を与えること。
- 二 第二項第三号の規定により弁護人が閲覧する機会を与えた証拠書類又は証拠物について、なるべくすみやかに、法第三百二十六条の同意をするかどうか又はその取調の請求に関し異議がないかどうかの見込みを弁護人に通知すること。
- 2 弁護人は、第一回の公判期日前に、次のこと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被告人その他の関係者に面接する等適当な方法によつて、事実関係を確かめておくこと。
  - 二 前項第一号の規定により検察官が閲覧する機会を与えた証拠書類又は証拠物について、なるべくすみやかに、法第三百二十六条の同意をするかどうか又はその取調の請求に関し異議がないかどうかの見込みを検察官に通知すること。
  - 三 法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り、検察官に対し、閲覧する機会を与えるべき証拠書類又は証拠物があるときは、なるべくすみやかに、これを提示してその機会を与えること。

3 検察官及び弁護人は、第一回の公判期日前に、前二項に掲げることを行なうほか、相手方と連絡して、次のこと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起訴状に記載された訴因若しくは罰条を明確にし、又は事件の争点を明らかにするため、相互の間でできる限り打ち合わせておくこと。
- 二 証拠調その他の審理に要する見込みの時間等裁判所が開廷回数の見通しをたてるについて必要な事項を裁判所に申し出ること。

(昭三六最裁規六・追加)

(証人等の氏名及び住居を知る機会を与える場合)

第一百七十八条の七 第一回の公判期日前に、法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り、訴訟関係人が、相手方に対し、証人等の氏名及び住居を知る機会を与える場合には、なるべく早い時期に、その機会を与え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六最裁規六・追加)

(第一回公判期日における在廷証人)

第一百七十八条の八 検察官及び弁護人は、証人として尋問を請求しようとする者で第一回の公判期日において取り調べられる見込みのあるものについて、これを在廷させ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六最裁規六・追加)

(検察官、弁護人の準備の進行に関する問合せ等)

第一百七十八条の九 裁判所は、裁判所書記官に命じて、検察官又は弁護人に訴訟の準備の進行に関し問い合わせ又はその準備を促す処置をとらせることができる。

(昭三六最裁規六・追加)

**(檢察官、弁護人との事前の打合せ)**

**第一百七十八条の十** 裁判所は、適当と認めるときは、第一回の公判期日前に、檢察官及び弁護人を出席させた上、公判期日の指定その他訴訟の進行に関し必要な事項について打合せを行な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事件につき予断を生じさせるおそれのある事項にわたることはできない。

2 前項の処置は、合議体の構成員にこ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昭三六最裁規六・追加)**

**(還付、仮還付に関する規定の活用)**

**第一百七十八条の十一** 檢察官は、公訴の提起後は、その事件に関し押収している物について、被告人及び弁護人が訴訟の準備をするにあたりなるべくその物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法第二百二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準用される法第二百二十三条(押収物の還付、仮還付)の規定の活用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六最裁規六・追加)**

**(第一回の公判期日・法第二百七十五条)**

**第一百七十九条** 被告人に対する第一回の公判期日の召喚状の送達は、起訴状の謄本を送達する前には、これをする 것이できない。

2 第一回の公判期日と被告人に対する召喚状の送達との間には、少くとも五日の猶予期間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簡易裁判所においては、三日の猶予期間を置けば足りる。

3 被告人に異議がないときは、前項の猶予期間を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第一百七十九条の二 削除(平一七最裁規一〇)**

(公判期日に出頭しない者に対する処置)

**第一百七十九条の三** 公判期日に召喚を受けた被告人その他の者が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場合には、法第五十八条(被告人の勾引)、第九十六条(保釈の取消等)及び第五十条から第五十三条まで(証人に対する制裁等)の規定等の活用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

(公判期日の変更の請求・法第二百七十六条)

**第一百七十九条の四** 訴訟関係人は、公判期日の変更を必要とす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直ちに、裁判所に対し、その事由及びそれが継続する見込の期間を具体的に明らかにし、且つ、診断書その他の資料によりこれを疎明して、期日の変更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前項の事由をやむを得ないものと認める場合の外、同項の請求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

(私選弁護士差支の場合の処置・法第二百八十九条等)

**第一百七十九条の五** 法第三十条に掲げる者が選任した弁護士は、公判期日の変更を必要とす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直ちに、前条第一項の手続をする外、その事由及びそれが継続する見込の期間を被告人及び被告人以外の選任者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前項の事由をやむを得ないもの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その事由が長期にわたり審理の遅延を来す虞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同項に掲げる被告人及び被告人以外の選任者に対し、一定の期間を定めて、他の弁護士を選任するかどうかの回答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期間内に回答がなく又は他の弁護士の選任がないときは、次の例による。但し、著しく被告人の利益を害する虞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弁護士がなければ開廷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件については、法第二百八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被告人のため他の弁護士を選任して開廷することができる。

二 弁護人がなくても開廷することができる事件については、弁護人の出頭をまたないで開廷することができる。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

(国選弁護人差支えの場合の処置・法第三十六条等)

**第一百七十九条の六** 法の規定により裁判所若しくは裁判長又は裁判官が付した弁護人は、期日の変更を必要とす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直ちに、第一百七十九条の四第一項の手続をするほか、その事由及びそれが継続する見込みの期間を被告人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ぬ。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平一八最裁規一一・一部改正)

(期日変更についての意見の聴取・法第二百七十六条)

**第一百八十条** 公判期日を変更するについては、あらかじめ、職権でこれをする場合に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請求によりこれをする場合には、相手方又はその弁護人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ぬ。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期日変更請求の却下決定の送達・法第二百七十六条)

**第一百八十一条** 公判期日の変更に関する請求を却下する決定は、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公判期日の不変更・法第二百七十七条)

**第一百八十二条** 裁判所は、やむを得ないと認める場合の外、公判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裁判所がその権限を濫用して公判期日を変更したときは、訴訟関係人は、書面で、裁判所法第八十条の規定により当該裁判官に対して監督権を行う裁判所に不服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昭二五最裁規二八·全改)

(不出頭の場合の資料·法第二百七十八条)

**第八十三条** 被告人は、公判期日に召喚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精神又は身体の疾病その他の事由により出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思料するときは、直ちにその事由を記載した書面及びその事由を明らかにすべき医師の診断書その他の資料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医師の診断書を差し出すべき場合において被告人が貧困のためこれ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所は、医師に被告人に対する診断書の作成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診断書には、病名及び病状の外、その精神又は身体の病状において、公判期日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自ら又は弁護人と協力して適当に防禦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及び出頭し又は審理を受けることにより生命又は健康状態に著しい危険を招くかどうかの点に関する医師の具体的な意見が記載さ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診断書の不受理等·法第二百七十八条)

**第八十四条** 裁判所は、前条の規定による医師の診断書が同条に定める方式に違反しているときは、これを受理してはならない。

2 裁判所は、前条の診断書が同条に定める方式に違反し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も、その内容が疑わしいと認めるときは、診断書を作成した医師を召喚して医師としての適格性及び診断書の内容に関しこれを証人として尋問し、又は他の適格性のある公平な医師に対し被告人の病状についての鑑定を命ずる等適当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不当な診断書·法第二百七十八条)

**第八十五条** 裁判所は、医師が第八十三条の規定による診断書を作成するについて、故意に、虚偽の記載をし、同条に定める方式に違反し、又は内容を不明りようなものとしその他相当でない行為があつたものと認めるときは、厚生労働大臣若しくは医師

をもつて組織する団体がその医師に対し適當と認める処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その旨をこれらの者に通知し、又は法令によつて認められている他の適當な処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

(平一二最裁規一五・一部改正)

(準用規定)

**第八十六条** 公判期日に召喚を受けた被告人以外の者及び公判期日の通知を受けた者については、前三条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五最裁規二八・全改)

(勾留に関する処分をすべき裁判官・法第二百八十条)

**第八十七条** 公訴の提起があつた後第一回の公判期日までの勾留に関する処分は、公訴の提起を受けた裁判所の裁判官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事件の審判に關与すべき裁判官は、そ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ときは同項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同項の裁判官は、同一の地に在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その処分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急速を要する場合又は同一の地にその処分を請求すべき他の裁判所の裁判官がない場合には、同項但書の規定にかかわらず、自らその処分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

3 前項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第一項の処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裁判官は、第一項の処分をするについては、檢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出頭を命じてその陳述を聴くことができる。必要があるときは、これらの者に対し、書類その他の物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但し、事件の審判に關与すべき裁判官は、事件につき予断を生ぜしめる虞のある書類その他の物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ない。

5 地方裁判所の支部は、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を当該裁判所と別個の地方裁判所とみなす。

(平二〇最裁規一四・一部改正)

(出頭拒否の通知・法第二百八十六条の二)

**第百八十七条の二** 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が召喚を受けた公判期日に出頭することを拒否し、刑事施設職員による引致を著しく困難にした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直ちにその旨を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出頭拒否についての取調べ・法第二百八十六条の二)

**第百八十七条の三** 裁判所は、法第二百八十六条の二の規定により被告人の出頭をまたないで公判手続を行うには、あらかじめ、同条に定める事由が存在するかどうかを取り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る取調べ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刑事施設職員その他の関係者の出頭を命じてその陳述を聴き、又はこれらの者に対し報告書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取調べは、合議体の構成員にさせることができ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不出頭のままで公判手続を行う旨の告知・法第二百八十六条の二)

**第百八十七条の四** 法第二百八十六条の二の規定により被告人の出頭をまたないで公判手続を行う場合には、裁判長は、公判廷でその旨を訴訟関係人に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証拠調べの請求の時期・法第二百九十八条)

**第百八十八条** 証拠調べの請求は、公判期日前にも、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

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行う場合を除き、第一回の公判期日前は、この限りで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一部改正)

(証拠調を請求する場合の書面の提出・法第二百九十八条)

第百八十八条の二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を請求するときは、その氏名及び住居を記載した書面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証拠書類その他の書面の取調を請求するときは、その標目を記載した書面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証人尋問の時間の申出・法第二百九十八条)

第百八十八条の三 証人の尋問を請求するときは、証人の尋問に要する見込みの時間を申し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証人の尋問を請求した者の相手方は、証人を尋問する旨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その尋問に要する見込みの時間を申し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職権により証人を尋問する旨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は、その尋問に要する見込みの時間を申し出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二最裁規一・追加、平一七最裁規一〇・一部改正)

(証拠調の請求の方式・法第二百九十八条)

第百八十九条 証拠調の請求は、証拠と証明すべき事実との関係を具体的に明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証拠書類その他の書面の一部の取調を請求するには、特にその部分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証拠調の請求をする者に対し、前二項に定める事

項を明らかにする書面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4 前各項の規定に違反してされた証拠調の請求は、これ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昭二五最裁規二八・全改)

(証拠の厳選・法第二百九十八条)

**第八十九条の二** 証拠調べの請求は、証明すべき事実の立証に必要な証拠を厳選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証拠決定・法第二百九十八条等)

**第九十条** 証拠調又は証拠調の請求の却下は、決定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決定をするについては、証拠調の請求に基く場合には、相手方又はその弁護人の意見を、職権による場合に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被告人が出頭しないでも証拠調を行うことができる公判期日に被告人及び弁護人が出頭していない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らの者の意見を聴かないで、第一項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証拠決定の送達)

**第九十一条**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を尋問する旨の決定は、公判期日前にこれをする場合においても、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2 前項の場合には、直ちにその氏名を訴訟関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証人等の出頭)

**第九十一条の二** 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を尋問する旨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その取調を請求した訴訟関係人は、これらの者を期日に出頭させ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

(証人尋問の準備)

**第九十一条の三** 証人の尋問を請求した検察官又は弁護人は、証人その他の関係者に事実を確かめる等の方法によつて、適切な尋問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三二最裁規一·追加)

(証拠決定についての提示命令)

**第九十二条** 証拠調の決定をする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訴訟関係人に証拠書類又は証拠物の提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証拠調の請求の順序·法第二百九十八条)

**第九十三条** 検察官は、まず、事件の審判に必要と認めるすべての証拠の取調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告人又は弁護人は、前項の請求が終つた後、事件の審判に必要と認める証拠の取調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四条及び第九十五条** 削除(平一七最裁規一〇)

(人定質問)

**第九十六条** 裁判長は、検察官の起訴状の朗読に先だち、被告人に対し、その人違でないことを確めるに足りる事項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

(法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の申出がされた旨の通知の方式)

**第九十六条の二** 法第二百九十条の二第二項後段の規定による通知は、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平一九最裁規一五·追加)

(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思料する事項の告知・法第二百九十条の二)

**第九十六条の三** 検察官は、法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項の決定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事件の性質、審理の状況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被害者特定事項のうち被害者の氏名及び住所以外に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思料する事項があるときは、裁判所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これを告げるものとする。

(平一九最裁規一五·追加)

(呼称の定め・法第二百九十条の二)

**第九十六条の四** 裁判所は、法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項の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被害者の氏名その他の被害者特定事項に係る名称に代わる呼称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平一九最裁規一五·追加)

(決定の告知・法第二百九十条の二)

**第九十六条の五** 裁判所は、法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の決定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これらの決定を取り消す決定をしたときは、公判期日においてこれをした場合を除き、速やかに、その旨を訴訟関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同条第一項の決定をしないことと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裁判所は、法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の決定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当該決定を取り消す決定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同条第一項の申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同項の決定をしないことと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平一九最裁規一五·追加)

**(被告人の権利保護のための告知事項・法第二百九十一条)**

**第二百九十七条** 裁判長は、起訴状の朗読が終つた後、被告人に対し、終始沈黙し又個々の質問に対し陳述を拒むことができる旨の外、陳述をすることもできる旨及び陳述をすれば自己に不利益な証拠ともなり又利益な証拠ともなるべき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長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被告人に対し、前項に規定する事項の外、被告人が十分に理解していないと思料される被告人保護のための権利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簡易公判手続によるための処置・法第二百九十一条の二)**

**第二百九十七条の二** 被告人が法第二百九十一条第三項の機会に公訴事実を認める旨の陳述をした場合には、裁判長は、被告人に対し簡易公判手続の趣旨を説明し、被告人の陳述がその自由な意思に基づくかどうか及び法第二百九十一条の二に定める有罪の陳述に当たるかどうかを確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裁判所が簡易公判手続によることができず又はこれによ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事件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平二〇最裁規六・一部改正)**

**(弁護人等の陳述)**

**第二百九十八条** 裁判所は、検察官が証拠調のはじめに証拠により証明すべき事実を明らかにした後、被告人又は弁護人にも、証拠により証明すべき事実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は、被告人又は弁護人は、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ず、又は証拠としてその取調を請求する意思のない資料に基いて、裁判所に事件について偏見又は予断を生ぜしめる虞のある事項を述べることはできない。

**(争いのない事実の証拠調べ)**

**第二百九十八条の二** 訴訟関係人は、争いのない事実については、誘導尋問、法第三百二十六条第一項の書面又は供述及び法第三百二十七条の書面の活用を検討するなどして、当該事実及び証拠の内容及び性質に応じた適切な証拠調べが行われ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犯罪事実に関しないことが明らかな情状に関する証拠の取調べ)

**第九十八條之三** 犯罪事実に関しないことが明らかな情状に関する証拠の取調べは、できる限り、犯罪事実に関する証拠の取調べと区別して行う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取調べの状況に関する立証)

**第九十八條之四** 検察官は、被告人又は被告人以外の者の供述に関し、その取調べの状況を立証しようとするときは、できる限り、取調べの状況を記録した書面その他の取調べ状況に関する資料を用いるなどして、迅速かつ的確な立証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証拠調の順序)

**第九十九條** 証拠調については、まず、検察官が取調を請求した証拠で事件の審判に必要と認めるすべてのものを取り調べ、これが終わった後、被告人又は弁護人が取調を請求した証拠で事件の審判に必要と認めるものを取り調べるものとする。但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随時必要とする証拠を取り調べ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証拠調が終わった後においても、必要があるときは、更に証拠を取り調べることを妨げない。

(証人尋問の順序・法第三百四條)

**第九十九條之二** 訴訟関係人がまず証人を尋問するときは、次の順序による。

- 一 証人の尋問を請求した者の尋問(主尋問)
- 二 相手方の尋問(反対尋問)

三 証人の尋問을 請求した者의 再度의 尋問(再主尋問)

2 訴訟關係人は、裁判長의 許可를 受けて、更に 尋問する ことができる。

(昭三二最裁規一·追加)

(主尋問·法第三百四條等)

第九十九條의 三 主尋問は、立証すべき事項及びこれに関連する事項について行う。

2 主尋問においては、証人の供述の証明力を争うために必要な事項についても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3 主尋問においては、誘導尋問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次の場合には、誘導尋問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証人の身分、経歴、交友關係等で、実質的な尋問に入るに先だつて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準備的な事項に関するとき。

二 訴訟關係人に争のないことが明らかな事項に関するとき。

三 証人の記憶が明らかでない事項についてその記憶を喚起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

四 証人が主尋問者に対して敵意又は反感を示すとき。

五 証人が証言を避けようとする事項に関するとき。

六 証人が前の供述と相反するか又は実質的に異なる供述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供述した事項に関するとき。

七 その他誘導尋問を必要とす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き。

4 誘導尋問をするについては、書面の朗読その他証人の供述に不当な影響を及ぼすおそれのある方法を避ける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裁判長は、誘導尋問を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昭三二最裁規一·追加)

(反对尋問·法第三百四條等)

第九十九條의 四 反对尋問は、主尋問に現われた事項及びこれに関連する事項並びに

証人の供述の証明力を争うために必要な事項について行う。

- 2 反対尋問は、特段の事情のない限り、主尋問終了後直ち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3 反対尋問においては、必要があるときは、誘導尋問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裁判長は、誘導尋問を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昭三二最裁規一・追加、平一七最裁規一〇・一部改正)

(反対尋問の機会における新たな事項の尋問・法第三百四条)

第九十九条の五 証人の尋問を請求した者の相手方は、裁判長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

反対尋問の機会に、自己の主張を支持する新たな事項についても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尋問は、同項の事項についての主尋問とみなす。

(昭三二最裁規一・追加)

(供述の証明力を争うために必要な事項の尋問・法第三百四条)

第九十九条の六 証人の供述の証明力を争うために必要な事項の尋問は、証人の観

察、記憶又は表現の正確性等証言の信用性に関する事項及び証人の利害関係、偏見、予断等証人の信用性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行う。ただし、みだりに証人の名誉を害する事項に及んではならない。

(昭三二最裁規一・追加)

(再主尋問・法第三百四条等)

第九十九条の七 再主尋問は、反対尋問に現われた事項及びこれに関連する事項につ

いて行う。

- 2 再主尋問については、主尋問の例による。
- 3 第九十九条の五の規定は、再主尋問の場合に準用する。

(昭三二最裁規一·追加)

(補充尋問·法第三百四條)

第九十九條の八 裁判長又は陪席の裁判官がまず証人を尋問した後にする訴訟關係人の尋問については、証人の尋問を請求した者、相手方の區別に従い、前六條の規定を準用する。

(昭三二最裁規一·追加)

(職權による証人の補充尋問·法第三百四條)

第九十九條の九 裁判所が職權で証人を取り調べる場合において、裁判長又は陪席の裁判官が尋問した後、訴訟關係人が尋問するときは、反對尋問の例による。

(昭三二最裁規一·追加)

(書面又は物の提示·法第三百四條等)

第九十九條の十 訴訟關係人は、書面又は物に關しその成立、同一性その他これに準ずる事項について証人を尋問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書面又は物を示す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書面又は物が証拠調を終つたものでないときは、あらかじめ、相手方にこれを閲覽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相手方に異議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昭三二最裁規一·追加)

(記憶喚起のための書面等の提示·法第三百四條等)

第九十九條の十一 訴訟關係人は、証人の記憶が明らかでない事項についてその記憶を喚起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長の許可を受けて、書面(供述を録取した書面

を除く。)又は物を示して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尋問については、書面の内容が証人の供述に不当な影響を及ぼすことのない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場合には、前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昭三二最裁規一・追加)

(図面等の利用・法第三百四条等)

第九十九条の十二 訴訟関係人は、証人の供述を明確に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長の許可を受けて、図面、写真、模型、装置等を利用して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場合には、第九十九条の十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昭三二最裁規一・追加)

(証人尋問の方法・法第三百四条等)

第九十九条の十三 訴訟関係人は、証人を尋問するに当たっては、できる限り個別かつ具体的で簡潔な尋問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 2 訴訟関係人は、次に掲げる尋問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の尋問について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威嚇的又は侮辱的な尋問
- 二 すでにした尋問と重複する尋問
- 三 意見を求め又は議論にわたる尋問
- 四 証人が直接経験しなかつた事実についての尋問

(昭三二最裁規一・追加、平一七最裁規一〇・一部改正)

(関連性の明示・法第二百九十五条)

第九十九条の十四 訴訟関係人は、立証すべき事項又は主尋問若しくは反対尋問に現れた

事項に関連する事項について尋問する場合には、その関連性が明らかになるような尋問をすることその他の方法により、裁判所にその関連性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証人の観察、記憶若しくは表現の正確性その他の証言の信用性に関連する事項又は証人の利害関係、偏見、予断その他の証人の信用性に関連する事項について尋問する場合も、前項と同様とする。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陪席裁判官の尋問・法第三百四条)

**第二百条** 陪席の裁判官は、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を尋問するには、あらかじめ、その旨を裁判長に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裁判長の尋問・法第三百四条)

**第二百一条** 裁判長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何時でも訴訟関係人の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に対する尋問を中止させ、自らその事項について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訴訟関係人が法第二百九十五条の制限の下において証人その他前項に規定する者を十分に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権利を否定する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傍聴人の退廷)

**第二百二条** 裁判長は、被告人、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が特定の傍聴人の面前(証人については、法第一百五十七条の三第二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場合及び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る場合を含む。)で十分な供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と思料するときは、その供述をする間、その傍聴人を退廷させることができる。

(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条・同第二条・一部改正)

(訴訟関係人の尋問の機会・法第三百四条)

**第二百三条** 裁判長は、証人、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の尋問をする場合には、訴訟

關係人に対し、これらの者を尋問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証拠書類等の取調の方法・法第三百五条等)**

**第二百三条の二** 裁判長は、訴訟關係人の意見を聴き、相当と認めるときは、請求により証拠書類又は証拠物中書面の意義が証拠となるものの取調をするについての朗読に代えて、その取調を請求した者、陪席の裁判官若しくは裁判所書記官にその要旨を告げさせ、又は自らこれを告げ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長は、訴訟關係人の意見を聴き、相当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証拠書類又は証拠物中書面の意義が証拠となるものの取調をするについての朗読に代えて、自らその要旨を告げ、又は陪席の裁判官若しくは裁判所書記官にこれを告げさせることができる。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

**(簡易公判手続による場合の特例・法第三百七条の二)**

**第二百三条の三** 簡易公判手続によつて審判をする旨の決定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第九十八條、第九十九條及び前條の規定は、適用し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証拠の証明力を争う機会・法第三百八条)**

**第二百四条** 裁判長は、裁判所が相当と認める機会に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反証の取調の請求その他の方法により証拠の証明力を争う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異議申立の事由・法第三百九条)**

**第二百五条** 法第三百九条第一項の異議の申立は、法令の違反があること又は相当でないことを理由とし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但し、証拠調に関する決定に対しては、相当でないことを理由としてこれを行うことはできない。

2 法第三百九条第二項の異議の申立は、法令の違反があることを理由とする場合に限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昭二六最裁規一五・全改)

(異議申立の方式、時期・法第三百九条)

第二百五条の二 異議の申立は、個々の行為、処分又は決定ごとに、簡潔にその理由を示して、直ち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異議申立に対する決定の時期・法第三百九条)

第二百五条の三 異議の申立については、遅滞なく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異議申立が不適法な場合の決定・法第三百九条)

第二百五条の四 時機に遅れてされた異議の申立、訴訟を遅延させる目的のみでされたことの明らかな異議の申立、その他不適法な異議の申立は、決定で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時機に遅れてされた異議の申立については、その申し立てた事項が重要であつてこれに対する判断を示すことが相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時機に遅れたことを理由としてこれを却下しては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異議申立が理由のない場合の決定・法第三百九条)

第二百五条の五 異議の申立を理由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異議申立が理由のある場合の決定・法第三百九条)**

**第二百五条の六** 異議の申立を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異議を申し立てられた行為の中止、撤回、取消又は変更を命ずる等その申立に対応する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取り調べた証拠が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理由とする異議の申立を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証拠の全部又は一部を排除する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重ねて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の禁止・法第三百九条)**

**第二百六条** 異議の申立について決定があつたときは、その決定で判断された事項については、重ねて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はでき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全改)**

**(職権による排除決定)**

**第二百七条** 裁判所は、取り調べた証拠が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ときは、職権でその証拠の全部又は一部を排除する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釈明等)**

**第二百八条** 裁判長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訴訟関係人に対し、釈明を求め、又は立証を促すことができる。

2 陪席の裁判官は、裁判長に告げて、前項に規定する処置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訴訟関係人は、裁判長に対し、釈明のための発問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訴因、罰条の追加、撤回、変更・法第三百十二条)**

**第二百九条** 訴因又は罰条の追加、撤回又は変更は、書面を差し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書面には、被告人の数に应ずる謄本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裁判所は、前項の謄本を受け取つたときは、直ちにこれを被告人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検察官は、前項の送達があつた後、遅滞なく公判期日において第一項の書面を朗読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法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項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朗読は、被害者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行う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検察官は、被告人に第一項の書面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 6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告人が在廷する公判廷においては、口頭による訴因又は罰条の追加、撤回又は変更を許すことができる。

**(平一九最裁規一五・一部改正)**

**(弁論の分離・法第三百十三條)**

**第二百十條** 裁判所は、被告人の防禦が互に相反する等の事由があつて被告人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決定を以て、弁論を分離しなければならない。

**(意見陳述の申出がされた旨の通知の方式・法第二百九十二條の二)**

**第二百十條の二** 法第二百九十二條の二第二項後段に規定する通知は、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條・追加)**

**(意見陳述が行われる公判期日の通知)**

**第二百十條の三** 裁判所は、法第二百九十二條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意見の陳述をさせる公判期日を、その陳述の申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裁判所は、前項の通知をしたときは、当該公判期日において前項に規定する者に法第二百九十二條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をさせる旨を、訴訟關係人に通知

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条·追加)

(意見陳述の時間)

第二百十条の四 裁判長は、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に充てることのできる時間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条·追加)

(意見の陳述に代わる措置等の決定の告知)

第二百十条の五 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七項の決定は、公判期日前にする場合においても、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速やかに、同項の決定の内容を、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の申出をした者及び訴訟關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条·追加)

(意見を記載した書面が提出されたことの通知)

第二百十条の六 裁判所は、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七項の規定により意見を記載した書面が提出され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檢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条·追加)

(準用規定)

第二百十条の七 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については、第百十五条及び第二百二十五条の規定を準用する。

2 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一百五十七条の二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旨の決定については、第一百七条の二の規定を準用する。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一百五十七条の三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旨の決定及び法第二百九十二条の二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一百五十七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意見の陳述を行う旨の決定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平一二最裁規一二第一条·追加、同第二条·一部改正)

(最終陳述·法第二百九十三条)

第二百十一条 被告人又は弁護人には、最終に陳述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弁論の時期)

第二百十一条の二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証拠調べの後に意見を陳述するに当たっては、証拠調べ後できる限り速やかに、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弁論の方法)

第二百十一条の三 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は、証拠調べの後に意見を陳述するに当たり、争いのある事実については、その意見と証拠との関係を具体的に明示し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弁論時間の制限)

第二百十二条 裁判長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被告人又は弁護人の本質的な権利を害しない限り、これらの者が証拠調べの後にする意見を陳述する時間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公判手続の更新)

第二百十三條 開廷後被告人の心神喪失により公判手続を停止した場合には、公判手続を更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開廷後長期間にわたり開廷し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判手続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更新の手続)

第二百十三條之二 公判手続を更新するには、次の例による。

- 一 裁判長は、まず、検察官に起訴状(起訴状訂正書又は訴因若しくは罰条を追加若しくは変更する書面を含む。)に基いて公訴事実の要旨を陳述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被告人及び弁護人に異議がないときは、その陳述の全部又は一部を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 二 裁判長は、前号の手続が終つた後、被告人及び弁護人に対し、被告事件について陳述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 三 更新前の公判期日における被告人若しくは被告人以外の者の供述を録取した書面又は更新前の公判期日における裁判所の検証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並びに更新前の公判期日において取り調べた書面又は物については、職権で証拠書類又は証拠物として取り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裁判所は、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書面又は物及び証拠とするのを相当でないと認め且つ訴訟関係人が取り調べないことに異議のない書面又は物については、これを取り調べない旨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四 裁判長は、前号本文に掲げる書面又は物を取り調べる場合において訴訟関係人が同意したとき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朗読し又は示すことに代えて、相当と認める方法でこれを取り調べることができる。
- 五 裁判長は、取り調べた各個の証拠について訴訟関係人の意見及び弁解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追加)

(弁論の再開請求の却下決定の送達)

**第二百十四条** 終結した弁論の再開の請求を却下する決定は、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公判廷の写真撮影等の制限)

**第二百十五条** 公判廷における写真の撮影、録音又は放送は、裁判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但し、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判決宣告期日の告知・法第二百八十四条等)

**第二百十六条** 法第二百八十四条又は第二百八十五条に掲げる事件について判決の宣告のみをすべき公判期日の召喚状には、その公判期日に判決を宣告する旨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事件について、同項の公判期日を刑事施設職員に通知して召喚する場合には、その公判期日に判決の宣告をする旨をも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刑事施設職員は、被告人に対し、その旨をも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四七最裁規五・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破棄後の手続)

**第二百十七条** 事件が上訴裁判所から差し戻され、又は移送された場合には、次の例による。

- 一 第一回の公判期日までの勾留に関する処分は、裁判所がこれを行う。
- 二 第百八十八条ただし書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
- 三 証拠保全の請求又は法第二百二十六条若しくは第二百二十七条の証人尋問の請求は、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平一七最裁規一〇・一部改正)

## 第二節 争点及び証拠の整理手続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平二〇最裁規六・旧第一節の二線下)

### 第一款 公判前整理手続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 第一目 通則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審理予定の策定・法第三百十六条の二等)

第二百七条の二 裁判所は、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は、充実した公判の審理を継続的、計画的かつ迅速に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公判の審理予定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訴訟関係人は、法及びこの規則に定める義務を履行することにより、前項の審理予定の策定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に付する旨の決定の送達・法第三百十六条の二)

第二百七条の三 公判前整理手続に付する旨の決定は、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弁護人を必要とする旨の通知・法第三百十六条の四等)

第二百七条の四 裁判所は、事件を公判前整理手続に付したときは、遅滞なく、被告

人に対し、弁護人がなければ公判前整理手続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旨のほか、当該事件が第一百七十七条に規定する事件以外の事件である場合には、弁護人がなければ開廷することができない旨をも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の指定·法第三百十六条の六)

第二百十七条の五 公判前整理手続期日を定めるについては、その期日前に訴訟関係人がすべき準備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の変更の請求·法第三百十六条の六)

第二百十七条の六 訴訟関係人は、公判前整理手続期日の変更を必要とす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直ちに、裁判長に対し、その事由及びそれが継続する見込みの期間を具体的に明らかにして、期日の変更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長は、前項の事由をやむを得ないものと認める場合のほか、同項の請求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の変更についての意見の聴取·法第三百十六条の六)

第二百十七条の七 公判前整理手続期日を変更するについては、あらかじめ、職権でこれをする場合に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請求によりこれをする場合には、相手方又はその弁護人の意見を聴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の変更に関する命令の送達・法第三百十六條の六)

第二百十七條の八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の変更に関する命令は、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の不変更・法第三百十六條の六)

第二百十七條の九 裁判長は、やむを得ないと認める場合のほか、公判前整理手続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被告人の公判前整理手続期日への出頭についての通知・法第三百十六條の九)

第二百十七條の十 裁判所は、被告人に対し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出頭することを求め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検察官及び弁護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を受命裁判官にさせる旨の決定の送達・法第三百十六條の十一)

第二百十七條の十一 合議体の構成員に命じて公判前整理手続をさせる旨の決定は、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おける決定等の告知)

第二百十七條の十二 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おいてした決定又は命令は、これに立ち会った訴訟関係人には送達又は通知することを要し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決定の告知·法第三百十六條の五)

**第二百十七條の十三** 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法第三百十六條の五第七号から第九号までの決定をした場合には、その旨を檢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調書の記載要件·法第三百十六條の十二)

**第二百十七條の十四** 公判前整理手続調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被告事件名及び被告人の氏名
- 二 公判前整理手続をした裁判所又は受命裁判官、年月日及び場所
- 三 裁判官及び裁判所書記官の官氏名
- 四 出頭した檢察官の官氏名
- 五 出頭した被告人、弁護人、代理人及び補佐人の氏名
- 六 出頭した通訳人の氏名
- 七 通訳人の尋問及び供述
- 八 証明予定事実その他の公判期日においてすることを予定している事実上及び法律上の主張
- 九 証拠調べの請求その他の申立て
- 十 証拠と証明すべき事実との関係(証拠の標目自体によつて明らかである場合を除く。)
- 十一 取調べを請求する証拠が法第三百二十八條の証拠であるときは、その旨
- 十二 法第三百九條の異議の申立て及びその理由
- 十三 法第三百二十六條の同意
- 十四 訴因又は罰條の追加、撤回又は変更に関する事項(起訴狀の訂正に関する事項を含む。)
- 十五 証拠開示に関する裁定に関する事項
- 十六 決定及び命令。ただし、次に掲げるものを除く。

- イ 証拠調べの順序及び方法を定める決定(法第三百十六條の五第八号)
  - ロ 主任弁護人及び副主任弁護人以外の弁護人の申立て、請求、質問等の許可(第二十五條)
  - ハ 証拠決定についての提示命令(第九十二條)
- 十七 事件の争点及び証拠の整理の結果を確認した旨並びにその内容
- 2 前項に掲げる事項以外の事項であつても、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おける手続中、裁判長又は受命裁判官が訴訟関係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記載を命じた事項は、これを公判前整理手続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調書の署名押印、認印・法第三百十六條の十二)

- 第二百十七條の十五 公判前整理手続調書には、裁判所書記官が署名押印し、裁判長又は受命裁判官が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裁判長に差し支えがあるときは、他の裁判官の一人が、その事由を付記して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地方裁判所の一人の裁判官、簡易裁判所の裁判官又は受命裁判官に差し支え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が、その事由を付記して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裁判所書記官に差し支えがあるときは、裁判長又は受命裁判官が、その事由を付記して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平二〇最裁規一四・一部改正)

(公判前整理手続調書の整理・法第三百十六條の十二)

- 第二百十七條の十六 公判前整理手続調書は、各公判前整理手続期日後速やかに、遅くとも第一回公判期日までにこれを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調書の記載に対する異議申立て等・法第三百十六条の十二)

**第二百十七条の十七** 公判前整理手続調書については、法第五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項本文並びに第五十二条並びにこの規則第四十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法第五十二条中「公判期日における訴訟手続」とあるのは「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おける手続」と、第四十八条中「裁判長」とあるのは「裁判長又は受命裁判官」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に付された場合の特例・法第三百十六条の二)

**第二百十七条の十八** 公判前整理手続に付する旨の決定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第七十八条の六第一項並びに第二項第二号及び第三号、第七十八條の七、第七十八條の八並びに第九十三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 第二目 争点及び証拠の整理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証明予定事実等の明示方法・法第三百十六条の十三等)

**第二百十七条の十九** 検察官は、法第三百十六条の十三第一項又は第三百十六条の二十一第一項に規定する書面に証明予定事実を記載するについては、事件の争点及び証拠の整理に必要な事項を具体的かつ簡潔に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告人又は弁護人は、法第三百十六条の十七第一項又は第三百十六条の二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証明予定事実その他の公判期日においてすることを予定している事実上及び法律上の主張を明らかにするについては、事件の争点及び証拠の整理に必要な事項を具体的かつ簡潔に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証明予定事実の明示における留意事項・法第三百十六條の十三等)

第二百七條の二十 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は、証明予定事実を明らかにするに当たっては、事実とこれを証明するために用いる主要な証拠との関係を具体的に明示することその他の適当な方法によつて、事件の争点及び証拠の整理が円滑に行われ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期限の告知・法第三百十六條の十三等)

第二百七條の二十一 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法第三百十六條の十三第四項、第三百十六條の十六第二項(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一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百十六條の十七第三項、第三百十六條の十九第二項(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二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百十六條の二十一第三項又は第三百十六條の二十二第三項に規定する期限を定めた場合には、これを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期限の厳守・法第三百十六條の十三等)

第二百七條の二十二 訴訟関係人は、前條に規定する期限が定められた場合には、これを厳守し、事件の争点及び証拠の整理に支障を来さ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期限を守らない場合の措置・法第三百十六條の十六等)

第二百七條の二十三 裁判所は、公判前整理手続において法第三百十六條の十六第二

項(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一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百十六條の十七第三項、第三百十六條の十九第二項(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二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百十六條の二十一第三項又は第三百十六條の二十二第三項に規定する期限を定めた場合において、当該期限までに、意見若しくは主張が明らかにされず、又は証拠調べの請求がされない場合においても、公判の審理を開始するの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公判前整理手続を終了することができる。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 第三目 証拠開示に関する裁定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証拠不開示の理由の告知・法第三百十六條の十五等)

**第二百七條の二十四** 検察官は、法第三百十六條の十五第一項(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一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三百十六條の二十第一項(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二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被告人又は弁護人から開示の請求があつた証拠について、これを開示しない場合には、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開示しない理由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証拠開示に関する裁定の請求の方式・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五等)

**第二百七條の二十五** 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五第一項又は第三百十六條の二十六第一項の規定による証拠開示に関する裁定の請求は、書面を差し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請求をした者は、速やかに、同項の書面の謄本を相手方又はその弁護人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公判前整理手続期日においては、同項の請

求を口頭であ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証拠標目一覧表の記載事項・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七)

第二百十七條の二十六 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七第二項の一覧表には、証拠ごとに、その種類、供述者又は作成者及び作成年月日のほ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証拠の提示を命ずるかどうかの判断のために必要と認め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 第二款 期日間整理手続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準用規定)

第二百十七條の二十七 期日間整理手続については、前款(第二百十七條の十八を除く。)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見出しを含む。)中「公判前整理手続期日」とあるのは「期日間整理手続期日」と、「公判前整理手続調書」とあるのは「期日間整理手続調書」と読み替えるほか、第二百十七條の二から第二百十七條の十一までの見出し、第二百十七條の十三(見出しを含む。)、第二百十七條の十四の見出し及び同条第一項第十六号イ、第二百十七條の十五から第二百十七條の十七までの見出し、第二百十七條の十九(見出しを含む。)、第二百十七條の二十の見出し、第二百十七條の二十一(見出しを含む。)、第二百十七條の二十二の見出し、第二百十七條の二十三及び第二百十七條の二十四(これらの規定の見出しを含む。)、第二百十七條の二十五の見出し及び同条第一項並びに前条(見出しを含む。)中「法」とあるのは「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と、第二百十七條の十六中「第一回公判期日」とあるのは「期日間整理手続終了後の最初の公判期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 第三款 公判手続の特例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審理予定に従った公判の審理の進行)

**第二百七条の二十八** 裁判所は、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は、公判の審理を当該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おいて定められた予定に従って進行させ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訴訟関係人は、公判の審理が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おいて定められた予定に従って進行するよう、裁判所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公判前整理手続等の結果を明らかにする手続·法第三百十六条の三十一)

**第二百七条の二十九** 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当該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の結果を明らかにするには、公判前整理手続調書若しくは期日間整理手続調書を朗読し、又はその要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法第三百十六条の二第二項(法第三百十六条の二十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書面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り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の結果を明らかにする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に命じて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3 法第二百九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項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公判前整理手続調書又は期日間整理手続調書の朗読又は要旨の告知は、被害者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行うものとする。法第三百十六条の二第二項(法第三百十六条の二十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書面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平一九最裁規一五・一部改正)

(やむを得ない事由の疎明・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二)

第二百七條の三十 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おいて請求しなかつた証拠の取調べを請求するには、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つてその証拠の取調べ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こと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証拠の取調べの請求・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二)

第二百七條の三十一 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公判前整理手続又は期日間整理手続におい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証拠の取調べを請求するときは、その事由がやんだ後、できる限り速やかに、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最裁規一〇・追加)

### 第三節 被害者参加(平二〇最裁規六・追加)

(被害者参加の申出がされた旨の通知の方式・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三)

第二百七條の三十二 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三第二項後段の規定による通知は、書面で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平二〇最裁規六・追加)

**(委託の届出等・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等)**

**第二百十七條の三十三** 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及び第三百十六條の三十六から第三百十六條の三十八までに規定する行為を弁護士に委託した被害者参加人は、当該行為を当該弁護士に行わせるに当たり、あらかじめ、委託した旨を当該弁護士と連署した書面で裁判所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は、審級ごと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書面に委託した行為を特定する記載がないときは、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及び第三百十六條の三十六から第三百十六條の三十八までに規定するすべての行為を委託したものとみなす。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は、弁論が併合された事件であつて、当該被害者参加人が手続への参加を許されたものについ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ただし、当該被害者参加人が、手続への参加を許された事件のうち当該届出の効力を及ぼさない旨の申述をしたもの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被害者参加人が委託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したときは、その旨を書面で裁判所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平二〇最裁規六・追加)**

**(代表者選定の求めの記録化・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

**第二百十七條の三十四** 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第三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条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公判期日又は公判準備に出席する代表者の選定を求め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これを記録上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二〇最裁規六・追加)**

**(選定された代表者の通知・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

**第二百十七條の三十五** 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第三項の規定により公判期日又は公判準備に出席する代表者に選定された者は、速やかに、その旨を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二〇最裁規六・追加)

(意見陳述の時期・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八)

第二百七條の三十六 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八第一項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は、法第二百九十三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檢察官の意見の陳述の後速やか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二〇最裁規六・追加)

(意見陳述の時間・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八)

第二百七條の三十七 裁判長は、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八第一項の規定による意見の陳述に充てることのできる時間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平二〇最裁規六・追加)

(決定の告知・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三等)

第二百七條の三十八 裁判所は、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三第一項の申出に対する決定又は同項の決定を取り消す決定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同項の申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第四項(同條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公判期日又は公判準備への出席を許さない旨の決定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出席を許さないこととされ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六第一項、第三百十六條の三十七第一項又は第三百十六條の三十八第一項の申出に対する決定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当該申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裁判所は、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三第一項の申出に対する決定若しくは同項の決定を取り消す決定、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四第四項の規定による公判期日又は公判準備へ

の出席を許さない旨の決定、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六第一項、第三百十六條の三十七第一項若しくは第三百十六條の三十八第一項の申出に対する決定、法第三百十六條の三十九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旨の決定若しくは同項の決定を取り消す決定又は同條第四項若しくは第五項に規定する措置を採る旨の決定をしたときは、公判期日においてこれをした場合を除き、速やかに、その旨を訴訟關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二〇最裁規六・追加)

#### 第四節 公判の裁判

(平二〇最裁規六・旧第二節線下)

(判決書への引用)

**第二百十八條** 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においては、判決書には、起訴状に記載された公訴事實又は訴因若しくは罰条を追加若しくは変更する書面に記載された事實を引用することができる。

(昭二四最裁規八・平二〇最裁規一四・一部改正)

**第二百十八條の二** 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においては、簡易公判手続又は即決裁判手続によつて審理をした事件の判決書には、公判調書に記載された証拠の標目を特定して引用することができる。

(昭三五最裁規二・追加、平一八最裁規一一・平二〇最裁規一四・一部改正)

(調書判決)

**第二百十九條** 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においては、上訴の申立てがない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に判決主文並びに罪となるべき事實の要旨及び適用した罰条を判決の宣告

をした公判期日の調書の末尾に記載させ、これをもつて判決書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判決宣告の日から十四日以内でかつ判決の確定前に判決書の謄本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記載については、判決をした裁判官が、裁判所書記官とともに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場合には、第四十六条第三項及び第四項並びに第五十五条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四最裁規八・昭二四最裁規一二・昭二六最裁規一五・昭三五最裁規二・平四最裁規一・平二〇最裁規一四・一部改正)

(公訴棄却の決定の送達の特例・法第三百三十九条)

第二百十九条の二 法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公訴棄却の決定は、被告人に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2 前項の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弁護人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上訴期間等の告知)

第二百二十条 有罪の判決の宣告をする場合には、被告人に対し、上訴期間及び上訴申立書を差し出すべき裁判所を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保護観察の趣旨等の説示・法第三百三十三条)

第二百二十条の二 保護観察に付する旨の判決の宣告をする場合には、裁判長は、被告人に対し、保護観察の趣旨その他必要と認める事項を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判決宣告後の訓戒)

第二百二十一条 裁判長は、判決の宣告をした後、被告人に対し、その将来について適当な訓戒をすることができる。

(判決の通知・法第二百八十四条)

第二百二十二条 法第二百八十四条に掲げる事件について被告人の不出頭のまま判決の宣告をした場合には、直ちにその旨及び判決主文を被告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代理人又は弁護人が判決の宣告をした公判期日に出頭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昭四七最裁規五・一部改正)

(保護観察の判決の通知等)

第二百二十二条の二 裁判所は、保護観察に付する旨の判決の宣告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判決書の謄本若しくは抄本又は保護観察を受けるべき者の氏名、年齢、住居、罪名、判決の主文、犯罪事実の要旨及び宣告の年月日を記載した書面をその者の保護観察を担当すべき保護観察所の長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その者が保護観察の期間中遵守すべき特別の事項に関する意見を記載した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前段の書面には、同項後段に規定する意見以外の裁判所の意見その他保護観察の資料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添付することができ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平一八最裁規九・一部改正)

(保護観察の成績の報告)

第二百二十二条の三 保護観察に付する旨の判決をした裁判所は、保護観察の期間中、保護観察所の長に対し、保護観察を受けている者の成績について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執行猶予取消請求の方式・法第三百四十九条)

第二百二十二条の四 刑の執行猶予の言渡の取消の請求は、取消の事由を具体的に記載した書面で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資料の差出し・法第三百四十九条)

第二百二十二条の五 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の取消しの請求をするには、取消しの事由がある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請求が刑法第二十六条の二第二号の規定による猶予の言渡しの取消しを求めるものであるときは、保護観察所の長の申出があつたことを認めるべき資料をも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平七最裁規一・一部改正)

(請求書の謄本の差出し、送達・法第三百四十九条等)

第二百二十二条の六 刑法第二十六条の二第二号の規定による猶予の言渡しの取消しを請求するときは、検察官は、請求と同時に請求書の謄本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前項の謄本を受け取つ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平七最裁規一・一部改正)

(口頭弁論請求権の通知等・法第三百四十九条の二)

第二百二十二条の七 裁判所は、刑法第二十六条の二第二号の規定による猶予の言渡しの取消しの請求を受けたときは、遅滞なく、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に対し、口頭弁

論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及びこれを請求する場合には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知らせ、かつ、口頭弁論を請求するかどうかを確か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口頭弁論を請求するかどうかを確かめるについては、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に対し、一定の期間を定めて回答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平七最裁規一・一部改正)

(出頭命令・法第三百四十九条等)

第二百二十二条の八 裁判所は、猶予の言渡の取消の請求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に出頭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口頭弁論・法第三百四十九条の二)

第二百二十二条の九 法第三百四十九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口頭弁論については、次の例による。

- 一 裁判長は、口頭弁論期日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二 口頭弁論期日には、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に出頭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 三 口頭弁論期日は、検察官及び弁護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四 裁判所は、検察官、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若しくは弁護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口頭弁論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 五 口頭弁論は、公開の法廷で行う。  
法廷は、裁判官及び裁判所書記官が列席し、かつ、検察官が出席して開く。
- 六 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が期日に出頭しないときは、開廷することができない。但し、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七 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の請求があるとき、又は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を害する虞があるときは、口頭弁論を公開しないことができる。
- 八 口頭弁論については、調書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準用規定・法第三百五十条)

第二百二十二条の十 法第三百五十条の請求については、第二百二十二条の四、第二百二十二条の五前段及び第二百二十二条の八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 第四章 即決裁判手続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 第一節 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書面の添付・法第三百五十条の二)

第二百二十二条の十一 即決裁判手続の申立書には、法第三百五十条の二第三項に定める手続をし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同意確認のための国選弁護人選任の請求・法第三百五十条の三)

第二百二十二条の十二 法第三百五十条の三第一項の請求は、法第三百五十条の二第三項の確認を求めた検察官が所属する検察庁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その支部の所在地を含む。)に在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同意確認のための私選弁護人選任の申出·法第三百五十条の三)

**第二百二十二条の十三** その資力(法第三十六条の二に規定する資力をいう。第二百八十条の三第一項において同じ。)が基準額(法第三十六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基準額をいう。第二百八十条の三第一項において同じ。)以上である被疑者が法第三百五十条の三第一項の請求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十七条の三第二項の規定により法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すべき弁護士会は法第三百五十条の二第三項の確認を求めた検察官が所属する検察庁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在る弁護士会とし、当該弁護士会が法第三百五十条の三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十七条の三第三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すべき地方裁判所は当該検察庁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とする。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 第二節 公判準備及び公判手続の特例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の却下)

**第二百二十二条の十四** 裁判所は、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法第三百五十条の八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決定でその申立て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法第二百九十一条第三項の手続に際し、被告人が起訴状に記載された訴因について有罪である旨の陳述をしなかつた場合も、同様とする。

2 前項の決定は、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平二〇最裁規六・一部改正)

(弁護人選任に関する通知・法第三百五十条の九)

**第二百二十二条の十五** 裁判所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長期三年を超える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事件以外の事件について、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があつたときは、第一百七十七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遅滞なく、被告人に対し、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及び貧困その他の事由により弁護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弁護人の選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ほか、弁護人がなければ法第三百五十条の八の手続を行う公判期日及び即決裁判手続による公判期日を開くことができない旨をも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弁護人のない事件の処置・法第三百五十条の九)

**第二百二十二条の十六** 裁判所は、即決裁判手続の申立て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被告人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第一百七十八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遅滞なく、被告人に対し、弁護人を選任するかどうかを確か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前項の処置をするについては、被告人に対し、一定の期間を定めて回答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期間内に回答がなく又は弁護人の選任がないときは、裁判長は、直ちに被告人のため弁護人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公判期日の指定・法第三百五十条の七)

**第二百二十二条の十七** 法第三百五十条の七の公判期日は、できる限り、公訴が提起された日から十四日以内の日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即決裁判手続による場合の特例)

第二百二十二条の十八 即決裁判手続によつて審判をする旨の決定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第九十八條、第九十九條及び第二百三條の二の規定は、適用しない。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第二百二十二条の十九 即決裁判手続によつて審理し、即日判決の言渡しをした事件の公判調書については、判決の言渡しをした公判期日から二十一日以内にこれを整理すれば足りる。

2 前項の場合には、その公判調書の記載の正確性についての異議の申立期間との関係においては、その公判調書を整理すべき最終日にこれを整理したものとみなす。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平二〇最裁規五·一部改正)

第二百二十二条の二十 即決裁判手続によつて審理し、即日判決の言渡しをした事件について、裁判長の許可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第四十四条第一項第十九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記載事項の全部又は一部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控訴の申立てがあつ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検察官及び弁護人は、裁判長が前項の許可をする際に、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平二〇最裁規六·一部改正)

## 第三編 上 訴

### 第一章 通 則

(上訴放棄の申立裁判所·法第三百五十九條等)

第二百二十三条 上訴放棄の申立は、原裁判所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上訴取下の申立裁判所·法第三百五十九条等)

第二百二十三条之二 上訴取下の申立は、上訴裁判所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旧第二百二十三条線下)

2 訴訟記録を上訴裁判所に送付する前に上訴の取下をする場合には、その申立書を原裁判所に差し出すことができる。

(上訴取下の申立の方式·法第三百五十九条等)

第二百二十四条 上訴取下の申立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公判廷においては、口頭で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その申立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同意書の差出·法第三百六十条)

第二百二十四条之二 法第三百五十三条又は第三百五十四条に規定する者は、上訴の放棄又は取下をするときは、同時に、被告人のこれに同意する旨の書面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上訴権回復請求の方式·法第三百六十三条)

第二百二十五条 上訴権回復の請求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上訴権回復請求の理由の疎明·法第三百六十三条)

第二百二十六条 上訴権回復の理由となる事実は、これ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刑事施設に収容中の被告人の上訴・法第三百六十六条)

**第二百二十七条** 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被告人が上訴をするには、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代理者を經由して上訴の申立書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代理者は、原裁判所に上訴の申立書を送付し、かつ、これを受け取つた年月日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第二百二十八条** 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被告人が上訴の提起期間内に上訴の申立書を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代理者に差し出したときは、上訴の提起期間内に上訴をしたものとみなす。

(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刑事施設に収容中の被告人の上訴放棄等・法第三百六十七条等)

**第二百二十九条** 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被告人が上訴の放棄若しくは取下げ又は上訴権回復の請求をする場合には、前二条の規定を準用する。

(昭二八最裁規二一・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上訴等の通知)

**第二百三十条** 上訴、上訴の放棄若しくは取下げ又は上訴権回復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速やかにこれを相手方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第二百三十一条から 第二百三十四条まで 削除(昭五一最裁規四)

## 第二章 控 訴

### (訴訟記録等の送付)

**第二百三十五条** 控訴の申立が明らかに控訴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を除いては、第一審裁判所は、公判調書の記載の正確性についての異議申立期間の経過後、速やかに訴訟記録及び証拠物を控訴裁判所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控訴趣意書の差出期間・法第三百七十六条)

**第二百三十六条** 控訴裁判所は、訴訟記録の送付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控訴趣意書を差し出すべき最終日を指定してこれを控訴申立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控訴申立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その通知は、弁護人にも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通知は、通知書を送達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最終日は、控訴申立人に対する前項の送達があつ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二十一日目以後の日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項の通知書の送達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最終日の指定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控訴申立人に対する送達があつ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二十一日目の日を最終日とみなす。

### (訴訟記録到達の通知)

**第二百三十七条** 控訴裁判所は、前条の通知をする場合には、同時に訴訟記録の送付があつた旨を検察官又は被告人で控訴申立人でない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被告人に弁護人があるときは、その通知は、弁護人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期間経過後の控訴趣意書)

**第二百三十八条** 控訴裁判所は、控訴趣意書を差し出すべき期間経過後に控訴趣意書を受け取つた場合においても、その遅延がやむを得ない事情に基くもの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期間内に差し出されたものとして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主任弁護人以外の弁護人の控訴趣意書・法第三十四条)

第二百三十九条 控訴趣意書は、主任弁護人以外の弁護人もこれを差し出すことができる。

(控訴趣意書の記載)

第二百四十条 控訴趣意書には、控訴の理由を簡潔に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控訴趣意書の謄本)

第二百四十一条 控訴趣意書には、相手方の数に応ずる謄本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控訴趣意書の謄本の送達)

第二百四十二条 控訴裁判所は、控訴趣意書を受け取つ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謄本を相手方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答弁書)

第二百四十三条 控訴の相手方は、控訴趣意書の謄本の送達を受けた日から七日以内に答弁書を控訴裁判所に差し出すことができる。

2 検察官が相手方であるときは、重要と認める控訴の理由について答弁書を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控訴の相手方に対し一定の期間を定めて、答弁書を差し出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4 答弁書には、相手方の数に応ずる謄本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控訴裁判所は、答弁書を受け取つ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謄本を控訴申立人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一部改正)

(被告人の移送)

第二百四十四条 被告人が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公判期日を指定すべ

きときは、控訴裁判所は、その旨を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検察官は、前項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被告人を控訴裁判所の所在地の刑事施設に移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被告人が控訴裁判所の所在地の刑事施設に移されたときは、検察官は、速やかに被告人の移された刑事施設を控訴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受命裁判官の報告書)

**第二百四十五条** 裁判長は、合議体の構成員に控訴申立書、控訴趣意書及び答弁書を検閲して報告書を作らせることができる。

2 公判期日には、受命裁判官は、弁論前に、報告書を朗読しなければならない。

(判決書の記載)

**第二百四十六条** 判決書には、控訴の趣意及び重要な答弁について、その要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控訴趣意書又は答弁書に記載された事実を引用することができる。

(昭二五最裁規二八・一部改正)

(最高裁判所への移送・法第四百六条)

**第二百四十七条** 控訴裁判所は、憲法の違反があること又は憲法の解釈に誤があることのみを理由として控訴の申立をした事件につ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訴訟関係人の意見を聴いて、決定でこれを最高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移送の許可の申請・法第四百六条)

**第二百四十八条** 前条の決定は、最高裁判所の許可を受け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許可は、書面でこれ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書面には、原判決の謄本及び控訴趣意書の謄本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移送の決定の効力・法第四百六条)**

**第二百四十九条** 第二百四十七条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控訴の申立があつた時に控訴趣意書に記載された理由による上告の申立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準用規定)**

**第二百五十条** 控訴の審判については、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第二編中公判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 第三章 上 告

**(訴訟記録の送付)**

**第二百五十一条** 上告の申立が明らかに上告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を除いては、原裁判所は、公判調書の記載の正確性についての異議申立期間の経過後、速やかに訴訟記録を上告裁判所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上告趣意書の差出期間・法第四百十四条等)**

**第二百五十二条** 上告趣意書を差し出すべき最終日は、その指定の通知書が上告申立人に送達され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二十八日目以後の日で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最終日の通知書の送達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指定が同項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きは、その送達があつ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た二十八日目の日を最終日とみなす。

**(判例の摘示)**

**第二百五十三条** 判例と相反する判断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上告の申立をした場合には、上告趣意書にその判例を具体的に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跳躍上告・法第四百六条)**

**第二百五十四条** 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がした第一審判決に対しては、その判決において法律、命令、規則若しくは処分が憲法に違反するものとした判断又は地方公共団体の条例若しくは規則が法律に違反するものとした判断が不当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最高裁判所に上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検察官は、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がした第一審判決に対し、その判決において地方公共団体の条例又は規則が憲法又は法律に適合するものとした判断が不当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最高裁判所に上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昭二四最裁規八・平二〇最裁規一四・一部改正)**

**(跳躍上告と控訴・法第四百六条)**

**第二百五十五条** 前条の上告は、控訴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その効力を失う。但し、控訴の取下又は控訴棄却の裁判があ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違憲判断事件の優先審判)**

**第二百五十六条** 最高裁判所は、原判決において法律、命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違反するものとした判断が不当であることを上告の理由とする事件については、原裁判において同種の判断をしていない他のすべての事件に優先して、これを審判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上告審としての事件受理の申立・法第四百六条)**

**第二百五十七条** 高等裁判所がした第一審又は第二審の判決に対しては、その事件が法令(裁判所の規則を含む。)の解釈に関する重要な事項を含むものと認めるときは、上訴権者は、その判決に対する上告の提起期間内に限り、最高裁判所に上告審として事件を受理すべきこと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但し、法第四百五条に規定する事由をその理由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

(申立の方式・法第四百六条)

第二百五十八条 前条の申立をするには、申立書を原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六最裁規一五・昭二八最裁規五・一部改正)

(原判決の謄本の交付・法第四百六条)

第二百五十八条の二 第二百五十七条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原裁判所に対して法第四十六条の規定による判決の謄本の交付の請求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但し、申立人が申立の前に判決の謄本の交付を受け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本文の場合には、原裁判所は、遅滞なく判決の謄本を申立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但書又は前項の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は、判決の謄本を交付した日を記録上明らかにしてお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五・追加)

(事件受理の申立理由書・法第四百六条)

第二百五十八条の三 申立人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謄本の交付を受けたときはその日から、前条第一項但書の場合には第二百五十七条の申立をし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理由書を原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理由書に相手方の数に応ずる謄本及び原判決の謄本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理由書には、第一審判決の内容を摘記する等の方法により、申立の理由をできる限り具体的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五・追加)

(原裁判所の棄却決定・法第四百六条)

第二百五十九条 第二百五十七条の申立が明らかに申立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

とき、又は前条第一項の理由書が同項の期間内に差し出されないときは、原裁判所は、決定で申立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五・一部改正)

(申立書の送付等・法第四百六条)

**第二百六十条** 原裁判所は、第二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の理由書及び添附書類を受け取つたときは、前条の場合を除いて、速やかにこれを第二百五十八条の申立書とともに最高裁判所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最高裁判所は、前項の送付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年月日を検察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五・一部改正)

(事件受理の決定・法第四百六条)

**第二百六十一条** 最高裁判所は、自ら上告審として事件を受理するの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前条の送付を受け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その旨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申立の理由中に重要でないと認めるものがあるときは、これを排除することができる。

2 最高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したときは、同項の期間内にこれを検察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件受理の決定の通知・法第四百六条)

**第二百六十二条** 最高裁判所は、前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原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件受理の決定の効力等・法第四百六条)

**第二百六十三条** 第二百六十一条第一項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第二百五十八条の三第

一項の理由書は、その理由(第二百六十一条第一項後段の規定により排除された理由を除く。)を上告の理由とする上告趣意書とみなす。

2 前項の理由書の謄本を相手方に送達する場合において、第二百六十一条第一項後段の規定により排除された理由があるときは、同時にその決定の謄本をも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五・一部改正)

(申立の効力・法第四百六条)

**第二百六十四条** 第二百五十七条の申立は、原判決の確定を妨げる効力を有する。但し、申立を棄却する決定があつたとき、又は第二百六十一条第一項の決定がされないで同項の期間が経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被告人の移送・法第四百九条)

**第二百六十五条** 上告審においては、公判期日を指定すべき場合においても、被告人の移送は、これを必要としない。

(平一八最裁規六・一部改正)

(準用規定)

**第二百六十六条** 上告の審判については、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前章の規定を準用する。

(判決訂正申立等の方式・法第四百十五条)

**第二百六十七条** 判決を訂正する申立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書面には、申立の理由を簡潔に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判決訂正の申立期間延長の申立については、前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判決訂正申立の通知・法第四百十五條)

第二百六十八條 前條第一項の申立があつ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相手方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却下決定の送達・法第四百十五條)

第二百六十九條 判決訂正の申立期間延長の申立を却下する決定は、これを送達することを要しない。

(判決訂正申立についての裁判・法第四百十六條等)

第二百七十條 判決訂正の申立についての裁判は、原判決をした裁判所を構成した裁判官全員で構成される裁判所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裁判官が死亡した場合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但書の場合にも、原判決をするについて反対意見を表示した裁判官が多数となるように構成された裁判所においては、同項の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第四章 抗 告

(訴訟記録等の送付)

第二百七十一條 原裁判所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訴訟記録及び証拠物を抗告裁判所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抗告裁判所は、訴訟記録及び証拠物の送付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抗告裁判所の決定の通知)

第二百七十二條 抗告裁判所の決定は、これを原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準用規定)

第二百七十三條 法第四百二十九條及び第四百三十條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は、前二條の規定を準用する。

(特別抗告申立書の記載・法第四百三十三条)

**第二百七十四条** 法第四百三十三条の抗告の申立書には、抗告の趣旨を簡潔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特別抗告についての調査の範囲・法第四百三十三条)

**第二百七十五条** 最高裁判所は、法第四百三十三条の抗告については、申立書に記載された抗告の趣意についてのみ調査をするものとする。但し、法第四百五条に規定する事由については、職権で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準用規定)

**第二百七十六条** 法第四百三十三条の抗告の申立があつた場合には、第二百五十六条、第二百七十一条及び第二百七十二條の規定を準用する。

## 第四編 少年事件の特別手続

(審理の方針)

**第二百七十七条** 少年事件の審理については、懇切を旨とし、且つ事案の真相を明らかにするため、家庭裁判所の取り調べた証拠は、つとめてこれを取り調べ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少年鑑別所への送致令状の記載要件・少年法第四十四条)

**第二百七十八条** 少年法第四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発する令状には、少年の氏名、年齢及び住居、罪名、被疑事実の要旨、法第六十条第一項各号に定める事由、収容すべき少年鑑別所、有効期間及びその期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令状は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並びに請求及び発付の年月日を記載し、裁判官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令状の執行は、法及びこの規則中勾留状の執行に関する規定に準じてこれを

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九・昭二七最裁規一九・一部改正)

(国選弁護人・法第三十七条等)

**第二百七十九条** 少年の被告人に弁護人がないときは、裁判所は、なるべく、職権で弁護人を附さなければならない。

(家庭裁判所調査官の観護に付する決定の効力・少年法第四十五条)

**第二百八十条** 少年法第十七条第一項第一号の措置は、事件を終局させる裁判の確定によりその効力を失う。

(昭二五最裁規一一・昭二九最裁規五・一部改正)

(観護の措置が勾留とみなされる場合の国選弁護人選任の請求等・少年法第四十五条等)

**第二百八十条之二** 少年法第四十五条第七号(同法第四十五条の二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被疑者に勾留状が発せられているものとみなされる場合における法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の請求は、少年法第十九条第二項(同法第二十三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及び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第二十条の決定をした家庭裁判所の裁判官、その所属する家庭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その支部の所在地を含む。)に在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法第三十七条の四の規定による弁護人の選任に関する処分は、少年法第十九条第二項若しくは第二十条の決定をした家庭裁判所の裁判官、その所属する家庭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その支部の所在地を含む。)に在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被疑者が同項の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外に在る刑事施設に収容されたと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の請求は、その刑事施設の所在地

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その支部の所在地を含む。)に在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法第三十七条の四の規定による弁護人の選任に関する処分は、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の刑事施設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その支部の所在地を含む。)に在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法第三十七条の五及び第三十八条の三第四項の規定による弁護人の選任に関する処分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觀護の措置が勾留とみなされる場合の私選弁護人選任の申出・少年法第四十五条等)

**第二百八十条の三** 少年法第四十五条第七号の規定により勾留状が発せられているものとみなされた被疑者でその資力が基準額以上であるものが法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の請求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法第三十七条の三第二項の規定により法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すべき弁護士会は少年法第十九条第二項又は第二十条の決定をした家庭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在る弁護士会とし、当該弁護士会が法第三十七条の三第三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すべき地方裁判所は当該家庭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とする。

2 前項の被疑者が同項の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外に在る刑事施設に収容された場合において、法第三十七条の二第一項の請求を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第三十七条の三第二項の規定により法第三十一条の二第一項の申出をすべき弁護士会は当該刑事施設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在る弁護士会とし、当該弁護士会が法第三十七条の三第三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すべき地方裁判所は当該刑事施設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とする。

(平一八最裁規一一・追加)

(勾留に代わる措置の請求・少年法第四十三条)

**第二百八十一条** 少年事件において、検察官が裁判官に対し勾留の請求に代え少年法第十七条第一項の措置を請求する場合には、第四百四十七条から第四百五十条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準用規定)

**第二百八十二条** 被告人又は被疑者が少年鑑別所に収容又は拘禁されている場合には、この規則中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昭二五最裁規九・昭二七最裁規一九・平一八最裁規六・平一八最裁規一一・一部改正)

## 第五編 再 審

(請求の手續)

**第二百八十三条** 再審の請求をするには、その趣意書に原判決の謄本、証拠書類及び証拠物を添えてこれを管轄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準用規定)

**第二百八十四条** 再審の請求又はその取下については、第二百二十四条、第二百二十七条、第二百二十八条及び第二百三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請求の競合)

**第二百八十五条** 第一審の確定判決と控訴を棄却した確定判決とに対して再審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控訴裁判所は、決定で第一審裁判所の訴訟手續が終了するに至るまで、訴訟手續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一審又は第二審の確定判決と上告を棄却した確定判決とに対して再審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上告裁判所は、決定で第一審裁判所又は控訴裁判所の訴訟手續が終了するに至るまで、訴訟手續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意見の聴取)

**第二百八十六条** 再審の請求について決定をする場合には、請求をした者及びその相手方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有罪の言渡を受けた者の法定代理人又は保佐人が請求をした場合には、有罪の言渡を受けた者の意見をも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六編 略式手続

**第二百八十七条** 削除(昭二八最裁規二一)

(書面の添附・法第四百六十一条の二等)

**第二百八十八条** 略式命令の請求書には、法第四百六十一条の二第一項に定める手続をし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全改)

(書類等の差出)

**第二百八十九条** 検察官は、略式命令の請求と同時に、略式命令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思料する書類及び証拠物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略式命令の時期等)

**第二百九十条** 略式命令は、遅くともその請求のあつ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これ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は、略式命令の謄本の送達ができなかつ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検察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準用規定)

**第二百九十一条** 法第四百六十三条の二第二項の決定については、第二百十九条の二の

規定を準用する。

(昭二八最裁規二一・全改)

(起訴状の謄本の差出等・法第四百六十三条)

第二百九十二条 検察官は、法第四百六十三条第三項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速やかに被告人の数に應ずる起訴状の謄本を裁判所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は、第七十六條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とする。

(昭二八最裁規二一・一部改正)

(書類等の返還)

第二百九十三条 裁判所は、法第四百六十三条第三項又は第四百六十五条第二項の通知をしたときは、直ちに第二百八十九条の書類及び証拠物を検察官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全改)

(準用規定)

第二百九十四条 正式裁判の請求、その取下又は正式裁判請求権回復の請求については、第二百二十四条から第二百二十八条まで及び第二百三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 第七編 裁判の執行

(訴訟費用免除の申立等・法第五百条等)

第二百九十五条 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の執行免除の申立又は裁判の解釈を求める申立若しくは裁判の執行についての異議の申立は、書面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申立の取下についても、同様である。

2 前項の申立又はその取下については、第二百二十七条及び第二百二十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

**(免除の申立裁判所・法第五百条)**

**第二百九十五条の二** 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の執行免除の申立は、その裁判を言い渡した裁判所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事件が上訴審において終結した場合には、全部の訴訟費用について、その上訴裁判所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申立を受けた裁判所は、その申立について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前項但書の規定による申立を受けた裁判所は、自ら決定をするのが適当でないと思えるときは、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を言い渡した下級の裁判所に決定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その旨を記載し、かつ、裁判長が認印した送付書とともに申立書及び関係書類を送付するものとする。

3 前項但書の規定による送付をしたときは、裁判所は、直ちにその旨を検察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申立書が申立裁判所以外の裁判所に差し出された場合・法第五百条)**

**第二百九十五条の三**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申立をすべき裁判所以外の裁判所(事件の係属した裁判所に限る。)に申立書が差し出されたときは、裁判所は、すみやかに申立書を申立をすべき裁判所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申立書が申立期間内に差し出されたときは、申立期間内に申立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申立書の記載要件・法第五百条)**

**第二百九十五条の四** 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の執行免除の申立書には、その裁判

を言い渡した裁判所を表示し、かつ、訴訟費用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を具体的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検察官に対する通知・法第五百条)

**第二百九十五条の五** 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の執行免除の申立書が差し出されたときは、裁判所は、直ちにその旨を検察官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八最裁規二一・追加)

## 第八編 補 則

(申立その他の申述の方式)

**第二百九十六条** 裁判所又は裁判官に対する申立その他の申述は、書面又は口頭で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但し、特別の定の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口頭による申述は、裁判所書記官の面前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は、調書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刑事収容施設に収容中又は留置中の被告人又は被疑者の申述)

**第二百九十七条** 刑事施設の長、留置業務管理者若しく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又はその代理者は、刑事収容施設に収容され、又は留置されている被告人又は被疑者が裁判所又は裁判官に対して申立てその他の申述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努めてその便宜を図り、ことに、被告人又は被疑者が自ら申述書を作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れを代書し、又は所属の職員にこれを代書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八最裁規六・平一九最裁規六・一部改正)

(書類の発送・受理等)

**第二百九十八条** 書類の発送及び受理は、裁判所書記官がこれを取り扱う。

- 2 訴訟関係人その他の者に対する通知は、裁判所書記官にこれ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3 訴訟関係人その他の者に対し通知をした場合には、これを記録上明らか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裁判官に対する取調等の請求)

**第二百九十九条** 検察官、検察事務官又は司法警察職員の裁判官に対する取調、処分又は令状の請求は、当該事件の管轄にかかわらず、これらの者の所属の官公署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最寄の下級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請求は、少年事件については、同項本文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に規定する者の所属の官公署の所在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裁判官にも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令状の有効期間)

**第三百条** 令状の有効期間は、令状発付の日から七日とする。但し、裁判所又は裁判官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七日を超える期間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書類・証拠物の閲覧等)

**第三百一条** 裁判長又は裁判官は、訴訟に関する書類及び証拠物の閲覧又は謄写について、日時、場所及び時間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 2 裁判長又は裁判官は、訴訟に関する書類及び証拠物の閲覧又は謄写について、書類の破棄その他不法な行為を防ぐ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その他の裁判所職員をこれに立ち合わせ、又はその他の適当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四最裁規一二・一部改正)

(裁判官の権限)

**第三百二条** 法において裁判所若しく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ものとされ、裁判所がする処分に関する規定の準用があるものとされ、又は裁判所若しくは裁判長に属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されている受命裁判官、受託裁判官その他の裁判官は、その処分に関しては、この規則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2 法第二百二十四条又は第二百二十五条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その処分に関し、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検察官及び弁護人の訴訟遅延行為に対する処置)

**第三百三条** 裁判所は、検察官又は弁護士である弁護人が訴訟手続に関する法律又は裁判所の規則に違反し、審理又は公判前整理手続若しくは期日間整理手続の迅速な進行を妨げた場合には、その検察官又は弁護人に対し理由の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については、当該検察官に対して指揮監督の権を有する者に、弁護人については、当該弁護士の属する弁護士会又は日本弁護士連合会に通知し、適當の処置をとるべきこと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受けた者は、そのとつた処置を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二五最裁規二八・追加、平一七最裁規一〇・一部改正)

(被告事件終結後の訴訟記録の送付)

**第三百四条** 裁判所は、被告事件の終結後、速やかに訴訟記録を第一審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送付は、被告事件が上訴審において終結した場合には、当該被告事件の係属した下級の裁判所を経由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六二最裁規八·追加)

(代替收容の場合における規定の適用)

**第三百五条** 刑事收容施設及び被收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留置施設に留置される者については、留置施設を刑事施設と、留置業務管理者を刑事施設の長と、留置担当官(同法第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留置担当官**をいう。)を**刑事施設職員**とみなして、**第六十二条第三項、第八十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九十一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第九十二条の二、第一百五十三条第四項、第一百八十七条の二、第一百八十七条の三第二項、第二百十六条第二項、第二百二十七条(第一百三十八条の八、第二百二十九条、第二百八十四条、第二百九十四条及び第二百九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百二十八条(第一百三十八条の八、第二百二十九条、第二百八十四条、第二百九十四条及び第二百九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百二十九条、第二百四十四条、第二百八十条の二第三項及び第四項並びに第二百八十条の三第二項の規定を適用する。**

(平一九最裁規六·全改)